



10·27 법 난 피 해 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백서

부 록

차례

부록 1	10·27법난 일지	1
부록 2	10·27법난 관련 언론보도 모음	7
부록 3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47
부록 4	10·27법난 관련 법령	221
부록 5	위원회 규칙·규정·지침 등	259
부록 6	위원회 업무활동일지	367
부록 7	위원회 역대 위원 및 직원 명단	383



부록 1

10·27법난 일지



연도	일 시	주 체	내 용 요 약	특기사항
1980	2. 15	대법원	서용 전 종정스님의 가처분 집행 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	개운사측 안전 승소 의미
	2. 29	계엄사	17차 계엄위원회에서 불교계에 관한 토의진행	사찰내 불순분자 은신 주장
	3. 2	조계종	분규 쌍방인 개운사-조계사측 합의	송원스님 총무원장 취임
	3. 13	정부	개헌심의위원회 발족	위원장 - 신현확 총리
	3. 14	조계종	(개운사측)문공부에 '종단대표 임원 취임변경등록 촉구 결의	
	3. 30	조계종	분규 쌍방(개운사측, 조계사측) 종회 의원 총선거 합의	종회 구성되면 양측 집행부 총사퇴 합의
	4. 1	조계종	(개운사측)임시중앙종회에서 합의 조약서 의결 (조계사측)17인 인수위원회에서 조약서 동의	
	4. 2	조계종	조계종 종회의원 총선거 일정 확정 (선거 17일, 당선자등록 22일, 26일 종회 개원)	
	4. 17	조계종	제6대 중앙종회의원 총선거	
	4. 26	조계종	제6대 중앙종회 개원 : 총무원장 월주스님, 종회의장 도견스님 선출	종정은 추대 실패
	5. 7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 당선무효 주장	조계사측 일부 주장
	5. 9	조계종	문공부에 조계종 대표자 등록 신청	대표자 - 월주스님
	5. 13	조계종	월주스님 총무원에서 종무 시작	
	5. 15	조계종	사무 인수인계서 조인	
	5. 17	정부	비상계엄 전국확대 의결	
	5. 30	조계종	5·18광주사태 종교인 지원책 논의	
	5. 31	정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 발족	위원장 - 전두환
	6. 2	총무원	조계종 '광주시민돕기대책본부' 설치	본부장 - 월주스님
	6. 7	국보위	일대 사회개혁 단행 방침 발표	
	6. 11	조계종	종단 자율정화 및 총화를 위한 대책 강구중 발표	
6. 14	국보위	사회악 일소 국가기강 확립 등의 4대목표 발표		



연도	일시	주체	내용 요약	특기사항
1980	6. 26	국보위	“자체정화 미흡하면 국보위가 직접 개입하겠다” 입장 발표	
	7. 3	조계종	이후락 전국신도회장 사임	
	7. 5	정부	월주스님을 개헌심의위원회에 위촉	
	7. 21	조계종	국보위지지 ‘전한국 불교회’ ‘대한불교총연합회’ 탈퇴 결정	종단 자주화 선언 의미
	7. 24	조계종	총무원장 등록 거부하는 문공부 비난, 등록과 관계 없이 총무원장 직무수행 의지 천명 기자회견	문공부는 종정 공석을 이유로 등록을 보류
	8. 2	조계종	최재구씨를 전국신도회 신임회장으로 선출	
	8. 14	조계종	불교관계법 개정 5인 추진위 구성	국보위 제출기로 결정
	8. 21	계엄사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전두환 장군을 대통령 추대 결의	
	8. 22	문공부	종교계 지도자 초청 자율정화 방안제시 및 전두환 장군 지지성명 발표 증용	월주 총무원장 거부
	8. 26	조계종	조계종 정화추진 방안 발표	
	8. 31	조계종	자체정화작업 착수 ① 종단내부 분쟁 해소 ② 종 교인 자질향상책 ③ 재산분규등 병폐대상 제거 등	중점 정화 방향
	9. 1	정부	전두환 제11대 대통령에 취임	
	9. 16	조계종	불교관계법 개정 요구 결의대회 개최	장소 - 조계사
	9. 17	조계종	불교관계법 개정시안 문공부에 제출 - 불교재산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도시공원법, 사찰 공원법 등 4개 법안	
	9. 29	조계종	‘대한불교총연합회 정화대책위’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불교계 정화를 빙자하며 출현	조계종 강력 대응 결의
	10. 7	조계종	총무원장이 정화 호도하며 일어나는 불순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	
	10. 13	국보위	사회악사범 일소 작업으로 폭력단 등 4만6천여 명 검거	
10. 20	조계종	조계종단 자율정화 세부지침 확정 - 중점적인 정화방향 ① 축재 금지 ② 불청정 행위금지 ③ 폭력 폭언 행위금지 ④ 사치행위금 지 ⑤ 상호 비방 금지	24개 교구본사에 정화 추진위 지부 설치	

연도	일 시	주 체	내 용 요 약	특기사항
1980	10.27	합수단	'45계획' 착수 - 전국 사찰에 계엄군 경찰병력 투입 스님 등 153명 연행 조사	
	10.30	합수단	계엄군 - 전국 사찰 및 암자 일제수색 실시	전국 5,731곳
	10.31	조계종	문공부로부터 사건경위 듣고 대책회의 - 신도 참여하는 대책위 구성하기로 합의	원로회의의장 영암스님 등 32명 참석
	11.3	조계종	제63회 중앙종회 개최 - 중앙종회 해산 결의 - 비리관련 17인 종회의원, 총무원장 사퇴 의결 - 정화종흥회의 의원 51명 선출	모든 종단권한 위임
	11.5	조계종	'정화종흥회의' 발족	상임위원장 - 탄성스님
	11.8	조계종	총무원수인계	전 총무원 집행부 퇴진
	11.14	합수단	'45계획' 수사결과 발표. 승려 및 관련자 153명 연행 또는 소환해 18명을 구속, 형사입건하고 32명은 불교정화종흥회의의자율정화에 처리 위임, 5명은 훈방	신문 방송 그대로 보도
	11.18	조계종	10·27법난과 관련한 혜성스님등 13명 체탈도첩	
	11.21	합수단	스님 24명을 흥국사 집단 연금	1981. 1. 20까지 수용
12.11	정부	전두환 대통령, 종단 대표 8명 스님 접견 - 종단 정화 조기 종결 언급		
1981	1. 7	조계종	총무원장 중심제의 신 종헌 확정	
	1. 10	조계종	신임 총무원장에 성수스님 선출	
	1. 20	조계종	제7대종정 성철, 신임 총무원장 성수스님 취임식	1. 24 계엄해제
	4. 18	조계종	제65회 중앙종회, 10·27법난 수습 안건 접수	
1982	12.22	조계종	10·27법난 연행됐던 원철스님(전 낙산사 주지) 입적	
1984	10.27	조계종	출재가 150명이 모여 10·27법난 규명 규탄대회	이후 해마다 10·27행사
1986	8. 8	조계종	불교탄압공동대책위 성명서 발표 - 10·27불교탄압 부당성 폭로 단식투쟁 결의 - '1천만 불자에게 드리는 글'제하	
	9. 7	조계종	해인사에서 전국 승려대회 개최 - 10·27법난 책임자 규명 및 해명등을 요구	



연도	일시	주체	내용 요약	특기사항
	10. 26	조계종 (재야단체)	20개 사찰 소속의 승려와 민중불교운동연합 등 불교단체 회원 250명이 봉은사에서 26, 27일 양일간에 걸쳐 '10·27법난 규탄 및 불교자주화쟁취대회' 개최	행사이후 가두시위
1988	7. 20	민불련	제5공화국비리특위에서 10·27법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8. 3	국회	야권3당 단일안으로 10·27법난 조사키로 결정	민불련 평민당사 농성
	10. 27	조계종 (재야단체)	10·27법난 규명과 책임자 처단을 위한 불교도 실천대회	10·27법난 자료집 발간
	11. 16	진상 규명위	월하, 서운, 월주, 월탄, 혜성스님등 중진 원로 등 참여 '10·27법난 진상규명추진위'발족	
	11. 22	진상 규명위	'10·27법난진상규명추진위' 진상규명 및 참회 촉구 성명서 발표	
	11. 24	진상 규명위	10·27법난 진상규명 협조 공한을 대통령, 국무총리, 문공부, 국방부, 안기부, 보안사 등 정부기관과 국회의장, 4당대표, 5공특위위원장에게 발송.	
	11. 25	진상 규명위	송월주 위원장과 김영삼민주당 총재 회동 -김영삼 총재 진상규명 명예회복 약속	강인섭, 서석재, 김동주, 노무현 동석
	11. 30	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과 사과촉구 결의' - 대표로 정휴, 혜창, 혜성, 지형, 현근스님 위촉 - "10·27법난은 불교의 전통성과 자주성을 말살한 역사적 범죄행위"	제도권에서 법난문제를 전격 수용한데 의미
	12. 5	진상 규명위	평민당 김대중 총재와 회동. - 10·27법난 특위 당내 설치 약속	이용희, 최낙도 동석
	12. 15	조계종	중앙총회, '10·27법난진상규명위'와 재야단체의 '10·27법난진상규명추진위'의 이원화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결의	태고종 57차 총회도 법난 진상규명 촉구 성명
12. 30	정부	강영훈 국무총리가 '10·27법난 관련 대국민 사과담화문' 발표	불교계 오찬 시 발표	
1989	1. 30	국방부	10·27법난 경위 설명회 개최 불교방송 건립등 불교진흥책 지원 발표	
	1. 31	조계종	서의현 총무원장 법난관련 기자회견 - 법난 당시 진정서, 투서, 고발등 관련 문건 중단에 넘길것 주장	

연도	일 시	주 체	내 용 요 약	특기사항
	2. 22	국회	10·27법난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위원장 : 이기택
	12. 31	국회	전두환전대통령 답변 - 법난은 정화조치의 일환으로 특정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비추어진 점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취임후 바쁜 일정으로 중대한 사안임에도 집행기관 자세히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 발언	
2003	2. 16	MBC	시사프로그램 '이제는 말 할 수 있다'에서 10·27법난 내용으로 하는 '45계획 10·27법난의 진실' 방영	
2005	7. 4	법난 대책위	10·27법난 불교대책위 발족 - 불교인들에게 보내는 참회문과 대정부 글 발표	혜성, 법타, 혜자, 진관, 한상범 등 참여
	8. 18	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장 법타스님
	8. 23	법난 대책위	피해자 증언보고회 개최	삼보스님 할복자해기도
	9. 5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는 10·27법난이 2차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음을 발표	
	9. 13	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이해동위원장 방문 불교계의 요구사항 전달	
2007	10. 25	국방부	10·27법난 사건조사 결과발표 및 기자회견	
2008	2. 26	국회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발의	윤원호 의원 외
	3. 28	정부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등을 위한 법률」 공포	법률 제8995호
	9. 9	정부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공포	대통령령 제20991호
	12. 30	정부	10·27법난 명예회복심의위 위원 위촉 및 출범	정부위원 4인, 민간위원 7인 총 11인



부록 2

**10·27법난 관련
언론보도 모음**



목 차

1. 10월 28일 경향신문 7면 폭력·사이비 승려 등 46명 연행	10
2. 10월 28일 동아일보 7면 비리·범법승려 등 46명 연행, 「젓밥」 다툼 폭력 판치는 고질비리	13
3. 10월 28일 서울신문 7면 불교정화 착수	16
4. 10월 28일 중앙일보 7면 불교계 비리 수사	18
5. 10월 29일 조선일보 5면 수술대 오른 불교계 “고질”	20
6. 10월 29일 조선일보 7면 불교계 비리 전면 수사	23
7. 10월 29일 한국일보 7면 폭력·사이비 승려 등 46명 연행	25
8. 11월 14일 동아일보 1면 승려 부정축재재산 200억원	28
9. 11월 14일 서울신문 7면 비리승려 10명·민간인 8명 구속	32
10. 11월 14일 중앙일보 7면 불교계 정화 18명 구속 32명 승적 박탈	35
11. 11월 15일 한국일보 7면 비리승려 부정축재 200억	39
12. 12월 27일 중앙일보 3면 종교 참모습 회복 안감힘 - 불교계 정화	43

暴力·사이비僧侶등 46명連行

戒嚴司 派閥암투·퇴폐등 12개類型 조사

【경향신문 28일 서울 28일 특파원 보도】戒嚴司令部가 28일 서울에서 46명連行한 暴力·사이비僧侶等의 派閥암투·퇴폐等 12개類型을 조사하고 있다. 이 46명連行한 暴力·사이비僧侶等은 戒嚴司令部가 28일 서울에서 46명連行한 暴力·사이비僧侶等의 派閥암투·퇴폐等 12개類型을 조사하고 있다.

戒嚴司 派閥암투 全文

戒嚴司令部가 28일 서울에서 46명連行한 暴力·사이비僧侶等의 派閥암투·퇴폐等 12개類型을 조사하고 있다. 이 46명連行한 暴力·사이비僧侶等은 戒嚴司令部가 28일 서울에서 46명連行한 暴力·사이비僧侶等의 派閥암투·퇴폐等 12개類型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28일 특파원 보도】戒嚴司令部가 28일 서울에서 46명連行한 暴力·사이비僧侶等의 派閥암투·퇴폐等 12개類型을 조사하고 있다. 이 46명連行한 暴力·사이비僧侶等은 戒嚴司令部가 28일 서울에서 46명連行한 暴力·사이비僧侶等의 派閥암투·퇴폐等 12개類型을 조사하고 있다.

【경향신문 28일 서울 28일 특파원 보도】戒嚴司令部가 28일 서울에서 46명連行한 暴力·사이비僧侶等의 派閥암투·퇴폐等 12개類型을 조사하고 있다. 이 46명連行한 暴力·사이비僧侶等은 戒嚴司令部가 28일 서울에서 46명連行한 暴力·사이비僧侶等의 派閥암투·퇴폐等 12개類型을 조사하고 있다.



폭력·사이비 승려 등 46명 연행

계엄사령부는 27일 불교계에서 폭력 부패행위 등을 일삼아온 사이비 승려 및 상습 폭력배 46명을 연행,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계엄사가 발표한 이들의 대표적인 죄상과 비리 등을 보면 ▲종권을 장악하기 위한 파벌간의 암투와 폭력에 의한 강점 폭행 ▲승단 내에서의 폭력상해행위 ▲사원의 병역 기피자·폭력 사범 등 전과자의 도피 은신처화 ▲음주와 음란 행위 등 퇴패행위 ▲사찰재산의 착복 등 12개 유형이다.

계엄사는 이번 사이비 승려 및 폭력배의 연행 조사는 양심적인 승직자와 신도들의 절실한 요망 일뿐 아니라 종교계 정화를 희구하는 국민 여론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불교계의 건전한 희생과 중흥을 위한 것이므로 승직자와 신도들은 동요하거나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도록 당부했다.

◇계엄사 발표문 전문

계엄사령부는 지난 10월 27일 불교계 내에 온갖 비리와 부패 범법행위를 자행하여 온 사이비승려 및 상습적 폭력배 등 총 46명을 수사당국이 연행 조사하고 있음을 발표하는 바이다.

이들의 죄상과 비행은 수사가 종결되어 그 전모와 실상이 밝혀지는 대로 추후 발표할 예정인 바 이를 사이비 승려 및 불교계내 폭력배에 대해 일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동기 및 주요비리 유형은 다음과 같다.

◇동기

국민 여러분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불교는 우리 민족의 전통 종교로서 민족정기와 주체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국민의 정신영역을 계도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이비 승려와 폭력배들이 난무 발호하는 비리지대로 화하여 뜻있는 승직자와 신도들은 물론 일반 국민의 지탄과 빈축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계엄당국은 정계를 비롯한 사회각계에 대해 과감한 숙정과 정화 조치를

단행하면서도 종교가 지니는 특수성과 독자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불교계 자체의 자율적 정화와 숙정이 있기를 기대하여 왔던 것이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자체 정화의 움직임이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뿐 아니라 자력으로 도저히 갱생의 힘이 없는 것으로 판단, 부득이 사회정화 차원에서 조치를 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계엄당국은 이들 사이비 승려나 상습적 폭력배를 교계에서 과감하게 소탕, 추방하는 조치를 계기로 하여 전통 종교로서의 불교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자체 정비와 자세의 정립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향한 국민의 정신적 계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주요비리유형

▲종권을 장악하기 위한 파벌간 암투와 폭력에 의한 강점, 폭행자행 ▲승단 내에서의 폭력상해행위 빈발 ▲사찰내 병역 기피자, 폭력사범, 사기 횡령 등 전과자의 도피 은신 처화 ▲음주와 사음 등 퇴폐행위를 자행하고 일부 사이비승의 발호 ▲수도생활의 기피 또는 환속과 입산을 반복하면서 사찰의 생활 터전화 및 승려생활을 치부 수단화 ▲사찰 주지직 등 임명시의 금품수수 ▲사찰재산의 착복(사찰 소유 임야, 불교 문화재, 시주금 등) ▲각종 불사(사찰 공사)를 위요한 부정행위 자행 ▲사이비승들의 작당에 의한 금품 강요 및 공갈, 협박행위 ▲각종 불사를 빙자한 모금행위 및 사술 ▲사찰의 관리 소홀과 유흥장화 ▲신도를 상대로 한 각종 무속사기행위

◇당부의 말씀

금번의 사이비 승려 및 폭력배의 연행조사는 양심적인 승직자와 신도들의 절실한 여망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종교계 정화를 회구하는 여론에도 부응하는 조치로서 어디까지나 불교계의 건전한 회생, 중흥을 위하여 취해진 것이므로 승직자와 신도들은 동요하거나 유연비어에도 현혹됨이 없기를 바라는 바이다.

非理·犯法僧侶등 46명連行

戒嚴司 “社會淨化차원서 佛敎界淨化”

宗權장악위해派閥間暗鬪 寺院을前科者들隱身處로 信徒대상巫俗詐欺致富도

주요非理類型

【서울 28일 특파원 특보】 28일 서울 시내에서 46명의 불교계 인사들이 연행된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1979년 12월 12일 7차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1980년 1월 21일 8차 비상계엄 선포 때까지 서울 시내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1979년 12월 12일 7차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1980년 1월 21일 8차 비상계엄 선포 때까지 서울 시내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1979년 12월 12일 7차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1980년 1월 21일 8차 비상계엄 선포 때까지 서울 시내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발 다름 暴力판치 三 戒嚴司의 曹溪宗淨化로 본 寺刹不條理

戒嚴司의 曹溪宗淨化로 본 寺刹不條理

해설 戒嚴司의 曹溪宗淨化로 본 寺刹不條理

戒嚴司의 曹溪宗淨化로 본 寺刹不條理

青潭스님死亡 등 疑惑·暴力事件 빈번

土地不法매각·觀光收入다툼 잇달아

戒嚴司의 曹溪宗淨化로 본 寺刹不條理

戒嚴司의 曹溪宗淨化로 본 寺刹不條理

戒嚴司의 曹溪宗淨化로 본 寺刹不條理

戒嚴司의 曹溪宗淨化로 본 寺刹不條理

- 1. 10월 28일 서울 시내에서 46명의 불교계 인사들이 연행됨
- 2. 이들 중 일부는 1979년 12월 12일 7차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1980년 1월 21일 8차 비상계엄 선포 때까지 서울 시내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남
- 3. 이들 중 일부는 1979년 12월 12일 7차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1980년 1월 21일 8차 비상계엄 선포 때까지 서울 시내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남
- 4. 이들 중 일부는 1979년 12월 12일 7차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1980년 1월 21일 8차 비상계엄 선포 때까지 서울 시내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남

비리 범법승려 등 46명 연행

계엄사 “사회정화 차원서 불교계 정화”

종권 장악 위해 파벌간 암투

사원을 전과자들 은신처로

신도 대상 무속사기치부도

계엄사령부는 28일 불교계 내에서 각종 비리와 부패 범법행위 등을 자행해온 사이비 승려와 상습 폭력배 등 46명을 연행.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계엄사는 “그동안 사회 각계에 대해 숙정과 정화 조치를 단행하면서 종교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불교계 자체의 자율적 정화와 숙정을 기대했으나 아무런 자체 정화 움직임이 없어 부득이 사회정화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계엄사는 “이들 사이비 승려 및 폭력배 소탕을 계기로 불교가 전통 종교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자체 정비와 자세 정립을 촉구 한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는 불교계의 건전한 희생과 증흥을 위해 취해진 것이므로 성직자와 신도들은 동요하거나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엄사는 연행자들의 죄상과 비행은 수사가 진행 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갯밥 다툼 폭력 판치는 고질비리

계엄사의 조계종 정화로 본 사찰 부조리

◇해설

청담 스님 사망 등 의혹, 폭력 사건 빈번

토지불법 매각, 관광수입 다툼 잇달아

종단내 분파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불교계에 대수술이 내려졌다. 잇단 세력 다툼으로 폭력이 난무했고 법정 시비도 잦아 신도들은 물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계엄사의 이번 수사는 불교계의 비리를 자체적으로 정화하지 못한데 대한 병폐의 수술로 볼 수 있다.



우선 조계종은 2년을 넘는 조계사측과 개운사측의 종권을 위한 분쟁으로 종도의 신망을 잃고 불교계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왔다. 지난 4월말 분쟁을 종식시키고 송월주 총무원장을 정점으로 한 통합 종단을 구성하고도 반년이 지나도록 종정 추대를 못하고 있는 것도 분규의 불씨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규 말고도 조계종은 ▲70년 11월의 청담 스님 사망 ▲72년 12월의 당시 이서용 종정 피납 ▲77년의 손경산 총무원장 폭행 사건 ▲79년 2월의 조계사 주지 납치사건 ▲지난 5월의 총무원 난입 ▲8월의 서운월 피납 등 수도의 도량이어야 할 사찰 주변에서 폭력이 빈발했다.

또 관광지 주변 사찰의 경우 대표 수입을 둘러싼 비리가 자주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밖에 금년 5월부터는 새 집행부가 들어서서 자체 정화위를 설치하는 등 정화 노력에 힘을 기울였으나 한편으로는 영화사, 백련사, 수도사 등의 토지불법매각이 사회 문제화 되는 등 기강이 잡히지 않았다.

게다가 종단 주변에서 항상 종단의 틈만을 엿보는 사이버 신행 단체의 ‘양복부대’가 설치 행사 등을 명목으로 거액을 착복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한편 조계종단의 분규와 비리에는 관계 당국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종단간부 스님 중의 하나는 28일 아침 빈자리를 지키며 지난 5월 문공부가 총무원장 등록만 받아줬어도 강력한 행정력으로 자체정화를 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 스님은 조계종단의 비리는 극히 일부 승려와 종단주변 ‘양복부대’에 불과하므로 전체 국민과 종도들은 1천 6백여년 전 전통 불교에 계속 신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현 분규의 발단

▲종정측과 반종정측(종회)의 대립으로 발단 ▲77년 9월부터 표면화
분규경과

▲77.11.9 반종정측이 종정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78.1.21 위 신청결정 종정직무 대행자 선임 ▲80.2.15 위 가처분신청 취소 ▲80.3.30 분규 종식을 위한 분규 대표 당사자 합의 ▲80.4.26 종회구성 소집 ▲80.5.8 종정 추대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로 종회 결렬 현재에 이름

佛敎淨化 착수

사이비僧侶 46명 淨行

戒嚴司 宗權 다툼·暴力·퇴폐·橫領 등 대상

【서울 28일 특파원 특보】 서울에서 46명 사이비僧侶(僧侶)를 淨化(淨化)하는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을 착수(착수)했다.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은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을 착수(착수)했다.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은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을 착수(착수)했다.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은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을 착수(착수)했다.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은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을 착수(착수)했다.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은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을 착수(착수)했다.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은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을 착수(착수)했다.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은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을 착수(착수)했다.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은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을 착수(착수)했다.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은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을 착수(착수)했다.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은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을 착수(착수)했다.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은 佛敎(佛敎) 淨化(淨化) 策(策)을 착수(착수)했다.



불교정화 착수 사이버 승려 등 46명 연행

계엄사 종권 다툼·폭력·퇴폐·횡령 등 대상

계엄사는 불교계 내에서 비리와 부패·범죄 행위를 일삼아 온 사이버 승려 및 상습 폭력배 등 46명을 연행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발표했다. 계엄사령부는 “불교계가 우리 민족의 전통 종교로서 민족 정기와 주체 의식을 기르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 국민의 정신 영역을 계도해야 할 사명을 잊은 체 사이버 승려와 폭력배들이 날뛰는 비리지대로 변하여 뜻있는 승직자와 신도들은 물론, 일반 국민의 지탄과 빈축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지적, 불교계 정화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사는 “사회 각계에 숙정과 정화 조치를 단행하면서도 종교가 지니는 특수성과 독자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자율적 정화와 숙정을 기대했으나 자력으로는 이 같은 조치를 이룰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사회 정화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사가 밝힌 주요 숙정 대상은 ▲종권을 장악하기 위한 파벌간의 암투와 폭력에 의한 강점 폭행 ▲승단 내에서의 폭력 상해행위 ▲사원의 병역 기피자·폭력사범·사기·횡령 등 전과자의 도피 은신처화 ▲음주와 사음 등 퇴폐행위·수도 생활의 기피 또는 환속과 입산을 되풀이하면서 사찰을 생활 터전으로 삼거나 승려 생활을 치부 수단으로 하는 행위 ▲사찰 주지직 등을 임명할 때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사찰 재산의 착복, 각종 사찰 공사를 둘러싼 부정행위 ▲사이버 승려들이 떼 지어 금품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불사를 빙자한 모금 행위 ▲사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유흥장소로 삼는 행위 ▲신도를 상대로 한 각종 무속사기 행위 등이다.

계엄사는 이들의 죄상과 비행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그 전모를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불교계의 건전한 회생과 중흥을 위해 취하는 이번 조치에 승직자와 신도들은 동요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계엄사 불교계 비리 수사

종권 다툼 폭력 등 중점

자율 정화 없어 사찰 재산 착복도 파헤쳐

계엄사는 불교계 내에서 부패·범법 행위를 저질러온 비리·사이비 승려와 상습 폭력배 등 46명을 27일 연행, 그 죄상과 비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발표했다.

계엄사는 불교계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국민의 정신 영역을 제도해야 될 불교계가 사이비 승려와 폭력배들이 난무하는 비리 지대화 했고 ▲각계의 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교계 내에서는 아무런 자율정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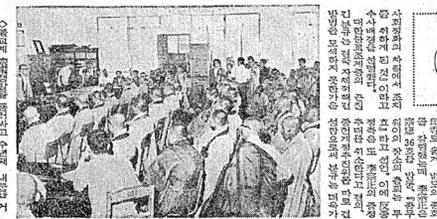
계엄사가 밝힌 불교계내의 주요 비리 유형은 ▲종권장악을 위한 파벌 암투와 폭력 ▲병역 기피자·폭력 사범·사기 횡령 전과자의 도피·은신처화 ▲사찰을 생활터전으로 해 승려생활을 치부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 ▲사찰재산착복 ▲불교행사를 빙자한 모금 및 사술행위 ▲신도 상대 무속사기 행위 등이다.

승려들 46명 부딪기 醜態의 內幕

승려들이 10월 29일 서울에서 46명씩을 상대로 벌인 집단 투쟁은 승려들의 집단 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승려들이 46명씩을 상대로 벌인 집단 투쟁은 승려들의 집단 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승려들이 46명씩을 상대로 벌인 집단 투쟁은 승려들의 집단 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승려들이 46명씩을 상대로 벌인 집단 투쟁은 승려들의 집단 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승려들이 46명씩을 상대로 벌인 집단 투쟁은 승려들의 집단 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승려들이 46명씩을 상대로 벌인 집단 투쟁은 승려들의 집단 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佛敎界 痼疾 手術臺 오른



유감스러운 "衝突" 딛고 宗教 本연의 姿勢 확립해야

宗權 높고 극한 對立 일삼아
끝없는 內紛... 자체 수습 限界

종교의 본연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승려들이 46명씩을 상대로 벌인 집단 투쟁은 승려들의 집단 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승려들이 46명씩을 상대로 벌인 집단 투쟁은 승려들의 집단 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수술대 오른 불교계 “고질”

계엄사가 27일 발표한 사이버 승려 및 불교계 폭력배 46명의 집단 연행 수사 사실은 불교계를 포함한 전 종교계로서도 전무한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사 결과가 추후 발표 되겠지만 어쨌든 불교계 관계 인사들이 사회 부조리의 혐의로 이같이 무더기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신성한 종교계로서는 유례없는 불행한 사태이며, 잇단 분규가 빚은 자승자박의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승려 등 46명 무더기 수사 그 백태의 내막

당국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46명은 종권을 둘러싼 종단 내분에 깊이 관계된 당사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 밖에 축재 폭력 파렴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승려와 조계종단 주변에서 서식하며 불교 브로커 행위를 해온 불교 관계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 대상자는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계엄사는 이들에 대한 일단의 조치에 대해 “사이버 승려와 종단 폭력배들이 난무, 비리지대로 화하여 뜻있는 승직자와 신도들은 물론 일반 국민의 지탄과 빈축의 대상이 돼 왔다”고 밝히고 “자력으로는 도저히 갱생의 힘이 없는 것으로 판단, 부득이 사회 정화의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수사배경을 설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끈질긴 분규는 결국 자체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 당국으로부터 “사회정화의 철퇴”를 맞아 타의적 “외과 수술”을 받는 사태에 이르고 만 것이다.

조계종단의 분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1962년 통합종단으로 발족된 이후 종단의 내분은 간헐적이었지만 꾸준히 계속되어왔다. 그러다가 분규가 본격화 된 것이 지난 77년 9월

당시 이서용 총정의 인사 난맥상을 이유로 개운사측이 들고 일어나 총정 중심제의 종헌을 총무원장 중심제로 개헌하자고 주장한데서 뜨거운 불씨가 터지기 시작했다.

개운사측의 반발에 이종정측도 맞서게 되자, 반종정측은 회의장소를 해인사로 옮겨 별도의 종회를 강행했는데 이종정은 종헌 36호를 발동, “총무원 이외 장소의 종회는 무효”라고 선언. 이에 반종정측은 또 이종정의 종정 추대를 취소한다고 결의, 종헌개정추진위를 따로 결성함으로써 분규는 더욱 가열되기 시작했다.

이종정은 사태가 심각하자 다시 종헌 37호를 발동, 종회를 해산 조치했다. 여기서 부터 법정 문제로 비화, 77년 11월 9일부터 반종정측이 법원에 종정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듬해인 78년 1월 21일 법원측은 이를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종회 제의에 따라 채벽암 스님을 종정직무대행으로 임명. 그러나 벽암스님이 그 후 자진사퇴함에 따라 금년 2월 5일 법원은 이의 가처분결정을 취소, 다시 그 자리에 윤고암 스님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으나 다시 물러났다. 이들 쌍방은 지난 4월 26일 종회를 소집, 새 집행부 구성을 시도했으나 상호 의견의 충돌로 유산. 다시 5월 8일 종회가 소집됐으나 조계사측(종청)과 개운사측이 갑론을박만하다 폐회, 종정추대를 비롯한 종단내분을 수습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됐다.

결국 조계종단의 분규는 종정 자리를 놓고 종정측과 반대파인 개운사측이 극렬한 대립을 벌여 오다가 끝내 법정으로 비화, 법원의 개입으로 왕좌(?)가 몇 차례씩이나 었치락 뒤치락 해왔으며,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공식이 된 채 분규의 불씨가 자체적으로 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치스러운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이번 불교계 지도층이 무더기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이 같은 암적 내분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에 이른데다 종단 자체로서도 수습의 길이 한계에 도달, 끝내 그 응어리가 자승자박으로 터져버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고질화된 불교계 분규가 자율적으로 수습되지 못하고 당국의 손에 의해 수술이 가해졌다는 점에서 불교계로서는 유감스럽고 아쉬운 일.

불교계는 앞으로의 진로에 이를 경종 삼아 보다 단결, 화합으로 종교본연의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조계종은 곧 임시중앙종회를 소집, 비상집행부를 구성하여 종단의 정상화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佛敎界 非理 전면 수사

戒嚴司

사이비 僧侶 · 폭력배 46명 연행

【서울 28일 특보】 서울경찰청이 서울 시내에 있는 사찰과 불교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이비 승려와 폭력배 46명을 연행했다. 이들 중에는 일부는 불교계 인사로 알려진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행된 이들 중에는 일부는 불교계 인사로 알려진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非理 類型

宗權싸고 暗闘와 폭력
 寺刹이 犯法者 은 신처
 林野·시주금등을 着服
 信徒상대로 巫俗 행위

본지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전국 8개 지사에서 발행되고 있다. 구독료는 별도이며, 광고비는 별도이다. (주) 조선일보

불교계 비리 전면수사

사이비 승려 폭력배 46명 연행

계엄사는 불교계 내에서 부패 범법행위를 저질러온 비리-사이비 승려와 상습 폭력배 등 46명을 27일 연행, 그들의 비행과 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계엄사가 밝힌 불교계내의 주요 비리유형은 ▲종권 장악을 위한 파벌간의 암투와 폭행 ▲사원의 병역 기피자 및 폭력-사기-횡령 등 전과자의 은신처화 ▲음주와 사음 등 퇴폐행위를 자행하는 사이비 승려 ▲사찰재산 착복 ▲불교 행사를 빙자한 모금 및 사술행위 등이다.

계엄사는 연행된 사이비 승려들의 죄상과 비행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 그 전모와 실상을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폭력·사이비·僧侶등 46명連行

戒嚴司 사회淨化차원서 佛敎界도 淨化

70년入寂 靑潭스님 暴行致死 진상등

온갖 非理·犯法 뿌리뽑기로

○입원 10년째의 佛敎단체 이 佛敎界에 暴行致死 70년 入寂 스님 靑潭스님 暴行致死 眞상등 7월 28일 佛敎界에 暴行致死 眞상등 7월 28일 佛敎界에 暴行致死 眞상등

○입원 10년째의 佛敎단체 이 佛敎界에 暴行致死 70년 入寂 스님 靑潭스님 暴行致死 眞상등 7월 28일 佛敎界에 暴行致死 眞상등 7월 28일 佛敎界에 暴行致死 眞상등

宗權다름 暴力·빈발·飲酒등 퇴폐행위
寺刹이 兵役기피자·前科者 은신처化
각종 佛事·빙자 金品강요·공갈·협박

○입원 10년째의 佛敎단체 이 佛敎界에 暴行致死 70년 入寂 스님 靑潭스님 暴行致死 眞상등 7월 28일 佛敎界에 暴行致死 眞상등 7월 28일 佛敎界에 暴行致死 眞상등



○입원 10년째의 佛敎단체 이 佛敎界에 暴行致死 70년 入寂 스님 靑潭스님 暴行致死 眞상등 7월 28일 佛敎界에 暴行致死 眞상등 7월 28일 佛敎界에 暴行致死 眞상등

○입원 10년째의 佛敎단체 이 佛敎界에 暴行致死 70년 入寂 스님 靑潭스님 暴行致死 眞상등 7월 28일 佛敎界에 暴行致死 眞상등 7월 28일 佛敎界에 暴行致死 眞상등

○입원 10년째의 佛敎단체 이 佛敎界에 暴行致死 70년 入寂 스님 靑潭스님 暴行致死 眞상등 7월 28일 佛敎界에 暴行致死 眞상등 7월 28일 佛敎界에 暴行致死 眞상등

폭력 사이비 승려 등 46명 연행

70년 입적 청담스님 폭행치사 진상 등
온갖 비리 범법 뿌리 뽑기
종권 다툼 폭력빈발 음주 등 퇴폐행위
사찰이 병역 기피자 전과자 은신처화
각종 불사 빙자 금품 강요 공갈 협박

계엄사는 28일 불교계 내부에 도시리고 앉아 온갖 비리와 부패 범법행위를 저지르면서 교계를 어지럽혀온 사이비 승려, 상습폭력배 등 46명을 연행,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계엄사는 이날 지난 70년 11월 입적한 청담스님의 사인이 자연사가 아니라 우이동 도선사 별장에서 정체 불명자들로 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실 등 그간의 불교계 의혹 사건들의 진상도 파헤치고 있다고 밝혔다.

계엄사는 이들의 죄상과 비행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 되는대로 그 전모와 실상을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폭적인 수사를 하게 편 것은 “우리 민족의 정통 종교로서의 불교가 사이비 승려와 폭력배들이 난무, 발호는 비리 지대화 하여 뜻있는 승직자와 신도 및 일반 국민의 지탄과 빈축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계엄당국은 “민족 정기와 주체 의식을 정립하여 국민의 정신 영역을 계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불교가 이토록 부패 돼 있을 줄 알고 있었으나 종교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자율 정화와 자체 숙정이 있기를 기대했으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뿐 아니라 자력으로는 갱생의 힘이 없는 것으로 판단, 부득이 사회정화의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비리와 부패상

이날 계엄사가 밝힌 불교계의 각종 비리와 부패상은 다음과 같다.

▲종권을 장악하기 위한 파벌간의 암투와 폭력에 의한 강점 폭행 자행 ▲승단내에서의 폭력, 상해행위빈발 ▲사원의 병역 기피자 폭력 사범 사기 횡령 등 전과자의 도피 은



신처화 ▲음주와 사음 등 퇴폐 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사이버승려의 발호 ▲수도 생활의 기피 또는 환속과 입산을 반복하면서 사찰의 생활 터전화 및 승려생활을 치부의 수단화 ▲사찰 주지 등 임명 때의 금품수수 ▲사찰재산의 착복(사찰소유 임야, 불교문화재 시주 금 등) 등 부정 행위자행 ▲사이비 승려들의 작당에 의한 금품 강요 및 공갈과 협박 행위 ▲각종 불사를 빙자한 모금 행위 및 사술 ▲사찰의 관리 소홀과 유흥장화 ▲신도를 상대로 한 각종 무속사기 행위

◇비리 주요 사례

관계 당국이 밝힌 비리 비행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70년 11월 청담스님이 도선사 별장에서 정체 불명자들로 부터 폭행 당해 사망 ▲71년 12월 24일 승려 최성묵이 조계사에 방화 ▲72년 12월 20일 승려 김대심 등 28명이 이서용 종정 등 집행부 승려 7명을 불법 감금, 70만원의 금품을 약취 ▲77년 손경산 총무원장이 돈암동 적인암에서 폭행당해 3개월간 입원 ▲78년 10월 이서용 종정과 손경산 총무원장간에 종권 쟁탈을 둘러싼 소송싸움 ▲79년 2월 21일 승려 최성묵 김병학이 조계사 주지 김혜법을 납치 사업자금 2억원 요구, 73만원 지급 약속 받음 ▲80년 5월 13일 개운사 송월주축 승려 30명이 총무원에 집단 난입, 강제로 사무승계 받음 ▲80년 8월 19일 현 집행부를 불법 단체 깡패 운운 비방하며 견지동 노상에서 조사부장 김종상 등 4명이 폭력으로 강제 연행

僧侶不正蓄財200億圓

戒嚴司 발표 流用額만도 4億6,000萬圓

18명拘束·32명僧籍박탈 佛敎淨化 5年계속키로

致富재산宗團에還收

宗權장악위해 派閥압투
住持인명차고 巨額수회
人氣演藝人과 퇴폐행위
혼자서百78億圓 蓄財도

非理내용
佛敎僧侶의 불법행위와 부패정황을 폭로한 이 특종 보도는 11월 13일 자 동아일보 1면과 2면에 걸쳐 실렸다. 이 보도는 1979년 12월 1일부터 1980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걸쳐 18명(17명)의 승려를 구속하고 32명(31명)의 승려를 파탈(僧籍 박탈)시켰다. 이 기간 동안에 걸쳐 18명(17명)의 승려를 구속하고 32명(31명)의 승려를 파탈(僧籍 박탈)시켰다. 이 기간 동안에 걸쳐 18명(17명)의 승려를 구속하고 32명(31명)의 승려를 파탈(僧籍 박탈)시켰다.

佛敎僧侶의 불법행위와 부패정황을 폭로한 이 특종 보도는 11월 13일 자 동아일보 1면과 2면에 걸쳐 실렸다. 이 보도는 1979년 12월 1일부터 1980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걸쳐 18명(17명)의 승려를 구속하고 32명(31명)의 승려를 파탈(僧籍 박탈)시켰다. 이 기간 동안에 걸쳐 18명(17명)의 승려를 구속하고 32명(31명)의 승려를 파탈(僧籍 박탈)시켰다.

佛敎僧侶의 불법행위와 부패정황을 폭로한 이 특종 보도는 11월 13일 자 동아일보 1면과 2면에 걸쳐 실렸다. 이 보도는 1979년 12월 1일부터 1980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걸쳐 18명(17명)의 승려를 구속하고 32명(31명)의 승려를 파탈(僧籍 박탈)시켰다. 이 기간 동안에 걸쳐 18명(17명)의 승려를 구속하고 32명(31명)의 승려를 파탈(僧籍 박탈)시켰다.

佛敎僧侶의 불법행위와 부패정황을 폭로한 이 특종 보도는 11월 13일 자 동아일보 1면과 2면에 걸쳐 실렸다. 이 보도는 1979년 12월 1일부터 1980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걸쳐 18명(17명)의 승려를 구속하고 32명(31명)의 승려를 파탈(僧籍 박탈)시켰다. 이 기간 동안에 걸쳐 18명(17명)의 승려를 구속하고 32명(31명)의 승려를 파탈(僧籍 박탈)시켰다.

佛敎僧侶의 불법행위와 부패정황을 폭로한 이 특종 보도는 11월 13일 자 동아일보 1면과 2면에 걸쳐 실렸다. 이 보도는 1979년 12월 1일부터 1980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걸쳐 18명(17명)의 승려를 구속하고 32명(31명)의 승려를 파탈(僧籍 박탈)시켰다. 이 기간 동안에 걸쳐 18명(17명)의 승려를 구속하고 32명(31명)의 승려를 파탈(僧籍 박탈)시켰다.

佛敎僧侶의 불법행위와 부패정황을 폭로한 이 특종 보도는 11월 13일 자 동아일보 1면과 2면에 걸쳐 실렸다. 이 보도는 1979년 12월 1일부터 1980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걸쳐 18명(17명)의 승려를 구속하고 32명(31명)의 승려를 파탈(僧籍 박탈)시켰다. 이 기간 동안에 걸쳐 18명(17명)의 승려를 구속하고 32명(31명)의 승려를 파탈(僧籍 박탈)시켰다.



승려 부정축재재산 200억원

계엄사 발표 유용액만도 4억6,000만원

18명 구속, 32명 승적 박탈

치부재산 종단에 환수

비리내용

종권 장악위해 파벌 암투

주지 임명 둘러싸고 거액수회

인기연예인과 퇴폐행위

혼자서 백78억원 축재도

불교계 내의 각종 비리와 부정법법행위 등을 수사해온 계엄사는 14일 불교계(대한불교조계종)정화를 위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결과를 발표, 그동안 일부 비리 승려 및 관련 민간인 55명과 참고인 98명 등 총 1백 53명을 연행 또는 소환해 수사를 단행한 끝에 각종 비리에 직접 관련된 승려 10명 일반인 8명 등 18명을 구속, 형사 입건하고 32명은 불교정화중흥회의의 자율정화위에 처리를 위임, 승적 박탈(체탈도첩) 및 종직 사퇴(공권정지)토록 했으며 범죄혐의가 없는 5명은 훈방했다고 발표했다. 계엄사는 또 이번 수사 결과 비리 승려 등이 부정치부 사유화한 각종 재산이 2백억 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4억 6천만원 상당 이상을 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이들 사유재산은 각 종단에 귀속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계엄사는 불교계의 정화를 위해 앞으로 최소한 5년 동안 불교계 주변에 기생하는 깡패 사기 상습배들에 대한 일제소탕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계엄사가 조계사파를 비롯한 개운사파와 증도파 기타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 범위로 하여 연행 수사해온 55명을 내용별로 보면 ▲부정축재 비리자 22명 ▲폭력배 21명 ▲배후 조종 및 브로커 11명 ▲관련 공무원 1명 등이다.

계엄사가 밝힌 이번 수사 중점 사항과 수사 대상 범위는 ▲종권 장악을 위한 파벌간의 암투와 고질화된 분쟁의 실상규명 ▲종단 직책을 이용한 부정축재와 비리행위자의 색출 ▲종단재산 관리와 해외 활동을 둘러싼 사기 행위와 국위 손상자 색출 등이다.

계엄사는 또한 이 같은 불교계 내의 각종 문제점을 파헤쳐 그 개선책을 찾아 시정함으로써 뜻있는 승려가 마음 놓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신행이 돈독한 신도들의 정신적 귀의처를 확고히 하는데 수사의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계엄사는 이번 수사결과 관련 공무원이 78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종단 분규를 둘러싸고 각파 승려들로부터 27회에 걸쳐 5백31만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수사당국이 밝힌 각종 비리유형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종권을 장악하기 위한 파벌간 암투와 폭력행위 = ▲장안사 주지 이모씨는 77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18회에 걸쳐 전국 사찰을 전전하며 승려들을 폭력으로 위협하고 60만원 갈취 ▲보문사 주지 정모는 78년 10월 종단내의 다른 파에게 위협감을 주기 위해 태권도 쿵푸 등 무술을 하는 승려 10여명을 귀합, 주춧돌회를 조직 ▲조계종 총무원장 김모는 지난 4월 현 총무원장 송모에게 사무인계를 거부하는 조계사측 배모를 축출하기 위해 승려 15명을 동원, 폭력을 행사 ▲신흥사 주지 임모는 지난 7월 사찰내 분규에 대한 폭력행사를 위해 강패 8명을 가져중으로 입적 공포분위기 조성.

◇음주와 사음 = ▲보문사 주지 정모는 75년 9월 첩과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도 인기 연예인 모텔 합창단원 다방레지 호스티스 등과 호텔을 전전, 정을 통한 후 5만원에서 수십만원씩 금품을 주어왔고 신병 치료를 구실로 접근해온 부유층 여신도와 계속 정을 통해 오며 아파트 한채를 제공 받음 ▲범어사 재무 최모는 지난 2월 요정 접대부 이모양(30)과 정을 통한 후 이양이 임신하자 매달 25만원씩 생활비를 대주고 아파트 매입금 4백60만원을 제공하면서 불륜관계 유지

◇사찰 주지 임명을 둘러싼 금품수수 = ▲선암사 주지 김모는 지난 2월 전주지 이모



에게 2천만원을 제공, 주지직을 매수 ▲관음사 주지 최모는 말사 주지 임명을 둘러싸고 4회에 걸쳐 1백30만원 수수

◇치부 = ▲부산 대각사 주지 김모는 60년 이후 지금까지 6만여명의 신도로부터 시주금을 기반으로 화쟁교원 대각사 등 모두 6개의 개인 사찰과 불교신문사 투자금 현금 등 1백77억9천8백만원을 축재 ▲도선사 주지 이모는 78년 2월 시주금과 사찰 공금을 유용, 환속 후의 생활대책을 위하여 개인 사찰 건립 부동산 매입 회사설립 요정 경영 현금 등 17억5천5백36만원을 축재 ▲대각사 김모는 경남 창원 소재 신라 고찰 광산사에 소장돼 있던 문화재 아미타불상을 사유화 하기 위해 보관

◇공사 부정 = ▲대각사 주지 김모는 78년 5월 태종대에 사명대사상 건립비 명목으로 여신도들로부터 2백만원을 받아 유용 ▲도선사 주지 이모는 지난 3월 서울시청과 결탁, 우이동 하천부지 복개공사 잇권을 얻어 6억 상당의 교통광장 건립 공사중



비리승려 10명 · 민간인 8명 구속

계엄사 불교계 정화 수사 매듭 32명 중흥회의 위임
부정축재 2백억 넘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14일 불교계 정화를 위한 수사를 매듭짓고 18명(승려 10명 · 민간인 8명)을 구속, 32명을 불교정화중흥회의 자율정화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하는 한편 혐의가 없는 5명을 훈방 했다고 발표했다. 수사당국은 그동안 비리 승려 및 민간인 55명과 참고인 98명 등 1백53명을 연행 또는 조사한 결과 부정축재자 22명, 폭력배 21명, 배후 조종 및 브로커 11명, 관련 공무원 1명 등으로 분류되었다고 밝혔다.

비리 승려들이 부정 축재한 재산은 모두 2백억6천만원에 이르고 유용액수는 4억6천여 만원으로 밝혀졌다. 수사당국은 수사의 중점을 종권 장악을 위한 파벌간의 암투와 고질화된 분쟁의 실상을 밝혀내고 종단 실권과 사찰점거를 둘러싼 폭력행위와 그 가담자, 종단 직책을 악용한 부정축재와 비리행위자, 종단재산관리와 해외활동을 둘러싼 사기행위 및 국위를 손상시킨 자 등을 가려내는 한편 불교계 내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파헤쳐 그 개선책을 찾아 시정하는데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조계사를 비롯, 개운사파, 증도파,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했었다. 수사당국은 불교계가 부정부패된 원인은 ▲승려의 질적 저하 및 전근대적인 종단 운영 ▲승려에 대한 복지대책이 없는 점 ▲사찰 재산 및 수입금품 관리가 비합리적인 점 등이 수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시정방향은 ▲분규에 개입된 인물을 제거하고 파벌을 일소, 합리적인 종단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관계법을 보완 정비해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부정 축재한 승려의 사유재산 등 부동산은 종단에 귀속시키고 동산은 정리해 불교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불교우의회, 룸비니개발위원회 등 사이버 신도단체 및 불교외곽단체를 정비

하며 ▲불교 주변에 기생하는 깡패, 사기범 등을 앞으로 5년간 계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라고 수사당국은 강조했다. 수사당국은 “모든 승직자들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교계 정화와 중흥에 적극 참여하고 신도들도 책임을 느껴 교계 중흥과 재건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인 비리사례

▲장안사 주지 이모씨는 77년 10월부터 80년 3월까지 전국 사찰을 돌며 승려들을 폭력으로 위협, 60만원을 갈취 ▲신흥사 주지 임모씨는 사찰 분규에 대한 폭력행사를 목적으로 깡패 8명을 가짜 스님으로 입적시키고 공포분위기를 조성 ▲보문사 주지 정모씨는 첩과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인기 연예인, 모델, 합창단원, 다방 레지, 접대부 등과 호텔 등지에서 정을 통한 뒤 5만~수십만원씩 금품을 주어왔고 여신도를 농락 ▲범어사 재무 최모씨는 요정 접대부와 정을 통해 임신하자 월25만원의 생활비와 아파트 매입자금 4백60만원을 주고 불륜관계를 계속 ▲도선자 주지 이모씨는 환속 후의 생활 대책을 위해 시주금 및 사찰공금을 빼내 부동산 매입, 요정 경영 등으로 17억5천여만원을 축재했고 ▲부산 대각사 주지 김모씨는 6만여명의 신도로부터 모금한 시주금을 기반으로 개인 사찰, 불교신문사 등 1백77억8천8백만원을 축재했다는 것이다.

佛敎界淨化 18명拘束·32명僧籍박탈

戒嚴司 발표 蓄財한 200億원 宗團에 還元조치

搜查 5年 더 계속

不動産은 宗團에 動産은 金庫로

비위,事例

신興寺주지, 강패 入籍시켜 부하로
大覺寺주지 시주금 百77億원 착복
住持자리 2千萬원에 사고 팔기도

【서울 14일 특파원 특보】 불교계 정화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5년간 계속된 불교계 정화 작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18명 구속과 32명 사찰출가 처분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18명 중 12명은 불법 축적한 200억 원의 불법 재산을 불교계 정화 작업에 환원할 예정이다.

불교계 정화 작업은 1975년 12월 25일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왔으며, 그동안 18명 구속과 32명 사찰출가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18명 중 12명은 불법 축적한 200억 원의 불법 재산을 불교계 정화 작업에 환원할 예정이다.

신興寺주지인 강패(강기)는 부하로 入籍시켜 부하로 대覺寺주지인 시주금 百77億원 착복住持자리 2千萬원에 사고 팔기도

신興寺주지인 강패(강기)는 부하로 入籍시켜 부하로 대覺寺주지인 시주금 百77億원 착복住持자리 2千萬원에 사고 팔기도

불교계 정화 작업은 1975년 12월 25일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왔으며, 그동안 18명 구속과 32명 사찰출가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18명 중 12명은 불법 축적한 200억 원의 불법 재산을 불교계 정화 작업에 환원할 예정이다.

불교계 정화 작업은 1975년 12월 25일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왔으며, 그동안 18명 구속과 32명 사찰출가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18명 중 12명은 불법 축적한 200억 원의 불법 재산을 불교계 정화 작업에 환원할 예정이다.

【서울 14일 특파원 특보】 불교계 정화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5년간 계속된 불교계 정화 작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18명 구속과 32명 사찰출가 처분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18명 중 12명은 불법 축적한 200억 원의 불법 재산을 불교계 정화 작업에 환원할 예정이다.

불교계 정화 작업은 1975년 12월 25일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왔으며, 그동안 18명 구속과 32명 사찰출가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18명 중 12명은 불법 축적한 200억 원의 불법 재산을 불교계 정화 작업에 환원할 예정이다.

신興寺주지인 강패(강기)는 부하로 入籍시켜 부하로 대覺寺주지인 시주금 百77億원 착복住持자리 2千萬원에 사고 팔기도

신興寺주지인 강패(강기)는 부하로 入籍시켜 부하로 대覺寺주지인 시주금 百77億원 착복住持자리 2千萬원에 사고 팔기도

불교계 정화 작업은 1975년 12월 25일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왔으며, 그동안 18명 구속과 32명 사찰출가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18명 중 12명은 불법 축적한 200억 원의 불법 재산을 불교계 정화 작업에 환원할 예정이다.

불교계 정화 작업은 1975년 12월 25일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왔으며, 그동안 18명 구속과 32명 사찰출가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18명 중 12명은 불법 축적한 200억 원의 불법 재산을 불교계 정화 작업에 환원할 예정이다.

불교계 정화 18명 구속·32명 승적 박탈 수사 5년 더 계속

계엄사 수사당국은 지난달 27일부터 불교계 정화 작업에 나서 그 동안 연행 수사한 비리승려 및 관련 민간인 55명, 참고인 98명 등 1백53명 가운데 승려 10명·일반인 8명 등 18명을 구속하고 32명을 불교정화중흥회의 자율 정화처리에 맡겨 승적박탈 또는 종적을 사퇴토록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당국은 또 이들이 축재한 2백억6천여만원 상당의 사유재산은 모두 종단에 돌려줬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이 연행한 관련자는 불교 조계종 조계사파를 비롯, 개운사파·중도파와 이들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등으로 내용별로는 부정축재 22명, 폭력배 21명, 배후조종자 11명, 관련 공무원 1명, 참고인 98명 등이다. 계엄사가 밝힌 이들의 비리사례는 다음과 같다.

◇종권장악을 위한 파벌암투·폭력에 의한 조계종 총무원 및 사찰강점 =▲77년 10월부터 83년 3월까지 장안사 주지 이모는 전국 사찰을 돌아다니며 승려들을 폭력으로 위협해 60만원을 갈취했다. ▲보문사 주지 정모는 78년 10월 종단내 다른 파에 위압감을 주기 위해 태권도 「쿵후」 등 무술 승려 10여명을 규합, 「주추돌」회를 조직 ▲조계종 총무부장 김모는 현 총무원장 송모에게 사무 인계를 거부하는 전 총무원장 배모를 축출키 위해 지난 4월 승려15명을 동원, 폭력행사. ▲신흥사 주지 임모는 사찰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지난 7월 깡패 8명을 가짜 승려로 입적시켜 공포 분위기 조성.

◇음주·음란 등 퇴폐행위 =▲보문사 주지 정모는 첩과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지난 9월 인기연예인 「모델」 합창단원 다방 「레지」 「호스티스」 접대부 등과 「호텔」을 전전하며 정을 통하고 5만원~수십 만원의 금품을 주어왔고 신병 치료를 구실로 접근해오는 여신도와 계속 정을 통하고 그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제공받음 ▲부름 출판사 대표 이모는 79년 4월 퇴폐 서적들을 저술 출판 저속한 인기에 야합, 국민의 건전한 종교적 감정을 마비시키고 한모양(25)과 정을 통한 뒤 약혼하고 전셋집을 얻어 동거하면서 37세의 김모 여인과도 관계를 맺었다. ▲범어사 재무 최모는 지난 2월 요정 접대부 이모(30)와 정을 통하고 임신하자 월 25만원의 생활비와 「아파트」 매입금 4백60만원을 주고



불륜관계를 계속해 왔다.

◇사찰주지 임명을 둘러싼 금품수수 =▲선암사 주지 김모는 지난2월 전 주지 이모에게 2천만원을 주고 주지직을 매수. ▲관음사 주지 최모는 지난 4월 말사 주지 임명을 둘러싸고 1백30만원을 받았음.

◇치부·사찰재산착복·유용 =▲부산 대각사 주지 김모는 60년부터 지금까지 6만여 명의 신도로부터 모금한 시주금을 기반으로 대각사 외에 4개의 개인사찰·불교신문사 투자금·현금 등 1백77억9천8백만원을 축재 ▲도선사 주지 이모는 78년 2월 시주금과 사찰공금을 유용, 개인사찰 건립·회사 설립·부동산 매입·요정 경영 및 현금 등으로 17억5천5백36만원 축재 ▲대흥사 주지 정모는 79년 4월 2백만원의 공금을 유용, 개인농장을 구입하고 8백만원 상당의 개인사찰건립 ▲대각사 주지 김모는 경남 창원에 있는 신라 고찰 광산사 소장 문화재 아미타불상을 사유화 ▲「룸비니」 개발위 부회장 김모는 78년 4월 성지순례명목으로 승려·신도 26명으로부터 4천45만원의 성금을 받아 착복 ▲세계불교도우의회 안모는 국제「세미나」참가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지난 2월 승려·신도 37명으로부터 1천4백95만원 착복.

◇사찰공사를 둘러싼 부정 =▲부산 대각사 주지 김모는 78년 5월 부산 태종대에 사명 대사상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여신도들로부터 2백만원을 받아 유용 ▲도선사주지 이모는 지난 3월 서울시청과 결탁, 우이동 하천부지 복개공사이권을 얻어 6억원 상당의 교통 광장 건립중.

◇관련 공무원 =▲한모는 78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종단 분규를 둘러싸고 각파 승려들로 부터 27회에 걸쳐 5백31만원 수수.

◇기타 =▲전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서모는 종단 분규를 둘러싸고 우모로부터 5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송모 일파 제거를 위해 관계기관에 허위진정서 제출 ▲78년부터 지

금까지 개운사측과 조계사측 분규에 소송비용으로 1억여원을 탕진.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밝힌 계엄사는 앞으로 부정 축재한 승려의 사유 재산 중 부동산은 종단에 돌려주고 동산은 불교진흥기금으로 만드는 한편 불교 주변에 기생하는 깡패·사기 상습자 등을 앞으로 최소 5년간 계속 소탕,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계엄사는 또 이번 수사가 일부 승려와 신도의 비리·부패 때문에 부득이 강권을 발동, 진행됐다고 말하고 본분과 사명을 지키는 모든 승직자들은 이를 계기로 불교계 정화와 중흥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非理승려 不正蓄財 200億

戒嚴司令 18명 구속·32명 僧籍박탈

佛教淨化작업 5년간 계속

數萬僧徒 사이비信徒 단체도 整備

【서울 14일 특파원 보도】 불교계 정화작업이 5년간 계속되면서 승려 3만 2천여 명이 불교계 정화작업에 참가했으며, 사이비 신자 단체인 대한불교정화위원회도 정비되고 있다.

승적자는 淨化운동 적극參與를 戒嚴司令部

【서울 14일 특파원 보도】 불교계 정화작업이 5년간 계속되면서 승려 3만 2천여 명이 불교계 정화작업에 참가했으며, 사이비 신자 단체인 대한불교정화위원회도 정비되고 있다.

非理事例 反對派제거 폭력승려組織 人氣연예인등과 巨額 뒷거래 主持 임명싸고

【서울 14일 특파원 보도】 불교계 정화작업이 5년간 계속되면서 승려 3만 2천여 명이 불교계 정화작업에 참가했으며, 사이비 신자 단체인 대한불교정화위원회도 정비되고 있다.

불교계 정화작업이 5년간 계속되면서 승려 3만 2천여 명이 불교계 정화작업에 참가했으며, 사이비 신자 단체인 대한불교정화위원회도 정비되고 있다.

불교계 정화작업이 5년간 계속되면서 승려 3만 2천여 명이 불교계 정화작업에 참가했으며, 사이비 신자 단체인 대한불교정화위원회도 정비되고 있다.

비리승려 부정축재 200억

계엄수사 당국은 14일 불교계 정화를 위해 지난달 27일 연행한 비리 승려와 관련 민간인 등 1백53명에 대한 수사를 매듭, 10명의 승려와 일반인 등 18명을 구속하고 32명은 불교정화중흥회의의 자율정화위에 승적을 박탈하거나 종직을 사퇴(공권정지) 시키도록 위임하는 한편 5명을 훈방했다고 발표했다. 계엄당국은 또 부정 축재한 승려의 사유 재산 중 부동산은 종단에 귀속시키고 동산은 정리해 불교진흥기금화하며 불교우의회, 룸비니개발위원회 등 사이버신도단체 등 불교계의 부조리 온상이 돼온 불교외곽단체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직자는 정화운동 적극 참여를” 계엄사 당부

계엄 수사당국은 연행된 1백53명은 ▲부정축재자 22명 ▲폭력배 21명 ▲배후조정 및 브로커 11명 ▲관련 공무원 1명 ▲참고인 98명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발표는 또 “불교 주변에 기생하는 깡패와 검거되지 않은 상습 사기배를 소탕하고 앞으로 적어도 5년간 단속을 계속, 발본색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정의사회구현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종교계의 정화와 윤리기반조성에 기여하고 불교 본연의 임무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자율정화의 계기를 조성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화작업을 추진한다는 당국의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다른 종교계 및 종단에 경각심을 고취, 자율정화를 강력히 촉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발표에 의하면 이 같은 부정에 의한 축재 총액은 모두 2백억 6천만원 상당에 이르며 유용액은 4억6천여만원 이라는 것.

발표는 이 같은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일부 소외된 저질 또는 낙오자들이 사찰을 도피처로 삼아 승려를 지망했고 종단내 주요 직책이 파벌에 속한 문중 출신 만으로 오랫동안 독점 되는 등 정실 인사를 해온 점과 승려들에 대한 의료 혜택이나 연금 등 복지대책이 전혀 없는 점, 사찰 재산의 관리가 비합리적인 점 등 때문 이었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발표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비리가 일부 승려에 집중 돼 있었다”고 밝히고 “대다수 승려들은 전통 종교의 수호자 답게 수행과 가람 수호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고”고 지적했다.

계엄사는 이번 수사가 일부 승려와 신도의 비리, 부패 때문에 부득이 강권을 발동, 진행 됐다고 말하고 “수사결과 발표로 불교계의 전 승려가 비리에 오염 된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본분과 사명을 지키는 모든 승직자들은 이를 계기로 불교계 정화와 증흥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비리사례

- 반대파 제거 폭력승려 조직
- 인기 연예인 등과 퇴폐행위
- 주지 임명 싸고 거액 뒷거래

계엄수사당국이 발표한 이들 수사대상자의 비리 사례를 보면 ▲보문사 주지 정모는 78년 10월 종단내의 다른 파에 위압감을 주기 위해 태권도와 쿡후 등 소위 무술을 하는 승려 10여명을 모아 “주춧돌회”를 조직했고 ▲장안사 주지 이모는 지난 77년 10월~지난 3월까지 18회에 걸쳐 곳곳의 사찰을 전전하면서 승려들을 폭력으로 위협하고 60만원을 갈취했으며 ▲조계종 총무부장 김모는 지난 4월 현 총무원장 송모에게 사무인계를 거부하는 조계사측 전 총무원장 배모를 축출키 위해 15명의 승려를 동원 폭력을 행사했다.

또 ▲신흥사 주지 임모는 지난 7월 사찰 분규에 폭력을 행사키 위해 깡패 8명을 가승으로 입적시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보문사 주지 정모는 첩과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인기 연예인과 모델, 합창단원, 호스티스, 접대부 등과 호텔을 전전 정을 통하고 5만원에서 수십만원씩 금품을 주었으며 신병을 구실로 유혹, 접근해 오는 여신도로 부터 아파트 한채를 받았다는 것.

또 ▲부름 출판사 대표 이모는 지난해 4월 퇴폐적인 서적의 저술 출판을 통해 국민의 건전한 윤리감과 경건한 종교적 신념을 마비시키거나 오도시키고 한모양(25)과 정을 통하고 약혼한 후 전세집에서 동거하면서 또 다른 김모 여인(37)과 관계를 가졌으며 ▲범어사 재무 최모는 요정 접대부 이모(30)와 정을 통해 임신하자 매달 25만원의 생활비를 대주고 아파트 매입금 4백60만원을 제공, 관계를 계속했다는 것

▲부정으로 조계종에서 승적이 박탈된 후 부산 대각사 주지 김모는 60년부터 지금까지 6만여명의 신도로부터 받은 시주금을 기반으로 화정 교단과 4개의 사찰, 불교신문사 투자금 등 1백77억9천8백만원 상당을 축재했으며 신라시대의 오래된 사찰인 광신사에 소장돼 있던 문화재 아미타불상을 사유로 하기 위해 보관했고 ▲선암사 주지 김모는 지난 2월 전주 이모에게 2천만원을 주고 주지직을 사들였고 ▲관음사 주지 최모는 지난 4월 말사 주지 임명을 둘러싸고 4회에 걸쳐 1백30만원을 받았다.

▲도선사 주지 이모는 78년 2월 시주금과 사찰공금을 유용, 환속한 후의 생활대책을 위해 개인 사찰과 회사를 건립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고 요정까지 경영하는 등 17억5천 5백36만원 상당을 축재했고, 지난 3월 서울시와 결탁, 서울 도봉구 우이동 하천부지 복개공사 이권을 얻어 6억원 상당의 교통광장을 공사하고 있으며 ▲대흥사 주지 정모는 지난해 4월 공금을 유용, 개인 농장을 구입, 묘목을 재배하는 한편 농장 안에 8백만원 상당의 개인 사찰을 건립했다.

▲룸비니개발위 부회장 김모는 78년 4월 성지순례를 핑계로 승려와 신도 26명으로 부터 4천45만원을 착복했고 ▲세계불교도우의회 안모는 지난 2월 국제세미나 참가를 앞선 해 주겠다고면서 승려와 신도 37명으로 부터 1천4백95만원을 받아 착복했다

이밖에도 대각사 주지는 태종대에 사명대사상 건립비라며 신도들로 부터 2백만원을 받아 유용했으며 ▲관련 공무원은 78년 11월 부터 지난 10월 까지 사이 종단 분규를 둘러싸고 각파의 승려들로부터 27회에 걸쳐 5백31만원을 받았다는 것.

종교 참모습 회복 인간힘-불교계 정화

고요와 무색의 미동만이 감도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의 불교 조계종 총무원

축재·폭력·엽색 행각 등 불교계 비리에 가해졌던 사회적 차원의 대수술을 마무리하고 새싹을 받아시키려는 조용한 움직임이 태동 중인 이 곳은 당국의 불교비리수사가 시작될 때 송월주 총무원장 등 종단 간부들이 연행되어 간 현장이기도 하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의 사령탑인 총무원은 이제 것처럼 봄비던 스님들의 발걸음도 뜬한 채 시급한 종단 정상화 작업을 서둘러 있다. 빠르면 새해 1월말까지는 종헌개정-종회의원선거-총무원 집행부 선출 등의 모든 종단 정상화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세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60여명의 승려가 비리와 관련, 계엄당국의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10월 27일부터였다.

비리 관련 및 참고인 등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승려는 이서용(전 종정) 윤월하(전 총무원장) 이범행(단학원장) 최월산(불국사 주지) 김서운 스님(동화사 주지)등 원로급을 포함한 김혜정·배송원 전 총무원장, 오연원(직지사 주지) 임원광(신흥사 주지) 서의현(은해사 주지) 김혜범(조계사 주지) 이도우(고운사 주지) 박명선(화엄사 주지) 장이두(법주사 주지) 이해성(서울 도선사 주지) 유월탄(전등사 주지) 최원철(낙산사 주지) 최향운 승려(범어사)등.

◇사회가 종교심판

이밖에 한 「베스트셀러」의 저자로 이름을 떨친(?)정다운 승려 형제(본명 이등룡·이향봉)를 비롯, 정정수(강화 보문사 주지) 오법달(전 총무원 감찰부장) 이현신 승려(전 총무원 사회부장)등이 역시 비리와 관련, 조사를 받았다.

계엄당국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11월14일)은 무적승이면서도 어엿이 불교신문 「대한 불교」 사장직을 맡고 있던 김경우(부산 대각사 주지), 이해성 승려가 각각 1백77억원과 17억원씩을 축재했다는 것 등이었다.

특히 신도는 물론 일반인들을 놀라게 한 것은 정모·이모 승려 등의 난잡한 엽색 행각.



이밖에 깡패를 승려로 입적시켜 행동대원으로 삼았다는 입모 승려의 비행과 주지 자리를 2천만원씩에 사고 팔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당국은 비리 승려 및 관련 민간인·참고인 등 총 1백53명 가운데 승직에 있는 40여명은 종단에 이첩, 징계토록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혐의로 석방했다.

또 모든 축재재산은 종단에 환수토록 함으로써 일단 사회적 차원의 불교정화를 마무리 지었다.

와해된 총무원 기능과 정화작업의 자체 마무리를 위해 발족한 조계종 정화 증흥회의는 당국으로부터 이첩된 42명의 승려들에 대해 ▲치탈도첩(13명) ▲제적(10명) ▲공권정지(17명) ▲견책(2명)등 종단적 차원의 자체 처벌을 내렸다.

치탈도첩으로 종단의 징계를 받은 승려는 이혜성 임원광 정정수 이등룡 등이고 유일탄 최향운 이자신 승려 등이 제적됐다.

◇축재재산 종단에

정화와 관련한 종교적 차원의 징계는 치탈도첩 승려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승려들을 1년 예정으로 서울근교 사찰에서 합숙시켜 「참회용맹정진」케 함으로써 일단락 지었다.

불교정화는 불교 자체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거물급」들의 비리를 수술한 것.

다행히도 정화과정에서 종단 내분 당사자의 한사람으로 크게 주목받던 송월주 총무원장과 연행됐던 많은 원로급 스님들이 모두 「무혐의」로 밝혀짐으로써 「이미지」추락은 최악을 면했다.

비리승려 제거라는 「폭풍의 언덕」을 넘어선 조계종은 박탄성 정화증흥회의 상임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과도 집행부가 중심이 돼 종단내의 여망에 따른 종단 정상화를 서둘고 있지만 정화의 상흔이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 같다.

불교계 정화는 잡초의 뿌리를 뽑기보다는 낫으로 줄기만을 베어낸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보다 내면적인 「종교차원의 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이판승과 사판승을 두는 단·교 양종의 이원체제를 시급히 확립해야 할 것 같다.

참신을 주장하는 단승들의 행정적 무능이 사판에 의해 보완되고 고질적인 종권 내분

의 원인이 되는 독선·문중 파벌의식 등도 하루속히 불식되어야한다.

◇새로운 진로모색

조계종을 중심한 각 불교 종단은 이번 불교계 정화를 계기로 새로운 진로를 찾으려는 활발한 움직임도 있다.

비구 대처승 간의 대립 해소와 난립한 종파의 통합 등도 조심스럽게 모색되고 있다.

종교계 정화의 표본이 된 이번 불교 조계종 정화는 많은 교훈을 남겼다. 6백만 신도와 1만3천여 명의 승려라는 교세를 자랑해 온 조계종은 끝내 종교가 갖는 일반적인 신비성에 크게 먹칠을 하고 말았다.

특히 비극적인 사실은 인간과 사회정화의 향도적 역할을 담당해야할 종교가 오히려 반대로 사회로부터「정화」를 요구받았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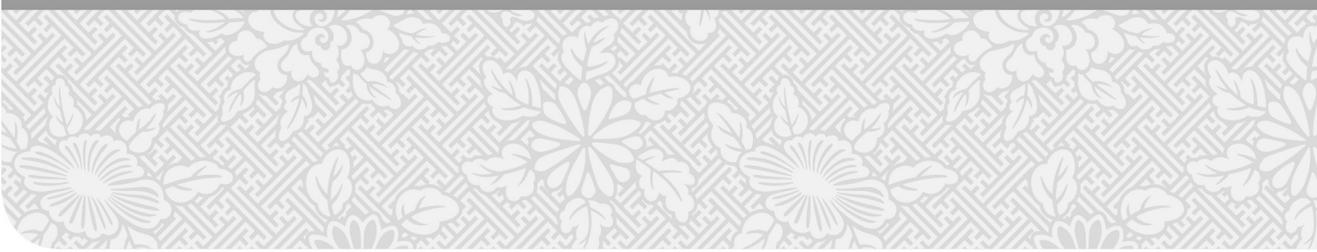
종교가 사회제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인도하는데 있다고 볼 때 정화의 질타를 당했던 불교계 비리제거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하겠다.



부록 3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본 내용은 10·27법난과 우리 위원회
설립 배경에 대한 상세 설명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백서 부록에 수록했습니다.



목 차

제1장 개요

- 제1절 사건 개요
- 제2절 조사 목적과 방향

제2장 조계중 통합종단 출범과 신군부와의 갈등

- 제1절 조계중 분규에 대한 문공부·계엄위원회의 인식
- 제2절 조계중 통합 종단 출범
- 제3절 월주 총무원장 대표 등록 지연
- 제4절 불교계 정화를 둘러싼 국보위와의 갈등
- 제5절 내부갈등과 진정 및 투서의 양상
- 제6절 소결

제3장 국보위의 수사 지시와 합수단의 수사 실행

- 제1절 국보위와 합동수사본부의 지휘 체계
- 제2절 국보위의 특수분야 정화 계획
- 제3절 국보위의 수사 지시 및 합수단의 수사
- 제4절 합수단의 수사 실행
- 제5절 실무대책반의 활동
- 제6절 소결

제4장 정화중흥회의 발족 및 활동

- 제1절 조계종단의 10·27법난 초기 수습
-

- 제2절 중앙중회 해산과 정화중흥회의 발족
- 제3절 정화중흥회의 정화분과위원회 활동
- 제4절 정화중흥회의 대표단의 전두환 대통령 면담
- 제5절 소결

제5장 10·30 전국 사찰 일제수색

- 제1절 전국 사찰 일제수색의 경위
- 제2절 전국 사찰 일제수색의 실행
- 제3절 전국 사찰 일제수색의 결과
- 제4절 소결

제6장 합수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 제1절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언론의 보도
- 제2절 과장·왜곡된 수사결과 발표
- 제3절 소결

제7장 10·27법난의 피해실태

- 제1절 수사과정에서의 피해
- 제2절 피해 사례

제8장 결론 및 의견

- 제1절 결론
- 제2절 의견 및 권고

【부록】

관련 문서 견본

개요

1 사건 개요

1. 조사 범주와 대상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로 함)는 <신군부 집권과정 - 10·27법난 사건>(아래 ‘10·27법난 사건’으로 함)을 진상규명 제5호로 선정하여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 조사팀은 10·27법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법난’의 개념정의를 통해 조사범주를 확정하였다.

법난(法難)의 사전적 의미는 “교법을 널리 펴므로 해서 받는 박해”라고 되어 있는데¹⁾ 불교계에서는 ‘불교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개입을 받았을 때’를 통상 법난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불교 역사상 법난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10·27법난 사건’을 조사범주와 대상으로 했다.

우리 위원회가 조사대상으로 삼은 ‘10·27법난’은 1980. 당시 신군부측인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아래 ‘합수본부’, ‘합수단’으로 함. 합수본부장 : 노태우 보안사령관, 합수단장 : 김충우 보안사 대공처장)에서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45계획’²⁾(불교계 정화수사계획)을 수립하여 1980. 10. 27. 불교계 최대종파인 대한불교조계종(아래 ‘조계종’으로 함)의 스님 및 불교 관련자 153명을 강제로 연행 수사하고, 이어서 3일 뒤인 10. 30.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군·경 합동병력 32,076명을

1) 민중서림 편집국 편, 『옛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2005. 1. 10.), 979쪽.

2) ‘불교계 정화수사계획’을 ‘45계획’으로 명명한 것은 조계종의 제1교구본사이자 총무원이 소재해 있는 조계사의 주소지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인데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투입,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 5,731곳을 대상으로 일제히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27법난 사건」에 대해 1년 2개월 동안 사건의 배경과 계획 수립, 실행과정 등 전반적인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하여 그 조사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 사건 관련 주요 일지

- 1960년대 후반 ~ 1970년대 후반 조계종단은 정통성과 주지직을 둘러싼 다툼이 빈번했음
 - 두 개의 총무원과 두 개의 종회로 나뉘어 17차례 재판 되풀이함
 - 1977부터 시작된 총무원장 중심제의 개운사측과 종정 중심제의 조계사측간 주도권 다툼³⁾
- 1980. 2. 29. 제17차 계엄위원회(위원장 : 황영시 육군참모차장)에서 불교계에 관한 토의 진행
 - 전국 사찰에 불순분자 은신 가능, 분규에 따른 불교재산 처분 방지 대책 필요 주장(계엄사 기획관리실장 김을권 준장)⁴⁾
- 1980. 3. 30. 조계종 양대 계파간 총선거를 치루기로 합의
- 1980. 4. 17. 중앙종회 의원 총선거 실시
- 1980. 4. 26~27. 제6대 중앙종회 의장에 도견 스님, 총무원장에 월주 스님 선출
- 1980. 5. 9. 문공부에 조계종 대표자 등록 신청
- 1980. 5.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계엄포고령 제10호)
- 1980. 5. 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아래 ‘국보위’로 함) 설치
- 1980. 6. ~10. 불교계 갈등과 관련 진정 및 투서 다수 접수(청와대, 국보위, 계엄사, 보안사 등)
- 1980. 7. 21. 조계종 총무원, 국보위를 지지하고 나선 ‘전한국불교회’와 ‘대한불교총연합회’ 탈퇴

3)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한국 현대 불교운동사 III』, 도서출판 행원(1999. 10. 1.), 16쪽.

4) 육군본부, 「계엄사 - 10.26사태와 국난 극복」(1982. 3.) 중 ‘계엄위원회 17차 회의록’(1980. 2. 29.).

- 1980. 7. 24. 월주 총무원장, 기자회견을 통해 총무원장 등록을 거부하는 문공부의 조치와 관계없이 총무원장 책무 수행 천명
- 1980. 8. 22. 문공부, 종교계 지도자 초청 자율정화 방안 제시 및 전두환 장군 지지 성명 발표 종용(월주 총무원장 거부)
- 1980. 9. 1. 전두환, 대통령 취임
 - 이학봉 합수단장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동(후임 단장 김충우 부임)
- 1980. 9. 17. 조계종, 불교관계법 개정시안 문공부에 제출⁵⁾
- 1980. 10. 27. 합수단, '45계획(불교계 정화수사계획)' 수사 착수(스님 등 153명 연행)
- 1980. 10. 30. 계엄사, 전국 사찰 및 암자 일제수색 실시(전국 5,731곳)
- 1980. 11. 3. 조계종 임시 중앙총회 개최 및 해산
- 1980. 11. 5~6. '정화중흥회의' 발족(의장 영암 스님, 상임위원장 탄성 스님)
- 1980. 11. 14. 합수단, '45계획' 수사결과 발표(형사입건 17명, 징계회부 32명 등)
- 1980. 11. 21. ~ 1981. 1. 20. 흥국사 집단 '집단 연금'⁶⁾(스님 24명)
- 1980. 12. 11. 전두환 대통령, 조계종 승려 대표 8명 접견(종단 정화 조기 종결 언급)
- 1986. 9. 7. 해인사 전국승려대회 개최(법난 책임자 규명 및 해명 촉구)
- 1988. 12. 30. 강영훈 국무총리, 10·27법난 관련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
- 1989. 1. 30. 국방부, 10·27법난 경위 설명회 개최(삼각지 육군회관)
- 1989. 2. 22. '5공비리조사특위', 10·27법난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⁷⁾
- 2005. 8. 18. 조계종, 불교계 차원의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발족

5) 조계종 총무원 차원에서 사찰의 자주적인 운영을 전제로 불교재산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도시공원법, 사찰공원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등 관련 5개 법안 개정시안을 국보위와 문공부에 제출하였다.

6) '합수본부' 공식 문서에서는 '순화교육장(흥국선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우리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금'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7) 국회 제5공화국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 이기택 통일민주당 의원, '5공비리조사특위')에서는 1989. 3. 22. 전체회의에서 10·27법난 조사를 연기하였다. 당시 연기는 10·27법난진상규명추진위원회(대표 월주 스님)로부터 생중계 방송 등의 사유로 연기 요청되었다는 것이었는데 그 후 사실상 취소되었다.



2 조사 목적과 방향

10·27법난은 1980. 10. 27. 계엄사 합수단이 주축이 되어 불교계를 정화한다는 명분으로 특정한 종단(조계종)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국가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건이다.⁸⁾

사건 발생 이후 불교계 안팎에서는 즉시 ‘종교계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규정하고 ‘10·27법난’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불교계는 그 후 지속적으로 10·27법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정부를 규탄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1988. 12. 30. 강영훈 국무총리가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고,⁹⁾ 이어 1989. 1. 30. 국방부에서 ‘불교계 수사경위’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교계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답변했지만 불교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법난이 어떤 배경에서 기획되고 누구에 의해 구체적인 수사계획으로 발전되었는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10·27법난 발생시 보안사령관 겸 합수본부장으로 수사의 책임자였던 노태우씨가 1989년 당시 대통령으로 집권하던 중이었으므로 정부측 발표에는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¹⁰⁾ 1989년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5공비리조사특위’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청문회 개최를 추진했다. 그러나 청문회는 준비 미흡과 조사과정 생중계 찬반 논란 등 제반 여건 미성숙으로 무산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군 내부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10·27법난의 배경과 실행 경위 등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를 다지고 사랑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8) 합수단이 불교계 전체를 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수사를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불교계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위주로 이루어졌다. 대한불교천태종(구인사)의 경우, ‘1980. 11. 3. 충북지역 합수단에서 별도로 수사하여 스님 1명을 ‘불사 관련 금품수수 및 부정축재 혐의’로 사법 처리하였으나 “당시 종정의 종권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으므로 법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있었다. 우리 위원회, 정○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면담조사(2007. 4. 26.).

9) 「10·27 불교계 수사사건에 관한 국무총리 담화(1988. 12. 30.).

10) 유응오, 『10·27법난의 진실』, 화남(2005. 10. 27.), 27쪽.

우리 위원회는 '10·27법난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몇 가지 조사 방향과 기준을 마련했다.

첫째, 위원회는 10·27법난의 구체적인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10·27법난을 일으킨 '45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시 법난 행위의 목적과 성격을 밝히고자 했다.

둘째,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합수단(보안사, 헌병, 경찰), 계엄사(육군본부) 등 관계기관이 당시에 생산한 문서 등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기로 했다.

셋째, 당시 사건과 관련된 주요 참고인들을 면담하고, 증언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자료가 있는 부분도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을 면담조사하였다.

넷째, 법난 발생 이후 불교계 자체의 중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물론 법난 발생 직후의 중단 운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구성된 정화중흥회의 관련 부분 등에서 부당하게 공권력이 작용되었다고 보이는 부분은 조사 대상으로 했다.

다섯째, 사건 관련 피해자들의 개인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사건의 전모는 밝히되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신상 정보 등을 철저히 보호했다.

위와 같은 기준의 조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10·27법난의 추진 기본계획인 '45계획'을 합수단에서 수립, 시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① 신군부가 왜 불교계를 대상으로 정화에 나섰는지 계획입안 배경과 주체 ② 연행 수사 피해자 규모 및 구타 고문 실태 ③ 1980. 10. 30. 전국 사찰 일제수색 실태 ④ 수사결과 발표 및 언론보도 과장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위해 과거 보안사 생산 자료를 포함하여 국가기록원, 검찰, 육군본부, 조계종(진상규명추진위원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0·27법난 관련 자료를 가



능한 모두 수집한다는 목표를 두고 조사활동을 추진하여 기간 중 총 142건 6,400여 쪽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① 기무사령부 : 99건 1,400여쪽

- 불교계 정화 수사계획('45계획)
- 도피자 은신 예상처 수색 지시(1980. 10. 28, 합수본부)
- 불교계 정화 수사결과보고(합수본부)
- 수사기록, 진정서, 투서 등

② 국가기록원 : 27건 367쪽

- 국보위 등에 불교계와 관련한 진정을 제기했으나, 허위사실로 판명되어 무고로 처벌받은 윤○ 스님, 대○ 스님, 김○○, 김○○의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사본

③ 육군본부 기록정보관리단 입수자료 : 3건 1,563쪽

- 합수단 수사2국(헌병) 수사기록

④ 언론사 입수자료 : 1건 799쪽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45계획 - 10·27법난의 진실>(제62회, 2003. 2. 16. 방영, 연출 : 채환규) 방송자료 및 취재 녹취록(수사관계자 10여명, 불교계 스님 및 인사 30여명의 증언내용 수록)

⑤ 『주간대한불교』 등 기타 : 12건 2,300여쪽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0·27법난과 관련된 참고인을 최대한 선정하여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면담조사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참고인의 체험기억을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한 뒤에 세부적인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일부 참고인은 사건 당시 입장에 따라 면담조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장 명의의 개인 서신을 수차례 발송하여

협조를 이끌어낸 경우도 있었다. 또한 신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 면담조사 주요 현황(당시 직책)

- '45계획 입안, 실행 관련 참고인 : 김충우(합수단장 겸 보안사 대공처장), 김판길(합수단 수사1국장 겸 보안사 수사과장), 장○○(합수단 수사2국장, 경찰) 등
- 실무대책반 구성 운용 관련 참고인 : 전창열(법무 중령, 실무대책반장), 양근하(보안사 소령, 계장), 이○○(소령, 군법사), 최○○(소령, 군법사) 등
- 정화중흥회의·수사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용 관련 참고인 다수
- 문공부측 참고인 : 한영수(종무담당관), 정덕용(종무1과장)
- 피해자 : 월주 스님, 혜성 스님, 삼보 스님, 혜운 스님 등 피해자 다수

조계종 통합종단 출범과 신군부와의 갈등

1 조계종 분류에 대한 문공부·계엄위원회의 인식

1. 문공부의 조계종 분류 현황 분석

신군부가 1980. 당시 불교계의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그 대책이 무엇이었던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공보부¹¹⁾(아래 ‘문공부’로 함)의 시각과 건의과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당시 조계종을 관할해 온 주무당국인 문공부가 바라본 조계종의 분류 현황에 대한 인식은 아래와 같다.

1980. 2. 문공부가 작성한 「대한불교조계종 분류현황」에서는 1977. 6.부터 시작된 조계종 분류의 원인이 종회측(반종정측)에서는 “서용 종정의 행정 및 인사난맥상 등을 이유로 총무원장 중심제로 종헌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종정측은 “서용 종정 취임 당시 종회가 종정중심제로 종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들이 불과 3년이 못되어 다시 종헌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공부는 “종정(서용)측과 반종정(종회)측과의 대립, 조계사(고암)측과 개운사(종회)측과의 대립”으로 발생한 분류의 해결을 위해 3차례 중재(1978. 4. 8~20., 1978 9. 29., 1979. 10. 10.~13.)에 나섰으나 분류가 수습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분류 수습과정에서 문공부에서는 1978. 5. 3.부터 재산처분, 주지취임등록, 사찰등록 등에 대한 일체의 행정을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보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분류에 따른 소송비용 및 분류자금 염출을 위한 재산유용 방지

11) 문공부 종무국이 종교계를 담당했고, 종무1과가 불교계를, 종무2과가 기타 종교계를 관리 감독했다.

와 양측의 주지 발령으로 인한 사찰분규 방지, 그리고 소송 계류 중에는 주지취임과 사찰등록 등 일체의 행정을 보류하는 것이 그간 행정의 관례였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문공부는 조계종 분규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즉 수도자로서의 자세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불교재산을 승려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점, 승려의 자격기준이 불비하다는 점 등을 거론하고 있다. 또한 분규를 주도하는 조계사측과 개운사측의 승려 중 월자 문중의 작난¹²⁾이 심각하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양측의 자금조달의 방식¹³⁾까지 분석하는 등 불교계 내부 문제까지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

한편 문공부는 위 문서에서 조계종 분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전망에 대해 “많은 승려들이 화합을 갈망하고 있으나 개운사측과 조계사측 분규 당사자들이 자기주장을 계속 고수할 것이기 때문에 분규가 장기화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¹⁴⁾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화합에 의한 분규수습을 중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종단대표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사찰재산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사찰주지를 대상으로 행정실시”를 하거나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재산관리인 임명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구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¹⁵⁾

2. 계엄위원회의 조계종 분규 대책 논의

10·26사태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령부는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자문하기 위해 계엄위원회(위원장 : 계엄사 부사령관 겸 육군참모차장)를 설치 운용하였다.¹⁶⁾

12) 문공부는 월자문중(月字門中)의 작난(作亂)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조계사측의 월산, 혜○, 이○, 월○, 법○ 등을, 개운사측은 월주, 설○, 범○, 월○, 월○ 등을 명시하고 있다.

13) 조계사측에는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이 연간 1억 2천만원 지원, 개운사측은 자체 분담금과 각 사찰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14) “개운사측에서는 소(訴)의 종결로 인하여 당부(문공부)에 대해 고암 종정직무대행 등록을 말소하여 줄 것과 아울러 윤월하를 대표권자로 등록 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조계사측은 개운사측에서 제기한 ‘비상종령에 의한 중앙종회 해산무효 확인 및 종정추대 취소결의 확인청구소송’을 포기함으로써 이서웅 종정이 다시 종정으로 복권된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15) 문공부, 「대한불교조계종 분규현황」(1980. 2.).

16) 계엄위원회는 1979. 10. 28.부터 1980. 6. 5.까지 31회에 걸쳐 총 39건의 의제를 검토 자문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원문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진단한 후, 중요한 정책방향을 결정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계엄위원회는 국보위가 1980. 5. 31. 발족하면서 임무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위원회는 ‘종교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3차례에 걸쳐 논의하였다. ●17) 1980. 2. 29. 불교계(제17차 회의), 3. 7. 기독교 및 기타(제18차 회의), ●18) 4. 25. ‘종교의 역할을 중심으로 본 한국사회 윤리관 확립’(제25차 회의)을 개최하였다.

1980. 2. 29. 열린 제17차 계엄위원회에서는 ‘불교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당시 문공부에서는 차관, 종무국장, 그리고 종무관리관이 회의에 참석했고, 차관이 「불교분쟁에 따른 전망과 대책」●19)을 제출한 후 그 내용을 발췌, 발표했다.

문공부는 조계종 등 18개 교단의 17,500여 승려와 1,300만 신도가 혼연일체가 되어 호국불교로서 총력안보에 앞장서고 있어 정치발전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으나, 1977. 6.부터 발생된 조계종의 종권분규가 법정으로까지 번졌으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개운사 파와 조계사파로 양분된 상태이고, “양측 모두 정부가 적극 개입 수습해주지 않는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특히 개운사측 몇몇 강경승려들은 호국불교라는 역사적인 이름마저 저버릴 각오가 되었다고 불평하면서 비상수단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표 1〉 불교분쟁에 따른 전망과 대책(1980. 2. 29. 문공부 계엄위원회 제출 자료)

<p>4. 문제점 및 판단</p> <p>○ 승려들의 분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불만한 개운사측 송월주(개운사 주지) 등 일부 승려들이 주도하여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불미스러운 작태로 변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p>
--

17) 당시 신군부는 가톨릭과 기독교의 일부 세력에 대해 체제반대를 일삼는 좌경세력, 불순분자세력, 노동운동세력 등의 핵심으로 인식, 규정하며 노골적인 경계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신군부는 자체 평가에서조차 ‘순응종교’이던 불교계를 결과적으로는 사회정화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권력을 투입하는 10·27법난을 일으켰다. 본 보고서는 10·27법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집중했고, 타 종교계에 대한 신군부의 탄압에 대해서는 조사범위에서 제외했다.

18) 육군본부, 앞의 책, 211~212쪽. 3월 7일 개최된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공부 차관 : 문제종교단체 및 활동상황으로는 천주교에서는 한국가톨릭농민회(회장 : 최병욱)가 농정비판 여론 조성 및 농민 불만을 자극하며,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총재 : 두봉 주교)는 노사분규에 개입하고,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회장 : 문창준)는 반체제 여론을 조성하며, 한국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대표 : 함세웅 신부)은 김지하 석방청원 및 특정인 구명운동을 하고,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회장 : 지학순 주교)는 노사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회장 : 김해득)가 개헌공청회 등 정치에 개입하며, 교회사회선교협의회 등 도산교회는 계급의식을 조장하고 기독교청년단체가 계엄해제 요구 및 구속자 석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정치 개입 및 노동자 선동 등으로 사회불안 요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종교활동의 비정상 운영 등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불법집회 등 불온활동이 증가하며, …종교분규 및 정치성 활동을 이용한 적 간첩 침투가 우려된다.” “중정부 제2차장보 : …종교활동을 방치해 두는 것은 치안적 측면에서 볼 때 위험한 일이다.” “문공부 종무국장 : 정치인들이 종교계를 흐려놓는 경향이 있다.”

19) 문공부, 「불교분쟁에 따른 전망과 대책」(1980. 2. 29)

- 본안소(本案訴)에서 개운사측(原告)이 포기함으로써 일응 법적으로는 패했다고 보아지나 이에 큰 반응 없이 양측 공히 수습에 지친 만성적인 심리상태가 노정되고 있어 당장에 불법적인 집단행위로는 급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 현시점에서 관의 거중조정이 주효하여 수습 가능성이 밝게 산출될 경우에는 관계당국이 적극 개입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일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할 경우 더욱 충격타를 주어 춘계 학원, 종교, 노동, 정계 등 고질적인 저항기에 불교분쟁까지 가승시키는 작용으로 확대될 것이 우려되며
- 이와 같은 불자층 저항은 지금(只今)까지의 ‘호국불교’가 ‘저항불교’로 변신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순응(順應) 종교인 불교까지 현 정부를 불신 공격하는 등 대정부 저항세력이 격증되고 있는 것으로 정세 오판할 것이 염려됨

5. 검토대책

- 서상(叙上)한 문제점을 감안, 현상황하에서 종단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수습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엄정중립을 계속 견지하면서
- 우려되는 부분적인 상방의 충돌 등 집단사태 예방을 위해 정보경비개념(情報警備概念)의 비노출 경계를 강화하여 불상사를 미리 파악 치안적 차원에서 막고
- 한편으로는 종단의 재산관리와 해외여행 등 제반 사찰 행정은 중앙종단상대에서 25개 본사 주지 상대로 전환 기술적으로 양측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처리하여 본말사 승직자들의 불평불만을 감살(減殺)시키는 등 당분간 현상유지가 정치발전의 안정을 위해서도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위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 문공부는 조계종 종권 분쟁에 대해 “분규가 장기화되고 있고, 양측 공히 수습에 지친 만성적인 심리상태가 노정되고 있다”고 판단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현시점에서 관의 거중조정이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할 경우 더욱 충격타를 주어 춘계 학원, 종교, 노동, 정계 등 고질적인 저항기에 불교분쟁까지 가승시키는 작용으로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고 건의하며 “현 상황 하에서는 종단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수습의 실마리를 찾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엄정중립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문공부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 계엄위원회 참석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 문공부차관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파벌간의 이해관계를 초월, 자체적으로 분규를 수습하려는 의지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당국에서 직접 개입보다는 수습분위기가 성숙되도록 측면에서 지원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거중 조정활동을 전개하여 분규를 타결해야...



- 내무부차관 : ...분규의 내용 또한 복잡하므로 정부가 선불리 개입하였다가 어느 한 파에게 유리하도록 분규가 해결될 경우, 기타 세력은 저항세력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편이 상책으로 판단...
- 문공부 종무국장 : ...종단분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공부는 1980. 2.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분규현황」과 「불교분쟁에 따른 전망과 대책」에서 조계종의 종단분규에 대한 대책을 지울적인 화합에 의해 종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문공부는 불교계가 사회전반의 민주화 흐름을 타고 ‘호국불교’에서 ‘저항불교’로 변신될 것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순응 종교인 불교까지 현 정부를 불신 공격하는 등 대정부 저항세력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등 우려감과 함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특히 월주 스님 등이 주도하여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행동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운사파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계엄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결정적인 시기에 거중 조정활동을 전개하여 분규를 타결해야 한다”(문공부차관) “대대적인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간여하는 수밖에 없다”(문공부 종무국장) “교권 다툼은 선도하여 없애도록 해야 한다”(계엄부사령관) “승려들 간에 불순분자, 즉, 깡패, 부역자, 사상범 등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신속히 파악을 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법무부차관)며 당국이 ‘개입’하거나 ‘선도’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계엄위원회 기획관리실장 김을권 준장은 불교계가 불순분자가 은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등²⁰⁾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언은 1980. 10. 30. 전국 사찰에 대한 일제수색을 실시하는 배경의 하나가 되었다.

20) 육군본부, 『계엄사 -10·26사태와 국난극복』 「제4장 자문기구 운용」 중 제17차 종교분야 예상 문제점과 대책(불교), 210 쪽. 이 회의에서 김을권 기획관리실장은 종교계 분규가 안보적 차원에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아래와 같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 불교계에 불순분자가 은신할 가능성 다분, 이들로 신도까지 악영향 가능성 큼
- 승려들 신분 파악 곤란해 부역자 등 감시대책 강구해야 함
- 사찰의 위치상 대남 침투간첩의 이용과 불순분자가 승려 복장 이용 가능성 있음
- 분규에 따른 소송비용 조달 목적의 재산처분 방지대책 강구

2 조계종 통합 중단 출범

1977.에 들어서면서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종단인 조계종은 종권 다툼이라는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다. 이에 문공부에서도 조계종의 종회파와 종정과간에 종권분규가 법정으로 번지고, 조계사파와 개운사파로 양분되어 양측 공히 합법적인 종정임을 주장하며 그 대표 등록을 요구했지만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21)

그러나 약 2년 7개월여 동안 지속되었던 종권다툼은 1980.에 접어들며 양측이 종단통합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1980. 3. 30. 양측 대표들인 조계사측의 고암 종정과 송원 총무원장이, 개운사측의 월하 총무원장과 월주 종회의장이 모여 종단 불화사태를 종식시킨다는 합의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22) 이어 4.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합의에 따라●23) 제6대 중앙종회의원 총선거가 17일부터 전국 24개 교구에서 실시되었고, 4. 26. 열린 제6대 중앙종회에서 새로운 집행부와 종회를 구성하였다. 새 총무원장에 월주 스님, 종회의장에 도견 스님, 부의장에 월탄, 초우 스님을 선출했다.

종회는 이어 종정 추대 조례를 고쳐 중앙종회의원과 원로의 재적과반수 찬성으로 추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정 추대에 들어가 월산 스님(불국사 조실)과 성철 스님(해인사총림 방장)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투표를 했으나 재적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종정 추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5월 7, 8일 속개된 회의에서도 막후절충을 통해 종정 추대를 시도했으나 8일 종회가 유회돼 종정추대는 무산되었다.●24) 즉 종정 추대는 조계·개운사측이 이견을 보여 결실을 보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이로써 종정을 추

21) 문공부, 『불교분쟁에 따른 전망과 대책』(80. 2. 29. 문공부의 계엄회의 제출 자료).

22) 합의서약서는 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합의조항은 △종단 불화사태를 화합으로 종식함 △조계사측은 현재 제5대 종회를 인정함 △5대 종회의 임기를 단축시키고 제6대 총선거는 종회의원 69명 중 42명은 기존 분사 단위로 직선하고 나머지 27명은 개운사측 14명, 조계사측 13명으로 각각 추천 △총선거는 20일내에 실시 △선거관리는 기존 선관위(위원장 녹원)가 함 △제6대 종회가 구성됨과 함께 양측 집행부는 총사퇴 △합의서약 서명 조인 범위는 양측 대표로 함 △화합 종단 탄생 이후 분규 중 발생한 민형사간의 일체의 문제는 불문에 부친다는 것이었다.

23) 1980. 4. 2.에는 3. 30. 서명에 참여한 양측 4명이 다음과 같이 제6대 종회 총선 일정을 합의했다. 총선일자(1980. 4. 17.), 당선자 등록일자(4. 22.까지), 종회소집 공고(4. 24.), 종회 개원식(4. 26.).

24) 『대한불교』, 1980. 5. 11.자.



대하지는 못했지만 양측이 합의하여 종단 집행부를 선출함으로써 2년 7개월여 간의 종단불화사태를 종식시키고 화합종단을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한편 중앙총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1980. 4. 28. 월주 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월주 총무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불교계의 개혁 의지를 표명하였다.

불교의 전통과 교리를 현실에 맞게 개혁하여 민족의 증언자, 민족의 향도자 역을 맡아 불교계에 새바람을 일으켜 보겠다. … 조계종 분규에 외부의 간섭도 있었다. … 종단을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 불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교재산관리법, 공원법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25)

그리고 5. 14. 총무원 사무인계인수가 완료되었고, 15일에는 각 교구 본사 주지 및 직할 사암 주지에게 공문을 보내 “14일 하오 3시 종정 집무실에서 전 종정직무대행 고암 스님과 신임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조계종 사무인계 인수서에 조인하고 모든 사무인계 인수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했다.●26)

6. 9. 열린 총무원 5부(총무, 교무, 재무, 사회, 규정부), 포교원의 하반기 사업계획에서는 ‘내실을 기한 중무를 펴나가면서 종단 안정세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 보고되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그동안 이권다툼과 자리싸움을 하던 모습에서 자주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으로 거듭 나고자 노력하는 의지를 담아 사업계획을 공개했다.●27)

이러한 계획에 따라 총무원은 총회의장단 상임총책위원, 총무원간부 연석회의(6. 20.), 불교교양대학 개설(7. 7~12.), 전재적(全在籍) 승니(僧尼) 일제 분한신고●28)(7. 10~), 전국포교사 일제 신고(7. 21.~) 등의 사업을 진행시켰다.

25) 『대한불교』, 1980. 5. 11. 5. 18.자.

26) 『대한불교』, 1980. 5. 18.자.

27) 『대한불교』, 1980. 6. 15.자. 주요 사업으로는 총무원장 취임등록 완료(문공부), 분규사찰 정리(9월), 전국 사찰 실태조사(11월), 승려증 갱신(3개월간), 사찰재산 파악 망실 환수, 종단총화 기반 정착화, 승려기강 확립 촉구, 전국포교사단 조직 등.

28) 1970년 이후부터 조계종 소속 승려에 대한 분한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퇴속 등 유고스님의 정리가 되지 않아 조계종 승려수의 정확한 파악이 힘든 상태에 있었다. 이런 증책상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승적부의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승풍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3 월주 총무원장 대표 등록 지연

1980. 4. 26. 총무원장에 당선된 월주 스님은 5. 9. 문공부에 대표 등록신청서를 제출
●29)하고 5. 26. 보완서류를 접수시켰으나 문공부에서는 대표 등록●30)을 계속 지연시키
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문공부에서는 5. 26. 취임등록신청서의 보완서류를 접수받은 후 6. 6. 신원조사
를 의뢰, 7. 1. 신원조사 결과를 접수했으며, ●31) 당시 문공부 관련서류에서도 대표자 등
록신청에서 “등록요건 구비 완료”라고 기록하고 있다. ●32)

이에 당시 한영수 문공부 총무담당관은 우리 위원회와의 1차 면담에서 “행정에 하자
가 있어 등록을 받아 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2차 면담에서는 “신원조사 결과가 접
수되었다면 행정절차상 등록문제는 끝난 이야기이다. 그런데 등록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당시 공무원인 나로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33)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정덕용
문공부 총무국 총무1과장의 경우 “당시 월주 총무원장의 비위에 대한 진정 및 투서가 많
았고, 비도덕성이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라 불교 내부에서 자체적인 정화를 해줬으면 하
는 분위기에서 등록 거부가 이루어졌던 것 같다”고 증언 ●34)했지만, 진정 및 투서가 본격
적으로 접수되기 시작한 시기가 1980. 7. 초 이후이기 때문에 등록 거부의 사유가 될 수
는 없었다.

10·27법난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11. 10. 합수단에서 조사를 받았던 한기복 총무국장
과 정덕용 총무1과장의 아래 진술은 월주 총무원장의 대표 등록 유보가 문공부 책임자

29) 월주 당시 총무원장은 우리 위원회 면담(2007. 1. 13.)에서 “4. 26. 총무원장 당선 직후 문공부 한기복 총무국장이 찾아와
형식요건을 갖춰 등록하라고 말해 등록신청서를 만들어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한기복 당시 총무국장은 우리 위
원회와 전화통화(2007. 3. 12.)에서 “월주 스님을 만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30) 불교재산관리법(1988. 5. 28. 폐지) 제9조(대표자) 제2항에는 “불교단체가 주지와 대표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1) 문공부, 「국회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중 ‘통일민주당 강신욱 의원의 월주 스님
의 조계종 총무원장 등록 지연 거부 경위서 요구자료 현황’(1989. 4.).

32) 문공부, 「대한불교조계종 현황」(1980. 7. 25.).

33) 우리 위원회, 한영수 2차 면담조사(2007. 5. 8.).

34) 우리 위원회, 정덕용 면담조사(2007. 3. 14.).



였던 이광표 장관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던 것임을 확인해 준다.

중헌상 총무원장은 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헌 제22조 및 26조에 보면 중정의 권한으로 중단의 인사권, 재산처분권, 고구확정권 등이 있어, 11월 중헌상에 명시된 정기중앙총회 개최시까지 등록 유보하였다. 또한 현 이광표 문공장관도 중정이 선출되기 전에는 대표등록을 유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35)

중정 추대 문제가 분쟁의 초점이 되어 있고, 중헌상의 문제도 애매한 점이 있었다. 등록 문제를 국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중정 추대 후 등록을 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장관님의 지시가 있다고 국장이 언동하여 지침으로 파악하였다.●36)

즉 문공부의 중무담당 간부들은 문공부 장관으로부터 “중정 추대 문제가 분쟁의 초점이 되고 있어 11월 정기중앙총회 개최 시기까지 유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증언은 표면적으로는 ‘중정 미추대’가 월주의 대표 등록 지연의 사유였지만, 윗선 상부의 지시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중정 미추대’가 등록 지연 사태의 명분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총무원장 등록문제의 주관부서장인 문공부 장관이 등록을 연기한 것은 윗선의 지시였으며, 상부의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연 사태에 대해 월주 스님은 “중정 미추대는 표면적인 거절 이유였고, 진짜 이유는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회 이후, 한기복 국장이 날 찾아와 ‘용두관음’이라는 고분을 발굴했는데 ‘장영자 이철회를 집행위원장으로 해 여의도에서 100만명이 모이는 구국기도회를 열자’고 해 ‘그는 신도회장이 아니고 한다면 신도회장이나 내가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거절했다. 또 중단을 출입했던 보안사 문관이 찾아와 조계종 총무원장 명의로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으로 추대되기를 바란다’ 또는 ‘전두환 장군을 대통령으로 추대’라는 내용을 5대 신문에 광고로 내달라고 2번이나 요청했고, 나중에는 총무원 사회부장을 통해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했다. 정

35) 합수단 수사국, 한기복 진술서(1980. 11. 10).

36) 합수단 수사국, 정덕용 진술서(1980. 11. 10).

치적인 측면에서 신군부측과 가까운 몇몇 사람들의 대표 등록 반대가 있었다.●37)

이런 전후과정에서 장기적인 대표등록 지연 사태를 맞은 월주 총무원장은 1980. 7. 24. 기자회견에서 “종헌 49조에 총무원장이 대표로 되어 있고 불교재산관리법에 의거 등록신청을 냈다. 등록을 안 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총무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소신껏 해나갈 것이다. 등록을 위해 매달리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선언하였다.●38)

이에 기자회견 다음날인 7. 25. 문공부는 「대한불교조계종 현황」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 요지를 보면 “서용 스님의 종정 복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39) 최근 조계종 총무원에 대한 진정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조계종 총무원에서도 종단 대표자 등록 촉구 등의 진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대표등록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계획을 밝히고 있다.

조계종 관련 일련의 사항은 동 종단 종정 추대 지연으로 정상화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동 종단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종정을 추대하여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고 총무원장 월주의 대표자 등록을 포함한 당부의 행정지원 사항은 종단 정상화시까지 유보코자 하고, 종정, 종회, 종헌 등 시비에 대하여는 종단 내부에서 화합으로 원만히 해결토록 촉구코자 한다.●40)

다시 말해 당시 문공부는 ‘종정 미추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은 ‘조계종단의 비정상화’이며, 이 문제로 인해 조계종 자체 내의 갈등이 계속 증폭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당시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37) 우리 위원회, 월주 스님(전 총무원장) 면담조사(2007. 1. 13).

38) 『대한불교』, 1980. 8. 3.차. 위 신문의 ‘해설’ 기사 중에는 “월주 총무원장의 문공부 종단대표 등록문제는 이제까지 지켜왔던 문공부와 종단의 협조문제가 경직될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종단은 그동안 관계당국과의 호혜정신에 입각 협조관계가 잘 돼 왔으나 이번 등록문제 지연은 월주 원장의 말대로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위화감을 유발할 조짐이 없지도 않은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다.

39) 총무원장 중심의 현 종헌에 대하여 개정 당시의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무효를 주장하고 따라서 동 종헌에 의한 종회와 동 종회 의결사항(현 총무원장 선출 등)이 위법 무효라는 주장이다.

40) 우리 위원회, 앞의 월주 스님 면담조사.



1979년 이전에 중권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어 개온사측 중단이 3심까지 승소해 5대 중회를 인정하고 중헌도 인정돼 중회에서 (총무원장으로) 선출까지 되었는데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선출에 반대하거나 패배한 쪽에서 뭔가 불만이 있어 음해한 것이다.

결국 문공부의 이런 상황 판단은 10·27법난 사건 이후인 11. 14. 합수본부의 <불교계 정화수사 발표>에서도 조종 감독기관인 문공부의 처리가 미흡하다며, 문공부의 책임을 “정치적 차원에서 압력을 받고 미온적이고 편견적 처리, 중회측의 대표권 등록을 지연시켰다고 지적받고 있다.

한편 중단 분규가 진행되었던 1980. 3. 30. 이전까지 조계사측에 지원되었던 불교진흥원의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한기복 문공부 총무국장과 정덕용 총무1과장은 11. 10. 합수단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대표등록 유보의 이유를 진술한 연속선상에서 불교진흥원의 지원금 중단문제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김성진 전 문공장관 당시 불교진흥원장 구○○씨가 분규 중 조계사측에만 월1000만원씩을 지원하므로 진흥원의 지원자금이 분규를 지속시키는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여 1978. 9. 2.과 1979. 1. 13. 등 2차에 걸쳐 중단에, 즉 조계사에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도록 공문을 낸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시 구○○는 조계사측(서용, 고암)의 배후자로서 계속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41)

1980. 5월경 한영수 담당관으로부터 진흥원 지원금이 분규 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니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 뜻을 진흥원에 전달한 일이 있다.●42)

이러한 진술내용은 한영수 문공부 총무담당관이 “중단과 밀착되어 상당한 부정비위가 있을 것이라는 첩보 보고”와 연계되어 10·27법난 사건 발생 직후인 1980. 11. 3. ‘45계획 관련 공무원 비위혐의’로 합수단에 연행되는 사태로 이어졌다.●43)

41) 합수단 수사국, 앞의 한기복 진술서.

42) 합수단 수사국, 앞의 정덕용 진술서.

43) 45계획(수사) 관련 공무원 비위첩보 보고와 문공부 총무담당 한영수 추출 첩보(합수단 수사자료)에 따르면 “(1) 조계종

이에 대해서도 당시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문공부, 진흥원 등에서 나를 거부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44)

불교진흥원의 지원금 중단 사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11. 14. 합수본부는 <불교계 정화수사 발표>에서 “불교진흥원 및 전국신도회의 조계사측 후원”이 분규의 한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4 불교계 정화를 둘러싼 국보위와의 갈등

신군부가 1980. 5. 31. 설치한 국보위는 사회정화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불교계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정화 대책을 요구했다. 당시 국보위는 자신들의 주도로 진행한 범종교계의 정화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종교계는 국보위의 주도하에 범국민적으로 추진된 사회정화운동에 호응하여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 종교계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비리와 일탈행위 등 부정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사회정화운동에 동참하는 노력을 전개해 왔다.

종교계는 평시에는 국민정신계도에 앞장 서 왔으나, 특히 새 시대, 새 역사 창조라는 막중한 사명을 재인식, 종교계의 풍토를 개선했다. 종교인들은 각종 종교행사를 통하여 호국안보의 정신자세와 정의사회구현을 숭선 다짐함으로써, 국민적 공감을 얻게 됨은 물론 새롭고 바람직한 ‘종교인상의 정립’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45)

당시 국보위의 종교계에 대한 자율정화위원회 구성 요구는 문공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1980. 8. 22. 문공부는 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종교계 전반의 자율정화 방안을

분규 수습 조정 명목으로 서웅, 고암 계열 편파 지원 (2) 1980. 5. 중정 추대시 불국사 월산, 해인사 조실 성철 응립했으나 원로승려 반발로 좌절되자 자금 압박 주기 위해 분규 수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흥원 보조금 1억 2천만원 지불 중단” 등을 포함 9건의 혐의로 수사를 건의하는 보고가 이뤄졌다.

44) 월주 스님은 우리 위원회와 면담과정에서 “진흥원에서 보조금이 중단되어 황○○ 이사장에게 물어 보기도 했다. 그는 ‘반골기질’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그리고 대구경북 출신들도 나를 거부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45)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종교계의 자율정화」, 『국보위백서』(1980. 10.), 104쪽.



제시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은 이를 거절하고 8. 26. 자체적인 정화추진위원회 기구를 구성하였다. ●46) 월주 당시 총무원장은 “문공부 김은호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지침을 하달하기에 불교계는 갈마정신으로, 즉 스스로 토론하여 정화를 하겠다고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그리하여 불교계 내에 정화기구를 스스로 결정해 교구본사 주지와 직할 본말사 주지에게 정화를 자율적으로 하라는 지침만 시달렸다는 것이다. 이런 독자적인 자율정화 방침 고수는 10. 17.에서야 구체적인 ‘대한불교조계종 자율정화 추진방안’으로 작성하게 되었고, 10월 20일 발표를 하게 되었다. ●47)

한편 국보위는 종교계에 사회정화운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 개최를 요구했다. 아래의 행사는 국보위의 주도하에 불교계가 호국안보의 정신자세와 정의사회구현을 슬선다짐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최한 행사였다고 내놓은 성과물이다.

〈표 2〉 불교계 행사 내용 ●48)

일시	행사명	장소	행사내용	참석인원
1980. 7. 22.	불교총연합회 경북지부 결성 및 반공대회	대구	결의문 및 메시지 채택	2,500명
7. 25.	사회안정을 위한 호국안보기원 대법회	임진각	반공궐기대회	20,000명
8. 5.	호국기원대법회	세종문화회관	국민화합, 시국안정	500명
8. 9.	전남불교인연합회 호국안보대법회	광주	결의문 및 메시지	30,000명
8. 20.	호국안보궐기대법회	조계사	호국안보기원	10,000명
8. 24.	대한불교청년대회	부산시민회관	순교적 지도자상, 결의문, 나라를 위한 기도	5,000명
8. 26.	정화결의대회	남산야외음악당광장	종교계 정화 추진	10,000명

46) 대한불교조계종, 「자율정화추진 방안」(1980. 10. 17.).

47) 조계종 총무원이 10월 17일 확정한 자율정화 세부지침에서는 중점 정화방향으로 ▷축재금지 ▷불청정행위금지 ▷폭언, 폭력행위금지 ▷사치행위금지 ▷상호비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보위의 자율정화위원회 구성 요구에 따라 불교계 내에서도 여러 형태의 정화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에 앞서 10월 7일 총무원에서는 “불교계 정화를 둘러싸고 일부 인사들이 임의로 정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거나 각종 유인물을 배포하여 종단 인사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러한 정화를 빙자한 불순행위를 단호히 배제, 구체적인 명예훼손 사태가 드러나면 의법조치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대한불교』, 1980. 10. 12.자).

48)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백서』, 105쪽.

불교계의 행사는 대부분 불교계의 연합조직인 대한불교총연합회와 전한국불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도 조계종 총무원이 독자적인 행사를 개최, 고수해 나갔다. 실제로 조계종 총무원이 중심이 되어 개최한 행사는 8. 20. ‘호국안보대회’와 8. 24. ‘대한불교청년대회’에 그쳤다. 월주 스님도 “신군부가 요구한 종교행사나 어용단체에서 개최한 행사에 간 기억은 별로 없다”며 당시의 분위기를 증언했다. ●49)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군부의 사회정화 요구나 전두환 장군 지지 등의 요구에 대해서 월주 총무원장 중심의 조계종 총무원은 자율적인 정화를 고수하는 등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월주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사에서 조계종단을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몇 가지 중요한 수습 및 후속처리 과제를 표방했다.

첫째, 1980. 3. 1. 대한불청 전국회장단회의에서부터 시작된 불교계의 불교재산관리법 개정 요구를 총무원장 당선 기자회견에서 공식화시켰다. 이에 7월부터 총무원 집행부 차원에서 사찰의 자주적인 운영을 전제로 불교재산관리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도시계획법 등 일련의 사찰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검토 여부를 연구해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50) 8. 14. ‘불교관계법 개정 5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두, 혜성, 종하, 명선, 향운 스님 등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9. 16.에는 불교관계법 개정 시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국보위와 문공부에 제출하였다. 이는 불교계 내의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운영 의지를 드러내면서 지난 시기 정치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와 맞물린 것이기도 했다.

둘째, 7. 21. 총무원장 주재하의 총무회의에서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각종 불교행사는 총무원이 주최하고 전국신도회가 주관하며 동국대를 주축으로 한 종립학교와 신행단체들이 후원하는 조계종 독자의 행사를 치르도록 의결했다. 이는 곧 대한불교총연합회(회장 기종) 전한국불교회(회장 석암) 등의 연합적인 성격

49) 우리 위원회, 앞의 월주 스님 면담조사.

50) 『대한불교』, 1980. 7. 27.자, 1면.



을 띤 단체에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51) 불교계가 자주 종단을 선언한 것이다. 위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불교계 신문은 다음과 같이 해설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총무원은 또 대한불교총연합회나 전한국불교회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아울러 이 두 단체에 공식적으로 종단이 가입한 사실이 없음을 환기시켰다. 그동안 종단이 이들 단체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으나 이들 단체에 예속된 인상을 대내외에 심어 대중단호(號)로서의 체통문제까지 거론됐던 적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게다가 전국신도회와 동국대를 비롯 각급 중립학교 신행단체들이 착실히 발전을 못했던 저변의 이유 중의 하나로 이렇듯 종단이 일부단체에 ‘예속’상태로 대사회활동을 벌였던 때문이며 그때마다 이들 산하단체들이 종단에 이러한 문제를 하루속히 배제해 주도록 건의했음을 상기시켰다.

●52)

셋째, 총무행정의 안착화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은 전재적(全在籍) 승려의 일제 분한(分限)신고와 승려증 갱신기간(7. 10. ~10. 10.)을 발표하였다. 이는 전 승려의 수행이력(안거, 수계, 법계, 수학) 사실 기재 및 각종 유고로 인한 승적부의 정리를 통해 총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조계종 총무원의 이런 운영방침은 사실상 초법적 국가기구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세력을 통제하던 국보위의 입장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다. 더욱이 월주 총무원장이 5·18광주민중화운동 직후 광주 현장을 위로 방문하고, 전두환 장군에 대한 지지 성명을 중용받았지만 거절하는 등의 행위 등은 신군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다.

“특히 개온사측 몇몇 강경승려들은 호국불교라는 역사적인 이름마저 저버릴 각오가 되었다고 불평하면서 비상수단을 구상하고 있고”

“분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불만한 개온사측 월주(개온사 주지) 등 일부 승려들이 주도

51) 우리 위원회 면담에서 월주 스님은 국보위를 지지하고 나선 전한국불교회와 대한불교총연합회에 관여하지 않고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즉 신군부세력을 지지할 수 없다는 의사표명이라고 주장했다.

52) 『대한불교』, 1980. 7. 27.자.

하여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불미스러운 작태로 변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관의 거중조정이 …만일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할 경우 더욱 충격타를 주어 춘계 학원, 종교, 노동, 정계 등 고질적인 저항기에 불교분쟁까지 가승시키는 작용으로 확대될 것이 우려되며”

“이와 같은 불자층 저항은 지금까지의 ‘호국불교’가 ‘저항불교’로 변신했으므로 국제사회에서 순응종교인 불교까지 현 정부를 불신 공격하는 등 대정부 저항세력이 격증되고 있는 것으로 정세 오판할 것이 염려됨”⁵³⁾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총무원장에 취임한 이후 월주 스님이 취했던 여러 가지 종단의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에 대해 1980. 2. 계엄당국과 문공부가 월주 스님 중심의 개운사측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 인식과 시각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5 내부갈등과 진정 및 투서의 양상

2년 7개월간 지속되었던 종권다툼을 종식하기로 합의하고 종회 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가 선출되었지만 내부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는 않았고 그 내분의 여진은 계속 남아 있었다.

서용 스님의 종정 복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고, 월주 스님 체제의 총무원에 대한 진정이 증가되고 있었다. 또한 조계종과 태고종 간의 분규 사찰 중 소송이 종료된 일부 사찰에 대한 명도집행으로 물의가 빚어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측에서는 종단 대표자 등록을 촉구하며 유보행정 해제, 해외여행 추천 등의 내용을 관계당국에 계속 촉구하고 있었다.⁵⁴⁾ 국보위가 설치된 1980. 6. 이후 총무원 집행부에 대한 투서가 접수되기 시작했다.

53) 문공부, 앞의 「불교분쟁에 따른 전망과 대책」.

54) 문공부, 「대한불교조계종 현황」(1980. 7. 25.).



1. 서용 스님 종정 복권 주장

1980. 7. 14. 서용 스님 측에서는 문공부에 ‘고암 스님 종정직무 대행 등록 말소신청’과 함께 ‘서용 스님 종정직무 속행 통보’를 하였고, 7. 16.에는 서울 상도동 소재 백운암에 총무원 임시사무소 개설을 신고했다.

당시 서용 스님측은 ▷1974. 11. 2. 종정으로 등록을 필하고 종정직무 수행 중 1978. 1. 21. 고법의 종정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종정직무집행이 정지됨 ▷종정직무 대행자로 1978. 1. 21. 채우섭 스님을 선임하였으나 동인이 1978. 7. 18. 사임함에 따라 고암 스님으로 변경 ▷1980. 2. 15. 대법원에서 위 가처분 결정 취소가 확정 ▷이에 따라 고암 스님의 종정직무 대행 기간이 만료되고 이후 종정 추대시까지 서용 스님이 종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용 스님측은 종헌 및 종회 효력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주장에 따르면 ▷고암 스님의 종정직무 대행기간인 1978. 9. 5~9. 사이에 종회(제5대)를 구성하고 동 종회에서 종헌을 개정한 바(현 종헌) 이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밖의 일로써 무효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위 개정 종헌에 따라 구성된 제6대 종회 및 그 의결사항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문공부에 ‘제5대 종회 및 개정종헌 위법 무효 통보(1980. 7. 18.)’와 ‘제6대 종회 구성의 위법 무효 통보(1980. 7. 19.)’ 서류를 제출했다.

2. 태고종의 진정서 제출

조계, 태고의 분규사찰은 총 14개 사찰(소송완료 5개, 소송계류중 4개, 소송미제기 5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송이 완료된 사찰인 영화사(서울 성동구 구의동 소재, 1980. 6. 19. 명도집행), 동인암(경남 울주군 소재, 1980. 7. 3. 명도집행), 보살사(충북 청주 소재, 명도집행 계획 중), 성주암(서울 관악구 소재, 명도집행 계획 중)을 조계종이 명도집행을 하게 되었다. 이에 영화사에서는 ‘연고 깊은 대중 스님의 강제 축출은 부당한 것이며, 동인암에서는 ‘주지의 강제축출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문공부, 내무부, 대통령비서실, 국보위에 동시에 제출하였다.

3. 조계종 내부의 진정

여기에 총무원의 처사에 불만을 가진 인사들의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우선 대○은 ▷현 집행부가 총무원을 불법 강점 ▷승니분한신고 명목으로 건당 5000원 부당 수수 ▷승가대학 건립기금 담보로 3000만원 부당 대출 등을 들어 진정했고, 박○○ 외 157명은 ▷성동구 구의동 소재 영화사 대지 15,000여평 불법 매도했다고 진정하고 있다.●55)

이에 맞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도 국보위에 ▷종단 대표자 등록 조속수리 촉구 ▷재산처분등 유보행정 해제 촉구 ▷해외여행 중지 해제 촉구 등 진정을 넣었다.

이에 대해 당시 문공부는 ▷“조계종 관련 일련의 사항은 동 종단 종정 추대 지연으로 정상화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므로 “종단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종정을 추대하여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고 총무원장 월주의 대표자 등록을 포함한 당부 행정지원 사항은 종단 정상화까지 유보한다”고 처리할 계획이고, ▷“종정, 종회, 종현 등 시비에 대하여는 종단 내부에서 화합으로 원만히 해결토록 촉구”하고 ▷조계, 태고 분규 사찰은 “양 종파 간의 재산분쟁으로 쌍방이 종교적 차원에서 물의 없이 해결토록 계속 중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었다.●56)

4. 진정 및 투서 양상

합수단 김충우 단장과 김판길 수사1국장, 실무대책반 양근하 소령 등은 10·27법난 사건 이전인 10월 초·중순경 진정 및 투서의 숫자를 확인해 본 결과 약 100여 건에서 130여 건이 쌓여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당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1980. 당시 조계종과 관련해 당국에 접수된 진정 및 투서 중 현재까지 약 53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53건 중 35건은 10·27법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합수단으로 접수된 승려 개인별 민원 및 진정이었고, 나머지 18건이 그 이전에 진정 및 투서된 것이었다.

18건 중에서 익명으로 1980. 7. 투서한 「조계종 정화 대상자 명단 및 그 범행사실」과

55) 이러한 주장은 10·27법난 수사 당시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대○ 등 4인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다.

56) 문공부, 「대한불교조계종 현황」(1980. 7. 25.).



태고종 총무원에서 1980. 7.에 낸 「건의서」를 제외하면 16건 중 8건은 무고죄로 처벌받은 내용이고, 나머지도 서용 스님 종정 복권과 관련되거나 월주 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일부 스님에 대한 진정들이었다.

투서 중에 1980. 7.경 익명으로 작성된 「조계종 정화대상자 명단 및 그 범행사실」⁵⁷⁾은 조계종의 법통상 종권이 서용 스님에게 있으며, 종정 중심으로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에 대한 정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월주 스님 등 종단의 정화대상자 35명에 대한 비리 혐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10·27법난 당시 합수단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며, 일부 스님의 경우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980. 7. 중순 작성된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명의를 「건의서」에서는 ‘불교분규 종식을 위한 탄원서와 한국불교 정화와 분규종식을 위한 건의’ 등 총 48쪽의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당시 조계종과의 사찰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 대해 태고종의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총 53건의 진정 및 투서를 분석한 결과, 익명의 투서문을 제외하고는 국보위의 진정 및 투서가 쇄도하여 이에 근거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아울러 약 100여 건이 넘는 투서가 있어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과장되었다고 판단된다. 당시 일부 개인별 수사기록에 투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살펴볼 때, 당시의 투서를 누락시킨 상태로 수사기록이 보존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진정된 투서도 상당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그동안 국보위에서 주장한 진정 및 투서가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를 지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며, 오히려 10·27법난 수사의 준비 및 착수는 계엄위원회에서부터 논의되었고, 이후 국보위가 계획한 특수분야의 정화계획에 따른 시나리오의 일정에 얽매인 결과라고 판단된다.

57) 합수단 수사자료, 「조계종 정화대상자 명단 및 그 범행사실」(1980. 7.).

6 소결

1980. 2. 당시에는 신군부와 정부당국이 불교계 종권다툼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지만, 엄정중립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1980. 2. 작성한 「대한불교조계종 분규현황」에서 문공부는 1977. 6.부터 1979. 10.까지 조계종 내의 종권 다툼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수습을 위한 중재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중립적인 자세로 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월주 스님을 중심으로 한 개운사측에 대해 이념적인 측면에서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즉 개운사측의 일부 강경승려들이 기존의 호국불교라는 순응종교를 버리고 저항불교로 변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들 승려들이 주도하여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불미스러운 작태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당국의 거중조정이 실패할 경우 다가올 1980년 민주화의 봄에 사회민주화세력과 합세해 고질적인 저항세력으로 성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당국의 ‘개입’보다는 ‘종단 내부의 수습’을 유도하는 것이 정치발전의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1980. 2. 29. 개최된 제17차 계엄위원회 회의에서 문공부는 「불교분쟁에 따른 전망과 대책」을 작성, 제출하였다. 문공부차관은 발췌발언을 통해 “수습 분위기가 성숙되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되 결정적인 시기에 거중 조정역할을 전개하여 분규를 타결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런 건의를 받은 계엄위원회에서는 “종교계 분규가 안보적 차원에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게 되었다.

당국의 우려와 달리 불교계는 1980. 3. 30. 조계종 내의 양대 분규세력 대표자들이 종단불화사태를 종식시킨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분규를 끝내고 종단 화합에 나섰다. 그리고 4. 26. 제6대 중앙총회에서 선거를 치러 월주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하여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월주 스님을 중심으로 한 개운사측의 총무원 장악을 경계한 문공부에서는 분규가 극심한 시기 중에도 불교진흥원이 조계사측 집행부에 매달 1천만원씩 지급하던 지원금을 중단시키고,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문공부에 등록해야 하는 대표등록도 장기간 지연시켜 종단내부의 수습 노력을 방해하였다.

종정 추대가 연기되고, 문공부가 대표등록을 지연시키는 사이 전 종정측 일부 승려들은 종정 복권을 시도하였고, 동시에 개운사측 집행부를 포함한 35명을 사회정화 척결 대상으로 지목하는 진정서 및 투서를 익명으로 접수시켰다.

문공부는 1980. 7. 25. 현재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조계종단의 비정상화’로 규정하였으며 종정이 추대될 때까지 행정지원을 유보한다는 조치를 내렸다.

또한 국보위에서는 문공부를 통해 불교계에 대대적인 호국안보대회 개최와 자율정화 지침 수용, 나아가 신군부의 확고한 지지표명을 요구하였으나 월주 총무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월주 총무원장은 문공부의 대표등록 지연에 대해 항의하며 “등록을 위해 매달리지 않고 책무를 소신껏 해나가겠다”고 선언했고, 자주적인 종단 운영을 위해 불교재산관리법을 비롯한 5개 법안 개정시안을 문공부에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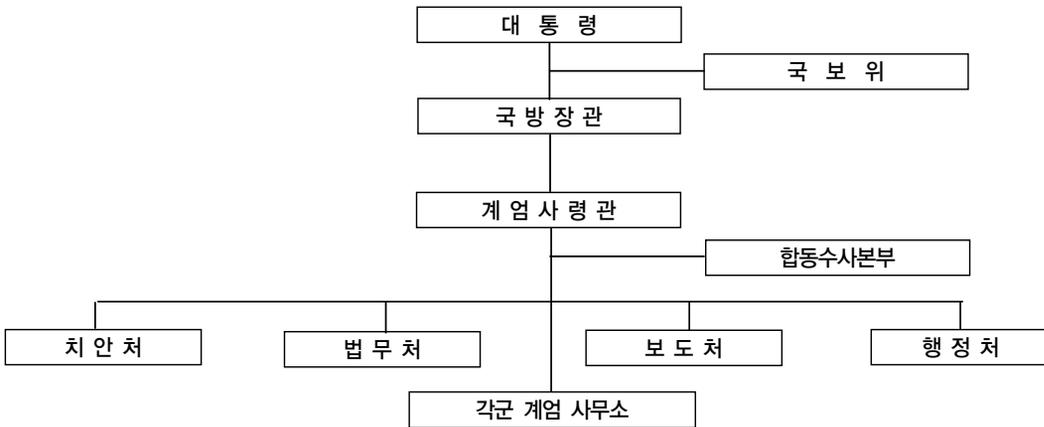
국보위의 수사 지시와 합수단의 수사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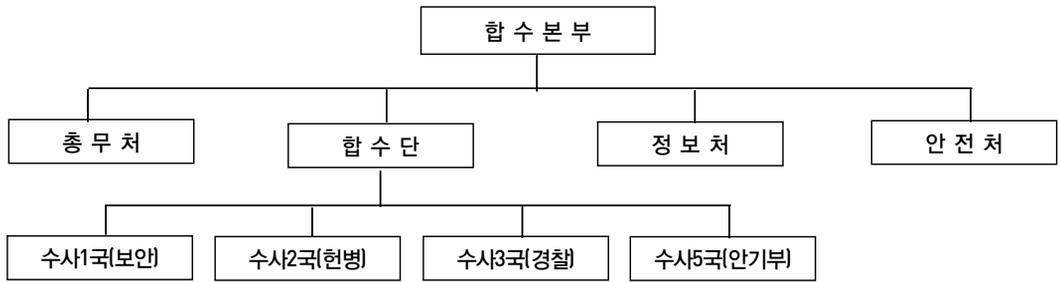
1 국보위와 합동수사본부의 지휘 체계

1979. 10. 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하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고 계엄포고 제1호에 따라 육군본부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또한 계엄공고 제5호에 의거 계엄사령관 직속으로 합동수사본부(아래 '합수본부'로 함)가 설치되었으며, 합수본부 내부에 수사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단(아래 '합수단'으로 함)을 두었다.

합수본부장은 1979. 10. 26.부터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맡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1980. 8. 21.부터는 노태우 보안사령관이 담당하였다. 당시의 합수단장은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이었으며,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9. 1.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이학봉 합수단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1980. 9. 1. 김충우 대령이 보안사 대공처장 겸 합수단장을 맡게 되었다. 아래 표는 법난 발생 당시 계엄사와 합수본부의 지휘 체계를 설명한 것이다.

〈표 3〉 계엄사와 합수본부의 지휘 체계





합수본부의 주요 임무는 계엄법 제16조에 명시된 주요 범죄 및 포고령 위반자 수사, 모든 정보 수사기관의 업무를 조정 감독하고 기타 계엄사령관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다 1980. 5. 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후 5. 31. 계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보좌기관으로 국보위를 신설한 이후부터는 합수본부장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보위의 상임위원장을 겸임하게 되면서 합수본부는 국보위의 지시 사항을 실행하는 상명하복관계에 있었다. ●58)

2 국보위의 특수분야 정화 계획

1980. 5. 31. 국보위 신설 직후인 6. 5.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은 ‘국보위 분과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훈시’에서 국가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혼란요인을 배제하는데 최우선적인 역점 9가지를 발표했다. ●59) 그 중 여섯 번째로 ‘종교 빙자 정치 활동 엄단’ ●60)을 언급했고, 이에 따라 국보위는 6. 14. ‘국가의 기강확립 실천 작업 착수’로 이어지고 있다. 이어 6. 26. 김만기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부서에서의 자체 정화가 미흡하면 국보위가 직접 개입한다”고 경고했다.

58) 국방부, 앞의 「불교계 수사경위」.

5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백서』, 227쪽. 전두환 상임위원장의 「국보위 분과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훈시」(1980. 6. 5.).

60) 전두환 전 대통령은 종교분야에 대해 “종교 및 신앙의 자유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원칙하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비록 종교 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정치활동은 이를 보장하되 종교단체, 집회 또는 선교활동 등을 빙자한 정치활동은 강력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위 『국보위백서』 중 「상임위원장 주요 연설문」, 227쪽.

그동안 이 언급은 사회정화 차원에서 종교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문서는 1980. 5. 31. 국보위가 설치되고 난 직후인 6월 초·중순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업무보고」이다.●61)

33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Ⅰ. 기본목표 Ⅱ. 업무체계 Ⅲ. 업무추진계획(1. 정치 외교 국방, 2. 학원, 3. 언론 종교, 4. 노동, 5. 경제, 6. 사회정화, 7. 행정 기타 등 7개 분야 업무추진계획)”의 순서로 되었으며, 작성일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내용을 볼 때 1980. 6. 초순에서 중순경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서는 사회정화 시책방향으로 ‘누적된 고질적 부조리 척결과 국가기강 확립, 국가가치관 재정립, 그리고 사회안정 기반조성에 기여’라는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국민여망 사항을 중점적, 집중적으로 척결하고, 둘째, 자체 정화 불가능 또는 미흡분야를 역점 시행하며,●62) 셋째, 각 부처 책임 하에 지속적 추진을 촉진하고, 넷째,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성을 유지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표 4〉 단계별 추진 과제

단계	1단계(7월중)	2단계(8~9월)	3단계(10월 이후)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정화 · 일반사회 정화 · 사회지도층 정화 · 기타 분야 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정화 · 사회지도층 정화 · 경제 및 기업풍토 정화 · 특수분야 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지도층 정화 · 경제 및 기업풍토 정화 · 특수분야 정화 - 언론·종교계 부조리 척결

위 단계별 추진 과제 보고서는 10월 이후 종교계에 대한 숙정이 이미 6월경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즉, 10·27법난 수사는 투서나 진정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회정화 차원에서 계획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1980. 9. 10.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의 주요 인물 동정기록에도 “국보위

6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25쪽. (우리 위원회, 진상규명 제4호(삼청교육대사건) 57권).

62) ‘자체 정화 불가능 또는 미흡 분야’라는 표현은 ‘불교계 정화계획(45계획)’의 목적에서 재인용되고 있다. 45계획의 목적을 “불교종단의 자체 정비 기대가 곤란한 비리와 불합리 현상”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발본색원 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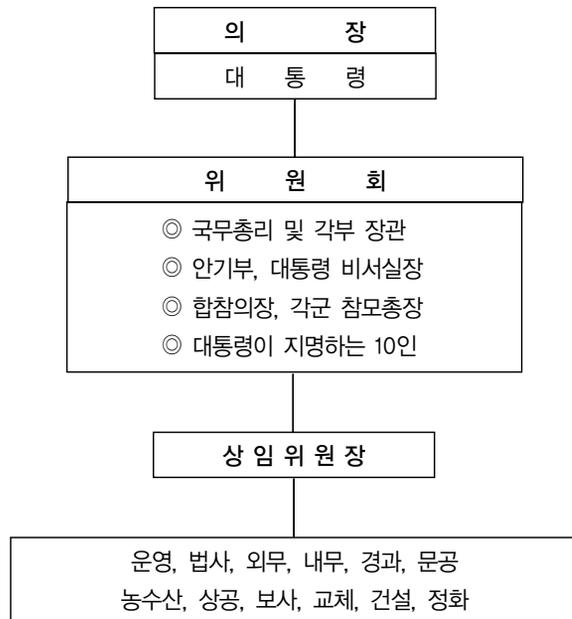


사회분과위에서는 본명을 비롯한 불교계 폭력배 40여명을 숙정하고자 이들에 대한 갖가지 비위자료를 수집”이라는 문안이 기록⁶³⁾되어 있어 9월 이전에 당시 국보위가 조계종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로 확인되고 있다.

1989. 1. 30. 육군본부에서 개최된 ‘불교계 수사경위’ 설명회 당시 국방부는 불교계 정화 수사 지시 문제와 관련해 “국보위 사회정화위원회가 자율정화가 미흡한 분야에는 정부가 개입하겠다고 천명”했고, “국보위가 1980년 6월경 불교계를 정화 수사토록 합수단에 지시했다”⁶⁴⁾는 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첫째, 1980. 6. 국보위가 「업무보고」를 통해 10월 이후 종교계에 대한 사회정화 시나리오를 확정했으며 둘째,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서 불교계 스님에 대한 비리자료를 모집하고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국보위 기구도



63) 합수단 수사자료, ‘B보고 제206호’(1980. 9. 10.), 작성 기관 미상.

64) 국보위와 합수본부의 관계에 대해 1989. 1. 30. 국방부가 제출한 ‘불교계 수사경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보위 지시는 계엄사를 거쳐 수사관계사항은 관례상 합수단으로 직접 하달되는 것이 상례였으며 따라서 합수단은 실제적으로 국보위와 상명하복관계에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국보위의 수사 지시 및 합수단의 수사

1989. 1. 30. 국방부는 ‘불교계 수사경위’ 설명회에서 10·27 불교계 정화수사의 발단이 되었다는 진정 및 투서와 관련하여 ① 종단분규가 극도로 악화되던 시기인 1979년 정부당국에 폭력 및 사기부정비리 수사 처벌 건의 진정 및 고소 사례가 있었고 ② 1979. 10·26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에도 진정 및 고소가 쇄도해 1980. 2. 계엄위원회에서 불교계의 문제점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③ 5·17 계엄확대 조치 후에도 국보위로 각종 불교계 민원이 접수되었고 ④ 지속적인 진정 및 투서가 쇄도하고 사회정화 차원에서 수사해 달라는 스님 및 신도 명의의 진정서가 국보위에 접수되었다고 시기별로 나누어 사례를 예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당국의 방침은 ① 불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했고 ② 개별적인 민원사건으로 처리했으며 ③ 동시에 자율정화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겠다고 경고했고 ④ 별다른 진전이 없자 정부가 개입해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방침이 바뀌어가는 흐름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불교계 수사 지시자와 그 시기에 대해서 국보위가 6월에 수사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⁶⁵⁾ 즉, 국보위는 진정 및 투서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정화 차원에서 애초 계획되었던 대로 불교계를 수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국보위는 불교계 수사에 앞서 8. 22. 문공부가 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자율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월주 총무원장은 불교 자체로 추진하겠다고 하며 국보위의 요구를 거부했다.

1980. 9. 1. 합수단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충우 보안사 대공처장의 증언도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김충우 대공처장이 합수단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국보위에서 ‘수사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65) 국방부는 불교 수사 경위 설명회에서 국보위가 6월에 불교계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으나, 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우리 위원회는 수사 지시자와 수사 시기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980. 9. 10. 월주 스님 등 40여명에 대해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에서 비리 첩보를 수집 중’이라는 자료는 확인했으나, 국방부 설명회에서 밝히 6월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보위의 6월 수사 지시설을 따르기로 했다.



수사관이나 자료는 그대로 있는 채 이학봉 처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동하고 내가 그 자리인 합수단장으로 들어간 것일 뿐 모든 업무가 연속성을 띠고 그대로 수행되었다. 다만 교체된 것이다. 따라서 불교정화 문제는 암묵적으로 진행형 상태로 넘어온 것이나 다름 없다. 내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법난사건을 하기로 암묵적으로 결론이 나 있었던 것 같다. 선택의 여지가 나에게는 없었다. 그러나 내가 부임할 당시 법난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착수되지는 않았다. 또한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서 불교 법난에 관한 테마를 정하고 국보위에는 손발이 없으니 합수단으로 넘어온 것 같다.●66)

이는 김충우 대령이 합수단장에 취임하기 이전에 ‘수사지시’가 있었고, 취임한 직후부터 ‘수사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충우 합수단장은 ‘수사준비’ 시기에 대해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 채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 같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67)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9월 초부터 불교계 정화수사에 대한 내사 및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했다.

월주 스님의 주요 인물 동정기록 : 1980. 9. 10. 국보위 사회분과위 본명 포함 40여명 폭력배 숙정 위해 비리자료 모집 중(B보고 제206호, 1980. 9. 10.)●68)

1980. 9. 19.(금) 김천경찰서 「치안일지」 : 〈중요사건 및 사고내용〉 “3. 전통수리 - 불교계 정화대상 폭력배 실태조사 지시”●69)

월주 스님의 주요 인물 동정기록을 볼 때, 최소한 1980. 9. 10. 이전부터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서 월주 스님을 포함한 불교계 인사에 대해 비리자료를 중심으로 사회정화 차원의 수사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어진다. 또한 김천경찰서 치안일지에서도 불교계에 대한 수사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보위에서는 불교계

66) 우리 위원회, 김충우(합수단장) 면담조사(2007. 3. 28.).

67) 1989. 1. 30. 국방부에서 개최된 ‘불교계 수사경위’ 설명회에서 불교계 정화수사 착수가 1980. 10.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68) 합수단 자료, 앞의 ‘B보고 제206호’.

69) 김천시에는 조계종 제8교구본사인 직지사가 있다.

수사의 관점을 ‘폭력배 숙정’이라는 명분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당시 장○○ 합수단 수사2국장도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때 서울, 전북, 경북 이런 데서 사찰 비리를 아마 합수에서 상당 기간 동안 자료 수집을 했을 거다. 지방마다 그런 사찰을 두 개, 세 개 비리가 있는 사찰이 선정되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가 됐을 거다. 그렇게 알고 있다.●70)

또한 종로경찰서는 9. 7. 자료 「대한불교조계종 실태」와 「조계종 분쟁을 위요한 사건 발생 현황」 등 2건의 문서를 작성했다.

먼저, 종로경찰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실태」에서 ‘문제점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문제점>

- 조계사파 송원 전 총무원장측과 개운사파 월주 현 총무원장 간의 주도권 장악을 위요한 분류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난동 점거 등 폭력사태가 불시에 야기될 것으로 전망됨
- 상기 종파간 추종 승려들의 산발적인 시비, 충돌, 폭력 등 지엽적 불상사가 불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현 공식중인 중정 선출을 위요하고 모략, 중상, 무고 등 고소고발 진정사건이 빈발되고 있는 실정임

(별첨 1 참조 : 조계종 총무원 사건 8건)

<대책>

- 대한불교조계종의 정화를 위한 여하한 폭력사건도 형사입건, 합심 회부 등 엄단 조치 위계임
- 모략, 중상, 무고 등 고소, 고발, 진정, 투서 엄정처리 위계
- 총무원 하위직, 비승적자 전면 수사로 폭력누범자 색출

70)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45계획, 10·27법난의 진실> 녹취록 중 장○○(합수단 수사2국장), 우리 위원회는 2007. 3. 15. 장○○과 면담과정에서 2003. 2. 16. 방영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녹취록을 보여주었으나 “기억이 많이 나지 않지만, 당시 그렇게 말했다면 맞을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 폭력전과자 파악 계속 시찰 실시

(별첨 2 참조 : 조계종 폭력누범자 명단 9명)⁷¹⁾

또한 「조계종 분쟁을 위요한 사건발생 현황」중 ‘판단과 대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하고 있다.

〈판단〉

- 1977. 6. 이후 3년여간 끌어온 중권분쟁을 법정간 충돌 종결, 개운사측 설○ 등 ‘중정 직무집행 가처분신청’ 3심에서 취하, 쌍방 주장했던 중정중심제에서 총무원장중심제로 중헌 개정 등 자체로 수습의 실마리를 찾고 있어
- 만일 관계당국이 개입 수습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 우려되므로
 - 금후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뜻에서 나타난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한 배후 색출 엄단
 - 총무원장 월주 주변의 비리에 대해서는 중단내 정화위원회를 통해 가름
 - 중회를 조속 소집 중정을 선출하도록 신도회에서 개입하는 등 자체 수습을 하도록 하는 방안

〈대책〉

- 관은 엄정중립을 견지하되 폭력 등 부조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치죄
- 우려되는 부분적인 쌍방의 충돌 등 불상사태 예방을 위해 정보 경계활동 강화
- 중정 선출 연후에 조계종 대표 개편 등록 인정⁷²⁾

위의 자료와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국보위의 종교계 정화계획에 따른 수사지시에 이어 합수단에서는 접수된 진정 및 투서를 수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1980. 9. 초부터 불교계에 대해 폭력배 숙정이라는 명목으로 전방위적인 정화대상 실태조사 지시를 경찰서를 비롯한 각 하급부서로 하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충우 합수단장은 내부적인 수사 준비와 함께 불교계에 밝은 보안사 양근하 소

71) 종로경찰서, 「대한불교조계종 실태」(1980. 9. 7.).

72) 종로경찰서, 「조계종 분쟁을 위요한 사건발생 현황」(1980. 9.).

령을 호출하는 등 수사 준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 달이 걸렸다”, “조계종 원로스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들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73)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조사에서도 김충우 합수단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10. 27. 법난이 발생하기 전 한 차례인가 조계종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원로스님들을 몇 분 보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테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불교정화계획을 이야기 했다. 우리들의 의견을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그때 광○ 스님이나 무○○ 스님 등을 만난 것 같다.

4 합수단의 수사 실행

1989. 1. 30. 개최된 ‘불교계 수사경위’ 설명회 당시 국방부는 “1980. 6.경 국보위로부터 불교계를 정화 수사토록 지시를 받았으나”, 합수단은 “당시 과중한 계엄업무 수행으로 수사에 착수치 못하고 미루어오던 중 광주사태 수사 등 주요 사건이 마무리되는 1980. 10.경에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판길 합수단 수사1국장은 우리 위원회와 면담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합수단 입장에서는 김재규 사건이나 광주사건 등을 처리하는데 힘이 너무 많이 소모되어 법난사건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우선순위에서도 한참 밑에 있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였다.●74)

김충우 합수단장도 위와 비슷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73) 국방부, 「불교계 수사경위」(1989. 1. 30.),

74) 우리 위원회, 김판길(합수단 수사1국장) 면담조사(2007. 6. 1.), 김판길 국장은 1979. 10. 26.~1980. 1. 10.까지 합수단 조 정통제국 국장으로, 1980. 1. 10.~1980. 12. 16.까지는 합수단 수사1국장으로 재직하였다.



그 당시는 계엄 해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은 대부분 종결된 상황이었다. 계엄 해제까지 남은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하나를 고려하고 있었다.●75)

김충우 합수단장은 불교 수사가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수사준비를 위해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의 보안사 업무감사반 소속인 양근하 소령을 호출하였다. 이에 대해 양근하 소령은 법난 발생 1주일 전에 호출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법난 발생 1주일 전 김충우 합수단장으로부터 직접 호출을 받았다. 호출된 이유는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이기 때문이다. 김충우 단장은 ‘불교 관련 투서를 정리하여 보고하라’는 임무를 직접 내렸다. 이에 3일간 시일을 요청해 투서 관련 서류를 분석해 보고했다. 그리고 호출된 지 3일 후 전창열 법무관●76)을 추천해 달라고 해 합류시켰다.”●77)

양근하와 합류한 전창열 중령은 이때부터 ‘실무대책반’에서 반장이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대학재학 시절 대불련으로 활동했던 연유로 인해 후배였던 양근하 소령으로부터 ‘보안사에서 불교계 수사가 있을 것이니 형님이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합수2국장이던 조진환 범죄수사단장(대령)으로부터 제안을 받는 등 여러 곳에서 요청을 받아 대공처로 파견되었다.●78)

한편 ‘불교계 정화계획’(45계획)을 누가 수립했는가에 대한 증언은 다음과 같다.

김충우 합수단장은 “양근하 소령과 전창열 중령으로 하여금 불교 수사에 관한 계획서를 만들도록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양근하 소령은 “45계획이라는 명칭은 수사관 교육 당시 문건을 봐서 알게 되었고, 연행자 명단작성은 합수단에서 했을 것이다. 김판길 국장이 다 알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창열 중령 또한 “파견될 당시 양근하 소령으로부터 불교 수사가 개시될 것 같다는 말은 들었지만 수사 대상자 명단에 대한

75) 우리 위원회, 앞의 김충우 면담조사.

76) 당시 전창열 중령은 육군본부 송무과장으로 재직중이었다.

77) 우리 위원회, 양근하 면담조사(2006. 12. 21).

78) 우리 위원회, 전창열 면담조사(2007. 1. 26.).

언급은 일체 없었다. 수사관들에게 법당에서의 기본적인 예의, 종교 수사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만 강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판길 국장은 “수사계획 작성을 직접 한 기억은 없다”며 45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서로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수사계획의 체계상 ‘45계획’의 수립은 김충우 합수단장의 책임 아래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 이유는 김충우 단장의 증언⁷⁹⁾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유 때문이다.

법난 사건을 맡을 즈음 불교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있었다. 만해 스님의 『불교유신론』과 탄허 스님의 『부처님이 계신다』를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불교계 개혁에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 그 서적으로부터 불교정화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진정, 투서를 직접 보지는 않았고, 개략적인 요약본은 보았다. 스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들이 담겨져 있었다. 진정, 투서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수사 파트는 양근하 소령이 담당하였고, 불교정화에 관한 기본적인 프레임은 전창열 중령이 담당하였다.

즉 김충우 단장은 양근하 소령을 호출해 진정, 투서내용을 요약 분석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지시를 받은 양근하 소령은 진정 및 투서내용을 요약 분석한 후 이를 김충우 단장에게 보고했다고 하며, 양근하 소령은 김충우 단장에게 전창열 중령을 합류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합수단으로 호출을 받은 양근하 소령과 전창열 중령은 합수단이 45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업무협조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45계획 내용 속에 양근하 소령의 역할인 진정 및 투서내용 분석이 수사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전창열 중령의 역할인 불교정화에 관한 시나리오 구축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⁸⁰⁾

10. 24. 오후 3시 보안사령부 회의실에서 ‘검거대상자 및 수사 착안 사항’을 주제로 회

79) 우리 위원회, 앞의 김충우 면담조사.

80) ‘45계획(불교계 정화수사계획)’ 내용 안에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교단행정의 마비방지를 위해 정화사업에 부응할 고승 및 엘리트승려 발굴 등의 프로그램과 수사지문 기능, 정화대책 강구 등이 마련돼 있다. 이는 실무대책반을 맡게 될 양근하 소령, 전창열 중령의 업무역할이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45계획 수립에서부터 이미 수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의가 소집되었는데(전창열 중령이 작성한 당시 자료에서는 10. 26), 이 회의에는 합수 1, 2, 3국과 경남(502보안부대) 등 지역 합수단의 수사담당인 보안사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이 회의에서는 ‘45계획’과 검거대상자 명단이 배포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양근하 소령은 “불교정화 수사 D-day가 확정된 상황에서 합수단 수사관들에게 수사 활동시 불교 조직 및 승려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약 20분간 시킨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전창열 중령 또한 “수사관들에게 법당에서의 기본적인 예의, 종교 수사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교육과 강의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표 6〉 불교계 정화수사계획(45계획)●81)

<p>1. 목적</p> <p>불교 종단의 자체 정비 기대가 곤란한 비리와 불합리 현상을 종교계 정화 차원과 국민정신 개조 측면에서 발본색원하여 불교 본래의 호국사상을 부양시켜 국가에 참여토록 유도코자 함.</p> <p>2. 주요 비리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 실권 및 사찰 점거를 위시 위요(圍繞)한 폭력행위 ○ 직책을 기화로 한 부정축재 및 비리행위 ○ 종단 재산관리 및 해외 활동을 위요한 사기행각과 국위 손상 <p>3. 실시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자료를 기초로 검거 및 조사대상자 선정 후 일제 검거 ○ 검거(대상자의 80% 이상)와 동시 1차 보도로 불교계 압박 인상 배제 ○ 수사 착수로 인해 교단행정 마비방지를 위해서 정화사업에 부응하는 고승 및 엘리트승려를 발굴, 일시 종단운영상의 공백 방지 ○ 신병 확보 대상 121명(69명)은 서울과 지방 공히 1차 신병 확보 후 가칭 조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등급에 따라 순화 훈방 및 수사의 강도를 결정 ※ 가칭 조사자문위원회는 참신한 교계의 고승을 선발, 5~6명으로 구성 본 수사기간 중 자문기능 수행 <p>4. 검거 및 수사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역
--

81) 우리 위원회에서 ‘45계획’ 문건을 똑같은 내용의 2종류를 확보했다. 검거대상 숫자만 차이가 있었다. 1차 문서에서는 검거 대상 숫자가 121명이었으나 2차 문서에서는 검거대상 숫자가 69명이었다. 2차 문서의 숫자는 ()로 처리했다.

간부급 : 1국

폭력배 : 2국

배후 및 브로카 : 3국

○ 지방

지역관할 부대에서 검거 수사 후 필요에 따라 서울(지정 수사국)로 이송

○ 유형별 대상 현황

· 부정축재 : 주지급 71명 (24명)

· 폭력배 배후조정 : 고위직위 원로급 4명 (4명), 브로카 9명 계 13명 (9명 계 13명)

· 폭력배 : 42명 총 121명 (32명 총 69명)

○ 지역별 대상 현황

서울 1국 13명 (11명)

서울 2국 16명 (12명)

서울 3국 12명 (10명)

소계 40명 (33명)

경기 511 4명 (2명)

경기 706 9명 (2명)

충남 507 8명 (4명)

충북 509 5명 (3명)

강원 1001 8명 (1명)

강원 107 9명 (5명)

부산 501 3명 (2명)

전북 510 6명 (2명)

전남 505 15명 (7명)

제주 508 3명 (1명)

경북 1002 15명 (5명)

경남 502 2명 (2명)

계 122명⁸²⁾ (69명)

5. 수사 및 조치일정

준비자료 정리 10. 22~23.

회의 소집 10. 24.

검거 10. 26~27.

보도 10. 27~29.

수사자문위 구성 10. 27~28.

수사 착수 10. 28~11. 9.

중간보고

보도

결과보고

수사보도

정화대책 강구

※ 수사 종결목표일 : 11. 16.



6. 행정사항

가. 회의소집

- 일시 : 80. 10. 24. 15:00
- 장소 : 사령부 회의실
- 주제 : 검거대상자 및 수사 착안 사항
- 소집대상 : 합수 1, 2, 3국, 경남(502), 경기(511, 706), 강원(1001, 107), 충남(507), 충북(509), 경북(1002), 부산(501), 전북(510), 전남(505), 제주(508) 지역합수단 수사담당 실무자

나. 행정지원

- 소요 예산 및 기타 행정지원 사항 후달
- ※ 별첨 : 대상자 명단

45계획 수립과정에서 검거대상자 명단 선정과 관련해서는 김충우 단장은 진정 및 투서가 들어온 문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진정, 투서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못해 사전에 사실을 확인하는 등 내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결국에는 수사에 애러가 많이 발생한 사유가 되었다. 10월 초부터 법난 발생일까지 수사준비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당시는 수사관행이 그렇게 이루어졌었고, 그것도 기간을 늘린 것이었다.●83)

당시는 계엄법 적용 상태이고 진정인의 실명이 기록된 투서일 경우는 바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계엄령 하에서는 구속영장 없이도 바로 연행 수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84)

1980. 10. 27. 새벽 합수단 1, 2, 3국을 포함하여 각 지역 합수단은 수사 대상자에 대한 검거에 나서 당일 총 연행 대상자 69명 중 45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배자를 검거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다수의 스님과 신도들이 수사단에 불려갔다. 11. 14. 수사본부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153명(피의자 55명, 참고인 98)이 조사를 받았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보존되어 있는 수사기록에서 162명(승려 112명)이 조사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2) 이 문서에 나타난 지역별 대상의 총합은 122명이다. 이는 문서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45계획'의 대상자 인원은 유형별 대상 현황과 첨부된 명단 등으로 판단할 때 121명이 맞는 것으로 추정된다.

83) 우리 위원회, 앞의 김충우 면담조사.

84) 우리 위원회, 앞의 김판길 면담조사.

5 실무대책반의 활동

국방부에서는 “불교계 수사과정에서 수사로 야기되는 종단운영의 마비를 방지하고 신종단의 출범을 지원하며, 각종 제도의 정비 및 연구를 위해 군법사, 현역장교 중 불교신자, 문공부 관계관 등으로 ‘정화실무대책반’을 구성 1980. 10. 28.부터 1981. 1. 15.까지 운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85)

합수단에 호출된 전창열 중령과 양근하 소령이 실무대책반의 반장과 주요 임무를 맡았다. 전창열 중령은 “10. 24.경 보안사 대공처로 파견”되었으며, “공식적인 파견명령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했으며, 양근하 소령은 “김충우 단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은 시기는 법난 발생 1주일 전”이고 “형식상 실무요원이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82. 3.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계엄사 - 10·26사태와 국난극복』 중 「6. 계엄업무 수행요원 명단」에는 합수단 하단에 “※ 종교정화조정관 : 80. 10. 25 - 81. 1. 24 중령 전창열, 소령 양근하”로 기재되어 있다.●86)

이에 대해 김판길 수사국장은 “전창열 중령의 경우 군내에서 불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 하여 준비단계에서 자문 역할로 활용하다가 업무가 많아지니까 정식으로 파견을 시켜서 근무시킨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증언하고 있다.●87) 전창열 중령은 본인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사후 수습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 종교계 수사와 관련된 문제점(재산환수 등)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수사자문회의가 구성된 것 같고, 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 같다.●88)

양근하 소령은 본인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85) 국방부, 앞의 「불교계 수사경위」(1989. 1. 30.).

86) 육군본부, 앞의 책, 490쪽

87) 우리 위원회, 앞의 김판길 면담조사.

88) 우리 위원회, 앞의 전창열 면담조사.



김충우 단장이 투서내용 요약보고를 나에게 맡긴 이유는 ‘위낙 내용이 많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군법사들과 최○○ 신도회장 등을 접촉해 불교 동향을 파악한 결과 ‘불교계가 왔든 데까지(바닥까지) 왔다’는 의견이었다. 광○ 스님, 법○ 스님 등을 접촉했다.●89)

즉 전창열 중령은 수사자문회의를 포함해 새 종단의 구축을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했고, 양근하 소령은 진정 및 투서의 내용을 요약 분석하는 한편 불교계 내부의 여론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는 김충우 단장이 증언하고 있는 “수사파트는 양근하 소령이 담당하였고, 불교정화에 관한 기본적인 프레임은 전창열 중령이 담당하였다”는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10. 27. 법난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창열 중령 등이 군법사들의 파견을 요청하여 실무대책반에 합류시켰다. 권○○ 소령, 최○○ 소령, 이○○ 소령 등의 군법사들을 포함시킨 실무대책반은 가든타워호텔과 창덕궁 옆 운당여관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11. 3. 종회 준비와 ‘정화중흥회’ 구성을 위해 역할을 나누어 스님들을 접촉했고, 소장 승려들과 함께 ‘정화중흥회’ 구성안 등을 마련했다.

1989. 1. 30. 설명회 당시 국방부는 실무대책반의 역할이 ▷불교계 수사에 따른 교계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집, 수사당국에 전달 ▷중앙종회의 개최(1980. 11. 3.)로 종헌 개정하여 불교정화중흥회의 발족하도록 중앙종회 해산 ▷합수단에서 이첩된 징계처리대상자 심의 참여 및 흥국사 집단참선, 신도회의 정비 유도 ▷『주간대한불교』 간행물 폐간에 따른 『불교신문』 변경 창간 주선 및 불교 관련 홍보대책위원회 구성 ▷원로종신스님의 대통령 면담 주선, 13차 세계불교도대회 참가 주선, 불교진흥원 지원금 재개 등의 신종단 출범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밝히며, 나아가 ▷종헌, 종법의 개정안과 불교관련법 등을 연구하여 정화중흥회의 내 기획연구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한 것 등으로 발표했었다. 또한 실무대책반에서는 ‘자율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습업무를 추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합수단의 수사과정에서 실무대책반의 역할이 다양하게 추진되었다는 설명이었다.

89) 우리 위원회, 앞의 양근하 면담조사.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존 문서를 검토한 결과, 실무대책반의 핵심으로 활동한 전창열 중령과 양근하 소령, 이 두 조정관의 역할이 아래와 같이 '45계획 실행과정에서 불교계 정화수사의 기본방향과 대책 수립까지 전반적인 작업을 기획 조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실무대책반의 역할이 합수단의 수사업무 보조 차원을 넘어서, 합수단의 수사준비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3단계에 걸친 전반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면밀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대책수립까지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충우 합수단장은 “실무대책반 인원 구성은 가급적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불교를 많이 아는 사람으로 구성했으며, 실무대책반은 상근을 시켰고 업무를 매일 보고하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실무대책반장인 전창열 중령이 수기로 작성한 「불교정화의 실태와 전망」⁹⁰⁾에서는 10. 25.부터 11. 1.까지의 진행사항과 예정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서술되어 있다. 수기로 작성된 아래 내용은 메모 그대로 「불교계 정화방안 요지 - 그 실태와 정화대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표 7〉 불교정화의 실태와 전망

<p>1. 10월 25일</p> <p>가. 불교정화의 취지와 필요성 토의</p> <p>나. 불교계의 문제점 정리 파악</p> <p>다. 정화의 기본방향과 대책수립</p> <p>1단계 : 수사력을 통한 계기 조성 조직폭력배, 부정축재승, 사이비승려</p> <p>2단계 : 자율정화기구의 탄생과 활동 정화작업의 자율적 추진 종단발전의 백년대계 수립</p> <p>3단계 : 종합종단의 출범 및 정부의 지원 법 - 정비</p>

90) 전창열 중령은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과정에서 위 수기(手記) 문서에 대해 본인의 글씨체임을 인정하고 있다.



제도의 승인
육성대책의 실시

2. 10월 26일

- 가. 수사관 회의
- 나. 종교의 독자성과 특수성에 따른 수사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 교육
(중략)

3. 11월 1일

- 가. 전국신도회 총회 개최
 - 1) 정부의 정화작업 찬동
 - 2) 신도 적극 참여 촉구
 - 3) 후유증의 조속한 수습 및 육성대책 촉구
- 나. 중회 성원을 위한 대책
 - 1) 중헌개정 및 해산결의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유고의원 사표수리로 재적의원수 감소 작업 개시
 - 2) 연행된 중회의원 및 원로스님 중 사안 경미한 자 최우선적 석방 건의

또한 전창열 중령은 ‘45계획’ 안에 삽입되어 있는 ‘수사자문회의 구성안’에 대해서도 “본인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며, 사건이 발생한 후 사후 수습방안을 강구하다 보니 종교계 수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명망 있는 스님들로부터 자문이 필요해 구성하게 된 것 같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자문회의가 사건 발생 이전에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수사자문회의가 실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계획의 일부였다”고 부정하고 있다. 전창열 중령이 작성한 수기 문서에 메모된 수사자문회의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91)

91) 전창열 중령은 우리 위원회의 2차 면담(2007. 10. 19)에서 수사자문회의의 구성안은 본인의 계획이며, 10. 27. 이전에 고○○, 무○○ 스님을 개별적으로 만나 협조를 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다른 스님은 10. 27. 법난 수사 이전에 연락하거나 직접 만난 사실은 없고, 10. 27. 법난 수사 이후에는 고○○, 무○○, 이○○ 스님과 만난 적은 있으나 김○○, 임○○, 윤○○ 스님 등과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 문서의 작성 시점에 대해서도 27일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기억을 되살려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문서 내용상 믿기 힘든 진술이라고 판단된다.

〈표 8〉 불교정화의 실태와 전망 중 수사자문회의의 관련 내용

- 성격 기능
 1. 자율정화 인상
 2. 종교적 전문지식과 소양 활용
- 수사자문회의의 선발 기준
 1. 승려일 것
 2. 종권 다툼 및 부정축재 등에 관련 없을 것
 3. 학식과 덕망이 종단내에 존경을 받을 것
 4. 현실참여 의식 및 공정한 처리능력이 있을 것
 5. 30~50대 이내의 연령층(활동이 자유로울 것)
- 선발구성 절차 : 보안 유지에 중점
 1. D-1 : 선발기준 해당자 중 접촉 가능한 서울지역 승려 2명 위촉, 일정 장소 위치
고○○, 종로구 대각사
무○○, 종로구 조계사
 2. D일 : 동일 22까지 완전 구성
위 두 승려와 의논하여 검토 및 소집책 강구
 3. D+1 : 활동 개시
- 수사자문회의의 활동의 전제요건
 1. 검거자별 범죄개요 제시 준비
중정 및 시경자료 종합정리 — D일 및 D+1일
 2. 실무장소 결정시 고려사항
 - 가. 보안유지에 적합할 것
 - 나. 업무연락이 지역적 시간적으로 용이할 것
 - 다. 숙식에 편의로운 장소일 것
 - 라. 소요예산은 불교진흥원 기금 활용
- 수사자문회의의 구성원 분석(성명, 현 직책, 비교 순)

고○○(불광회 고문, 50세, 대각사)
 무○○(포교원장, 조계사)
 이○○(동대 불대학장, 경국사)
 김○○(동대 불대교수)
 임○○(주지, 청년 불교활동 지도, 대성사)
 윤○○(승려, 송암사 암자)



수사자문회의의 구성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윤○○ 스님과 임○○ 스님은 우리 위원회와 면담과정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참여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92)

‘45계획’에 수사자문회의 구성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실무대책반장으로 활동한 전창열 중령이 불교계 정화 수사에 대해 관여하는 과정에서 기획 및 조정 역할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실무대책반의 역할은 10. 27. 불교계에 대한 수사가 실행되면서 더욱 증대되었고, 전창열 중령이 실무대책반장을 맡았다.

구성원으로서 전창열 중령, 양근하 소령을 비롯해 군법사와 대불련 후배인 민간인, 문공부 관계자가 충원되었다. 군법사 신분으로는 권○○, 이○○, 최○○, 송○○, 허○○ 소령이,●93) 민간인으로는 명○○, 이○○가 참여하였고,●94) 문공부 종무1과장 정덕용이 업무보조 역할로 차출되었다.

군법사의 차출에 대해 전창열 중령은 “이○○, 권○○ 법사는 같은 근무지에서 일한 적이 있어 내가 천거했고, 명○○, 이○○는 대불련 활동을 같이 한 사람들로 자문을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소령은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육군 제3사관학교 보안부대를 통해 10. 29. 오전 7시까지 서울 보안사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고 가 보니 권○○, 최○○ 법사가 와 있었다. 전창열 중령은 1군단 근무 때 알고 있었던 사이였다. 대불련 출신들 중 명○○, 이○○가 관심을 갖고 자주 내왕했다. 이후 추가로 송○○, 허○○ 법사를 불러들였다”고 증언하고 있다.●95)

92) 우리 위원회 면담조사, 윤○○ 스님(2007. 3. 14), 임○○ 스님 (2007. 3.18). 고○○ 스님과 김○○ 스님은 돌아가셨으며, 무○○ 스님은 면담을 거절했다.

93) 당시 군법사 소속 및 계급은 다음과 같다. △ 권○○(27사단, 소령) △ 이○○(3사교, 소령) △ 최○○(군수사, 소령) △ 송○○(해군본부, 소령) △ 허○○(5전비, 소령)

94) 명○○과 이○○는 민간인 신분으로 실무대책반에 참여한 특이한 경우이다. 전창열 중령과 양근하 소령, 명○○, 이○○ 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경환, 『조영래 평전』(도서출판 강, 2006. 1.), 137쪽에 대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1965년 광○은 봉은사 주지 일을 맡으면서 대불련 수도부 대학생 수도원을 건립한다. 이어서 서울법대, 동국대, 경희대 등 불교연합회 대학생 구도부가 조직된 것이다. …, 명○○, 전창열, … 등 서울법대생과 이○○(동국대), … 등이 주된 멤버였다. 주지 광○ 스스로 초대 지도법사가 되었다.”

95) 우리 위원회, 이○○ 면담조사(2007. 1. 18.).

즉 군법사인 권○○, 이○○, 최○○ 소령이 먼저 차출되었고 송○○, 허○○ 소령은 나중에 추가로 합류(10. 31.)시켰다는 것이다. 민간인 명○○, 이○○는 전창열 중령의 대불련 후배로서 참여했고, 문공부 관계자인 정덕용 과장은 합수단의 업무협조를 받은 문공부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96)

셋째, 실무대책반에서 작성했다는 「자율정화계획서」의 실제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그 내용과 영향력이 아래 서술하는 것과 같이 공권력을 통한 수사가 개시됨과 동시에 기존 중앙총회의 해산과 신종단의 모체인 정화중흥회의 발족을 위한 전 로드맵을 심도 있게 기획·조정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10. 25. 전창열 중령과 양근하 소령이 참가한 모임●97)에서 토의를 통해 ‘불교정화의 취지와 필요성’과 ‘불교계의 문제점’을 정리 파악한 후 정화의 기본방향과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한 문건이 「불교계 정화방안 요지 - 그 실태와 정화대책」이며, 그 취지는 아래와 같다.

국가백년대계의 확립은 국민의 의식구조 혁신을 통한 정신개조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불교의 정화는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위하여 당국은 불교종단의 자율정화에 일임한 바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효과나 진척이 없음을 볼 때 자력갱생의 여력이 없음으로 단정하고 또한 교계의 뜻있는 참신한 승려와 신도의 여망에 따라 부득이 당국에서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불교계 정화방안 요지 - 그 실태와 정화대책」에서는 불교계의 문제점을 ▷종단 운영의 전근대성과 내분 ▷승규의 문란 ▷승려 개인의 비리와 부정의 증대 ▷비불교적 매불행위의 성행과 불교의 무속화 ▷종단의 난립 등으로 정리했으며, 정화의 기본방향과 대책은 다음과 같다.

96) 우리 위원회, 앞의 정덕용 면담조사.

97) 이 토의 자리에는 전창열 중령, 양근하 소령이 참석했다는 것은 파악이 되고 있으나, 그 외 참석자는 파악할 수 없었다. 전창열 중령도 이 모임의 참석자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우리 위원회 2차 면담조사(2007. 10. 19.)). 이 모임에서 위 내용에 대해 토의하였다는 기록은 전창열 중령이 쓴 ‘불교정화의 실태와 전망’으로 남아 있다.



〈표 9〉 정화의 기본방향과 대책

이행단계	정화의 기본방향과 대책
제1단계	수사력을 통한 계기 조성 - 종단내외의 조직적 폭력배의 색출 엄벌 - 부정축재승의 검거 및 선별 통보처리 및 부정축재 환수를 통한 불교중흥기금 조성 (처벌의 극소화) - 사이비 승려 및 신도의 색출 선별 처리
제2단계	자율정화위원회 구성 및 정화 위임 - 자율정화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실무위원회, 원로회의) - 자율정화위의 과제
제3단계	신종단의 출범 및 정부 지원 - 1981. 1. 1. 부로 신종단 출범 및 업무인수 - 자율정화위원회의 정당한 건의에 대한 법·제도 정비 및 인허가
문제점	- 특정 종교 및 종파에 대한 탄압 인상 우려 - 사찰업무의 일시적 마비현상 초래

특히 이 문서에서는 불교계의 최근 문제점이 사건으로 표출된 주요 사례 중 1979. 2. 이후의 중요한 사건을 아래의 두 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있고, 이는 그동안 신군부가 개운사측을 바라본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10〉 월주 총무원장 출범 후 발생한 주요 사건 사례

발생 일시	사 건	내 용	비 고
1980. 5. 13. 08:20	총무원 난입 (개운사)	개운사 월주측 승려 등 30여명이 집단 난입 강제적으로 사무승계 현지(現址)	1980. 6. 4. 계엄사에 고발 수사중 (개운사)
1980. 8. 19. 15:10	윤○ 피납 (112신고, 신고인 불상)	현 집행부 불법단체 강패 운운 비방, 견지동 노상에서 조사국장 종○ 외 3명이 구타 등 폭력으로 강제 피납	총무원장 인계 - 종○(조사국장) - 김○○(통계계장) - 윤○ 무혐의 - 양○○(경안계장, C급) - 가○○(총무계장)

넷째, 실무대책반이 10. 27. 이전 시기에 「불교계 정화방안 요지 - 그 실태와 정화대책」을 준비 작성하고 있을 때, 동시에 합수단과의 협조 아래 문공부에서도 내용이 거의 비슷한 「불교계 정화추진 방안」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98)

〈표 11〉 불교계 정화추진 방안

이행 단계	정화의 기본 방향과 대책 수립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화계기 조성 ※ 수사력을 통한 비리 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결대상 - 사회여론 조성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정화 추진 ※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 중앙종회로부터 종단전권 수임받아 잠정적으로 종단업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정화위원회 구성운영 - 중앙종회 소집 및 해산 - 자율정화위의 과제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합종단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시기 : 1981. 1. 1 - 종단발전을 위한 지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문제점과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단법통의 계승체계 확립 - 자율정화의 구성운영의 합리화 - 후유증에 의한 불교계 침체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첨 1. 자율정화위 조직도(안) ▷ 별첨 2. 종단기구현)

위 2건의 문서에서는 불교계 수사의 진행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1단계에서는 ‘수사력을 통한 비리 척결을 통해 정화계기 조성’을 하고, 제2단계에서는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종회로부터 종단의 전권을 수임 받아 잠정적으로 종단업무 처리’한 후, 3단계에서는 ‘신종단을 구성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어 체포와 수사가 개시된 10. 27. 당일에는 군내의 불교신도 및 지휘관에 대해 수사와 관련한 소식을 전파하고, 불교신자 및 국민에게 정화의 필요성을 전달할 대책을 토의한 후 보도 문안을 작성했다. 이런 내용이 10. 28. 「사이비승려 및 불교계내 폭력배 소탕에 관한 계엄사 발표문」으로 나오게 되었다.

98) 문공부, 「불교계 정화추진 방안(1980. 10.). 이 문서의 작성기관이 문공부라고 표시된 기록은 없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난이 발생한 후인 10. 31. 당시 전창열 중령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군법사에게 배부할 유인물’ 중 하나인 ‘불교계 정화추진 방안(문공부)’이라고 메모한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2007. 1. 18. 면담한 당시 군법사 이○○ 소령은 불교계 정화수사와 관련한 문서를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개략적이거나 문공부에서 작성한 문공부 안을 보았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고, 그 내용은 불교계 비리와 함께 불교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등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6 소결

1980. 5. 31. 설치된 국보위는 사회정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종교계 또한 정화대상이 될 수 있다고 천명하였고 ‘자체정화가 미흡하면 국보위가 직접 개입 한다’고 경고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1989. 1. 30. 국방부가 불교계 정화 수사경위에서 1차로 해명한 적이 있는 국보위 6월 수사지시서에 대해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1980. 6. 초·중순 경 국보위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총 33쪽의 「업무보고」를 입수하게 되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국보위는 사회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계획하고 있었다. 1단계는 7월 중, 2단계는 8월~9월, 3단계는 10월 이후로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 중 종교계는 특수분야의 정화대상으로 3단계인 10월 이후부터 숙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국보위의 수사 지시를 받은 합수단은 9월 초순부터 조계종단을 정화수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수사준비에 착수하였다.●99)

당시 보안사의 월주 스님에 대한 주요 인물 동정기록에는 “9. 10. 국보위 사회분과위에서 본명을 비롯한 불교계 폭력배 40여명을 숙정하고자 이들에 대한 갖가지 비리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직지사를 관할하고 있는 김천경찰서의 1980. 9. 19. 자 치안일지에도 “불교계 정화대상 폭력배 실태조사 지시”가 전통수리로 기록되어 9. 10. 이전에 조계종에 대한 국보위의 수사 지시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위 문서와 증언을 종합했을 때 첫째, 1980. 6. 국보위가 10월 이후 종교계 정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과 둘째, 1980. 9. 전후에는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가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를 대상으로 비리자료를 수집하고, 합수단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국보위가 진정 및 투서 유무나 그 내용과는 관계없이 사회정화 차원에서 당초부

99) 김충우 합수단장은 우리 위원회 면담에서 “9. 1. 부임했을 때 이미 조계종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박○○ 장로와 조계종 중에서 조계종 수사로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만약 본인이 종교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 계열의 박○○ 장로건을 수사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터 종교계 중 하나를 수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합수단은 1980. 10. 27. 연행 대상자 69명 중 45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다수의 스님과 신도들이 수사단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11. 14. 수사본부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153명(피의자 55명, 참고인 98)이나, 우리 위원회는 현재 보존되어 있는 수사기록에서 162명(승려 112명)이 조사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계종에 대한 수사착수가 시작된 후 합수단은 첫째, 불교계에 밝은 군장교 2명을 호출¹⁰⁰하여 그동안 계엄당국에 접수된 진정 및 투서를 분석하라고 지시했고, 둘째, 일선 경찰서에 큰 사찰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승려들에 대한 비리자료를 수집하라고 하달하였으며, 셋째, 문공부에는 「불교계 정화 추진방안」 작성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충우 합수단장은 불교계를 잘 알고 있는 보안사 업무감사반 소속 양근하 소령과 육군본부 송무과장 전창열 법무관을 호출하여 진정 및 투서를 분석하도록 지시했고, 이들은 「불교계 정화방안 요지 - 그 실태와 정화대책」 작성했다.

즉 합수단은 그간 접수된 진정 및 투서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국보위 지시 아래 일선 경찰서를 통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문공부 정보 제공, 불교계 출신 군장교의 참여로 다각적인 수사준비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국보위와 합수단 출신 인사들은 불교계 내부의 진정 및 투서가 쇄도하여 부득이 수사를 착수하였다는 해명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합수단 소속 실무대책반의 활동 내용은 또한 합수단의 공권력을 통한 10. 27. 수사 개시 이후 발생하게 될 불교계 내의 중무 마비 사태를 대비하여 원로 스님을 접촉하여 동조를 획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10. 27. 이전에 김충우 합수단장이 조계종 원로 승려들을 방문하여 곧 발생할 불교계 정화 수사계획을 설명하였다는 것과 양근하 소령과 전창열 중령이 평소 친분이 있는 스님을 접촉하였고, 이후 45계획에서 정화에 부응하는 교계 승려를 참여시키는 수사자문회의 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100) 1980. 10. 27. 법난사건 실행 이전에 합수단이 양근하 소령과 전창열 중령을 호출해 파견근무를 시키는 과정에서 '진정 및 투서 분석 보고', '불교정화 시나리오 작성' 등을 지시한 것은 이들이 합수단 수사업무의 단순한 보조업무가 아니라 실무대책반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음을 판단하게 한다.

정화중흥회의 발족 및 활동

그 결과 합수단에서는 「불교계 정화수사 계획 - 45계획」을 작성하게 되었다. 45계획에서 밝힌 불교계 수사의 목적은 “종교계 정화 차원이며 국민정신 개조 측면에서 불교계의 비리와 불합리 현상을 발본색원하여 불교 본래의 호국사상을 부양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는 다시 말해 불교계 수사가 순응종교를 벗어나 대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종교, 저항종교의 성장을 봉쇄하고 나아가 “기타 종교계의 경각심을 고취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1980. 10. 27. 합수단에 연행된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간부들과 교구 사찰의 주지급 승려들은 범죄 혐의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존에 맡고 있던 모든 직책에서 사직할 것을 강요받았다.

조계종 집행부의 종단업무가 중단된 상황에서 합수단과 실무대책반은 먼저 재경 원로 및 중진 스님들을 참여시켜 회합을 갖는 등 수습방안을 강구했다. 물론 이것은 이미 입안된 불교계 정화프로그램 단계인 2단계의 수순에 따른 것이다. 결국 이 회합의 결과물인 ‘수습준비대책모임’ → ‘종단수습대책위원회’ → ‘중앙종회 해산’ → ‘정화중흥회의’까지 연결되어 새로운 과도기 종단을 구성하게 된다.

이어 1980. 11. 5.~6. 정화중흥회의가 발족되고, 정화중흥회의법을 통과시켜 한시적인 종단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정화중흥회의에서는 정화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화대상 승려들에게 승적 박탈, 공권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고, 흥국사에 순화교육장을 설치하여 2개월간 연금했다.

한편 정화중흥회의 출범 이후 종단의 운영 관련 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설정한 조사의 범주를 넘는 영역이라고 판단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다.

1 조계종단의 10·27법난 초기 수습

10. 27. 대규모 연행사태 발생 후 합수단과 실무대책반에서는 재경 원로 및 중진스님 몇몇을 대상으로 ‘수습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모임을 주선했다. 이 모임을 기점으로 수습준비대책모임, 종단수습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아래는 10. 28.●101)부터 11. 2.까지 급박하게 이루어진 수습 모임과 그 논의내용이다.

〈표 12〉 10. 28. ~ 11. 2. 조계종 내부 수습 모임 내용●102)

시기	논의 내용
10월 28일 10시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대각사 주지실 ◇ 참석자 : 고○○, 이○○, ●103) 무○○ ◇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오후 4시까지 동국대 이사장실에서 연락 가능한 재경원로 만나 사태 수습책 논의 합의
10월 28일 오후 3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대공처장실 ◇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회소집 및 사태 수습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보도방안 강구
10월 28일 오후 4시 ~ 밤 9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동국대 이사장실 ◇ 참석자 : 박○○(동국대 이사장, 조계종원로회의 의장), 김○○(원로스님, 보국사), 강○○(원로스님, 칠보사), 고○○, 이○○, 무○○ ◇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공부 중무담당관 참석 ‘불교정화의 취지와 방향’ 설명 - 종회소집 절차와 일정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30. 오후 5시까지 종회의장과 부의장 최대한 수소문 · 그때까지 발견하지 못할 경우 원로회의 의장이 소집 비상책 강구 · 종회 소집과 동시에 원로회의 소집, 종회 소집일 넘기지 않음 - 가칭) 수습대책위원회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로회의 : 원로스님 · 상임위원회 : 중진스님

101) 10. 28~29. 사이에 긴급하게 이루어진 회합은 당시 합수단 내부의 공식 문건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나 정확한 날짜 표기가 없는 부분이 있다.

102) 실무대책반장 전창열 중령이 작성한 기록으로, 이 모임에 계속 참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 모임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위 기록을 작성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 위원회 2차 면담조사(2007. 10. 19.)에서 대각사의 모임, 합수단장실 모임, 동국대 이사장실 모임에 대해 참가한 사실이 있으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시기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회 : 소장스님 · 원로회의 명단작성, 그 과정에서 5명 후보 삭제하고 8명 추가 · 중진스님 후보 명단 6명 확정 - 10. 31. 오후 3시 조계종 총무원장실에서 중진 승려와 재경 원로 스님들이 참석^{●104)} 하는 가칭 중단수습대책위원회 개최 결정^{●105)} - 향후 예정사항 6가지 과제^{●106)} 수시 점검 ※ 정화대상자 선별 토의^{●107)}
<p>10월 31일 오후 3시 ~ 저녁 8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수습준비대책위원회 ◇ 장소 : 조계종 총무원장실 ◇ 참석자 : 원로스님 영○, 석○, 자○과 중진스님 23명 ◇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30. 전국 사찰 전면수색 여파로 어수선한 상황 발생^{●108)} - 종회 소집권 논의 - 오후 4시경 문공부 중무국장과 합수본부측, 수사 취지와 진행사항 설명^{●109)} - 대책위원 50명(신도측 7명 포함)과 상임위 20명(비구15, 비구니3, 신도 2)을 결정^{●110)} - 11. 1. 상임위 회의 소집 발표
<p>11월 1일 오전 10시 ~ 오후 3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제1차 수습대책회의 ◇ 장소 : 조계종 총무원장실 ◇ 참석자 : 중진승려 40여명 ◇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원 선출과 함께 종회 개최 사항 상임위원 위임 - 종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 토의^{●111)}
<p>11월 1일 오후 5시 ~ 오후 7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제2차 수습대책회의 ◇ 장소 : 전국불교신도 회장실 ◇ 참석자 : 관계관 및 신도회 간부 ◇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화위원회에서의 승려와 신도간 협력방안 모색 - 신도의 중단 운영 참여에 따른 부작용 문제 등 검토
<p>11월 1일 오후 7시 ~ 밤 12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제3차 수습대책회의 ◇ 장소 : 가든 타워호텔 1406호 ◇ 참석자 : 각 문중대표 4명^{●112)} ◇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로위원 명단 재검토 월○ 스님(석굴암 주지) 1명 추가 - 중진위원 명단 재검토 · 중진위원 정원 확대 검토(30-50명)

시기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진스님 11명 추가^{●113)} - 정화위원회 신도 참여 문제 : 원칙적 찬성하나 승려의 계율 등 종단의 본질적 관여하는 것은 제한^{●114)} - 종회 개최 과정에서 의결 적정수 맞도록 참석 불가능한 승려 사전 사표 수리 받아 종회 개최 이전 종회의장 제출토록 추진 - 종진 정화위원 선출은 종회에서 전형위원에게 위임, 의장단과 부의장단은 각본 구상해 최 대한 정화취지와 방향에 맞도록 협조 취득
<p>11월 2일 오전 10시 ~ 오후 2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조계종 총무원장실 ◇ 참석자 : 원로의장 박기종 스님 외 14명 ◇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회 개최에 따른 의제와 중헌 종법상 문제 검토 - 원로 종진 승려 석방 재건의 의논^{●115)}

- 103) 이○○ 스님은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본인은 “이런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이○○ 법사가 찾아와 총무원장을 맡아 달라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우리 위원회, 이○○ 면담(2007. 10. 18.).
- 104) 원로스님 28명과 종진스님 32명의 명단이 작성되었다.
- 105) 가칭)종단수습대책준비위원회를 10. 31.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개최 방법은 원로회의 의장이 참석대상자들에게 총무원 총무과 직원을 통해 소집하기로 했다. 또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10. 30. 오전 9시경 박○○ 원로회의 의장 등 수명의 승려가 총무원의 사무집행 상태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조계사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위 모임은 10. 30. 이전인 10. 28~29.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106) 예정사항으로는 1. 종회의장 및 부의장 수소문 결과 점검(대각사 주지실), 2. 가칭) 수습대책준비위원회 준비 진행사항 점검. 정부 지원방안(연락관계) 검토, 3. 승려 및 신도 전문위원 후보 선정 토의, 4. 상임분과위원회의 기구 편성 검토, 5. 신도회의 대책준비위원 후보 확정, 6. 승려와 신도간의 원활한 협조 방안 검토이다.
- 107)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모임에서 논의된 ‘정화대상자 선별 토의’ 기록을 확인했다. “종교적 차원만 고려”한다는 문안이 있으며 19명의 스님들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훈방’을 건의하는 서류이다. 그 평가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범명 옆 년에 “젊고 전도 유망, 선행운수”, “장래성, 성격은 과격”, “원로, 평생 수행승”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 108) “▷10·27 조치는 좋았으나 너무 과다하게 보도되었다 ▷정화 해결방법이 정부에서 1단계로 정화 중용을 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수사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 ▷현재 신자들의 시주 거부로 진행 중인 법당 보수 공사가 중단,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다 ▷여타 종교와 종단의 비리는 외면하고 하필 조계종만 수사하느냐 ▷무장 군경이 총칼을 메고 승려 방까지 수색한다는 것은 일제시대 불교탄압 정책과 다를 바 뭐 있느냐 ▷TV 등 매스컴으로 승려들에게 안심하라 해 놓고 승려를 잡아갈려는 것 아니냐고 정부 불신 ▷현재 46명으로 발표했지만 각 사찰 스님들의 연행 여부를 알아보니 약 200여명이나 되는데 이는 계속 확대 수사해 가고 있다는 징표가 아니냐고 의혹적인 발언.”
- 109) “정부의 정화취지 설명한 후, 수사 확대는 중지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나 강패와 악질브로커 현 연행자 및 관련 참고인에 대한 수사와 출두지시 요구 등은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합수측은 1단계로 혐의가 가벼운 중진급 승려(6명 : 과도기간 중 종단지도자)는 석방조치할 것이며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단계별로 석방할 예정이다. 연행된 승려의 신병 처리는 최대한 수습대책위나 종회에서 결정되는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 또는 위임하게 될 것이므로 속히 종회 소집에 따른 속의를 해 달라.”
- 110) 산회 후 승려대표가 신도회장실을 방문해 회의결과를 설명하자 신도측에서는 할당인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불참석 의사를 토로하자 승려측에서 대책위 60명(신도 10명 포함), 상임위 21명(비구11, 비구니5, 신도5)으로 재조정했다.
- 111) 문제점으로는 △당국의 수사확대 중지 요청, △원로스님 석방 건의(월○, 월○), △보도 대책 강구(매스콤 이용 종회 개최 공고), △출신문중별 정화취지와 방향 설득, △도 문화재 직원을 통한 대동 상경 협조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중앙중회 개최일이 11. 3.로 정해진 가운데 중회에 대한 준비사항이 결정되었다.

우선, 중회에 상정될 의안으로는 ▷중단정화대책위원회 발족의 건 ▷중단정화대책위원회 위원 인준의 건 ▷중단 종권이양의 건 ▷중단 간부인사 처리에 관한 건 ▷중앙중회 자진해산에 관한 건 등이다. 또한 ▷종권이양의 범위^{●116} ▷총무원장 불신임 절차^{●117} ▷간부인사처리^{●118}가 논의되었다. 또한 기구별 소관 업무로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회(기획분과위원회, 운영분과위원회, 교화분과위원회, 규정분과위원회)로 정하였고, 11. 3. 발표할 중앙중회 의장 황도건 명의의 성명서까지 준비하였다. 또한 정화중흥회의 임원 명단 선정은 ▷원로 10명 ▷중진 28명 ▷소장 13명으로 확정하였다.

2 중앙중회 해산과 정화중흥회의 발족

계엄당국과 문공부의 지시 아래 11. 3.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중회의원 35명이 참석^{●119}한 가운데 ‘조계종 중앙중회’가 개최되었다. 이 비상중회는 기존 중앙중

112) 참석자는 고○○(범어서 문중 대표), 김○○(법주사 문중 대표), 이○○(해인사 문중 대표), 박○○(통도사 문중대표)임.

113) 추가된 11명은 △정○○ △황○○ △조○○ △장○○ △김○○ △밀○○ △유○○ △김○○ △최○○ △김○○ △박○○ 이다.

114) 정화위에 신도가 참여하는 문제는 논란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30 전국 사찰 전면수색 사건 이후 상경하게 된 봉암사 활○ 스님은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2007. 3. 20.)에서 “서울 운당여관에서 전창열 종령이 ‘새로운 중회를 구성하는데 신행단체 대표 10명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해 ‘중회에 재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면 승가의 존엄성과 불교계의 위계가 사라진다’고 반대의견을 내며 토론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115) 석방을 재건의한 원로 중진승려의 명단은 △윤○○(통도사 조실) △최○○(불국사 조실) △최○○(범어서 재무) △이○○(불국사 총무) △박○○(실상사 주지)이다.

116) 종권이양의 범위에서는 “중정 및 총무원에 속하는 사항과 원로회의, 중앙중회 및 규정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기타 중헌 중법에 의한 기구 중 본 말사를 제외한 중단 각종기구에 속하는 모든 권리의무사항임.

117) 총무원장 불신임 절차는 1. 중앙중회 의결(중헌 제37조 1항 4호)에서 재적의원 3/2 이상의 찬성 결의가 2. 원로회의 의결(중헌 제29조 제2항 및 32조 2항)에서 출석의원 2/10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 이전에 총무원장은 사표징구 처리가 타당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118) 간부인사 처리(중헌 제37조 2항 1호)는 총무원장이 중정의 권한을 행사한 중단직원 및 사찰주지 임명행위는 무효하다는 결의를 재적의원 2/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19) 총 68명 중 17명이 사표를 낸 결과 남은 재적의원 51명 중 35명이 참석하여 3/2 이상(34명)을 가까스로 넘겼다.

회를 해산하는 동시에 종단 정화중흥회의를 구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회의 개최 결과, 의결사항으로는 ▷대한불교 조계종 정화중흥회의 발족^{●120} ▷중앙종회 해산 결의 (중흥회의 발족과 동시에 자동해산) ▷총무원장 사퇴서 수리 ▷정화중흥회의 운영에 관한 중법 및 세칙은 중흥회의 위임 ▷중흥회의 의원 인준^{●121} ▷종회의장 성명서 발표 및 사직, 해산 등이었다.

그러나 비상종회를 개최하는 11. 3. 오전 10시경 종회에 참석하려던 한영수 문공부 종무담당관과 의○ 스님이 신도와 승려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합수단 수사관들에게 연행되기도 했다.

이어 11. 5~6. 양일간 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정화중흥회의’ 위원 51명 중 30명이 참석^{●122}해 회의를 개최하고 정화중흥회의 기구표 확정과 정화중흥회의법을 최종 검토했다.

11. 5. 열린 정화중흥회의에서 임시의장에는 영암 스님이 최고령자로 자동 피선 선출되었고, 영암 스님의 개회선언에 이어 광덕 스님이 의원 선서와 발원문을 낭독하였다. 안건으로는 ▷자퇴서 수리 및 보궐 선출 ▷정화중흥회의법 심의 ▷의장단 선출^{●123} ▷위원장 선출이었다. 그런데 회의 개최 시작 전에 계엄사에서 “중흥회의 위원 중에 때 문은 위원 5명은 자진 사퇴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의원들 사이에 선별 시비로 회의가 40분간 지연되고, 다수 위원들은 조종관들이 너무 간섭한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124} 이에 거론되었던 5명이 사표를 수리하고, 보궐로 4명을 추가하였다. 11. 6. 회의에서는 보궐 의원 선서에 이어 계속 임원선출을 진행하였고 정화중흥회의법을 통과시켰다.

120) 대한불교조계종 정화중흥회의는 ▷의원 40~60명으로 비구와 비구니로 구성하고 추후 신도 참여문제를 검토하고 ▷중흥회를 개정해 모든 종권을 중흥회의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121) 9인 전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인준의원은 51명으로 원로급 10명, 중진급 28명, 소장급 13명이고, 비구는 46명 비구니는 5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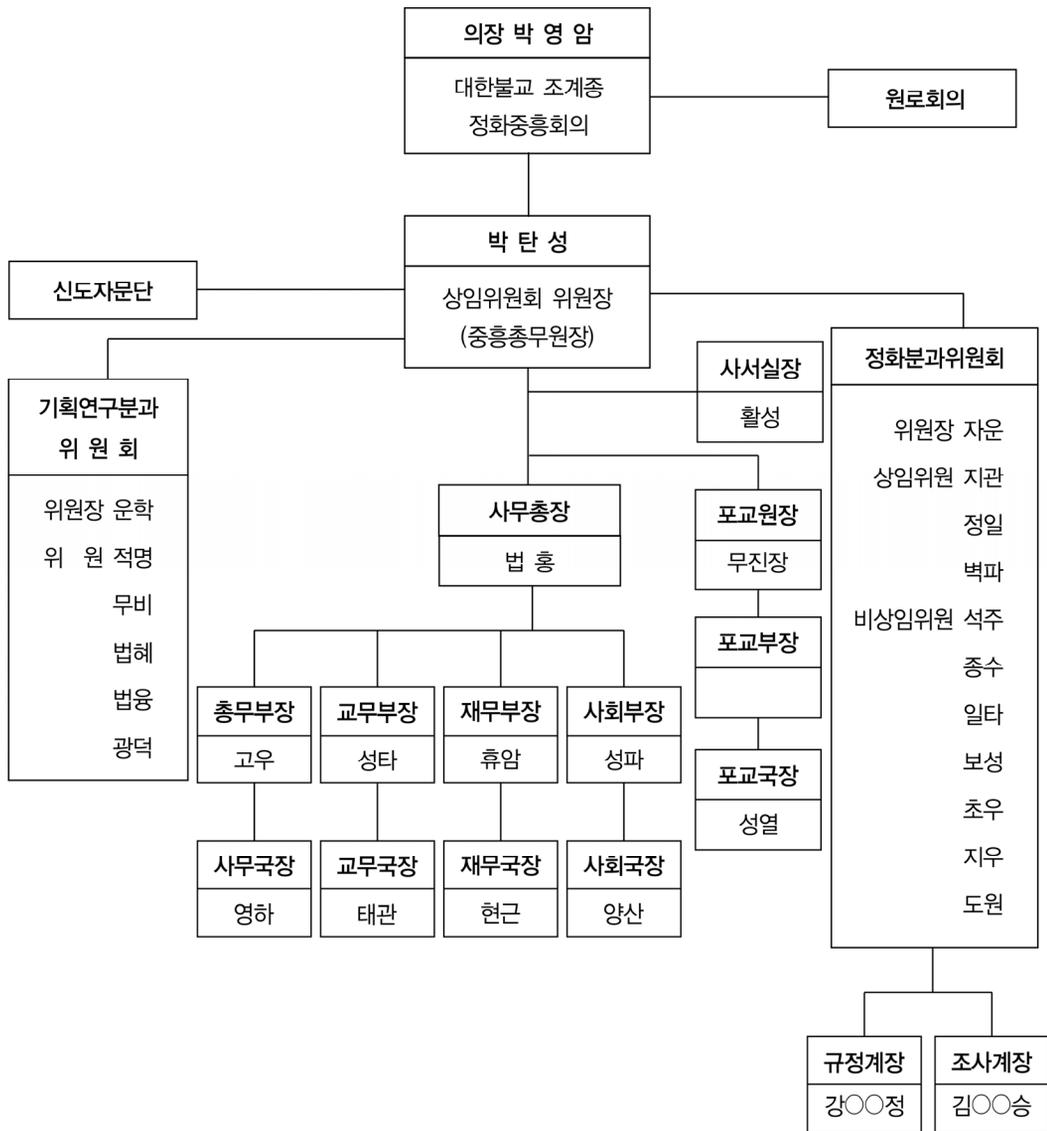
122) 11. 5.에는 재적의원 51명 중 30명이, 11. 6.에는 재적의원 50명 중 32명이 참석했다.

123) 의장에는 박영암 스님(봉암사), 부의장 이대휘 스님(김해 육주선원장), 김혜암 스님(해인사 선원유사), 상임위원장 박탄성 스님(봉암사)이 선출되었고 각 분과위원 구성은 사무총장 및 각 부장 인선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협의해 11월 6일 2차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124) 합수단 수사자료, 「불교 정화중흥회의 개최에 따른 후문」(1980. 11.).



〈표 13〉 조계종 정화중흥회의 기구표



3 정화중흥회의 정화분과위원회 활동

1980. 11. 7. 조계종 정화분과위원회는 정화중흥회의 상임위원장실에서 ‘제1차 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합수단에서 통보된 사실을 참조하여 종법에 따라 엄격히 징계처리하고 순화교육도 1년간 시행하는 것을 토의했다.●125)

실무대책반은 11. 9. 수사당국에서 통보한 스님들에 대한 개인별 수사내용을 차트로 만들어 정화분과위원회 위원들에게 브리핑했다.●126)

정화중흥회의 상임위원장 사서실장을 맡았던 활성 스님은 본인이 규정부장 역할도 같이 수행했다고 하면서 정화분과위원회가 진행시킨 징계 진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정화분과위 회의가 열렸을 때 원로스님들은 강경한 입장이었다. 폭력승들은 삼청교육대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정부가 사건을 벌였다고 해도 수습방안은 최악을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누군가 대상자 개인별 비리가 기재된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고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점수를 매겼다. 체탈도첩 및 삼청교육대 입소 등 매우 강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을 내가 나서서 많이 낮추었다. 그 대신 선방제도를 활용하자고 원로스님을 설득하였고 그 뒤 홍국사로 결정되었다.●127)

이에 대해 정화중흥회의 총무부장이었던 고우 스님은 승려들의 징계과정에 대해 “정화 관련 조사는 군부에서 담당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화분과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렸다”고 증언●128)했으며, 정화중흥회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법흥 스님 또한 “군부에서 넘겨준 문건을 가지고 비위 경중에 따라 징계를 했고 이런 모든 상황은 군부가 압력을 넣은 것이다”고 주장●129)했다.

125) 합수단 실무대책반, 「조계종 정화위원회 개최동정」(1980. 11. 7.).

126) 합수단 실무대책반, 「조계종 정화위원회 개최동정」(1980. 11. 9. 실시사항).

127) 우리 위원회, 활성 스님 면담조사(2007. 3. 20.).

128) 우리 위원회, 고우 스님 면담조사(2007. 5. 23.).

129) 우리 위원회, 법흥 스님 면담조사(2007. 3. 14.).



11. 18. 정화분과위원회 재심의에서 최종 확정된 징계 결과는 ▷체탈도첩 13명 ▷제적 10명 ▷공권정지 17명 ▷문서견책 2명이다. 또한 징계대상자 중 24명^{•130)}의 승려들은 1년간의 계획으로 흥국사에 순화교육장을 개설하여 11. 21. 15:00에 입소식을 거행하고 강제 연금되었으나, 1981. 1. 20. 신임 총정과 총무원장이 취임하면서 2개월만에 연금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처분 받은 승려들은 공직취임금지 조치를 받게 되었다.

한편 정화중흥회의는 11. 5. 발족한 후 81. 1. 15.까지 한시적인 활동을 하며, 종단의 대내·외적인 활동을 아래와 같이 전개했다고 기록하였다.^{•131)}

〈표 14〉 정화중흥회의의 주요 활동

종 단 내 주 요 활 동	
공석사찰 주지 위임	- 인사원칙 및 기준마련 제시
자율정화처리 및 사후관리	- 흥국선원 개설, 자율순화 교육 실시 - 정화업무의 계속적 수행
신도단체 정화추진	- 신행단체 정리대책 수립 - 전국 24개 신행단체장 회의개최
기획분과위, 정화자문위 공동연구기획	- 기구제도, 득도교육, 의식, 계율, 포교, 후생복지, 불교관계법, 국제활동, 불교신문. 지원대단 운영 방안
제3회 정화중흥회의 개최	- 종헌 개정안 통과 - 신종단 구성을 위한 작업착수
종 단 외 주 요 활 동	
불교진흥원 활성화	- 이사진의 개편 보강 - 종단관계 지원 촉구
WFB 대회 참가자 선정 및 교육	- WFB 한국지부의 현황 점검 - 대회 참가 적임자 선정 - 국위선양 및 순화교육

130) 합수단 실무대책반, 「불교 정화 중흥 추진현황(2)」 중 '순화교육장(흥국선원) 개설 운영'. 11. 21. 거행된 입소식에는 입원 환자를 포함 5명이 불참했다.

131) 불교정화추진위원회, 「불교정화 중흥활동 보고」(1981.).

불교신문 창간 노력	- 당국에 의한 '대한불교' 폐간조치 - 당국과 협조 '불교신문' 창간 - 종단 기관지의 자율성 보장과 경영합리화 방안 제시 및 조치
종교법인법(시안) 검토	- 종교법인법 내용 분석 - 법 제정시의 예상문제 및 대책 강구
대통령 각하 예방 주선 (80. 12. 11.)	- 전 불교계를 대표, 조계종 승려로 구성 - 불교계에 대한 각하의 관심도 확인

4 정화중흥회의 대표단의 전두환 대통령 면담

10·27법난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부터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9. 12. 31. 국회 '5공비리청문회'에서 증언을 통해 '10·27불교법난'에 대하여 간략한 답변을 한 적이 있었다.

10·27불교법난으로 알려진 불교계에 대한 정화는 사회전반에 대한 정화조치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정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비추어진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함. 다만 이 일은 정화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본인의 대통령 취임 후 몹시 바쁜 기관이었으므로 중대한 사안인데도 집행기관을 자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음.●132)

1980. 당시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우리 위원회 면담조사에서 “1998. 총무원장으로 재직 중일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계사에 오게 되어 만나게 되었는데 ‘월주 스님이 총무원장인지 몰랐다. 보안사에서 한 일이지 나는 잘 몰랐다’고 말했는데 난 그 말을 별로 믿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133)

132) 대한민국국회, 「전두환 전대통령 국회 증언 요지」(1989. 12. 31.).

133) 우리 위원회, 앞의 월주 스님 면담조사. 월주 스님은 우리 위원회 면담 이전인 2003. 2. 26. MBC와의 인터뷰에서도



정화중흥회의가 발족한 1980. 11. 6. 정화중흥회의 상임위원장과 관계관^{●134} 협의에서 대통령 면담계획이 추진되었다. 11. 7.에는 총무원 규정부장실에서 대통령과 면담시 참가자를 확정하고, 건의사항을 검토했다.^{●135} 11월부터 추진되던 대통령과의 면담은 법난사건이 마무리되던 1980. 12. 11.에 이루어졌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조계종 승려 8명^{●136}이 50분간 면담을 가졌다. 이 모임에 참석한 조계종 승려들은 모두 정화중흥회의의 핵심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다. 「조계종 승려 대통령 각하 면담결과」^{●137}라는 자료를 보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법난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면담 진행은 문답식으로 진행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면담 내용이다.

〈표 15〉 조계종 승려와 전두환 대통령 면담 내용

승려측 건의	각하 분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당국의 배려로 정화는 잘 진행되고 있다. ◇ 재래식 승려교육 제도를 개선, 승가대학을 설립하여 체계적 교육제도 실시예정. ◇ 수도 도량이 국립공원법에 묶여 수도에 지장 있다. ◇ 국립공원의 사찰임야를 건설부에서 사전 협의 없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단정화가 빨리 종식되어 국민정신 계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 ◇ 절은 참선 등 수행하는 곳인데 어떻게 강패들이 서식할 수 있느냐. ◇ 내가 서든각 박사를 잘 아는데 서울대 총장 할 사람

“1998년 경 전두환씨가 조계사에 왔을 때 ‘나는 모르는데 보안사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 나는 백담사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증언을 한 적이 있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45계획 10·27법난의 진실> 녹취록』(2003. 2. 26.).

- 134) 실무대책반 작성의 「대한불교조계종 정화중흥회의 동정」 11. 6.자 기록에 의하면 “관계관 및 상임위원장 등과의 협의회. 11. 6. 17:00 ~ 19:30 상임위원장실 - 불교 정화의 취지와 방향 설명 및 경과보고 - 연행된 승려의 처리 방향 및 일정, 석방된 자에 대한 순화교육 - 불교 정화중흥회의법의 불합리한 조항 개정 - 대표권자 등록 및 문공부 지원 사항 - 고위층 면담 계획 - 분규 사찰 처리 및 공석중인 사찰의 주지 임명 문제 - 사무직원 인사처리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전창열 증려는 우리 위원회와의 2차 면담(2007. 10. 19.)에서 “당일 참석했는지 기억은 없으나 대통령 면담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고 증언했다.
- 135) 실무대책반 작성, 「대한불교조계종 정화중흥회의 동정」 11. 7.자. 이 날 확정된 대통령 면담 확정자는 10명이었으나, 청와대와 면담 추진 과정에서 김운학 스님이 기획본과위원장을 사퇴하고 김자운 정화분과위원장이 빠지게 되어 8명으로 확정되었다.
- 136) 당시 조계종에서 참석한 승려 8명은 다음과 같다. ◇ 박기중(정화중흥회의의 의장, 동대재단 이사장) ◇ 김혜암(정화중흥회의의 부의장, 보암사 조실) ◇ 김탄허(정화중흥회의의 위원, 월정사 주지) ◇ 강석주(정화중흥회의의 위원, 영화사 주지) ◇ 박탄성(정화중흥회의의 상임위원, 공림사 주지) ◇ 이지관(정화중흥회의의 위원, 동대 불교대학장) ◇ 윤법흥(정화중흥회의의 사무총장, 송광사 주지) ◇ 김무진장(정화중흥회의의 위원, 조계종 포교원장). 또한 배석자는 문공부장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이었다.
- 137) 합수단 수사자료, 「조계종 승려 대통령 각하 면담결과(1980. 12. 11.).

승려측 건의	각하 분부 사항
<p>지정하는 것을 시정 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사태의 문제승려 대부분은 종단 내 복지문제 및 노화대책 불비, 대책강구 건의. ◇ 불교방송국 설립에 따른 정부 배려요망. ◇ 불교재산관리법의 통제조항 완화, 각 사찰의 임야 및 대지를 매각 교육 및 불사자금을 마련하려 해도 정부 승인사항이므로 불편. ◇ 관광사찰의 관람료를 해당 사찰에서만 사용토록 하는 현 규정을 개선, 종단기금 확보의 계기가 되도록 완화 요청. ◇ 호국안보 기도법회 개최시 각하 참석 요망. 	<p>을 동대에 데려가서 재단분규로 육보이게 했으니 종단 및 재단분규는 다시없기를 바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가대학 설립은 도제 육성면에서 주요한 과제이므로 빨리 착수하는 것이 좋겠고 복지시설 등의 허가 문제는 가능토록 하겠다. ◇ 방송국 설립문제는 언론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곤란하고 필요하다면 KBS 교육방송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 불교재산법 및 공원법, 관광요금 사용 규정 등의 완화에 대해서는 관계부서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지시 하겠다. ◇ 호국 안보기도법회는 19개 종파를 총망라해서 개최 하면 좋겠고 꼭 참석하겠다.

또한 「불교 재산처리문제(청와대 보고)」¹³⁸⁾에서는 “화쟁교원 104억원(연 2~3억원 수입)은 본인 희망에 의거 불교진흥원에 귀속시킬 예정이며, 학교재단 등 무등록 사찰 90억원과 개인소유 동산 및 현금 환수액 1억원은 조계종에 귀속시킬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동시에 불교진흥원 임원에 대한 신규 이사 3명을 승인요청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법난사건에 대해 그 전후 과정을 보고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소결

1980. 10. 27. 합수단은 전국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포함, 승려 및 신도 153명을 연행하였다. 조계종단은 총무원장을 비롯한 총무원의 주요간부, 대부분의 본사 주지가 연행되어 종단운영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138) 합수단 수사자료, 「불교 재산처리문제(청와대 보고)」(1980. 12. 11.).



서울(보안사 서빙고분실, 경찰청 특수수사대)과 지역(각 지역보안부대)에서 연행되어 조사받은 스님들은 취조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그대로 인정할 것을 강요받으며 당시 받고 있던 모든 직책에서도 사직하도록 강요받아 사퇴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불교계 수사를 실행하기 직전 합수단 실무대책반과 문공부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을 예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3단계 정화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조계종단의 업무가 중단된 상황 하에서 합수단과 실무대책반은 이미 입안된 불교계 정화계획의 수습단계에 따른 모임을 소집했다.

실무대책반은 10. 28. 광○, 지○, 무○○ 스님 등이 모임을 개최하여 이후 수습과정을 논의했다. 이들은 당일 두 차례의 긴급모임을 통해 “재경 원로들을 모아 수습책을 논의할 것과 종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저녁 이들은 3명의 원로 스님을 합류시킨 가운데 가칭 수습대책위에 참가할 원로 중진·소장 승려의 명단을 재편성한 후, 10. 31. ‘종단수습대책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11. 3. 비상중앙종회가 개최되어 월주 총무원장의 사직처리가 결정되었고 종헌개정안에서 제114조를 신설¹³⁹⁾해 불교정화중흥회의를 두고 이 조직이 종단의 전권을 이양받게 되는 대신 기존 중앙종회는 해산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어 11. 5~6. 정화중흥회의가 발족하게 되었다.

정화중흥회의는 특별기구로 기획분과위원회와 정화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었다. 11. 7. 정화분과위원회는 1차회의를 열어 실무대책반을 통해 합수단에서 통보된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승려들에 대한 징계를 하였다. 당사자의 해명도 없이 11. 18. 최종 확정된 정화분과위원회의 징계결과는 ▷체탈도첩 13명 ▷제적 10명 ▷공권정지 17명 ▷문서견책 2명이었다. 또한 징계 대상자 중 24명은 흥국사에 60일간 연금되었다.

139) 종헌개정안 제114조. 1. 종단정화중흥과업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교정화중흥회의를 둔다. 2. 불교정화중흥회의는 중앙종회, 총무원, 규정위원회 및 법규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승계하여 행사한다. 3. 불교정화중흥회의는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40~60인의 비구, 비구니로 구성한다. 4. 불교정화중흥회의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종업으로 정한다. 5. 불교정화중흥회의 설치를 결의한 중앙종회는 불교정화중흥회의의 구성과 동시에 해산한다.

한편 1980. 12. 11. 정화중흥회의 대표단 승려 8명은 청와대에서 전두환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참선하는 절에 깡패들이 서식하고, 내가 잘 아는 서돈각 박사가 종단분규로 욕을 보았다”는 등 기존 종단의 분규를 비난하였고, 종단정화가 빨리 종식되어 국민정신 계도에 앞장서 줄 것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승가대학 설립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런 발언내용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10·27법난사건의 전후과정을 보고 받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89. 12. 31.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회 ‘5공비리 청문회’에서 증언을 통해 10·27법난 수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문서는 그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10·30 전국 사찰 일제수색

1 전국 사찰 일제수색의 경위

1. 전국 사찰 일제수색의 실시 배경

국방부는 1989. 1. 30. 불교계 수사경위 설명회에서 10. 30. 전국 사찰 일제수색의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있다.

계엄사는 국보위의 불량배 소탕계획에 따라 계엄포고 제13호를 발표하여 불량배를 일제히 검거하였는바, 위 포고령 위반자 및 각종 폭력사범과 공갈사기범이 사찰 및 기도원에 은신하였고, 1980. 2. 검거된 간첩의 진술과 1980. 3. 7. 대간첩 대책본부에 입수된 첩보에 따라 북한이 간첩을 승려로 위장 침투시켜 사찰의 혁명거점화를 기도한다는 첩보가 있어 사찰과 기도원에 대한 일제수색 계획을 수립¹⁴⁰⁾

위 설명회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전국 사찰 일제수색은 사찰 등지에 잠입해있는 포고령위반자 등 범법자와 간첩의 색출을 위한 목적, 즉 사회 치안의 확보 및 대공적 작전 측면에서 실시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시각은 이미 1980. 2. 29. 계엄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표출되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기획관리실장 김을권 준장은 종교계의 분규가 안보적 차원에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

140) 국방부, 앞의 「불교계 수사경위」.

문공부 발표를 통한 문제점으로, 불교계에 불순분자가 은신할 가능성이 다분하여 이들로 인해 신도들까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승려들에 대한 신분파악 곤란을 감안하여 부역자 등에 대한 감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점, 사찰의 위치상 대남 침투간첩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며 불순분자들이 승려 복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141)

김을권 준장의 발언 중 “부역자 등에 대한 감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지적은 전국 사찰 일제수색 작전을 준비하던 시기에 문서로 작성되어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참고자료」●142)에는 당시 원로와 중진 승려 13명의 사상이념적 이력과 6·25전쟁시 활동내력이 분석, 정리되어 있다. 또한 ‘재일조총련 불교계 조직 확실’이란 소제목으로 일본 거주 한국출신 승려 8명의 성명과 현재 직위, 학력 등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10·27법난이 발생한 직후 작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대공적 측면에서 본) 조계종 분규분석」이란 문서도 조계종 내부의 분규를 “궁극적으로 분규의 원인을 정부에 전가, 정부와 국민간의 이간을 조성,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목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즉, 조계종 내부의 분규를 분석하면서 북한이 이를 남한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북괴는 심지어 기독교계까지 프락치를 침투시켜 적화야욕을 획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무신론이라고도 주장하는 불교계를 방관할 리 없다고 판단 된다”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143) 그 근거로서 △사찰이 주로 산중 또는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간첩의 접선, 공작, 활동, 무전, 포섭공작 등이 유리한 점 △사찰 수입금의 행방이 모호한 점 △과거 좌익 사상자 또는 가족·친척들이 승려로 활동하고 있는 점 △반정부 및 반국가 행위가 많은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처럼 “불교계에 불순분자가 은신할 가능성” 및 “불순분자들이 승려복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김을권 준장의 발언과 이후 사상적 측면과 대공적 측면에서 각각 불교계를 분석한 당국의 시각은 전국 사찰 일제수색을 실시하게 된 실마리를 마련해준 것으로 보인다.

141) 육군본부, 앞의 책, 210~211쪽(「제17차 종교분야 예상문제점과 대책(불교)」).

142) 합수단, 작성자 미상, 「참고자료」(1980, 10.).

143) 합수단, 작성자 미상, 「회의자료 - 조계종 분규 분석(대공적 측면에서 본)」(1980.).



특히 당시 김충우 합수단장 역시 간첩에 의해 유폐된 유언비어의 난무가 전국 사찰 일제수색의 배경을 이루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계엄이 시행된 이후부터 문제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유폐된 것이었다. 당시 일설에 의하면 간첩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전해졌다. (중략) 전국의 사찰 암자 등에 대해 대간첩작전을 겸해서 일반 병력들을 동원해 사찰 수색을 추진하였다.●144)

육군 제37사단 대대 인사군수장교로 근무하면서 전국 사찰 일제수색을 직접 경험했던 박맹수는 일제수색이 실시되기 전 사찰에 잠입한 ‘광주사태’ 관련자를 소탕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145)

수색 몇 개월 전부터 광주사태 관련자 상당수가 사찰 등지에 잠입하여 이들을 소탕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수색작전이 어느 정도 예고된 상황이었다. (중략) 당시 군의 특성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작전의 대공적인 특성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146)

실제로 1980. 10. 28. 합수본부에서 전 보안부대장을 대상으로 내린 ‘도피자 은신 예상처 수색지시’ 문서에서 위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6〉 도피자 은신 예상처 수색지시

<p>1. 국보위 삼청계획 5호에 의거 계엄사는 80. 10. 30. 06:00를 기해 사찰(암자 포함) 등 도피자 은신 예상처에 대한 일제수색을 계엄분소장 책임하에 실시토록 작전 명령이 하달되었는바 각 합수단장은 다음 사항을 조연 철저한 수색을 실시토록 할 것</p> <p>2. 수색시 유의사항</p> <p>가. 포고령 위반 등 수배자 색출</p> <p>나. 불교계 수배 대상자 검거</p>

144) 우리 위원회, 앞의 김충우 면담조사.

145) 박맹수씨는 당시 육군 제37보병사단 ○○연대 ○대대 인사군수장교로 근무했다. 이 부대는 법주사 등을 포함한 속리산 인근의 사찰을 일제수색했다. 박맹수씨는 10. 29. 대대장으로부터 10. 30. 출동지시명령을 받았으나 10. 30. 새벽 작전에서 제외되어 실제 수색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146) 우리 위원회, 박맹수 면담조사(2007. 1. 29.).

- 다. 기타 범법자 색출
- 라. 대공적인 측면에서 사찰내 및 주변 정밀 수색
- 마. 사찰내 기거자 신원 확인 철저

아울러 위 문건에는 수배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명단에는 40명의 지명수배자 명단과 26명의 불교계 수배대상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불교계 수배대상자에는 10. 27. 당시 검거되지 않았던 윤○ 스님,●147) 현○ 스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40명의 지명수배자는 주로 국기문란, 부정축재, 광주사태 관련, 포고령 위반, 시위관련 대상자였다.

이러한 전국 사찰 일제수색의 배경에 대해 국방부는 1989. 1. 30. 불교계 수사경위 설명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 불교계 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80. 10. 30. 전국 사암 및 기도원에 대한 일제수색은 불교계 수사문제와 별개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실시된 것임. 전국 사암 일제수색은 10. 27. 불교계 수사가 착수된 바로 3일 후 10. 30.에 수색 시기를 선택했다는 바로 그 점이 불교에 대한 탄압 인상과 오해의 소지를 더욱 가중시켰던 것임.

하지만, 김충우 합수단장은 우리 위원회 면담 과정에서 “10. 30. 일제수색 역시 10. 27. 사건과 함께 패키지로 세워진 계획이었다”●148)며 위 설명회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취지의 증언을 했다.

10. 30. 전국 사찰 일제수색은 관련 문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10. 27. 수사와 더불어 불교계 수배 대상자 검거라는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추진 과정에서 포고령 위반자 등 기타 범법자 검거 및 간첩 수색이라는 목적이 추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47) 윤월 스님은 우리 위원회 면담에서 수사당국에 연행되어 신분 확인절차가 끝난 후 수사관들이 “잡았다. 잡았다. 큰 고기 6번 잡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본인이 수배자 명단 6번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우리 위원회, 윤○ 스님 면담조사(2007. 7. 5.)] . 실제로 수배자 명단 6번에는 윤○ 스님이 적혀 있는 바, 실제 위 수배자 명단을 기초로 전국 사찰 일제수색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8) 우리 위원회, 앞의 김충우 면담조사.



2. 전국 사찰 일제수색의 입안자

전국 사찰 일제수색의 입안자와 관련하여 김충우 합수단장은 1989. 1. 30. 국방부 불교수사경위 설명회에서 10·30 작전 입안자는 누구냐는 삼보 스님의 질문에 대해 “본인이다”라고 응답한 바 있다.●149) 우리 위원회 면담과정에서도 김충우 합수단장은 10·27 수사와 동시에 추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합수단 이외에 보다 상위기관인 국보위 또는 그 윗선의 지시나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문건이나 증언을 확보할 수는 없었다. 다만 군·경 합동병력을 동원하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김충우 합수단장은 육군본부나 경찰과 회의를 하여 협조를 구했다고 한다.

일제수색을 실시하기 전에 경찰과 두 번 정도 협조, 회의를 하였다. 일제수색 작전의 기본적인 계획의 틀(프레임)은 계엄사에서 만들었고, 구체적인 실무계획은 우리가 담당하였다. 병력이 동원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의 재가가 필요하였다. 실제로 계엄사령관을 만나 재가를 받은 적은 없고, 지휘라인에 따라 계통으로 보고했다.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육본 담당자들에게 설명을 하였고, 실제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를 하였다.●150)

김충우의 증언에 따르면, 전국 사찰 일제수색의 입안은 최초 합수본부에서 구상하였으며 병력이 동원되는 작전의 문제이기에 군병력 동원 권한을 가진 계엄사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재가 아래 계엄사에서 작전의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했고, 그 외에 검거대상자 명부나 검거 후 처리 등 구체적인 실무계획은 합수단에서 담당했다는 것이다.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이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 및 재가를 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희성 계엄사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151)

실제 일제수색이 계엄사의 작전명령에 의해 실시되었음은 합수본부에서 전국의 보안

149) 유응오, 앞의 책, 162쪽.

150) 우리 위원회, 앞의 김충우 면담조사.

151) “전국 사찰 수색은 국보위가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다. 국보위의 지시 아래 각 지역 계엄사무소가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유응오, 앞의 책, 146쪽).

부대장에게 하달한 「도피자 은신 예상처 수색지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색작전에 동원된 인력 중 경찰이 상당수 가담한 사실(총 32,076명 중 7,658명)은 경찰 역시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2 전국 사찰 일제수색의 실행

1980. 10. 28. 합수본부는 전 보안부대장에게 “도피자 은신예상처 수색지시” 명령을 하달했고, 이어 10. 29.에는 각 지역 합수단장을 대상으로 “10. 30. 실시되는 사찰 수색 작전에 따라 각 합수단은 다음 사항(동원병력 및 계획된 사찰 수)을 긴급 파악, 금일(10. 29) 24:00한 합수 조정전으로 긴급 전언 보고할 것”이라는 ‘긴급업무지시’ 명령을 하달했다.●152) 1980. 10. 30. 06:00를 기해 32,076명의 군·경 합동병력(18개 지역 합수단 포함)이 일제히 전국 사찰 3,733곳을 포함하여 암자 등 총 5,731곳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출동부대에서 전국 사찰 일제수색을 준비했던 박맹수는 준비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수색 대상에 대한 리스트(사찰 및 암자)는 대대장을 통해 내려왔으며, 스님 개개인에 대한 명단 역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당시 계엄군과 경찰이 합동하여 출동하였는데 우리 대대에서는 9/48+16(장교 9명, 사병 48명, 16명의 추가병력)의 인원이 출동하였다. 대대장 역시 직접 출동에 가담했으며 중대장은 조 편성시 조장의 임무를 맡은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수색 전날인 10. 29. 작전 회의에서는 출동지시 명령을 받았으나 당일 새벽 작전에서 제외되어 수색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153)

152) 합수본부, 「긴급 업무지시」(1980. 10. 29.).

153) 우리 위원회, 앞의 박맹수 면담조사.



특히 박맹수는 당시 작전회의에서 거론되었던 작전지침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었는데 작전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54)

1. 03:00시 출동
 목적 : 계엄포고령 위반자, 승려 위장으로 가짜신도, 광주사태 범법자, 대공용의자, 폭력승려, 불교 자체 정화 대상자, 사찰에 은신중인 범법자 체포
 04:00 지시 도착
 05:00 퇴로상 매복 완료 05:30
 06:00 수색 체포
 2. 조편성
 장교 1명, 사병 4명, 경찰 1명 - 무전기 휴대 SOI
 3. 광주사태 도피자 (총기 휴대 가능성)
 상대방이 총기 발사시 응사, 15발
 4. 1개조가 3~4개소
 1개소 습격 수색
 신속히 철수 다음 장소 수색
 5. A에 도착보고, 수색결과보고, A지점 출발보고
 B에 도착보고, 수색결과보고, C로 출발시 보고
 6. 음주, 흡연 등, 허가 없이 총기 사용 주의
- 수색과정시 주지의 응락을 유도, 승낙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인권유린하지 않도록, 불쾌하지 않도록 체포시 포박 → 사병 1명(경찰서, 보안대) 인수서 받아들 것
- 보급관**
 운전병, 경찰차 운전수 ⇒ 의무대 내무반
 식당 02:10 배식 준비
 02:30 배식 준비, 라면 휴대
- 복장 : 동내의, 전투복, 야전잠바, 목도리, 탄띠, 수통, 대검, 철모, 포승줄, 수갑, 개인화기
 장교 : 지도 휴대
 포고령 위반자, 범법자 → 경찰 인계
 기타 → 보안대 인계

154) 위 일지는 박맹수가 1980. 10. 29. 육군수첩에 수기로 기재한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10. 29.자 총 3매의 사본을 입수했다.

각종 차량, O.V.M. 공구 점검
 병력 분산시 조별로 집결장소 명시
 17:00 모든 조원 집결, 출발시간
 각종 상황은 대대상황실로 보고
 월동준비 보급관 김소위 작전과장 김중위
 내속 : 12, 범주사 1개소 사병 20명

병력 출동 <장교 명단은 생략>

1. 3훈 : 8명(훈련대장, 9중대장)
2. 본중 : 4명(본부중대장)
3. 9중 : 10명(9중대장)
4. 10중 : 9명(10중대장)
5. 11중 : 10명(11중대장)
6. 12중

9/48+16명

차량 : 짐차 2대, 대대 3대, 연대 2대, 정찰 2대

조별 1중 분배 - 근거 : 10. 30. 작전

상기 작전을 위한 차량 배차에 소속된 유류를 다음 첨부와 같이 인가 건의합니다

1/4톤 휘발유 2대 3/4톤 휘발유 2대

5/4톤 경유 2대 21/2톤 경유 2대

3 전국 사찰 일제수색의 결과

전국 사찰 일제수색 결과는 합수단의 '수색실시 결과보고'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155)

● 수색기간 : 80. 10. 30. 06:00 ~ 20:00

● 동원인원

구분	계	보안	경찰	군	비고
인원	32,076	818	7,658	23,600	

155) 합수단, 「수색실시 결과보고」(1980. 10.).



● 수색장소

구 분	계	사 찰	암 자	기 타	비고
개 소	5,731	3,733	1,607	291	

● 수색결과

- 검거 및 처리현황

구분/처리	계	포고령등 위반자	불교계 수배자	거동 수상자	기타 범법자	비고
검거	1,776	1	1	362	1,412	
처리	이첩	1	1	58	149	
	조사중	68		68		
	훈방	1,499		236	1263	

- 주요 검거자

성명	직책	혐의내용	비고
정태기	조선투위	국기문란, 문제언론인	고양군 신도읍 소재 친척집에서 검거
윤○	백운암 대중	불교관계 수배자	서대문구 홍은사에서 검거

* 정태기는 치안본부 대공분실, 윤○은 수사2국에 이첩

● 참고사항

- 사찰, 암자 등은 학원소요 및 포고령 위반 관련 수배자 검거 활동으로 경찰의 감시를 받아 은신이 어려운 실정이며,
- 대부분의 주요 도피자들은 도시 아파트 단지, 또는 민간에 은신코 있을 것으로 판단

위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 사찰 일제수색을 통해 합수단은 총 1,776명을 검거하였다. 하지만 검거된 사람 중 대다수가 불교계 수사와는 전혀 무관한 거동수상자나 기타 범법자에 해당되며 그 중 대부분인 1,499명을 훈방 처리하였다. 실제 검거대상자 중 불교계 수사와 관련한 인물은 단 1명에 불과했다. 3만 여명의 군·경 합동병력이 출동하여 실시한 작전의 성과로서는 다소 초라한 실적이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 없이, 간첩이 은신하기 용이하다는 근거 없는 논리와 뚜렷한 목적이나 동기 없이 작전이 계획되고

실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주요 담당자였던 김충우 합수단장이나 김판길 합수단 수사1국장 역시 전국 사찰 일제수색이 대단히 잘못된 작전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수색 과정에서 군화를 신은 채 법당에 들어가는 등 실무자들이 스님에 대한 예의가 없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 등 대단히 잘못된 작전이었다.●156)

당시 전국 사찰 일제수색만 하지 않았다더라면 지금 이렇게 욕을 먹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10. 27. 불교계 수사는 당시 문제가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스님들을 중심으로 수사한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10. 30. 사건은 법당을 수색한 것으로써 불교계 입장에서는 치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157)

불교계는 전국 사찰 일제수색에 대해 “1980. 10. 30. 군경합동수사대의 전국 사찰 일제수색 등 상당히 광범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범죄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158) 10. 27. 발생한 불교계 수사 이상으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탄압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10. 30. 전국 사찰 일제수색은 그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국가권력이 종교의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침범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정교분리의 원칙이 천명되어 있던 당시 헌법에 의하더라도 국가공권력의 종교계에 대한 무자비한 수색은 위법한 종교탄압이라 할 것이다.

156) 우리 위원회, 앞의 김충우 면담조사.

157) 우리 위원회, 앞의 김판길 면담조사.

158) 대한불교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 「10·27법난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사항」(2006. 4.).



4 소결

합수단은 1980. 10. 30. 06:00를 기해 32,076명의 군·경 합동병력을 투입하여 전국의 5,731곳의 사찰 및 암자 등지를 수색하였다. 이러한 전국 사찰 일제수색에 대해 그 동안 정부당국은 10. 27. 불교계 수사와는 별개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불교계는 불교계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그 실시 경위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다.

우리 위원회는 전국 사찰 일제수색이 불교계 수사와 더불어 불교계 수배 대상자 검거라는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포고령 위반자 등 범법자 검거 및 간첩 색출이라는 대공적 작전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국 사찰 일제수색을 10. 27. 불교계 수사계획과 동시에 추진했다는 김충우 합수단장의 증언을 통해 전국 사찰 일제수색과 불교계 수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시행과 관련하여, 전국 사찰 일제수색은 최초 합수본부에서 입안되었고, 병력의 동원을 위해 제업사에서 작전의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에 검거대상자 명부나 검거 후 처리 등 구체적인 실무계획은 합수단에서 담당하였다.

전국 사찰 일제수색의 결과 총 1,776명을 검거하였으나 실제 불교계 수배자는 단 1명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대부분인 1,499명을 훈방처리 하는 등 작전의 성과가 극히 저조하였다. 특히 일부 부대에서는 군홧발로 법당과 스님들의 거처를 침범하고, 원로 스님들을 포함한 전체 스님들을 절 마당에 집합시켜 놓고 구호를 부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종교적 특성을 무시한 작전 수행으로 인해 불교계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교계의 비난과 원성을 사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전국 사찰 일제수색은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국가 공권력이 종교의 영역을 무참히 침범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적인 종교탄압이라 할 것이다.

합수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1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언론의 보도

1. 중간수사결과 발표

수사당국은 불교계 수사와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언론 발표를 시행한 바 있다. 먼저 불교계 수사를 착수한 직후인 1980. 10. 28. 계엄사는 「사이비승려 및 불교계내 폭력배 소탕에 관한 계엄사 발표문」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문에서 계엄사는 불교계 수사의 동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불교는 우리 민족의 전통종교로서 민족정기와 주체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국민의 정신영역을 계도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이비승려와 폭력배들이 난무 발호하는 비리지대로 화하여 뜻있는 승직자와 신도들은 물론 일반국민의 지탄과 빈축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계엄당국은 정계를 비롯한 사회각계에 대해 과감한 숙정과 정화조치를 단행하면서도 종교가 지니는 특수성과 독자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불교계 자체의 자율적 정화와 숙정이 있기를 기대하여 왔던 것이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자체정화의 움직임이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뿐 아니라 자력으로는 도저히 궤양의 힘이 없는 것으로 판단, 부득이 사회정화 차원에서 철퇴를 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수사대상인 주요 비리유형으로 △종권을 장악하기 위한 파벌간 암투와 폭력에 의한 강점, 폭행자행 △승단 내에서의 폭력상해행위 빈발 △사찰내 병역기피자, 폭력사



범, 사기횡령 등 전과자의 도피 은신처화 △음주와 사음 등 퇴폐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사이비승의 발호 △수도생활의 기피 또는 환속과 입산을 반복하면서 사찰의 생활 터전화 및 승려생활을 치부수단화 △사찰주지직 등 임명시의 금품수수 △사찰재산의 착복 △각종 불사를 위요한 부정행위 자행 △사이비승들의 작당에 의한 금품강요 및 공갈, 협박행위 △각종 불사를 빙자한 모금행위 및 사술 △사찰의 관리소홀과 유흥장화 △신도를 상대로 한 각종 무속사기행위 등을 들고 있다.

이후 합수본부는 1980. 10. 27. 불교계 수사를 착수한 이래 20여일간 수사를 진행한 후인 1980. 11. 14. 「불교계(대한불교조계종) 정화를 위한 수사결과 발표문」 형식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159) 이 발표문은 다음날인 1980. 11. 15. 전국의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큰 사회적 관심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던바 여기서는 그 주된 내용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합수본부는 수사목적으로 △종교계의 정화와 윤리기반 구성에 기여하고 △자율정화의 계기를 조성하며 △여타 종교계 및 종단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정화를 강력히 촉구하는데 수사목적은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수사범위로는 불교 분규와 관련된 “조계사과, 개운사과, 중도과, 기타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수사결과 “부정축재 비리자 22명, 폭력배 21명, 배후조정 및 브로커 11명, 관련 공무원 1명, 참고인 98명”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비리유형을 구체적으로 △종권을 장악하기 위한 파벌간 암투와 폭력에 의한 조계종 총무원 및 사찰의 강점 및 위력과 위세를 이용한 갈취행위 △음주와 사음 등 타락행위를 일삼아온 일부 사이비승려의 행태 △사찰 주지 임명을 위요한 금품수수 △사찰을 생활터전으로 삼아 승려생활을 치부수단화하고 사찰재산(소유임야, 불교문화재, 시주금 등)을 착복 또는 유용 △각종 불사(사찰공사)를 위요한 부정행위 자행 △관련공무원 비위 및 기타 등의 항목으로 구별하고 관련된 약 20개의 사례를 예시했다. 그 중에서 특히 승려들의 부정치부 및 유용내용을 종합하여 “사유화된 사찰, 개인주택 영업시설 등 부동산

159) 이 발표문에 대해 합수본부는 ‘중간수사결과’라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관련 수사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그 이후에도 수사가 예정되어 있어 중간수사결과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사종결 이후 수사결과를 발표한 사실은 없고, 1989. 1. 30.이 되어서야 불교계 수사경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산 계 197억 5,870원 상당 및 현금, 귀금속 승용차 등 동산 계 3억원 상당, 도합 계 200억 6,000만원 상당을 추재하고 금 4억, 6,000만원 상당 이상을 유용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또한 수사결과 처리와 관련하여, ●160 18명(승려 10명, 일반인 8명)은●161 구속 후 형사입건하고, 32명은 불교정화중흥회의의 자율정화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하여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승적박탈(체탈도첩) 및 종직사퇴(공권정지)토록 하고, 범죄혐의가 없는 자 5명은 훈방하는 한편 사유재산은 종단에 귀속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청교육대로 보내진 승려도 3명이었다.

한편, 비리·부정축재의 원인과 관련하여 먼저 분규의 원인으로는 △종단의 막대한 재산과 이권을 좌우할 수 있는 종권을 장악하기 위한 이해관계상의 분쟁 및 △종단 지도체제의 공백을 비롯한 인사행정의 난맥과 행정감독기관의 조정, 감독의 소홀을 들고 있으며,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승려의 자질저하 및 전근대적 종단 운영의 난맥상 △승려의 복지대책의 전무 △사찰재산 및 수입금품 관리의 비합리성을 들고 있다.

2. 대 언론 홍보대책 및 언론의 보도

수사당국은 불교계 수사 실시와 더불어 수사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불교계 탄압 인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홍보대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불교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합수단에서는 여론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 대책을 마련한다. 「불교정화 중흥활동 보고」●162에 따르면, 수사상의 문제점으로 “특정종교 및 종단에 대한 탄압인상”이 거론되고 그 수습책으로 “홍보대책의 강화”가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불만계층에 대한 홍보 △매스컴·순회·접촉설득 △정화의 취지와 필요성 △정화의 계기조성(한정적 목적) △불교중흥 의지의 천명이 기술되어 있다.

160) 언론에 공개한 「불교계(대한불교조계종) 정화를 위한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구체적인 명단이 나와 있지 않다. 수사결과 발표 전인 1980. 11. 13. 합수단에서 합수본부장(노태우 보안사령관)에게 보고한 「불교계정화 수사결과 보고(대한불교조계종)」에는 구체적인 명단과 대상자들의 비위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161) 「불교계(대한불교조계종) 정화를 위한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형사입건자가 18명이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불교계정화 수사결과 보고(대한불교조계종)」에는 17명만이 기술되어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17명이 맞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결과 발표문은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162) 불교정화추진위원회, 「불교정화 중흥활동 보고」(1980. 10. 31.).



또한 이 문서의 “중흥추진활동 경과”에 따르면 종단 내외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종단 내에서는 △소장승려 중심의 전국사암 순회 △군법사 중심의 지역별 홍보 △전국 12개 도시에 포교홍보원 파견 활동을 전개하고, 종단 외에서는 △문공부 기자단 초청간담회 3회 실시 △홍보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문공부 및 각 언론기관에 불교 홍보 요청 활동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실제로 1980. 10. 30. 기종(원로회의 의장), 광덕(대각사 주지), 이용택(전국신도회 부회장), 한기복(문공부 종무국장)이 참석한 KBS TV 대담이 실시된 바 있다.

아울러 수사당국은 불교계를 수사하면서 종교계 탄압 및 공권력의 부적절한 개입이라는 반대 여론을 무마하고, 사회정화의 하나로 불교계 정화를 실시한다는 정당성의 확보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승려 및 불교신자의 자발적 정화활동 참여 등 수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수사계획 단계에서부터 수사실시 이후까지의 단계적으로 홍보대책도 마련했다.●163]

그러나 1980. 11. 14. 합수본부가 「불교계(대한불교조계종) 정화를 위한 수사결과 발표문」을 발표하고, 각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톱기사로 보도하면서 불교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일부 언론의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승려 부정축재액 200억원, 계엄사 발표 / 유용액만도 4억 6,000만원
18명 구속, 32명 승적 박탈, 불교정화 5년 계속키로, 치부재산 종단에 환수
비리내용 중권 장악 위해 파벌 암투, 주지임명 싸고 거액 수리, 인기연예인과
퇴폐행위, 혼자서 1백78억원 축재도 (1980. 11. 14. 동아일보 기사)

비리승려 등 18명 구속, 계엄사 / 32명은 승적 박탈키로
부정축재 2백억 종단 귀속, 공금 4억도 유용, 앞으로 5년간 계속 정화
주요 비리내용 무술승려 - 광패 규합...폭력행사, 여신도 농락-연예인과 퇴폐
행위, 주지직은 2천만원에 사고팔아, 시주금-공금으로 요정까지 경영
(1980. 11. 15. 조선일보 기사)

163) 합수단 실무대책반, 「불교정화 및 중흥활동 홍보대책」.

낮에는 주지 밤에는 요정 경영인, 겉과 속이 달랐던 사이비 승려들의 비리
 환속 후 대비 시쫄든 쟁겨 목탁 재벌로, 사음·음주 등 갖가지 퇴폐행위 일삼아
 (1980. 11. 15. 동아일보 기사)

발표 이후에도 불교계 비리에 관련된 언론보도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위와 같은 언론보도들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의 과정 없이 수사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기사화하고 심지어는 보다 원색적인 표현으로 불교계 전반을 비리집단의 온상으로 매도해버렸다는 것이다. 가령 수사당국은 승려들의 부정축재액으로 도합 200억 6,000여만원을 산정하여 발표하였으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한 대다수의 국민들과 불교신도들은 불교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고 불교계로서는 명예 실추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신도가 불교계를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¹⁶⁴⁾

2 과장·왜곡된 수사결과 발표

수사당국의 왜곡·과장된 수사결과 발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사당국은 불교계 수사결과 가장 강력한 수준의 조치인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17명을 구속 후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중 실제 형사처벌된 것이 확인된 사람은 9명에 불과하다.¹⁶⁵⁾ 그리고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경우, 명선¹⁶⁶⁾, 혜운, 정○, 지

164) 월주 스님, 「특별대담」, 『월간법회』(1987. 10월호). 월주 스님은 『월간법회』와의 대담에서 “실제 부정도 아닌데 부정이라고 발표했다는 자체보다 그러한 보도에 의해 불자의 신심이 약해지고 신앙에 회의를 느껴 사찰에 안나오기가 하면 개종하는 사람이 느는 등 정신적인 피해 뿐 아니라 물량적인 피해까지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165) 형사처벌자 중 윤○ 스님, 종○ 스님, 김○○, 김○○은 당시 월주 총무원장 등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부정축재 또는 비리와는 무관하였다(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 9. 5. 선고 81노3387 무고). 안○○, 김○○, 김○○은 당시 문공부 중무담당관이었던 한영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처벌되었고(안○○ 벌금 50만원, 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 벌금 100만원, 서울고등법원 1981. 9. 28. 선고 81노796 뇌물수수 등), 한영수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되었다(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앞의 판결). 또한 고운사 주지 도○ 스님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육군군법회의의 1980. 12. 15. 선고).

166) 명선 스님은 당시 화엄사 주지였다. 법난 당시 태국에서 개최될 세계불교도우의회(WFD) 참석차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



○, 월○ 스님은 형사처벌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 2명은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167) 특히 구속 후 형사입건된 혜운 스님은 원심, 항소심 및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168) 이러한 사실은 불교계 수사 착수 이후 그 성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사결과를 과장하여 발표한 점과 더불어 당시 불교계 수사가 철저하고 치밀한 토대 위에서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수사당국이 성급한 판단 하에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후 언론에 그 결과를 발표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진정 및 투서를 근거로 하여 수사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투서를 한 4명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투서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여 수사당국의 수사행위 자체의 모순을 드러냈다.

합수본부가 밝힌 부정축재액●169)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합수본부는 “사유화한 사찰, 개인주택 영업시설 등 부동산 계 197억 5,870만원 상당 및 현금, 귀금속, 승용차 등 동산 계 3억원 상당, 도합 계 200억 6,000만원 상당을 축재하고 금 4억 6,000만원 상당 이상을 유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170) 하지만, 국방부는 불교계 수사경위 설명회에서 위와 같은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했다.

1980. 11. 14. 계엄사에서는 불교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승려 및 일반신도들이 부정축재한 200억 6,000여만원 중 부동산은 중단에 귀속시키고 동산은 환수하여 불교진흥기금으로 사용한다고 발표,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불교계 전체가 부정 비리의 온상인양 오해를 낳게 한 사실이 있었음.●171)

안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1980. 10. 27. 자진하여 보안사로 출두했다. 명선 스님은 보안사 및 헌병대 구치소에서 지냈으며, 조사받는 과정에서 각종 비위혐의에 대한 지시서를 작성하라고 강요받으면서 머리, 뺨, 뒤통수를 맞는 등 폭행 및 협박을 당하였다고 한다. 같은 해 12. 30.경 석방되었으며 주지직을 사퇴당하고 공권정지 5년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별도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은 없었다. 현재 흥국사 주지로 재직 중이며 당시 입은 피해로 인해 현재도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 위원회, 명선 스님 면담조사(2007. 3. 7.).

167)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머지 2명의 형사처벌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면담 및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1980년경 기소되어 재판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찰청, 군검찰 및 국가기록원에 해당 기록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68) 혜운 스님의 사례는 뒤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169) 수사당국은 스님들의 부정축재 수사결과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었다. 「불교재산 처리문제(청와대 보고)」에 따르면, “화쟁교원 104억원(년 2~3억원 수입)은 본인 희망에 의거 불교진흥원에 귀속시킬 예정이며, 학교재단 등 무등록 사찰 90억원과 개인소유 동산 및 현금 환수액 1억은 조계종에 귀속시킬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실제 재산을 환수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국방부, 「불교계 수사경위」(1989. 1. 30.)].

170) 합수본부, 「불교계(대한불교조계종) 정화를 위한 수사결과 발표문」(1980. 11. 14.).

수사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경우 스님¹⁷¹⁾이 “신도로부터 모금한 시주금을 기반으로 화쟁교원, 대각사 외 4개 개인사찰, 불교신문사 투자금, 현금 등 177억 9,800만원을 축재”¹⁷³⁾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화쟁교육재단 90억, 대각사 87억, 서울호국사 3,000만원, 부산호국사 2,500만원, 천용사 650만원, 약정사 50만원, 불교신문사(투자금) 2,900만원, 예금 700만원 총 177억 9,800만원인 것으로 수사결과 나타나 있다.¹⁷⁴⁾ 수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쟁교육재단과 대각사가 총 부정축재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우 스님은 “수사관들은 대체로 돈 문제를 물었다. 대각사 부지를 당시 시가로 계산해 내가 착복한 것으로 몰아갔다. 그래서 대각사는 재단법인 화쟁교원의 재산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소귀에 경 읽기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다.¹⁷⁵⁾ 불교계 수사경위 설명회에서도 부정축재 내역이 보도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 발표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해명한바 있다.

△수사 초기단계에서 부산 대각사 경우 주지가 자신의 재산 177억 9,800여만원을 중단에 헌납하겠다는 약속과 조사를 받던 스님들이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종합하여 발표

△실제 환수과정에서 대각사 경우 주지가 헌납 의사를 철회하여 환수치 못함

△사찰, 학교 등 부동산의 경우 주지명의로 등기가 된 재산은 사찰 공유재산임에도 실무자들이 개인 소유로 오판하여 환수예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부정축재 재산으로 과장 보도

그러나 경우 스님은 재산 헌납 의사를 표명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사실이 없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재산포기각서’를 요구했으나 나는 재산이 없어 각서를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각사는 내 개인재산이 아닌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¹⁷⁶⁾

171) 국방부, 「불교계 수사경위」(1989. 1. 30.).

172) 경우 스님은 당시 화쟁교원 대각사 주지로 재직 중이었다. 1980. 10. 27. 부산(501) 보안부대로 연행되어 조사받은 후 합수1국으로 넘겨져 5개월가량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구금되어 조사받았다. 조사과정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173) 합수본부, 「불교계(대한불교조계종) 정화를 위한 수사결과 발표문」(1980. 11. 14.).

174) 합수본부, 「불교계 정화수사결과 보고」(1980. 11. 13.).

175) 유응오, 앞의 책, 230쪽.

176) 우리 위원회, 경우 스님 면담조사(2007. 4. 11.). 경우 스님은 “재산포기각서에 서명한다면 내가 공금을 횡령한 것을 인정



또한 경우 스님과 더불어 17억 5,000여만원을 부정축재한 것으로 보도된 혜성 스님의 경우, 부정축재액은 실제 부정축재한 재산이 아닌 종단 소유의 재산이나 도선사에서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혜성 스님 개인재산으로 판단하여 산출한 것이었다. 혜성 스님은 “당시 조계종 소유의 도선사, 청담학원 소유의 청담중·고교, 혜명복지원 소유의 보육원, 양로원 등을 내 개인재산으로 간주, 그 시세를 평당 얼마 하는 식으로 대강 계산하여 부정축재액으로 산정하였다”¹⁷⁷⁾고 주장하였다. 불교계 수사경위 설명회에서 “도선사의 경우 17억 5,000여만원으로 보도되었으나 혜성 스님의 개인 소유재산은 1억원에도 미달되었고, 나머지 재산은 사찰 공유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축재 재산으로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밝혀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¹⁷⁸⁾

이렇듯 수사당국이 불교계 수사착수 직후(1980. 10. 28.)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지 아니한 상황(1980. 11. 14.)에서 성급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국민 및 다수의 신도들에게 불교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그 수사결과가 철저한 검증절차 없이 과장·왜곡된 채 언론에 보도되고 추후 정확한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아니하여 불교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수사결과와 과장·왜곡 발표는 수사당국이 처음 사회정화 차원의 목적에서 거국적으로 전국 주요 사찰을 대상으로 불교계 수사를 진행시켰으나 실제 수사의 성과가 미비한 나머지 진상을 은폐한 채 수사의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비리대상자 선별이나 비리혐의에 대한 증거확보 등 사전의 철저한 준비과정 없이 서둘러 수사를 진행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사 쿠데타로 집권에 성공한 신군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지지를 구하고자 단계별 사회정화 추진일정을 마련했고, 3단계인 1980. 10월 이후 특수분야 정화로서 언론·종교계 부조리 척결을 내세웠다.¹⁷⁹⁾ 이에 수사당국은 사회정화 추진 일정에 따라 종교계 정화를 계획하고 종결해야 하는 촉박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불교계 수사는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김충우 합수단장 역시 “(수사를

한 것이 된다. 또 그 돈의 향방이 어떻게 흐를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불교재산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것은 결국 독재정권을 확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유응오, 앞의 책, 231쪽).

177) 우리 위원회, 혜성 스님 면담조사(2006. 12. 6.).

178) 이에 관해서는 제7장 제2절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179) 이에 관해서는 본 조사결과보고서 30쪽 참조.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못해 사전에 사실을 확인하는 등 내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결국에는 수사에 예러가 많이 발생한 사유가 되었다”고 증언¹⁸⁰⁾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었다.

3 소결

합수본부는 불교계 수사와 관련하여 1980. 10. 28. 및 11. 14.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발표를 실시했다. 특히 11. 14. 실시된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각종 비리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불교계 부정축재액으로 총 200억 6,000만원을 산정, 이를 종단에 귀속시키며, 관련자 17명을 구속 후 형사입건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은 합수본부의 발표에서 밝힌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이러한 수사당국의 발표는 사실을 왜곡,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발표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속 후 형사입건된 17명 중 실제 형사처벌이 확인된 사람은 9명에 불과하였고, 종단에 귀속된 재산도 거의 없었다. 경우 스님이나 혜성 스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축재액 역시 사찰이나 재단법인의 재산을 승려 개인의 재산으로 판단하여 부정축재액으로 산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수사결과의 과장·왜곡 발표는 수사의 실행 규모에 비해 수사의 성과가 미비한 나머지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 국보위의 단계별 사회정화 추진일정에 따라 급박하게 수사가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특히 수사당국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수사 결과에 대한 종교적인 발표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 및 대다수 불교신자들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 그 이후 지속적으로 불교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불교계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종교탄압 이외에 전통불교로서 쌓아온 명예가 실추되는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180) 김충우, 앞의 면담조사.

10·27법난의 피해실태

우리 위원회는 10·27법난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합수단에서 생산한 수사 자료를 입수하고 피해 스님들과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피해 스님들이 어떠한 경위로 연행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수사 자료의 검토를 통해 전국의 본·말사에서 연행 또는 소환된 스님 및 관련자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스님들은 수사당국에 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강제적으로 연행되었으며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 고문, 가혹행위 등을 당한 스님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장에서는 특히 수사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가혹한 고문이나 폭행 등을 당한 스님, 부정축재 혐의로 언론에 보도되어 명예가 크게 실추된 스님 및 불교계에서 사건의 진상에 관하여 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스님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수사과정에서의 피해

1. 연행 및 구금

범죄혐의자에 대한 연행 및 구금은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법난 수사가 실시될 당시인 1980년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181)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되어야 한다. ●182)

법난피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행 및 구금이 실행되었던 1980. 10. 말경은 신군부 집권 이후 전국비상계엄이 선포된 시기로서 구 계엄법(1949. 11. 24. 법률 제69호, 아래 ‘계엄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유신헌법 제54조 제3항, ●183) 계엄법 제13조●184)를 근거로 1980. 8. 4. ‘계엄포고 제13호’●185)를 발령하였고, 이에 따라 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별도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법난피해자들에 대한 연행 및 구금 역시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엄법 제13조에 따른 조치는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군사상의 필요는 군대의 안전을 위한 군작전상의 필요를 의미하는 것으로●186) 사회치안 유지를 위해 일반경찰병력으로 가능한 상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엄포고 제13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고질적인 각종 불량배를 일제히 검거 순화함으로써 밝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라는 목적을 위해 불량배 일제 검거를 내세운 것이다. 불량배 소탕은 사회치안 유지를 위한 것으로 군사작전과는 무관하므로 계엄포고 제13호는 계엄법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결과적으로 위법한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피해자들을 연행·구금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181) 헌법(전문개정 1980. 10. 27. 헌법 제9호)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182) 위 헌법 제11조 제3항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83) 유신헌법 제54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된 헌법 역시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184)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85) 계엄포고 제13호는 ‘불량배 일제 검거’를 주내용으로 한다. 그 대상자로서 폭력사범(강도, 절도, 치기배 포함), 공갈 및 사기사범(서민 착취배 포함), 사회 풍토 문란 사범(밀수, 마약, 상습 도박자 포함)을 들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고 엄중 처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8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924쪽.



법난피해자들이 연행 및 구금될 당시 수사관들이 정당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 형사 입건된 피해자들의 경우 수사당국이 입건 후 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 임의적으로 피해자들을 연행하여 서울 보안사 분실 및 지역 보안부대,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하였을 뿐이다.^{•187} 연행 당시에도 일부 강제력이 동원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물리력이 행사되지 아니한 형식상의 임의동행이었지만 비상계엄이 시행된 당시의 살벌한 사회적 분위기와 수사기관원들과 접촉이 거의 없어 익숙하지 않았던 승려들에게는 사실상의 강제연행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대부분 수사관들은 자신들의 신분이나 범죄사실 등 연행이 유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든 사정들은 당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관련 형사법에 의하더라도 명백히 불법이라 할 것이다.

한편 합수본부는 11. 14. 수사결과 발표에서 비리승려 및 관련 민간인 55명과 참고인 98명 등 총계 153명을 연행 또는 소환하여 조사했다고 밝혔다.^{•188} 우리 위원회가 당시의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당국에서 조사받은 인원을 확인할 결과 162명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189} 구체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25교구 본사 중 제13교구인 쌍계사(다솔사 주지 보○ 스님이 수사대상에 올랐으나 미검)나 제21교구인 송광사, 제25교구인 봉선사를 제외한 전 교구 본사 및 말사에서 스님 및 관련자들이 연행되어 조사받았으며, 송광사·해인사·범어사 등 7개 본사를 제외한 18개 본사 주지 스님들이 연행 또는 소환되었다. 조계종 총무원의 경우 총무원장인 월주 스님을 비롯하여 총무부장, 규정부장 등 총 12명이 연행되었다. 총무원을 포함한 전국 25교구 본·말사별 수사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7) 연행 및 구금에 있어서 수사당국의 구체적인 불법행위는 제2절에서 피해자들의 사례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88) 합수본부, 「불교계(대한불교조계종) 정화를 위한 수사결과 발표문」(1980. 11. 14.), 하지만 그 정확한 명단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189) 수사기록에 '미검'으로 나타나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숫자이다. 우리 위원회는 당시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연행되거나 자수하여 조사받은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수사당국이 직접 작성한 연행자 명단을 찾을 수 없었고, 법난과 관련한 수사기록 전체가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명단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실제 연행되거나 소환되어 조사받은 대상자 수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계엄사의 수사결과 발표는 1980. 11. 14.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그 이후 연행되거나 소환된 자, 또는 자수한 자가 있을 수 있어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표 17〉 전국 25교구 본·말사별 연행자 수¹⁹⁰⁾

교 구	연행자 수(승례)	교 구	연행자 수(승례)
총무원	12명(10명)	14교구(범어사)	7명(6명)
1교구(조계사)	37명(12명)	15교구(통도사)	11명(11명)
2교구(용주사)	4명(4명)	16교구(고운사)	3명(3명)
3교구(신흥사)	9명(6명)	17교구(금산사)	1명(1명)
4교구(월정사)	9명(8명)	18교구(백양사)	5명(4명)
5교구(법주사)	11명(5명)	19교구(화엄사)	4명(3명)
6교구(마곡사)	6명(6명)	20교구(선암사)	1명(1명)
7교구(수덕사)	3명(3명)	21교구(송광사)	·
8교구(직지사)	4명(3명)	22교구(대흥사)	3명(3명)
9교구(동화사)	2명(2명)	23교구(관음사)	2명(2명)
10교구(은혜사)	2명(2명)	24교구(선운사)	3명(3명)
11교구(불국사)	3명(3명)	25교구(봉선사)	·
12교구(해인사)	3명(3명)	기 타	17명(8명)
13교구(쌍계사)	·	총 계	162명(112명)

물론 이러한 수사당국의 연행 및 소환은 비상계엄 상황일지라도 군사적 필요가 없어 체포·구속영장이 제시되었어야 할 사안이었으나 법원이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이 없 이 이루어져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이었다. 더욱이 전국 대부분의 조계종 교구 본사 및 말사에서 수많은 스님과 관련자들을 연행, 소환하여 조사하였음에도 그 대부분은 훈방 처리 되었으며 실제 형사입건된 대상자는 17명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구체적 혐의 없 이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사당국의 강압적인 연행 및 조사로 인해 그 대상자 들은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었으며 불교계 역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190) 본·말사 기준으로 수사기관에 연행 또는 소환되거나 자수하여 조사를 받은 대상자(스님 및 일반인 포함)를 파악한 것이다. 27년 전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본·말사별 인원수 산정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속이 불분명한 대상자는 ‘기타’ 항목으로 파악하였다. 실제 대상자 명단과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실태¹⁹¹⁾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를 수사할 때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 신체에 대한 강압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법난 수사가 개시된 직후 개정된 헌법(전문개정 1980. 10. 27. 헌법 제9호) 제1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고문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중략)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자백배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사정 하에서라도 수사 중 고문 및 가혹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 행위 자체로 위법하며, 고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진술은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는 불교계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자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16명의 피해 스님들을 면담조사 하였는데 그 중 8명의 스님들이 폭행, 가혹행위, 고문 등을 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 이외 스님들도 구타는 없었지만 대부분 협박을 당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증언하여 조사과정에서 성직자로서 기본적인 예우를 받지 못하고 상당한 치욕과 수치심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스님은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승복을 벗기고 군복으로 갈아입혀 성직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채 장기간 구금당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혜성 스님의 경우 조사받는 과정에서 하루에 1, 2차례 주먹이나 발로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고, 각목으로 오금 치기, 무릎을 꿇게 한 상태에서 각목을 집어넣고 무릎 누르기, 새끼손가락에 볼펜을 끼워 넣은 상태에서 조이기, 잠 안 재우기 등과 같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호소했다. ¹⁹²⁾

191) 불교계 수사와 관련하여 연행된 스님들이 모두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은 아니었다. 수사를 담당한 기관이나 연행된 지역 또는 담당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수사의 양상은 달랐다. 가령, 월주 스님이나 월탄 스님 월탄 스님은 당시 전등사 주지 재직 중에 김포 해병대로 연행되었다가 3일 만에 훈방되었다고 한다. 우리 위원회 면담(2007. 5. 21.) 등은 고문이나 구타, 가혹행위 등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정수 스님 역시 온몸을 동아줄로 묶은 후 코와 입에 고춧가루와 빙초산을 섞은 물을 붓거나, 양손목과 양발목을 테이프로 감은 후 전기를 통하게 하는 등 물고문, 전기고문 등 다양한 고문을 당했으며, 각목으로 무릎을 꿇어앉힌 후 각목으로 구타를 가하기도 하여 세 차례 정도 까무러치는 등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한다.●193)

윤월 스님의 경우 범죄수사단에서 의자에 앉힌 상태로 의자를 이리저리 빙빙 돌리거나 손에 납덩이를 올려놓고 전기를 통하게 하는 전기고문을 당하는 등 갖은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했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194)

혜운 스님의 경우 수사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수사에 앞서 조사실로 데려가 무조건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고 한다. 군홧발로 밟고 소총 개머리판, 몽둥이로 온몸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 개, 돼지 잡듯이 하였으며, 죽으면 20만원으로 송장 치르면 된다는 식으로 온갖 협박과 욕설을 일삼았다고 한다. 그 결과 당시 혜운 스님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으며, 현재도 비가 오면 등이 구들장 같이 쭈시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195)

삼보 스님의 경우 수시로 폭행 및 협박, 고문 등이 자행되었다고 증언했다. 수사관들의 경우는 주로 뺨을 때리는 정도의 폭행만을 가하였으나 사병들은 기름을 먹인 탄광용 갱목으로 온몸을 두들겨 패거나 머리를 때리며 군홧발로 목을 밟고 물고문을 하는 등 심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하였으며 때로는 제대로 잠을 재우지 않기도 하였다고 한다.●196)

충남지역 보안부대로 연행된 진경 스님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야구방망이나 주먹으로 맞거나 몸이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면서 구둣발로 밟히는 등 수없이 폭행을 당했다고

192) 우리 위원회, 앞의 혜성 스님 면담조사.

193) 우리 위원회, 정수 스님 면담조사(2007. 2. 23.). 정수 스님은 1980. 10. 27. 해병대 1사단 보안부대에 연행되어 해병대 구치소에서 약 한달 가량 구금되어 있다가 인양에 위치한 수도군단 헌병대, 그리고 다시 안양교도소로 이감되어 그곳에서 20여 일간 구금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194) 우리 위원회, 앞의 윤월 스님 면담조사.

195) 우리 위원회, 혜운 스님 면담조사(2007. 4. 11.). 혜운 스님의 사례는 뒤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196) 우리 위원회, 삼보 스님 면담조사(2007. 1. 8.). 삼보 스님의 사례는 뒤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한다. 당시 구타당한 후유증으로 인해 혈전병이 생겨 지금까지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현재도 몸 전체에 어혈이 남아 큰 고생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197)

이외에 명선 스님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비위협외에 대해 자백을 강요받으면서 머리, 뺨, 뒤통수를 맞는 등 폭행 및 협박을 당했으며,●198) 지선 스님은 구타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수사관들로부터 온갖 협박을 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으며 때로는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은 채 조사받았다고 한다.●199) 성해 스님 역시 구타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들었고,●200) 철우 스님은 서빙고분실에 연행되어 온갖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201) 원철 스님도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지는 않았으나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지병이 악화되어 석방 후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202)

2 피해 사례

우리 위원회는 법난의 피해자 조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스님들을 방문,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당시 피해 스님들이 어떠한 경위로 수사당국에 연행되었는지, 조사과정은 어떠한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문이나 폭행 등이 자행되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다수 스님들이 당시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가슴 아파하였고, 일부 스님들은 현재도 당시의 고문, 가혹행위의 후유증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으

197) 우리 위원회, 진경 스님 면담조사(2007. 3. 21.). 진경 스님은 1980. 10. 27. 충남지역 보안부대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자진해서 출두하였다고 한다. 한달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마곡사로 나온 후 재차 연행되어 보름간 공주경찰서 및 대전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198) 우리 위원회, 앞의 명선 스님 명담조사.

199) 지선 스님은 당시 관음사 주지였다. 석방 후 흥국사에 연금당했다.

200) 우리 위원회, 성해 스님 면담조사(2007. 3. 29.). 성해 스님은 당시 천왕사 주지였다. 1980. 10. 27. 당시에는 서울에 출장 와 있어 제주도에 돌아온 일주일 뒤 제주지역 보안부대로 연행되어 19일간 구금되었다고 한다.

201) 우리 위원회, 철우 스님 면담조사(2007. 4. 13.). 철우 스님은 당시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수사기록에는 합수3국(경찰청 특수수사대)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철우 스님은 17일 가량 구금되었다가 훈방처리되었고 흥국사에 연금당했다.

202) 우리 위원회, 정○○(당시 신흥사 사무장) 면담조사(2007. 9. 12.) ; 우리 위원회, 강○○(당시 낙산사 사무장) 면담조사(2007. 9. 12.). 원철 스님의 사례는 뒤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며 고생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우리 위원회가 당시의 피해사항에 대한 진술을 듣겠다고 접촉을 시도하였지만, 생각하기도 기억하기도 싫다며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스님들은 연행된 후 강제적으로 승복 대신 군복이나 수의를 입은 채 수사관들로부터 온갖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며 조사받은 사실에 대해 성직자로서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전국 사찰 일제수색 당시 군인들이 군화를 신은 채 법당에 들어가 수색을 하고, 원로 스님들을 포함한 전체 스님들을 사찰 마당에 세워놓고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것²⁰³⁾은 대부분 스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여기에서는 법난 피해 사례 중 상대적으로 가혹한 고문 및 폭행 등을 당한 스님의 경우와 부정축재 혐의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한 스님의 경우를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사례 조사에 있어서는 가해자인 당시 수사관들에 대한 면담조사가 진행되었어야 했으나 수사관 확인 과정의 어려움 및 면담 거부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대부분 피해 스님들이나 관련자들의 증언 및 당시 생산된 수사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기술하였음을 밝혀둔다.

1. 월주 스님(당시 조계종 총무원장)²⁰⁴⁾

월주 스님은 1980. 10. 27. 새벽 개운사에서 조계사 총무원으로 출근하는 도중 사복 수사관들에 의해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되었다. 다른 총무원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서빙고분실에 구금되어 합수단 수사1국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보안사 한○○, 장○○, 신○○ 수사관이 월주 스님의 수사를 담당하였다. 월주 스님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나 신체적인 가혹행위 등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

수사는 주로 공금 횡령과 총무원장으로서 금전과 결부된 인사권의 행사 여부 등 부정 축재와 권력비리, 그리고 조계종 분규의 원인 및 폭력사태의 책임 등에 집중되었다. 하

203) 우리 위원회, 앞의 황성 스님 면담조사. 황성 스님은 1980. 10. 30.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10월 말경 문경 봉암사로 쳐들어온 군인들은 모든 스님들을 법당 앞으로 모이게 하고 줄을 세웠다. 이때 조실 스님까지 줄에 세우고 명령했다. (중략) 그리고 다짜고짜 스님들을 집결시켜 모든 스님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물러갔다. 너무 황망하고 무례한 사건을 당한 후 모든 수좌승들은 분노했다.”

204) 우리 위원회, 앞의 월주 스님 면담조사.



지만, 투서 등을 근거로 한 수사결과 이러한 비위혐의가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205)

특히 담당 수사관의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조계종 분규와 관련해서도 월주 스님의 주장이 대부분 정당하며 ‘합법적인 법통을 이어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구금 후 1주일 정도 지났을 때 수사관으로부터 조계종 분규 상황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무원장직에서 사퇴해줄 것을 종용받았고, 11. 3. 잠시 총무원으로 가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 총무원장직에서 사퇴했다.●206) 월주 스님은 23일간 구금되어 있다가 무혐의로 훈방 처리되었다.

2. 혜성 스님(당시 도선사 주지)●207)

1980. 10. 27. 새벽 5시경 혜성 스님은 도선사 경내에서 국가에 중대한 방침이 서있어 같이 가야겠다는 20여명의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서울시청 뒷편에 있는 경찰 특수수사대(경찰청 무교동분실)에 구금되었다. 연행 당시 폭력 등의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은 임의동행 형식이었지만 자신들의 신분이나 연행의 이유 고지, 체포 영장의 제시 등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상의 강제연행이었다. 수사 인원 중 일부는 사찰 사무실에 있던 각종 서류들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수거해 갔으며, 도하 스님을 포함한 상좌 여러 명을 각각 법당에 분리, 감금한 채 조사를 하기도 했다.

혜성 스님은 특수수사대에 연행된 직후 승복 대신 재소자 번호가 기재된 푸른 수의복으로 갈아입은 채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사받는 동안 외부인과의 면회나 연락은 일체 금지되었다. 조사는 합수본부 수사3국인 경찰에서 담당했고, 수사반장은 강○○

205) 당시 생산된 수사자료 중 장○○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에는 조치의견으로 “비위사실 발견된 바 없으므로 훈방조치”라고 작성되어 있다. 합수1국(수사관 장○○), 「조계종 승려 수사결과보고」(1980. 11. 10.). 또한 장○○는 우리 위원회 면담조사에서 “월주 총무원장 개인에 대한 첩보가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 수사를 해보니 대부분 사실무근인 것으로 판명 났다. 종단 분규의 경우에도 월주 스님측인 종회 측이 합리적이고 적법했다.”고 증언했다. 우리 위원회, 장○○ 면담조사(2007. 5. 2.).

206) 장○○는 우리 위원회 면담조사에서 “월주 스님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보안사에 끌려와 조사까지 받은 터에 그냥 내보낼 수는 없었고 어쨌든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기에 총무원장 사퇴를 요구하게 된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우리 위원회, 앞의 장○○ 면담조사.

207) 우리 위원회, 앞의 혜성 스님 면담조사.

경감, 수사관은 황○○, 김○, 김○○ 경위, 박○○ 경사 등이었다. 조사는 구금 기간(25일) 동안 계속 되었고, 주로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받거나 조서작성을 위한 신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혜성 스님은 조사받는 도중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을 수시로 받았는데, 하루에 1, 2차례 군복을 입은 수사보조관 4, 5명 가량이 조사실로 들어와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치는 등 폭행을 가했고, 각목으로 오금을 치거나 무릎을 꿇게 한 상태에서 각목을 집어넣고 무릎 누르기, 새끼손가락에 볼펜을 끼워 넣은 상태에서 조이기, 잠 안 재우기 등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담당수사관들은 직접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으나 수사관들의 지시에 따라 수사보조관들이 폭행을 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조사는 주로 부정축재와 관련된 사항에 집중되었다. 당시 혜성 스님은 각종 불사를 일으키고, 교육 및 복지사업에 진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전관계가 많았다고 한다. 혜성 스님 명의로 된 각종 부동산과 동산, 도선사를 비롯한 조계종 소유의 불교재산, 청담학원 및 혜명보육원 등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혜성 스님의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체 재산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었다. 혜성 스님뿐만 아니라 참고인 자격으로 혜성 스님의 동생이던 이○○, 당시 청담학원 상무이사였던 우○○, 주차장 공사업자 등 19명이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결과를 담은 「불교계 정화 수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혜성 스님과 관련하여 ‘귀속할 사유재산 현황’으로 “대지 1억 2,580만원, 압자 1,000만원, 가옥 2,800만원, 양로원 2억 5,145만원, 청담고교 5억 3,346원, 청담학원 1억 3,000만원, 도선사 6억 665만원, 채권 2,000만원, 유원지 투자금 5,000만원” 등 총합 17억 5,536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다.●208) 또한 혜성 스님의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수사결과 내용보고」라는 문서●209)에 따르면, 개인재산과 종단재산, 법인재산을 모두 합하여 17억 5,536만원이라고 기재하고, 구체적 비위내용으로 “청담중고교 공납금 임의횡령과 사찰시주금 등 임의횡령(호수여객 대표이사 박○○ 대출, 금강골재 부친 대표이사 1,000만원 소비, 모친 이○○ 명의 가옥 매입시 사용, 청담중·고교 및 보육원, 양로원에 무단지원, 조계종에 무단 지출)”이

208) 합수본부, 「불교계 정화 수사결과 보고(대한불교조계종)」(1980. 11. 13.).

209) 작성주체와 작성일자는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수사관들이 혜성 스님을 조사하면서 상부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고되어 있다. 두 문건에 나오는 17억 5,536만원은 「불교계(대한불교조계종) 정화를 위한 수사결과 발표문」에 기재된 혜성 스님 부정축재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어떤 근거에 따라 위 부정축재액이 산정되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210

이러한 비위내용에 대하여 혜성 스님은 “당시 조계종 소유의 도선사, 청담학원 소유의 청담중고교, 혜명복지원 소유의 보육원, 양로원 등을 내 개인재산으로 간주, 그 시세를 평당 얼마 하는 식으로 대강 계산하여 부정축재액으로 산정하였다. 수사기관이 사전에 어느 정도 수사 준비를 하였다는 느낌을 받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상부로부터 일정액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오더를 받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았다. 수사 과정에서 내 개인재산이 아니라고 수차례 항변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211

이와 관련하여 1989. 1. 30. 국방부에서 개최된 불교계 수사경위 설명회에 따르면, 사찰, 학교 등 부동산의 경우 주지 명의로 등기가 된 재산은 사찰 공유재산임에도 실무자들이 개인 재산으로 오판하여 환수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부정축재 재산으로 과장보도했고, 도선사의 경우 17억 5,000여만원으로 보도되었으나 혜성 스님의 개인 소유재산은 1억원에도 미달되었고 나머지 재산은 사찰 공유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축재 재산으로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212

결국 당시 수사기관은 혜성 스님의 부정축재와 관련하여 상부로부터 내려온 지시에 따라 부정축재액을 도출해내기 위해 종단 소유 재산이나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재산을 혜성 스님 개인재산으로 판단하여 그 전체를 부정축재 재산으로 산정하여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혜성 스님의 항변 및 등기부등본, 토지·건물대장 등 소유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열람 등을 통하여 소유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부정축재로 결론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불교계(대한불교조계종) 정화를 위한 수사결과 발표문」에 “시주금 사찰공금을 유용, 환속 후 생활대책을 위하여 개인사찰 건립, 회사설립, 부동산 매입, 요정 경영”하

210) 다른 수사자료에서도 부정축재액을 동일하게 산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합수단, 「수사결과보고」(1980. 11. 10.). 보고에서 혜성스님에 대한 재산조사 항목에는 총재산이 17억 5,536원(개인재산 2억 3,380만원, 종단재산 6억 665만원, 법인재산 9억 1,491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11) 우리 위원회, 앞의 혜성 스님 면담조사.

212) 국방부, 「불교계 수사경위」(1989. 1. 30.).

고 “각종 불사를 위요한 부정행위 자행”으로 “우이동 하천부지 복개공사 이권을 얻어 6억 상당의 교통광장 건립공사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13) 이러한 내용은 언론에 “낮에는 주지, 밤에는 요정경영인, 겉과 속이 달랐던 사이비 승려들의 비리”라는 식의 기사●214)가 실리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청담학원 상무이사였던 우○○씨는 면담과정에서 “1974. 8월경 김○○로부터 ○○학원을 인수하였는데 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일부가 미군 기지촌내 술집이었고 학교 인수과정에서 술집 역시 자연스럽게 팔려오게 된 것이다. 이후 위 술집을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여 사정상 6, 7년 후 정리될 때까지 청담학원 명의로 운영된 것으로 명목상 학원 소유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215) 당시 수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 술집은 ○○학원의 전 이사장이 학원 기본재산으로 경영하던 것으로 1974년 학원 인수와 더불어 청담학원에 인수되었으며, 1978년 감독청의 처분승인을 받아 처분될 때까지 청담학원에서 직영하기로 결정하여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정하여 관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16) 청담학원 역시 학원 인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술집을 즉각 처분하지 못한 책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발표나 언론의 보도는 상당히 과장되고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혜성 스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었다.

또한 우이동 하천부지 복개공사와 관련하여 수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시 도봉구청이 공사비 6억원 상당의 우이천 복개공사를 허가하여 공사가 착수된 사실, 시설물은 시

213) 합수본부, 「불교계(대한불교조계종) 정화를 위한 수사결과 발표문」(1980. 11. 14.).

214) 동아일보, 1980. 11. 15.자.

215) 우리 위원회, 우○○ 면담조사(2006. 12. 6.).

216) 당시 생산된 수사자료 중 문제된 ‘술집’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당시 도선사 사무국장이자 청담학원 상무이사였던 우○○가 1980. 11. 12. 수사3국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학원 인수 과정과 관련하여 술집을 관리하게 된 경위가 나타나 있다. 일부를 발췌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혜성 스님의 학교 경영에 기본재산을 전 설립자 김○○에게 환원조치하고 새로운 기본재산을 형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 특별한 재산이 없어 그 당시 김○○가 경영하던 아리랑 관광홀이라는 건물 193평, 대지 250평의 부동산이 은행 융자로 인하여 대출 상황이 아니 되어 성업 공사로 이전, 일반 공매입찰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을 김○○의 연고권을 빌려 혜성 스님이 자금을 투자 인수하였습니다. (중략) 운영에 있어 임대를 하기로 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무허가 영업소였으며 여러 가지로 연구결과 학교에서 직영할 수밖에 없다 하여 직영책임자로 본인의 매제인 임○○이라는 사람에게 현장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중략) 그 홀은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 처분승인받아 처분키로 회의에서 결의하여 1978. 6. 23.자 처분승인을 받아 처분하였으며(이하 생략).” 합수단 수사3국, 우○○ 진술서(1980. 11. 12.)(363-1980-60, 532쪽)



에 기부 채납하되 복개면에 유료주차장을 20년간 운영하기로 한 사실, 위 주차장이 주로 도선사를 방문하러 온 신도들의 편의를 위해 건립될 예정이라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었다.●217)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관청과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혜성 스님은 연행된 지 25일만에 석방되었고 그 이후 형사처리 절차가 개시된 바는 없었으며 불교정화위에 회부되어 체탈도첩을 당했다. 조사 과정에서의 고문, 가혹행위 등의 후유증으로 탈장 수술을 받는 등 몸이 약해져 육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리고 수사결과 발표나 언론을 통한 과장·왜곡된 보도로 인해 혜성 스님 개인이나 도선사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신도수도 급감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218) 또한 혜성 스님 밑에서 수행하던 다수의 상좌들이 혜성 스님이 주지에서 쫓겨나면서 도움을 받지 못하여 환속하는 등 간접적인 피해도 발생했다고 한다.

3. 삼보 스님(당시 상원사 주지)

1980. 10. 27. 새벽 5시 반경 강원도 횡성 보광사에서 경찰 1명과 보안사 수사관 3명에 의해 연행되었다. 삼보 스님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간첩이 한명 내려왔는데 당신과 접선을 하려 했다는 진술이 있어 횡성서로 가서 대질신문을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수사관들을 따라나섰다고 한다. 삼보 스님은 간첩이 접선하려 했다는 말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연행에 순순히 응했다는 것이다. 1군사령부 보안부대로 끌려갔으며, 가자마자 승복을 벗긴 채 군복을 입힌 상태에서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구금 기간동안 계속 되었는데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받거나 조서작성을 위해 신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사관들은 정보조, 수사조, 타격조로 구별되어

217) 당시 생산된 수사자료 중 우이동 하천부지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363-1980-60, 374쪽) 도봉구는 1980. 6. 9. 도선사 주지 혜성 스님이 출원한 우이동 5-1 앞 우이동 교통광장 조성사업(하천공사) 허가신청에 대해 허가를 하였다. 허가증에 따르면, 허가사항으로 “목적: 주차장, 공사비: 약 600,000천원, 시행방법: 민자유치, 시설물 시에 귀속, 복개면 유료주차장 운영, 투입공사비 상당의 점용료 면제”로 되어 있으며, 허가조건 중 “본공사의 준공과 동시 일체의 시설물은 당시에 귀속(기부 채납)한다. 하천점용료는 투입공사비 상당을 면제한다. 단, 유료주차장 운영기간은 20년으로 한다”라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18) 우리 위원회, 앞의 우○○ 면담조사. “신도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1980년 당시 도선사 방생활동에 참여한 신도를 태운 버스가 100~200여대였으나 이후에는 40대 정도에 그치게 되었다.”

있었으며, 사병들로 구성된 타격조를 제외하고 대부분 중·상사 계급을 가진 군인들이었다고 한다. 조사 받을 당시 스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는 전혀 없었으며, 수시로 폭행 및 협박, 고문 등이 자행되었다고 증언했다. 삼보 스님은 수사관들의 경우는 주로 뺨을 때리는 정도의 폭행만을 가하였으나 타격조인 사병들은 기름을 먹인 탄광용 갱목으로 온몸을 두들겨 패거나 머리를 때리며 군홧발로 목을 밟고 물고문을 하는 등 심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하였고, 그 결과로 피오줌을 싸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자백을 하지 않으면 서빙고분실로 데려가 몸을 가루로 만든 다음 한강에 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하기도 했으며, 조사 과정 중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는 주로 부정축재와 폭행 혐의에 집중되었다. 당시 작성되었던 수사자료에 따르면, 삼보 스님이 상원사 주지로 재직할 당시 시주금 1,400만원 정도를 착복하여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개인가옥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와 강원도 정선의 정암사 주지 임용과 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 등이 나타나 있다.^{●219)} 이에 대해 삼보 스님은 “시주금 횡령과 같은 비위사실은 일체 없었다. 정암사 주지 임명과 관련하여 전임 주지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동국대 동기 승려를 주지로 임명하려 해서 약간의 물의가 있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고 증언하였다.^{●220)}

삼보 스님은 1980. 11. 17.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마치면서 앞으로 승려를 하지 않겠다, 다른 스님들을 만나지 않겠다,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 등 10가지 사항에 대해 서약서 작성을 강요당했고, 1군사령부 법당에 가서 환속식을 강제로 하게 되었다.^{●221)} 조계종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군사령부에서 체탈도첩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980. 11. 18.부터 12. 4.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삼청교육대(36사단)에 입소하여 삼청교육을 받은 다음 1981. 1. 4. 출소하게 된다. 법난피해자 승려 중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사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219) 제군 합수단, 「45계획 중간보고」.

220) 우리 위원회, 앞의 삼보 스님 면담조사

221) 서약서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본인은 1980. 10. 27. ~ 11. 17.까지 불교계 정화 대상자로 제군 합수단에 소환되어 조사받은 일체의 득문 내용에 대하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누설치 않겠으며 또한 불교계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까지 승려자격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직책과 권한을 1980. 11. 17.부로 체탈도첩과 동시 사임하겠습니다.” 합수단, 삼보 스님 서약서(1980. 11. 17.).



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삼보 스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조사받는 동안 상당히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마도 조사관들에게 꽤 씩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삼청교육대에 보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증언하였다. ●222)

한편, 삼보 스님은 법난의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법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보상은 불필요하며 국가가 법난 관련 기념관을 짓거나 대통령이 유감 성명을 표명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223)

4. 혜은 스님(당시 법주사 교무국장) ●224)

혜은 스님은 1980. 11.경 법주사 교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자진하여 지역 보안부대에 출두하였다. 이미 주지인 이○ 스님과 나머지 스님(재무 월○ 스님, 총무 도○ 스님)들이 보안대로 끌려간 상태에서 교무국장인 혜은 스님 역시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 출두했다고 한다. 당시 법주사 인근 지역은 충북합수단의 관할구역이었고 법주사 스님들을 연행하여 수사를 담당할 곳은 509보안부대였다.

혜은 스님은 출두한 당일 저녁 승복을 다 벗긴 후 군복을 입힌 채로 간첩이나 중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나 수감될 정도로 보이는 철문으로 굳게 잠긴 방에 갇혔고, M16을 소지한 헌병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혜은 스님에 따르면, 다음날부터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수사에 앞서 조사실로 데려가더니 무조건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군홧발로 밟고 소총 개머리판, 몽둥이로 온몸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 개, 돼지 잡듯이 마구 때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다. 죽으면 20만원으로 송장 치르면 된다는 식으로 온갖 협박과 욕설을 일삼았다고 한다.

수사는 주로 부정축재 문제에 집중되었다. 당시 혜은 스님은 개인적으로 약 5,000만원 정도의 돈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수사관들은 그 돈의 출처를 추궁 당하였다. 그 돈은

222) 삼보 스님에 따르면 월정사 총무 스님이었던 현우 스님 역시 함께 삼청교육대에 입소하게 되었으며, 현우 스님은 출소 이후 그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한다.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현우 스님은 1999. 10. 13.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지도과-1106, 이○○ 주민조회 결과회신, 2007. 10. 16.).

223) 우리 위원회, 앞의 삼보 스님 면담조사.

224) 우리 위원회, 앞의 혜은 스님 면담조사 ; 우리 위원회, 이○ 스님 면담조사(2007. 2. 28.).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과 사채 등을 해서 불린 돈, 소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개인적으로 노후 보장을 위해 마련한 돈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위 금액을 횡령했다고 자백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강요에 못 이겨 기증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또한 불사와 관련해서도 부정축재 여부를 조사했지만 혜운 스님은 교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혐의점이 없었다.

문제는 법주사에서 운영하던 공동주차장과 관련한 비리였다. 혜운 스님은 당시 법주사 교무국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법주사 공동주차장의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기존의 관례에 따라 교무국장으로서의 봉급 이외에 공동주차장 관리인으로서 봉급 및 상여금으로 4,130,000원 상당을 수령한 바 있었다. 또한 위 주차장 수익금 중 일부인 4,369,829원 상당을 제3자 명의로 예금하고 있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하여 보안부대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고, 2주후 대전교도소로 이송되어 군검찰의 조사를 재차 받았다가 계엄이 해제된 후 다시 청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 혜운 스님은 대전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을 때 교도관이 교도소 내에서도 삼청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총 4주 동안 삼청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여 봉체조나 목봉말림 등을 하였고, ‘새나라 새정치, 정신개조’ 등의 온갖 구호를 외치게 했다고 한다.

혜운 스님은 위 비리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결과는 무죄였다.●225) 이유는 혜운 스님이 조사과정에서 변소한 바와 같이, 공동주차장 관리인으로서 봉급 및 상여금을 수령한 행위는 주지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사찰의 일반재산 중 주지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제3자 명의 예금행위는 주차장 중의 일부 비포장 지역을 포장하기 위한 경비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후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226) 무죄판결 확정 후 혜운 스님은 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144만원 정도를 지급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빼앗겼던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혜운 스님은 수사과정에서 겪은 고문과 가혹행위의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비가 오면 등이 구들장 같이 아프다고 한다. 수사 과정에서 혜운 스님 및 참고인들의 항변에도 불

225) 청주지방법원 1982. 5. 26. 선고 81고단69 업무상횡령.

226)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87 업무상횡령.



구하고 무리하게 기소하여 3심 모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한다.

5. 원철 스님(당시 낙산사 주지, 사망)

원철 스님은 1980. 10. 27. 새벽 낙산사에서 보안사 강릉보안부대(일명 영동공사)로 연행되었다. 당시 원철 스님과 더불어 낙산사 재무스님, 사무원, 신흥사 사무장 등 총 6명이 같이 연행되어 같은 방에 구금되었다. 원철 스님에 대한 수사는 주로 1977년 낙산사 경내에 세워진 해수관음상 불사와 관련한 사안에 집중되었다.●227)

수사 과정에서 원철 스님을 포함한 연행자들은 수사관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228) 하지만, 원철 스님은 연행 전인 1977.경부터 간염 등 앓다가, 1980. 연행 당시에는 간경화로 악화되었는데 22일의 구금기간 동안 요양 및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지병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석방 후 한달 가량 흥국사에서 강제로 참선을 당하였으며 낙산사로 복귀한 후 주지직을 박탈당하고 병원 치료 등을 받다가 1983. 9.경 간암으로 사망(당시 48세)하였다.

원철 스님은 기존에 알려진 것●229)과는 달리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폭행이나 고문, 가혹행위 등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한다.●230) 하지만,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 지병을 악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사망의 간접적인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27) 보안부대는 원철 스님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비리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형사입건 되지는 않았으며 정화중흥회의에 회부하여 징계토록 조치하였다. 합수단, 「45계획 수사결과」.

228) 당시 신흥사 총무였던 지○ 스님은 원철 스님과 함께 연행되었다. 지○ 스님은 조사과정에서 구타나 고문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우리 위원회, 지○ 스님 전화통화 조사(2007. 10. 12.).

229) 원철 스님은 그간 불교계 내에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낙산사 주지였던 원철 스님은 수사 당국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얼마 있다 입적하고 말았는데 고문의 후유증이 사인이라는 말이 불교계에 무성하게 떠돌기도 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한국현대불교운동사Ⅲ(10·27법난편)』, 27쪽.

230) 우리 위원회, 앞의 정○○ 면담조사 ; 우리 위원회, 앞의 강○○ 면담조사.

결론 및 의견

1 결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0·27법난 사건에 대해 2006. 9. 1. 조사를 개시하여 과거 보안사 생산 자료를 포함하여 국가기록원, 검찰, 육군본부, 조계종(진상규명추진위원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0·27법난 관련 자료를 가능한 모두 수집한다는 목표를 두고 조사활동을 추진하여 기간 중 총 142건 6,400여 쪽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49명의 참고인에 대하여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45계획(불교계 정화 수사계획)», 「도피자 은신 예상처 수색 지시», 「불교계 정화추진 방안», 「불교계 정화방안 요지 - 그 실태와 정화대책», 「조계종 승려 대통령각하 면담결과」 등의 문서를 최초로 확인할 수 있었다.

1년 2개월간의 조사결과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우리 위원회는 10·27법난이 신군부세력에 비우호적인 신임 월주 총무원장과 그 집행부에 대한 신군부와 문공부의 부정적인 평가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계종은 1980. 3. 30. 3년여의 종단 분규를 종식시키고 화합종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선거를 통해 월주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했다. 문공부는 1980. 2.에 작성된 「대한불교조계종 분규현황」에서 개운사측의 승려들이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불미스러운 작태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더욱이 매달 1,000만원씩 조계사 총무원에 지급되던 불교진흥원의 지원금을 월주 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한 이후부터는 중단시켰고, 월주 스님의 대표 등록도 지연시켰다. 그동안 문공부 등은 월주 스님의 대표 등록



지연 사유에 대해 ‘중정 미추대’를 이유로 들고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 조사 결과 문공부 측은 대표 등록에 따른 신원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장관의 지시로 보류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국보위는 1980. 6.에 3단계 사회정화계획을 추진했으며, 종교계는 3단계인 10월 부터 숙정을 계획하고 있었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보위 등에 접수된 투서가 활용되었다. 그동안 10·27법난 수사배경에 대해 투서와 진정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국보위에서 문공부를 통해 내린 자율정화 지침을 거부하였고, 신군부측에서 요구한 전두환 장군에 대한 지지 표명도 거부했다. 월주 스님은 조계종단을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으며, 불교재산관리법 등 불교계 활동을 제약하는 관련법의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문공부에 제출했다.

국보위는 1980. 6. 불교계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였지만, 5.18광주민주화운동 수사 등으로 인해 수사인력이 부족해 지연되고 있었다. 보안사 기록에 의하면, “9. 10. 국보위 사회분과위에서 월주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폭력배 40여명을 숙정하고자 이들에 대한 갖가지 비리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직지사를 관할하고 있는 김천경찰서의 1980. 9. 19. 치안일지에 의하면 “불교계 정화대상 폭력배 실태조사 지시”가 기록되어 있다. 불교계 수사책임자였던 김충우 합수단장도 1980. 9. 1. 부임했을 때 “이미 조계종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즉, 1980. 9. 초를 전후하여 조계종에 대한 수사계획이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셋째, 합수단은 국보위 등에 접수된 진정과 투서를 이첩받고, 종로경찰서 등 여러 경찰서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문공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전 검증작업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수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불교계 정화수사 계획(45계획)>을 입수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45계획에는 각 지역별 수사대상자, 승려들로 구성될 수사자문회의 구성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합수단은 수사 진행과 동시에 종단 운영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불교계 출신 군장

교 등을 중심으로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3단계의 수습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실무대책반은 반장 전창열 중령을 중심으로 보안사 양근하 소령, 다수의 군법사, 문공부 종무1과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실무대책반은 합수단의 수사를 통한 숙정과 더불어 '정화중흥회의'라는 새로운 종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스님들을 접촉했으며, 수사단에서는 연행된 스님들에게 총무원장 등 주요 직위의 사표를 강제로 받았다.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된 월주 스님의 경우 투서 등을 근거로 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담당 수사관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에 의한 투서임이 밝혀졌고, 월주 스님이 조계종의 합법적인 법통을 이어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합수단은 월주 스님에게 총무원장 사퇴서를 강제로 받았다. 월주 스님에 대한 비리를 투서한 4명은 무고혐의로 합수단에 의해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되었다. 결국, 합수단은 이러한 투서를 검증하지도 않고 국보위 등의 지시에 의해 무리하게 수사에 나섰음을 시인하게 된 셈이었다.

넷째, 1980. 10. 30. 실시된 전국 사찰에 대한 일제수색은 10. 27. 수사와 함께 추진된 것이었다.

계엄사는 1980. 10. 30. 06:00를 기해 32,076명의 군·경 합동병력을 투입하여 전국 5,731곳의 사찰과 암자 등을 수색했다. 이러한 전국 사찰 수색에 대해 그동안 정부당국은 10. 27. 불교계 수사와 별개로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김충우 당시 합수단장은 10. 27. 수사계획과 동시에 추진되었으며, 군·경 병력을 동원하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계엄사와 역할을 나누어 추진했다고 증언했다. 즉, 전국 사찰 일제수색은 합수본부에서 입안되었고, 병력의 동원을 위해 계엄사에서 작전의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검거대상자 명부나 검거 후 처리 등은 합수단에서 담당하는 것이었다.

이 날의 대대적인 수색은 불교계 수배자 검거와, 5.18관련 수배자 등 포고령 위반자 및 간첩 색출이라는 대공적 작전이 포함되었지만, 불교계 1명을 포함한 수배자 2명을 검거하는데 그친 무모한 작전이었다.

대규모의 군·경 병력을 동원한 일제수색 과정에서 일부 사찰에서는 군화발로 법당에



들어가고, 스님들의 거처를 난입했으며, 원로 스님을 포함한 전체 승려들을 절 마당에 집합시켜 노래나 구호를 시키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종교적 특성을 무시한 이러한 작전으로 불교계는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되었다.

다섯째, 10. 27. 월주 총무원장을 포함한 승려 및 신도 153명을 연행하고, 10. 30. 사찰에 대한 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스님들에게 신체적 고통과 더불어 성직자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피해를 입혔으며, 조계종도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합수단은 스님들을 연행한 후에 승복을 군복으로 갈아입혔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승복을 벗기는 것 자체가 성직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고통을 준 것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일부 스님의 경우는 수사관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구타, 손가락 사이에 볼펜 넣고 조이기, 허벅지에 각목을 넣고 밟기 등의 고문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전기고문까지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합수본부는 불교계 수사와 관련하여, 1980. 10. 28.과 11. 14.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발표를 실시했다. 11. 14. 실시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불교계 부정축재액으로 총 200억 6,000만원을 산정, 이를 종단에 귀속시키며 관련자 17명을 구속 후 형사 입건하겠다고 밝혔고, 32명에 대해서 종단에 위임해 징계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명은 삼청교육대에 보내졌다. 합수단에서 징계를 중용받은 정화중흥회의는 정화분과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소명도 없이 징계를 의결했고, 훈방자나 징계자 등을 포함 24명의 스님을 흥국사에 60일간 연금시켰다.

형사 입건하겠다고 발표한 17 중에서, 실제 처벌받은 경우는 월주 스님을 무고한 혐의로 구속된 4명, 공무원 1명,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불교신도 3명 등 9명이었다. 한편 177억을 착복한 것으로 발표된 경우 스님의 경우, 화쟁교육재단, 부산 대각사 등 4곳의 땅, 주간불교신문사 투자금 등 공적 재산을 개인이 착복한 것처럼 왜곡하여 발표했다. 법주사 교무국장인 혜운 스님의 경우 주차장 수익금을 착복했다고 기소했으나 주차장 공사비를 위해 마련한 돈으로 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무죄가 선고되어 형사보상금까지 받았다.

결론적으로 10·27법난은 신군부 세력과 수사당국이 국보위의 단계별 일정에 따라 정화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교계는 명예를 실추당하고 많은 승려들이 성직자로서의 명예를 훼손당함과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은 사건이었다.

2 의견 및 권고

위와 같이 10·27법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바, 군에 대한 신뢰를 다지고 사랑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10·27법난은 불교계 정화 명분으로 특정한 종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국가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건이다. 정부에서는 1988. 12. 강영훈 국무총리가 성명서를 내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공개사과를 한바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책임적 위치(합수본부장)에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 중으로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미흡한 사과였다. 따라서 이번 국방부의 진상규명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불교계 및 국민들에게 국가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여 국민 화합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권고한다.
2. 또한 정부당국은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방안에 대해서 조계종 종단측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부록 목차

관련 문서 견본

1. 불교 분쟁에 따른 전망과 대책	160
2. 국보위 업무보고	166
3. 김천경찰서 치안일지	168
4. 불교계 정화 수사계획(45계획)	169
5. 불교정화의 실태와 전망(전창열 중령의 메모)	175
6. 수사자문회의 구성안	180
7. 불교계 정화에 따른 육본 조치 동정	185
8. 사이버 승려 및 불교계내 폭력배 소탕에 관한 계엄사 발표문	186
9. 도피자 은신 예상처 수색 지시	188
10. 긴급업무 지시(합수본부)	189
11. 박맹수 장교 수첩	191
12. 수색실시 결과 보고	194
13. 불교계 정화추진 방안	197
14. 불교 정화 중흥 추진 현황	203
15. 조계종 정화위원회 개최 동정	204
16. 불교계 정화 수사결과 보고(대한불교조계종)	210
17. 불교계(대한불교조계종) 정화를 위한 수사결과 발표문	216
18. 조계종 승려 대통령각하 면담결과	218

2006.01.06

80. 2. 26.

仏教紛争에 따른 展望과 对策

(2. 29 戒嚴會 議 資料)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1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2006.01.06

2. 曹溪宗 宗權紛糾 争点

反 宗 正 側	宗 正 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李西翁 宗正의 人事 乱脈相等을 摘示 ○ 總務院長 中心制로의 宗憲改正 主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李宗正 就任時 宗會기 宗正 中心制로의 宗團 運營을 主張한 張本 人들이 ○ 不過 3 年이 못되어 宗憲 改正은 不當하다고 主張
<p>現在 : 兩側 共히 正統合法 宗會라 主張</p>	

3. 宗權 紛糾 經緯

- 77.6.28 47回 中央宗會時 總務院長의 金慈雲이 「總務院長 中心制」로 宗憲改正 主張으로 紛糾 發端
- 77.9.9 48回 中央宗會時 宗正側妨害로 宗憲 改正挫折 (在籍 47名中 23名 不參으로 流會)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건본 1-3. 불교분쟁에 따른 전망과 대책

2006.01.06

- 78.9.5 第5代 中央宗會議員 選舉^{12.8}流會 (25個 本寺中 15個本寺만이 參與)
- 78.9.8~9 54回 中央宗會를 開催 宗憲選舉法 改正 宗會議員 50名에서 70名으로 增員하되 尹古庵側에 17名을 按配해 줄것을 要求했으나 11名만 許容함으로써 収拾挫折
- 78.9.19 文公部에서 2次仲裁에 當했으나 宗會議員 按配異見으로 尹古庵側의 反對로 挫折
- 78.9.26 55回宗會에서 總務院長 尹月下 宗會議長에 宋月珠를 選任함으로써 曹溪寺派와 開運寺派로 訣別
- 78.10.17 曹溪寺側에서 宗正^{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등규정 관 尹古庵} 推戴 總務院長 崔月山 (仏國寺住持) 選出
- 78.10.23 開運寺側이 56回宗會를 갖고 尹月下를 宗正代行으로 推戴함과 同時 法院에 代行

2006.01.06

改任申請

○ 79.10.10~13 文公部에서 産業視察을 通해

收拾코자 하였으나 開運寺側이 不応함으로써 挫折

※ 兩側勢力: 25個 本寺中 曹溪寺派 11名, 開運寺派 6名
中道派 8名

4. 問題点 및 判断

○ 僧侶들의 紛糾가 長期化되고 있는데 不滿한
開運寺側 宋月珠(開運寺 住持)등 一部 僧侶들이
主導하여 政治發展에 逆行하는 不美스러운 作態로
變貌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으나

○ 本案訴에서 開運寺側이 拋棄(原告)함으로써 一応
法的으로는 敗했다고 보아지나 이에 큰 反應없이
兩側 共히 收拾에 지친 慢性的인 心理狀態가
露呈되고 있어 當場에 不法的인 集團行爲로는
急變하지 않을 것으로 判断될 뿐 아니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등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2006.01.06

- 現時点에서 官의 居中調整이 奏効하여 收拾 可能值가 밝게 算出될 境遇에는 關係当局이 積極介入 收拾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万一 失敗의 前轍을 되풀이 할 境遇 더욱 衝擊打를 주어 春季学園 宗教 労働 政界등 痼疾인 抵抗期에 仏敎紛争까지 加昇시키는 作用으로 拡大될 것이 憂慮되며
- 이와같은 仏者層 抵抗은 只今까지의 「護国 仏敎」가 「抵抗 仏敎」로 変身됨으로써 國際社会에서 順応 宗教인 仏敎까지 現政府를 不信攻撃하는등 对政府 抵抗勢力이 激増되고 있는 것으로 情勢 誤判할 것이 念慮됨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5. 檢 討 对 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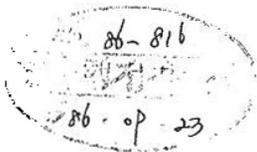
- 叙上한 問題点을 勘案, 現狀況下에서 宗團 스스로가 自然스럽게 收拾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고 關係機關에서는 嚴正中立을 繼續堅持하면서

2006.01.06

- 憂慮되는 部分的인 雙方의 衝突등 集團事態
豫防을 爲해 情報警備概念의 非露出 警戒를
強化하여 不祥事를 미리 把握 治安的 次元에서
막고
- 한便으로는 宗團의 財産管理와 海外旅行등 諸般
寺刹 行政은
中央宗團相對에서 25個 本寺 住持相對로 轉換
技術的으로 兩側을 撫摩하는 次元에서 處理하여
本末寺 僧職者들의 不平不滿을 滅殺시키는등
當分間 現狀維持가 政治發展의 安定을 爲해서도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思料됨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 業務報告



國家保衛非常對策常在委員會

0001

3段階 推進事業(10月以後)

◦ 社會指導層 淨化

- 外貨逃避者 索出措置

◦ 經濟及 企業風土 淨化

- 非業務用 不動產整理

◦ 特殊分野 淨化

- 言論·宗教界 不條理 剔抉

28

0028

(사)

견본 3. 김천경찰서 치안일지

1980년 9월 19일 금요일 추석

7/18

장	정원현원	등	배	상	황
원	203	204	134	10	13

중도영사 및 회의

1. 관부재장 (교양)

- 선협법규가 보안강조
- 협회직 리원 교체 회담
- 국선 기본원봉제로 편차폐쇄되
- 추석전 인력 편성 완료
- 교통질서 확립
- 일선이감
- 밤반활동강화
- 추석전 권화 부조리 확경
- 세무부 강연 특검지시 지 2도
- 회선 봉투상 특검지시 지 2도
- 교통질서 활동강화
- 권통수리
- 용교계 권화대상 특검배 지시 지 2도

김천경찰서

0249

261

45

佛敎界 淨化搜查計劃

(45 計劃)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의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건본 4-2. 불교계 정화 수사계획(45계획)

1. 目 的

佛敎 宗團의 自體整備 期待가 困難한
非理와 不合理 現象을 宗敎界 淨化次元과
國民精神 改造側面에서 拔本塞源하여 佛敎
本來의 護國思想을 浮揚시켜 國家에 參與
토록 誘導코저 함 .

2. 主要 非理類型

- 宗敎實權 根¹⁹寺刹占據를 圍繞한 暴力行爲
- 職責을 奇貨로한 不正蓄財 및 非理行爲
- 宗團 財産管理 및 海外, 活動을 圍繞한 詐欺行脚과 國威 損傷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9 조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견본 4-3. 불교계 정화 수사계획(45계획)

3. 實 施 方 針

- 既存 資料를 基礎로 檢挙 및 調査對象者
選定後 一齊 檢挙
 - 檢挙(對象者의 80%以上)와 同時
1次 報道로 佛敎界 彈壓印象 排除
 - 搜查着手로 因해 敎團行政 麻痺防止를 爲해서
淨化事業에 副應하는 高僧 및 엘리트僧侶를
發掘, 一時 宗團運營上의 空白防止
 - 身柄確保對象 ⁶⁰ 121名은 서울과 地方 共히
1次 身柄確保後 假稱 調査 諮問委員會에서
決定되는 等級에 따라 醇化訓放 및 搜查의
強度를 決定
- ※ 假稱 調査諮問委員會는 斬新한 敎界의 高僧을
選拔, 5~6名으로 構成 本 搜查期間中
諮問機能 遂行

100 2

건본 4-4. 불교계 정화 수사계획(45계획)

4. 檢挙 및 搜查擔當

○ 서울地域

幹部級 : 1 局

暴力輩 : 2 局

背後및 브로카 : 3 局

○ 地 方

地域管轄 部隊에서 檢挙 搜查後 必要에

따라 서울(指定 搜查局)으로 移送된 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등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 類型別 對象 現況

· 不正蓄財 : 住持級 71 名

· 暴力輩 背後調整 : 高位職位 元老級 4 名

브로카 9 名 計 13 名

· 暴力輩 : 42 名 總 121 名
69

견본 4-5. 불교계 정화 수사계획(45계획)

5. 搜查 및 措置日程

區分 \ 日程	10月											11月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準備資料整理	—																			
會議召集			—																	
檢 挙					—															
票 道						—														
監 問 委 構 成						—														
調 査 着 手							—													
二 間 報 告																				
票 道																				
結 果 報 告																				
調 査 報 道																				
對 策 講 究																				

※ 搜查 終決目標日 : 11.16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건본 4-6. 불교계 정화 수사계획(45계획)

6. 行政事項

가. 會議召集

- 日 時 : 80.10.24 15:00
- 場 所 : 司令部 會議室
- 主 題 : 檢挙對象者 및 搜查着眼 事項
- 召集對象 : 合搜 1, 2, 3 局, 慶南(502),
京畿(511, 705), 江原(100I, 107),
忠南(507), 忠北(509), 慶北(1002),
釜山(501), 全北(510), 全南(505),
濟州(508)地域 合搜團 搜查擔當

實務者 各 防 部 過 거 사 진 상 규 명 위 원 회
운 영 규 정 제 4 조, 14 조 에 의 거
위 원 회 에 제 출 된 자 료 로 동 규 정
제 19 조 에 의 거 관 리 되 어 야 함.

나. 行政支援

所要豫算 및 其他 行政支援事項 後達

※ 別添 : 對象者 名單

2110

佛敎淨化의 策案의 展望

- 1. 10.25. 查 불교정화의 취서와 필요성 등의
 - 나. 불교계의 문제점 정리후의
 - 다. 정화의 기본 방향과 대책수립

1단계: 搜查力을 통한 契機 조성

組織 暴力 革

不正 蓄財 僧

从而 非 僧侶.

2단계: 自律淨化委員機構의 創設과 活動.

정화관련 자문자주전

종교 발전의 백년에게수립

3단계: 新 結合 宗團의 出帆 및 政府의 支援,

法 檢 整備

制度의 完備

育成 對策의 果施

又. 10.28 搜查室 會 議

佛敎의 獨自性과 特殊性을 踏 踏 踏 에 依 據
搜查에 依 據 雜用 檢 化 方 案 教 育.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칙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은 차크르 등 규정
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함

(P)

3 10. 27. 搜查着手

가 대상 69명중 45명 검거

나 보도에 책 ~~연결~~ ^{호의} : 근내 불교신도 지휘관에 대한 전과 불교신자 및 국민에 대한 공공증거소 정화의 필요성 강조

다 보도문간 작성

4. 10. 28. 재경 원로 증진심 7명과 수습방안회의

1. 조직적 폭력 배는 발본색원
2. 종안주변의 사기배등 악질신도 면숙
3. 법밖된 연령 고려. 분사기공정이 많은 사할 고려 특히 조선 방장급 원로신도에게 조직적 고려 요구
4. 승려 개인 사생활에 관한 비위에 대한 적나4할 보도 통제 및 자취처리 요구
5. 조속한 수습 대책 방안 호의

국방부의 기사진상규명위원회
 14조에 의거
 차르로 등 규정
 위헌
 공약되어야 함.

5. 10. 29.

~~창씨~~ ~~출발~~

1. 전국선도회 간부급의 기자회견
2. 정화의 취지와 배경에 관한 TV 방출
간섭이 원로리더 지장. 전국선도회 부회장
중국 여학 재연 이사. 종무국장.
- 뜻있는 승려 선도의 해해와 수습을 위한 전국잡이전
- 중앙총회 8점공고

총회는 11.3로 확정
~~상대~~

(2)

6. 10. 30. ㉠ 가칭정화추진위원회 구성원 후보명단 선정회의

하: 교계, 원로, 동진 스님 및 군법사, 신도의 의견수렴

- 1) 원로 스님은 고승 대략은 최대한 명가
- 2) 중견 스님은 분구가 많으며, 능력별 추천은 물론
참여의식은 고려 후보명단 작성
- 3) 신도의 중우회서 참석문제 검토

㉡ 29 전개된 수색수색작전에 대한 방향의
의사사항

- 1) 흥분한 신도단체 및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 승려등이 대한 선동작업
- 2) 종회소집에 차질은 고려. 군법사와
개별 접촉 선동

7. 10. 31. ~~종회소집~~

㉠ 군법사 추후 지원 요청
개별 접촉 선동작업 강화

㉡ 종회위원에 대한 문종별 지역별 분석.
군법사 및 일부 신도는 귀찮 분함하여 개별접촉
정화의 필요성, 수습의 긴급성, 수색작전 의뢰서
등을 계속 선동

㉢ 종회소집에 따른 법전차문제외
종총과 법총이 유지될 수 있는 합법적
종회소집

③

- ⑩ 종회 성원을 위한 최대한 동원 방안 수립
 1. 각도 문화재과 직원 4명 초
 2. 보도 방언이 한구
 3. 개편 위촉 강화로 29일 직전에 대한 분배까지 계속되면
 4. 수사 확대 종결로서 불안분위. 추진세력인 스님 등 20여 신리회복
 5. 비상수습 대책위 (43명, 원33 중전 20 기타 20)의 소집 자원게기 부여. 종회 참가 권유 활동 전개

8. 11. 1. ⑨ 전국선도회 총회 개최.

1. 정부의 정화작업 전동
2. 선도에 적극 참여 촉구
3. 후유증의 조속한 수습 및 육상 대책 촉구

⑩ 종회 성원을 위한 대책

1. 종회 개정 및 해선결의 정속수호 확보하기 위한
유고위원 사표수여로 재적의원수 감소 작업 개시
2. 연행된 종회 의원 및 원로 스님 등 사안경이한자
최우선적 석방건의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공인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시정하는 등 관리되어야 함.

(4)

주요事項 展望

1. 대한불교조계종 지하종중회와 불족및현성, 의장및, 상임위원장, 본래기연장의 선출.

2. 가칭 정화카인회에 활동 지침

가 사건 처리 지침 건의

나 규정심사 기준 지침 준비

다 근본적 정화 지침 방안 및 계속추진

라 잠재된 근원적 비위 및 부조리에 식중교반: 부점 확대 환수 및 처리 방안

3 각종 제도 정비 및 계획 수립

가. 종단 본규의 근본적 종속 방안

수사자료, 관계의견: 총합총장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나. 종단 운영 체제 개편 방안

총무원 중심제 다 본사 중심제 19조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

종친 종법의 개정

종무원양성에 대한 실문교육강화방안

자. 승통 해산 및 승려 자결 향상 방안

· 출가 ~~제~~ 및 등도 제도 방안 검토,

· 교육 제도: 전승려에 대한 재교육 방안

승려양성을위한 교육방안 (~~부속~~)

전문교육기관 설립 운영 방안 (~~부~~)

5

※ 性格 条件

1. 自律淨化 印象

2. 宗教的 専門知識 素養 活用

搜查 諮問 會議 構成

- 送養 基準
1. 僧侶 인것
 2. 宗權 特權 및 不正蓄財 등에 关联 없을것
 3. 學識 及 德望이 宗團內에 尊敬을 받을것
 4. 現實參與意識 및 公正한 處理能力이 있을것
 5. 30 ~ 50대 以內의 年령층 (活動이 自由할것)

送養 構成 節次 : 保安 維持에 重要.

1. D-1 일 : 送養 基準 該當者中. 接觸 可能한.
 서울 地域 僧侶 ~~2~~ 名 委屬, 일정 장소 까지
 高○○ ... 鍾路區 大覺寺
 2. ~~D~~ 일 無○○ : " 曹溪寺
 3. D 일 : 동월 22 까지 完全 構成
 위 두 승려와 의논하여 檢討 및 召集 策 劃
 4. D+1 : 活動 開始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장 및 운영 자로로 동 규정
 의거 관리되어야 함.

自律淨化委員會. 奧務委員會

1. 僧侶

- 가 比丘
- | | |
|-------------------|--------------------|
| 1. 김○○ 동대 교수 | 2. 고○○ 대각사 승려 |
| 3. 일 ○ 해인사 암자 승려 | 4. 지 ○ 동대불대학장 |
| 5. 무○○ 조계종 포교원장 | 6. 오○○ 쌍계사 승려 주지 |
| 7. 유○○ 송광사 암자 승려 | 8. 이○○ 승려, 신유사 승려 |
| 9. 정○○ 전등사 주지 | 10. 목 ○ 인천 죽안 문화선원 |
| 11. 김○○ 승려 | 12. 임○○ 대성사 주지 |
| 13. 범 ○ 송광사 암자 승려 | 14. 김○○ 흥도사 승려 |
| 15. 안○○ 문경 봉암사 주지 | |

나. 比丘尼

1. 전○○ : 청도유물사 강원장사.

* 이○○

* 이○○

* 이○○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2 信徒

가 淸信士

- | | |
|---------------------------------|--------------------------|
| 1. 황○○ 전 법무, 문교
부근직응원역사 | 2. 趙○○ 단마회 명예회장
전 법무. |
| 3. 최○○ 신도회장 | 4. 김○○ 본광회장 |
| 5. 유○○ 전 청년회 대표회장
2군 기획 명예장모 | 6. 기사림 또는 김연호 재대 |

나 淸信女

견본 6-3. 수사자문회의 구성안

실용소위원회

1. 전장연 (근)신로 ○ 연곽상양
2. 양근하 (근) " ○ 楊勤安陽
3. 김○○ (용대교수)
4. 이○○ (장신문화연구원)
5. 방○ (승려)
6. 지○ (승려)
7. 이○○ (근법사)
8. 권○○ (근법사)
9. 이○○ (신원회사부장)
10. 김○ (용대강사)

국방부 과의사, 삼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 또 동 규정
제 19조에 의거 권리 1어야 함.

원금회 명단

1. 박○○ : 전종회의장 원흥도사승려
2. 蘇○○ : 板度宗 祖寬
3. 姜○○ : 淸보사住持
4. 金○○ : 月精寺住持
5. 金○○ : 龍珠寺 "
6. 金○○ : ~~경남사찰사~~ 龍珠寺 住持 보국사 조신
7. 朴○○ : 東大貝村 瑞子長, 봉은사住持
8. 宋○○ : 興도사승려
9. 李○○ : 海印寺 祖寬
10. 金○○ : 경남사찰 다솔사

樂務の委準備事項

1. 活動開始 : D-1일
2. 佛敎淨化에 관한 談話文作成 : D-1일
3. 各信徒團體 支持聲明書準備 : D일
4. 政府談話發表及 聲明書發表 : D+1일
5. 搜查諮詢會 構成 : D-1, D일
6. 自律淨化委 樂務委員會 및 元老會 構成 : D+1일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搜查諮向會議 活動의 提要件.

1. 檢舉者別 犯罪概要準備. 提示準備
 中情 및 市警資料 綜合整理... D 및 D+일.
2. 執務場所 並 定時 考慮 事項
 1. 保安維持에 注意할 것
 2. 業務連絡에 地域的 時間的 考慮할 것
 3. 宿食에 便宜한 場所일 것
 4. 所有子算에 佛敎 振興院 基金 活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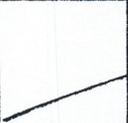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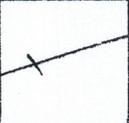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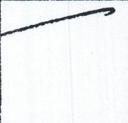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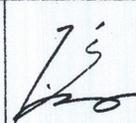
搜查諮向會議 構成員 轉分 分析

	성명	회 직책	備考
1	高 ○ ○	大學寺 佛敎 總務	50才 大學寺
2	無 ○ ○	布敎院長 (50才)	曹溪寺
3	李 ○ ○	東大佛敎大學長	慶國寺
4	金 ○ ○	東大佛敎敎授 任持	華藏寺
5	林 ○ ○	大成寺 任持	靑年佛敎活動指導 大成寺
6	劉 ○ ○	松廣寺 庵子 僧侶	松廣寺 庵子

견본 7. 불교계 정화에 따른 육본 조치 동정

2006.01.06

진 급 보 고

합수 (조정) 전 제 호				19 80 . 10 27	
담당관	과장	국장	단장	참모장	본부장
					
송화자 () 소속		제급		성명	
수화자 (시 분) 소속		제급		성명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계엄사령관,	
참조	작성참모 (합참 3국장)			참모총장	
계무 불교계 정화에 따른 육본 조치 동정					
1. 불교계 정화에 따른 육본 작정을 검토와 같이 전개하여					
계획을 시달 예정이기에 보고합니다.					
* 작정은 80. 10. 28 오전중에 시달 예정.					
참 부 : 육군본부 계기 80. 10. 27방끝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의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수신 : 1, 2, 3군 사령관, 수경사령관 (국방부 장관).					

似而非僧侶 및 佛敎界內暴力輩
掃蕩에 關한 戒嚴司 發表文

戒嚴司令部는 지난 10月 27日 佛敎界內에서
은갓 非理와 腐敗·犯法行爲를 恣行하여 은 似而
非僧侶 및 常習的 暴力輩 等 總 名을 搜查
當局이 連行, 調查하고 있음을 發表하는 바이다.
이들의 罪狀과 非行은 搜查가 終結되어 그 全貌
와 實相이 밝혀지는대로 追後 發表할 豫定인 바
이들 似而非僧侶 및 佛敎界內 暴力輩에 對해 鐵
槌를 加하게된 動機 및 主要非理 類型은 다음과
같다.

1. 動 機

- 國民여러분이 周知하는 바와 같이 佛敎는
우리民族의 傳統宗敎로서 民族正氣와 主體意
識을 涵養하고 올바른 價値觀을 定立하여
國民의 精神領域을 啓導해야 할 歷史的的使命

이 賦觀의 似, 似음에도 不拘하고 도리혀 似
 而非僧侶와 暴力輩들이 亂舞・跋扈하는 非理
 地帶로 化하여 뜻있는 僧職者와 信徒들은
 勿論 一般國民의 指彈과 빈축의 對象이 되어
 왔다. 이에 戒嚴當局은 政界를 비롯한 社會
 各界에 對해 果敢한 肅正과 淨化措置를 斷行
 하면서도 宗教가 지니는 特殊性과 獨自性を
 尊重하는 立場에서 佛敎界 自體의 自律的
 淨化와 肅正이 있기를 期待하여 왔던 것이나
 相當한 期間이 經過하여도 아무런 自體淨化
 의 움직임이나 效果를 나타내지 못할 뿐
 아니라 自力으로는 到底히 更生의 힘이 없는

것으로 判斷, 不得已 社會淨化 措置의 次元
 에서 鐵槌를 加하게 된

금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7조 제 2항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 그러나 戒嚴當局은 이들 似而非僧侶나 常習
 的暴力輩를 敎界에서 果敢하게 掃蕩・追放하는
 措置를 契機로 하여 傳統宗教로서의 佛敎
 本然의 使命을 다하기 爲한 自體整備와 姿勢

견본 9. 도피자 은신 예상처 수색 지시

2006.01.06
80, 10, 28

합 동 수 사 본 부

합수 (조정) 1980. 10. 28

수신 전보안부대장

제목 도피자 은신 예상처 수색 지시

1. 국보위 삼청계획 5호에 의거 개업사에서는 80.10.30 06:00
를 기해 사찰(암자 포함)등 도피자 은신 예상처에 대한 일제 수색을
계엄본소장 책임하에 실시토록 작전 명령이 하달되었는바 각 합수단장
은 다음 사항을 조인 철저한 수색을 실시토록 할것.

2. 수색시 유의사항

- 가. 포고령 위반등 수배자 색출 국방부 광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 나. 불고계 수배 대상자 검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 다. 기타 범법자 색출
- 라. 태공적인 측면에서 사찰내 및 주변 정밀 수색
- 마. 사찰내 기거자 신원 확인 철저

3. 각 보안부대는 주관의식을 갖고 수색 작전에 핵심이 되어
가용 인원을 동원, 작전 부대와 혼합 편성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과
협조, 호의적으로 적극 지원할것.

4. 지역내 전 사찰, 암자등은 누락됨이 없도록 작전 부대와
계획 수립단계 부터 협조할것.

참 부 : 수배자 명단 1부. 끝.

합 동 수 사 본 부 장

5-7 2

견본 10-1. 긴급업무 지시(합수본부)

2006.01.06

긴 급 보 고

합수(조정)전 제 호					19 80. 10 29.	
담당관	과 장	국 장	단 장	참 모 장	본 부 장	
	조				조	
송화자 () 소속		계급		성명		
수화자 (시 분) 소속		계급		성명		
수 신 전 합수 단 장				발신 합수 본 부 장		
참 조						
계 목 긴급 업무 지시						
1. 10. 30 실시되는 사찰 수색 작전에 따라 각 합수 단은 다음						
사항 (동원 병력 및 계획된 사찰수 등) 긴급 파악, 금일 (10. 29) 24:00						
한 합수 조정점으로 긴급 전언 보고할 것						
2. 보고 내용						
가. 동원 병력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의 지체출발 지르코 등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계	군	보	안	경
나. 수색 계획된 사찰 (암자) 수						
		계	사	찰	암	자
					기	타
3. 검거자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거자는 가급적 해당 경찰서에 보호 ◦ 신원 확인이 요구되는 승려는 조정통제국에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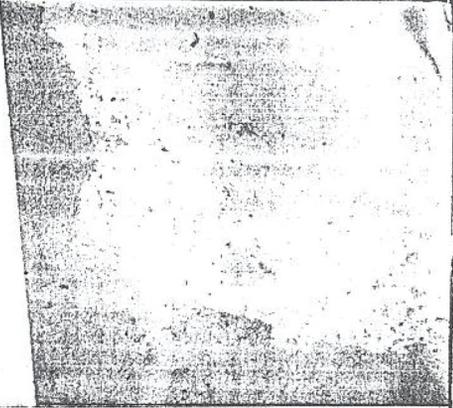
27

5세 ~~부~~ 부

견본 10-2. 긴급업무 지시(합수본부)

2006.01.06

<p>○ 주요 수배자 검거시 즉시 보고</p>
<p>4. 참고 사항</p>
<p>보고 처 : 총성 701, 702, 413, 273.</p>
<p>육군 4455</p>
<p>일반 72 - 8729</p>
<p>수신 처 : 1001, 1002, 1003, 501, 502, 505, 506, 507, 508, 509, 510, 511, 101, 102, 103, 105, 106, 107.</p>
<p>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p>
<p>28</p>

2006 2/21			
소속			
직책	9Co		
계급	성명		
			

육 군 지 천

1. 필승의 투지력 배양
2. 승전 태세의 완비
3. 군·민 유대의 강화

멸 망 구 호

때 려 잡 자	김 일 생
취 부 수 자	공 산 당
무 찌 르 자	북 괴 군
이 록 하 자	우 신 과 업

견본 12-1. 수색실시 결과 보고

633-8766

수색실시결과보고

963
3480

○ 수색기간 : 80. 10. 30. 06:00 - 20:00

○ 동원인원

구분	계	보안	경찰	군	비고
인원	32,076	818	7,658	23,600	

○ 수색장소

구분	계	사찰	암자	기타	비고
개소	5,731	3,733	1,607	291	

○ 수색결과

1. 검거및처리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현행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0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처리	구분	계	포고령	인명	불교	계	거동	기타	비고
			위반자	수배자	수상자	범법자			
검거		1776	1	1		362	1412		
처리	이첩	209	1	1		58	149		
	조사중	68				68			
	훈방	1499				236	1263		

견본 12-2. 수색실시 결과 보고

1. 주요 검거자

장 소	진 행	명 의 내 용	비 고
정리 기	전진 투입	국기민간, 민체 어본인	고양군 신도읍 소재 친척집에서 검거
서○○○	백문만 대응	불고관계 수백자	서대문구 홍은사에서 검거

* 전택기는 치안본부 대공분실, 서○○은 수사 2국에 이첩

2. 참고 사항

1. 사찰, 암자 등은 학원 소요 및 포고령 위반 관련 수백자 검거
활동으로 경찰의 감시를 받아 은신이 어려운 실정이며

2. 대부분의 주요 도피자들은
은신코 있을 것으로 판단.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동상 위판체 단죄, 1포본에 민가에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등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견본 12-3. 수색실시 결과 보고

2006.05.08

구분	현			수			검			인			연			비
	계	보안	합	계	사	장	계	포	가	계	동	기	이	조	관	
계	32076	818	7658	23600	5731	1607	391	1776	1	362	1412	209	68	1499		
1 0 0 1	917	15	276	620	142	63	79	11		10	1	1	1	9		
1 0 0 2	4509	31	466	4012	829	690	139	110		109	1	2	5	73		
1 0 0 3	729	10	49	70	49	32	17	4		4			1	3		
5 0 1	2705	61	559	2085	418	233	185	20		19	1	1		19		
5 0 2	2913	44	1534	1335	848	346	502	92		40	52	12	10	70		
5 0 5	1858	32	572	1254	455	259	114	104		30	74	15	9	80		
5 0 6	3292	40	1972	1280	652	495	138	1264		14	1249	75	42	1147		
5 0 7	3832	25	588	3219	501	455	46	9			9	9				
5 0 8	49	39	70		178	78										
5 0 9	769	20	150	599	366	203	163	15		15		9		6		
5 1 0	937	14	247	676	247	182	65	31		31		24		7		
5 1 1	3037	129	870	2032	390	315	59	16		25	1	1		25		
1 0 1	1328	76	65	1187	158	56	23	27	1	26		24		3		
1 0 2	856	60	93	705	160	46	104	1			1	1				
1 0 3	714	44	29	641	25	21	2	6		6		6				
1 0 5	838	82	29	727	92	67	11	18		18				18		
1 0 6	2892	68	71	2753	99	30	59	29		11	18	5		24		
1 0 7	511	28	78	405	122	68	10	9		4	5			9		

수색실시 결과 보고
 1. 505, 506, 507, 508, 509, 510, 511
 2. 101, 102, 103, 105, 106, 107
 3. 101, 102, 103, 105, 106, 107
 4. 101, 102, 103, 105, 106, 107
 5. 101, 102, 103, 105, 106, 107
 6. 101, 102, 103, 105, 106, 107
 7. 101, 102, 103, 105, 106, 107
 8. 101, 102, 103, 105, 106, 107
 9. 101, 102, 103, 105, 106, 107
 10. 101, 102, 103, 105, 106, 107
 11. 101, 102, 103, 105, 106, 107
 12. 101, 102, 103, 105, 106, 107
 13. 101, 102, 103, 105, 106, 107
 14. 101, 102, 103, 105, 106, 107
 15. 101, 102, 103, 105, 106, 107
 16. 101, 102, 103, 105, 106, 107
 17. 101, 102, 103, 105, 106, 107
 18. 101, 102, 103, 105, 106, 107
 19. 101, 102, 103, 105, 106, 107
 20. 101, 102, 103, 105, 106, 107
 21. 101, 102, 103, 105, 106, 107
 22. 101, 102, 103, 105, 106, 107
 23. 101, 102, 103, 105, 106, 107
 24. 101, 102, 103, 105, 106, 107
 25. 101, 102, 103, 105, 106, 107
 26. 101, 102, 103, 105, 106, 107
 27. 101, 102, 103, 105, 106, 107
 28. 101, 102, 103, 105, 106, 107
 29. 101, 102, 103, 105, 106, 107
 30. 101, 102, 103, 105, 106, 107
 31. 101, 102, 103, 105, 106, 107
 32. 101, 102, 103, 105, 106, 107
 33. 101, 102, 103, 105, 106, 107
 34. 101, 102, 103, 105, 106, 107
 35. 101, 102, 103, 105, 106, 107
 36. 101, 102, 103, 105, 106, 107
 37. 101, 102, 103, 105, 106, 107
 38. 101, 102, 103, 105, 106, 107
 39. 101, 102, 103, 105, 106, 107
 40. 101, 102, 103, 105, 106, 107
 41. 101, 102, 103, 105, 106, 107
 42. 101, 102, 103, 105, 106, 107
 43. 101, 102, 103, 105, 106, 107
 44. 101, 102, 103, 105, 106, 107
 45. 101, 102, 103, 105, 106, 107
 46. 101, 102, 103, 105, 106, 107
 47. 101, 102, 103, 105, 106, 107
 48. 101, 102, 103, 105, 106, 107
 49. 101, 102, 103, 105, 106, 107
 50. 101, 102, 103, 105, 106, 107
 51. 101, 102, 103, 105, 106, 107
 52. 101, 102, 103, 105, 106, 107
 53. 101, 102, 103, 105, 106, 107
 54. 101, 102, 103, 105, 106, 107
 55. 101, 102, 103, 105, 106, 107
 56. 101, 102, 103, 105, 106, 107
 57. 101, 102, 103, 105, 106, 107
 58. 101, 102, 103, 105, 106, 107
 59. 101, 102, 103, 105, 106, 107
 60. 101, 102, 103, 105, 106, 107
 61. 101, 102, 103, 105, 106, 107
 62. 101, 102, 103, 105, 106, 107
 63. 101, 102, 103, 105, 106, 107
 64. 101, 102, 103, 105, 106, 107
 65. 101, 102, 103, 105, 106, 107
 66. 101, 102, 103, 105, 106, 107
 67. 101, 102, 103, 105, 106, 107
 68. 101, 102, 103, 105, 106, 107
 69. 101, 102, 103, 105, 106, 107
 70. 101, 102, 103, 105, 106, 107
 71. 101, 102, 103, 105, 106, 107
 72. 101, 102, 103, 105, 106, 107
 73. 101, 102, 103, 105, 106, 107
 74. 101, 102, 103, 105, 106, 107
 75. 101, 102, 103, 105, 106, 107
 76. 101, 102, 103, 105, 106, 107
 77. 101, 102, 103, 105, 106, 107
 78. 101, 102, 103, 105, 106, 107
 79. 101, 102, 103, 105, 106, 107
 80. 101, 102, 103, 105, 106, 107
 81. 101, 102, 103, 105, 106, 107
 82. 101, 102, 103, 105, 106, 107
 83. 101, 102, 103, 105, 106, 107
 84. 101, 102, 103, 105, 106, 107
 85. 101, 102, 103, 105, 106, 107
 86. 101, 102, 103, 105, 106, 107
 87. 101, 102, 103, 105, 106, 107
 88. 101, 102, 103, 105, 106, 107
 89. 101, 102, 103, 105, 106, 107
 90. 101, 102, 103, 105, 106, 107
 91. 101, 102, 103, 105, 106, 107
 92. 101, 102, 103, 105, 106, 107
 93. 101, 102, 103, 105, 106, 107
 94. 101, 102, 103, 105, 106, 107
 95. 101, 102, 103, 105, 106, 107
 96. 101, 102, 103, 105, 106, 107
 97. 101, 102, 103, 105, 106, 107
 98. 101, 102, 103, 105, 106, 107
 99. 101, 102, 103, 105, 106, 107
 100. 101, 102, 103, 105, 106, 107

佛敎界 淨化推進 方案

1. 第 1 段階：淨化契機 造成

※ 搜查力을 통한 非理 剔快

가. 剔快對象

- 宗權爭取 및 維持를 爲한 紛糾行爲
- 寺刹財産의 不法處分, 橫領, 流行行爲
- 宗團幹部, 寺刹住持職 等の 賣職行爲
- 各宗 佛事를 圍繞한 不正行爲
- 飲酒, 邪淫, 詐欺, 暴力, 恐喝, 脅迫 等
各種 頹廢行爲
- 其他 佛敎發展을 沮害하는 不條理行爲

국방부 과거사청산규정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9조에 의거 권리되어야 함.

나. 社會輿論 造成

- 佛敎界 非理의 社會 告發
 - － 新聞, 放送을 통한 告知
- 不條理의 類型別 發表로 淨化의 必要性 提高

2. 第2段階：自律淨化 推進

自律淨化委員會를 構成하여 中央宗會로 부터 宗團의 全權을 受任받아 暫定的 으로 宗團業務 處理

가. 自律淨化委員會의 構成運營

- 名稱：大韓佛教 曹溪宗 自律淨化委員會
- 構成：元老會議 및 實行委員會로 構成

一 元老會議

- 元老 10 ~ 20 名으로 構成
- 實行委員會 諮問役割 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一 實行委員會

- 사부대중 30 ~ 40 名으로 構成
- 全體會議 (議決機能)
- 分科委員會 (執行機能)

견본 13-3. 불교계 정화추진 방안

○ 構成方法 및 効力發生

- 中央宗會의 認准을 받아 構成함 .
- 中央宗會의 授權日로 부터 効力發生

○ 運 營

- 自律淨化委 運營에 關한 事項은 別途 定함 .
- 自律淨化委 運營規定 制定

나 . 中央宗會 召集 및 解散

○ 召集日字 : 1980.11

- 定期 中央宗會로 召集

○ 重要議決事項

- 宗團 自律淨化委 認准
- 自律淨化委 活動에 關한 規定 整備
- 宗團 全體의 委任
- 佛敎淨化 支持 決議
- 宗會 解散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다. 自律淨化委의 課題

- 空白없는 宗團 運營
 - － 經常管理 및 宗務의 遂行
- 搜查結果 委任通報 事項의 處理
- 各種 制度의 整備 改善
 - － 宗團運營의 改善方案
 - － 各種 規定(規約)의 整備
 - 宗憲·宗法等의 合理的 改定 整備
 - － 僧風刷新 및 僧侶資質 向上 方案
 - － 宗團財産의 合理的 運用改善 方案
 - － 國外 布教 및 國外活動의 合理的 改善方案
 - － 類似 關聯團體의 整備 方案
 - － 紛争의 根本的 終息 方案
 - － 其他 宗團發展에 寄與할 改善 方案
- 早速한 時日內에 和合, 健全宗團의 構成 引繼

국공부 의 자진 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3. 第3段階：和合宗團의 構成

가. 目標時期：1981. 1. 1

나. 宗團發展을 爲한 支援 育成

- 行政留保對象 解除
- 迅速한 行政支援

4. 豫想問題點 및 對策

가. 宗團法統의 繼承體系 確立

- 11月 定期宗會 活用
- 自律淨化委의 合理的 構成 運營
- 宗團 自律的 行動의 誘導
- 關聯規定의 檢討 整備

나. 自律淨化의 構成運營에 1

- 嶄新한 德望있는 人士의 參與
- 不偏不當한 宗團 淨化
- 各種 非理事項의 果敢한 剔快
- 過渡期의 短縮

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등 규정 1(合理化)이 관리되어야 함.

다. 後遺症에 依한 佛敎界 沈滯 憂慮

- 健全僧侶의 士氣振作
- 處罰範圍의 縮小, 處罰效果의 極大化
 - 事例別 代表的 處罰
 - 輕微한 非理者에 對한 獻身機會 賦與
 - 宗教의 特殊性 認定感 提高
- 處罰對象者外 搜查結果의 保安 維持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견본 14. 불교 정화 중흥 추진 현황

다. 순화교육장 (불국선원) 개설 운영

1) 교육 현황

- 기간 및 장소 : 80. 11. 27.~ 1년간. 경기도 양주군 불국사
- 21. 21. 15:00 불국사에서 인소식 거행
- 배 외 18명 참가 (입원환자등 5명 불참)
- 1일 9시간 좌선등 입과포에 따라 자율적 운영

2) 입소 자동 정

- 안정된 본위기와 참회자세 확연 감지
- 진정한 참회기간으로 살고 역망에 부응하는 승가상 구현다짐
- 미진한 업무 후속처리 (불사등)를 위한 시급 요청
- 가능한 교육 기간의 단축 및 환자의 입원 치료 요망

다. 공석사찰 주지 임명

1) 인사 지침 수립 상임위에 제시

* 공석중인 사찰 주지임명에 관한 인사 지침

가. 목 적

- 정화과업 수행중의 징계 및 안전 회복
- 과도기적 업무의 본집에 부담에 의해 방관되어 임
- 정화중흥 회의 시책에 대한 지지와 신뢰 획득

나. 원 칙

- 현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정화중흥회의의 의지를 반영한다.(징계불문자는 유임 원칙)

다. 자격 요건

- 법랍 본사 20년 이상 말사 10년 이상
- 연령 본사 40세 이상 말사 30세 이상
- 5년이내에 굴 권정지 이상외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자
- 1년이상 중무행정 (본사급 3직 및 말사주지 이상)유경험자

건본 15-1. 조계종 정화위원회 개최 동정

2006.01.06

10. 11.7

조계종 정화위원회 개최 동정

[실시 사항]

0. 제 1 차 정화위원회 개최

- 시간 : 10:00 - 12:25
- 장소 : 상임위원장 실
- 참석자 : 박기종, 김자운, 강석주, 이보성, 고정일, 배도원
박판성, (7인)

◦ 토 의 내 용

- 구속자 석방 복귀는 전혀 무고하기 때문이 아니고 종단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므로 홍보된 사실을 참조, 증법(종무원법 승법)에 따라 엄격히 징계 처분
- 석방된 폭력승 등에 대한 순화 교육은 절에서 불법에 의거 약 1년간 용맹 정진시켜 순화시키되 정부의 부단한 배려가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 정화위 운영 방법 및 폭력승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 지속적인 정부 지원 (계엄해제 시 사정기관에 인계)

0. 고위층 면담자 확정 및 면담실견의 사항 검토

- 시간 : 14:00 - 19:00
- 장소 : 총무원 규정부장실

총무원장, 부총무원장, 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의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225

10-38

견본 15-2. 조계종 정화위원회 개최 동정

2006.01.06

○ 의견담청자 확정 명단

- 박 기 종 (불교 정화중흥회의 회장, 동국대 이사장)
- 김 혜 암 (" 부의장, 해인사)
- 김 탄 학 (" 위원, 원정사)
- 강 석 주 (" , 신태보사)
- 박 탄 상 (상임위원장 , 봉암사)
- 김 운 학 (기획분과위원장 , 동국대 교수)
- 김 자 윤 (정화분과위원장)
- 윤 범 흥 (사무총장 , 승광사)
- 무 진 장 (포교위원장)
- 이 지 관 (동국대 불교대학장)

○ 의견담청건의 예정 내용 검토

- 목적 : 중단의 위촉된 분위기 해소, 승려 자질향상의
획기적 도모

- 건 의 될 정부 지원 사항

- 실질적 자율화 분위기 보장 위한 종교 관계법령(불교 재산
관리법, 공원법, 문화재 관리법)을 불교계의 의견을 참작
개정 보완해 달라.
- 산중 무허가 암자 철거를 신중히, 수행의 필요가 있거나
오래된 고찰은 철거에서 제외 또는 보류하여 수행분위
기를 보장해 달라.

국립중앙도서관규명위원회
운영규칙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가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226

10-3P

건본 15-3. 조계종 정화위원회 개최 동정

2006.01.06

- 증단의 증언, 증법과 내규의 효력을 일반법에서 보장해 달라. (증고 관습법의 효력 문제), 법 해석에 있어서 증고 관습법을 고려하여 판단하거나 증고법의 제정 등
- 교육기구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법적 뒷받침,
- 불교 망실 재산 수출 회수 시 관계법령의 뒷받침.

0. 법 사단의 위치와 역할

◦ 정화 증응회의 발족과 함께 자율적 계기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되도록 눈에 띄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당분간 잠적

◦ 자료 정리 착수

- 신문 잡지 등의 관계 기사
- 정화 증응에 관한 단행본 논문
- 수사기관 및 문공부에서 제출 통보된 수사 기록 및 관계 자료

[11. 8 예정 사항]

- 총무원장 인수 인계
- 조계사 주지 인수 인계
 - 오전 10:00 조계사 주지실, 전 주지 김 해법
- 제단법인 불교 중앙 교원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활용 방안.
- 본 .말사 및 신도회에 대한 상임위원장의 공한 발송

227

10-40

견본 15-4. 조계종 정화위원회 개최 동정

2006.01.06

- 1. 정화 운영 회의 발족 및 정화 진행 경과
- 1. 명패기에 있어처 사찰 관리 철저
- 1. 수행 정면
- 1. 신도의 동요 방지 및 협조
- 석방자 뒤로 간담회 개최
14:00 중흥회의 외장실
- 정화분과 위원회 개최
대상자는 기명, 작성자는 무기명으로 평가조서 작성
- 정화 백서 작성 준비. 운영규칙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의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228

10-41

견본 15-5. 조계종 정화위원회 개최 동정

* 경곽의 최종심의 확정자 명단 *

정화위원회 ()

<제1차 도제>

번호	성명	비밀번호	연령	성명	비밀번호	직	의거사
1	김○○	원○○	53	12-18	신용사주지	신용사	
2	김○○	지○○	44	22-38	택용사주지	택용사	
3	이○○	현○○	43	21-38	중심사주지	중심사	
4	김○○	김○○	45	1-170	보훈사주지	보훈사	
5	이○○	이○○	42	1-20	도선사주지	도선사	
6	문○○	백○○	36	11-19	법주사고보	법주사	
7	박○○	현○○	43	10-33	고문사	고문사	
8	이○○	현○○	38	10-35	원정사총무	원정사	
9	김○○	삼○○	29	4-73	원정사덕중	원정사	
10	이○○	가○○	33	1-7380	적조암덕중	적조암	
11	문○○	성○○			선양사주지	선양사	
12	서○○	운○○	47	1-721	조기사덕중	조기사	
13	이○○	김○○	30	1-7380	가차거사신상유방위원의 응답유광개4조, 14조액의거 주위(10)의상관자료로등유광 제10조액원차관리되어양합		
1	이○○	차○○	39	1-719	동원사주지	동원사	
2	박○○	도○○	29	5-58	법주사총무	법주사	
3	문○○	기○○	33	5-369	신용사총무	신용사	
4	최○○	황○○	45	14-389	법어사재무	법어사	
5	전○○	삼○○		1-749	경암사주지	경암사	
6	박○○	법○○		1-50		신용암	
7	홍○○	원○○	43	1-10	진동사주지	진동사	
8	백○○	원○○		1-54	홍무원기회국장	홍무원	
9	김○○	김○○		4-65	연주암총무	연주암	
10	이○○	계○○		1-379	경암사주지	경암사	

견본 15-6. 조계종 정화위원회 개최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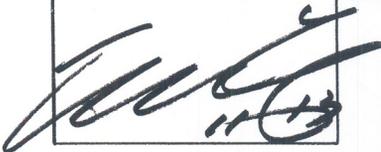
순번	성명	직명	연령	생년월일	직위	주요 사항
공권 정지 5년 (8)						
1	박○○	명○	54	19 - 152	확업사 주지	확업사
2	박○○	진○		1 - 1174	조계사 총무	조계사
3	이○○	도○		1 - 160	고운사 주지	고운사
4	최○○	원○		14 - 12	낙산사 주지	낙산사
5	채○○	일○			조계사 재부	조계사
6	박○○	필○		5 - 69	법주사 재부	법주사
7	오○○	법○		1 - 1213	규정부장	
8	이○○	향○		1 - 999	포교부장	
공권 정지 3년 (1)						
1	김○○	희○		10 - 10	표충사 주지	표충사
공권 정지 2년 (2)						
1	조○○	환○		1 - 663	배양사 주지	배양사
2	서○○	외○		10 - 1	은혜사 주지	은혜사
공권 정지 1년 (2)						
1	김○○	연○		10 - 22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	위원회의 제정된 자로써 등주길 제 18조가 되어 관리되어야 함.
2	김○○	혜○		11 - 34	조계사 주지	조계사
3	최○○	지○		18 - 9	간음사 주지	간음사
4	백○○	송○		14 - 272	연주암 주지	연주암
5	김○○	농○			총무부장	
공권 정지 6월 (1)						
1	유○○	종○		5 - 100	불국사 재부	불국사
공권 정지 6개월 (2)						
1	김○○	지○		4 - 6	선문사 주지	선문사
2	황○○	중○		1 - 363	보광사 주지	보광사

佛敎界淨化 搜查結果 報告

(大韓仏敎 曹溪宗)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本 部 長



1
合同搜查本部

1. 搜查概要

가. 調查對象者들은 佛敎가 民族의 傳統宗敎로서 民族正氣와 主體意識을 涵養하고 올마는 價値觀을 定立하여 國民의 精神 領域을 啓導해야 할 歷史的 使命이 있음에 對하 不抽하고 宗敎 라는 治外法權의 死角地帶에서 온 것 非理의 廢弛行爲를 恣行 하여 왔던 者들로 當局은 宗敎라는 特殊性을 考慮, 佛敎 宗團의 自律淨化에 一任한 바 있으나

나. 相當한 時日이 經過하여도 아무런 效果나 進歩가 없음을 분때 自力更生의 能力이 없는 것으로 判斷, 各種 紛糾와 非理 現實을 拔本塞源하여 佛敎 本然의 護國思想을 浮揚, 傳統宗敎로서의 使命을 다할수 있도록 하고져 宗敎界 淨化 次元에서 搜查하였음.

건본 16-3. 불교계 정화 수사결과 보고(대한불교조계종)

3. 搜查現況

類型別 系譜別	不正蓄財 非理者	暴力輩	背後操縱 및 부로카	參考人	關公務員	計
曹溪寺派	9	6	3	34		52
開運寺派	5	4	5	22		36
中道派	7	3		15		25
其他	1	8	3	27	1	40
計	22	21	11	98	1	153

3

9. 處理別 現況

가. 刑 事 立 件 : 17 名 (僧侶 10 名, 一般人 7 名)

나. 淨化委員會 回附 : 32 名 (僧籍剝奪 및 宗職 辭退)

다. 訓 放 : 104 名

※ 未 檢 者 16 名

未包含 (한글: 未包含, 僧侶 10 名, 一般인 7 名, 僧籍剝奪 및 宗職 辭退)

10. 措 置 意 見

가. 刑 事 立 件 者 는 各 地 域 戒 嚴 普 通 軍 法 會 議 에

送 致

건본 16-5. 불교계 정화 수사결과 보고(대한불교조계종)

다. 訓 放 : 104 名

※ 未檢者 16 名 未包含

10. 措置意見

가. 刑事立件者는 各地域 戒嚴普通軍法會議에 送致

나. 其他 非理者는 自體淨化委員會에서 處理토록 移牒

다. 私有財産은 宗團에 歸屬處理(寄附書 徵求)

라. 文公部 宗務擔當官 韓榮洙는 刑事立件, 檢察에 移牒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로 등록되어 있는 이 문건은 1971년 4월 27일 제 4조, 14조에 의거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건상사법위원회에 이송된 것으로 확인됨

添 附

- 1 . 處 理 別 名 單
- 2 . 歸 屬 할 個 人 財 産 現 況
- 3 . 個 人 別 非 違 內 容
- 4 . 主 要 寺 刹 및 關 聯 團 體 에 對 한 調 查 結 果
 - 가 . 禪 學 院
 - 나 . 룸비니開發 韓國委員會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 다 . 佛 教 道 友 誼 會
 - 라 . 大 覺 寺
 - 마 . 普 門 寺
 - 바 . 道 詵 寺

佛敎界 淨化를 爲한 搜查結果 發表

戒嚴搜查當局은 지난 10月 27日 神聖한 宗教界
內에서 은갖 非理와 不正을 恣行하여 敎界는
勿論 國民의 指彈을 받아오던 一部 非理佻侶 및
關聯 民間人 55名과

參考人 98名 等 總計 153名을 連行 또는
召喚하여 搜查를 斷行한바 있거니와 今般 搜查를
一段落 지우고 그 實相과 全貌를 闡明하고

發表하는 바이다.
국방부 과외사건상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1. 搜查目的

- 새로운 正義社會 具現과 福祉國家 建設을
爲한 宗教界의 淨化와 倫理基盤 造成에
寄與 하고

6 . 搜查結果處理

戒嚴搜查當局은 이번 佛敎界 淨化를 爲한
搜查結果에 따라

- 18名(僧侶 10名, 一般人 8名)은 拘束後
刑事立件하고
- 32名은 佛敎淨化中興會議의 自律淨化委員會
에 處理를 委任하여 嚴正한 審査를 通하여
僧籍剝奪(速脫度牒) 및 宗職辭退(公權
停止)토록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항공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등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 犯罪嫌疑가 없는者 5名은 訓放하는 한便
- 또한 私有財産은 이~~를~~ 宗團에 歸屬토록
措置하고 있다 .

건본 18-1. 조계종 승려 대통령각하 면담결과

2006.01.06

80.12.11

曹溪宗僧侶 大統領閣下 面談結果

1. 面談日時 및 場所

1980. 12. 11 15:00 ~ 15:50 (50 分間)

靑瓦臺 閣下 面談室

2. 參 席 者 (8 名)

朴基宗 淨化中興會議 議長 (東大財團理事長)

金慧岩 淨化中興會議 副議長 (奉岩寺 祖室)

金吞虛 淨化中興會議 委員 (月精寺 住持)

姜昔珠 淨化中興會議 委員 (榮華寺 住持)

朴吞星 淨化中興會議 常任委員 (空林寺 住持)

李智冠 淨化中興會議 委員 (東大佛教大學長)

尹法興 淨化中興會議 事務總長 (松廣寺 住持)

金無盡藏 淨化中興會議 委員 (曹溪宗 布教院長)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제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3. 陪 席

文化公報部 長官

教育文化 首席秘書官

274 28

2006.01.06

佛敎 財産處理問題 (靑瓦臺 報告)

- 和爭敎團 : 104 億 (年 2 ~ 3 億 收入)
 - 本人 希望에 依據 佛敎振興院에 歸屬
- 無登錄 寺刹 (學校財團 等) : 90 億
 - 曹溪宗 歸屬

- 個人所有 動産 및 現金 還収 : 1 億
 - 曹溪宗 歸屬
- ※ 佛敎振興院 任員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공부위조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14조에 의거
1인기에 제출된 자료로 동 규정
19조에 의거 관리되어야 함.

- 理事長 黃 山 德
 - 理 事 洪 璣 基 (中央日報 社長)
 - 丁 六 秀 (商工會議所 理事)
 - 鄭 在 覺 (東大 總長)
 - 李 基 永 (東大 教授)
 - 鄭 周 永 (現代 會長)
 - 辛 格 浩 (롯데 會長)
 - 崔 鍾 鉉 (鮮京 會長)
- } 承諾要請中

273




부록 4

10·27법난 관련 법령



목 차

4-1.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224
4-2.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6
• [별지 제1호서식]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233
• [별지 제2호서식] 피해경위서	235
• [별지 제3호서식]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236
• [별지 제4호서식]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237
• [별지 제5호서식] 명예회복결정서	239
• [별지 제6호서식] 의료지원금 결정서	241
• [별지 제7호서식] 명예회복 결정통지서(인용)	243
• [별지 제8호서식] 명예회복 결정통지서(기각)	244
• [별지 제9호서식]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인용)	245
• [별지 제10호서식]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기각)	246
• [별지 제11호서식] 재심신청서	247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1. 11. 11.>	248
• [별지 제13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	249
• [별지 제14호서식] 10·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	250
4-3.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대비표	251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8.23.] [법률 제1776호, 2013.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 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0·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 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한다.
3. “피해종교단체”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을 말한다.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5.22.>

1. 피해자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사무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 ① 위원회는 피해자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신고한 자가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201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신고기간·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5조(의료지원금) ①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10·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8995호, 2008.3.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법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3.5.22〉

부칙 〈제9947호, 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6호, 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법률 제8995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12.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제5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1., 2013.3.23., 2015.1.6.>

1. 국방부 차관
2.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 국가보훈처 차장
4. 경찰청 차장
5.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8.20.>

1. 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2. 법 제3조제2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3.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각 실무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과 3급·4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1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삭제 <2013.8.20.>

제5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0.>

1.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2(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② 사무처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20.]

제7조(공고) 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른 피해자 신고 및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피해 신고와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의료지원금의 산정기준
6. 심의·결정절차
7. 구비서류
8. 그 밖에 신청·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① 법 제4조에 따른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

1.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경위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2의2.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제3항에 따라 유족이 신고 및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의3. 피해자의 소속 종교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4항에 따라 소속 종교단체의 장이 신고 및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민, 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장

③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제1항에 따라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1.11.>

④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승려이거나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및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11.11.>

⑤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를 제출받은 신청서 접수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11.11.>

제9조(의료지원금 지급신청) ①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경위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11.>

제10조(의료지원금의 산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간호비(介護費)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를 기준으로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유사 사례의 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 보조장구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내구(耐久)연수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제11조(결정)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 및 명예회복 조치에 대한 결정(이하 “명예회복 결정”이라 한다)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회복결정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명예회복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명예회복결정서 또는 의료지원금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1. 명예회복 결정을 한 때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명예회복 결정통지서 1부에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1부를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2.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 1부에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를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3조(재심신청) 제12조에 따라 명예회복 결정 통지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려면 명예회복 결정통지서 또는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

1. 삭제 <2011.11.11.>
2. 삭제 <2011.11.11.>

제14조(동의 및 청구) 제12조에 따라 명예회복 결정 통지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하거나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 1부

2.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제15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급시기) 의료지원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사실조사) ① 위원회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명예회복 신청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자 중에서 자체조사를 통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10·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피해자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부칙 <제20991호, 2008.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3292호, 2011.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07호, 2012.5.2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413호, 2013.3.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②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4691호, 2013.8.20.>

이 영은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76호, 2015.1.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6839호, 2015.12.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피해경위서
- [별지 제3호서식]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 [별지 제4호서식]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명예회복결정서
- [별지 제6호서식] 의료지원금 결정서
- [별지 제7호서식] 명예회복 결정통지서(인용)
- [별지 제8호서식] 명예회복 결정통지서(기각)
- [별지 제9호서식]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인용)
- [별지 제10호서식]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기각)
- [별지 제11호서식] 재심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1.11.11>
- [별지 제13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
- [별지 제14호서식] 10·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



■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5.23>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법난위	명예	제	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0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의 () -			
피해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당시 주소						
신청 내용	10·27법난	연행 일자			귀가 일자		
	내용	연행 부대					
	10·27법난 주요 피해 내용	※ 피해자가 받은 주요 피해 내용을 적습니다.					
	해고·징계 처분 등 불이익 내용	※ 10·27법난과 관련하여 받은 해고 또는 조계종 자체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 내용을 적습니다.					

본인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피해경위서 1부 2.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1부(「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피해자의 소속 종교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소속 종교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피 해 경 위 서

일 시	
장 소	
사 건 경 위	
인 증 방 면	

210mm×297mm[백상지(80g/㎡)]



■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5.23)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법난위	의료	제	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0일
------	-----	----	---	---	------	------	------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	

피해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당시 주소	

신청 내용	①10·27법난 내용	연행 일자	귀가 일자
		연행 부대	이미 수령한 보상금
	상이 일자 년 월 일	당시 나이 만 년 월	당시 직업
	②상이 부위	③상이 내용	
	④항후 치료	치료 내용	추정 치료비
	⑤개호 [] 필요(개호기간:) [] 불필요		
	⑥보조장구 보조장구 명칭: 시가: 내구연수:		

본인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치료비 [] 개호비 [] 보조장구 구입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귀하

첨부 서류 등	첨부 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피해경위서 1부 2.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의 이미 수령한 보상금란에는 국가나 군부대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의 액수를 적습니다.
2. ②란에는 팔·다리 등 상이를 입은 부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③란에는 골절상·자상(刺傷) 등 구체적 병명을 적습니다.
4. ④란에는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내용과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⑤란에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개호가 필요한지와 그 개호기간을 적습니다.
6. ⑥란에는 보조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조장구의 명칭·시가 및 내구연수(사용연수)를 적습니다.
7. []에는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해당 각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23)

명예회복결정서

(앞쪽)

접수번호		법난위	명예	제	호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			
피해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당시 주소				
결정 주문					

※ 결정이유는 뒤쪽에 적혀 있습니다.

년 월 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결정이유

[사실 관계]

[결정 내용]



■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5.23)

의료지원금 결정서

(앞쪽)

접수번호		법난위	의료	제	호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			
피해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당시 주소				
결정주문					

※ 결정이유는 뒤쪽에 적혀 있습니다.

년 월 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의료지원금 결정액	1. 치료비	
	2. 간호비	
	3. 보조장구 구입비	
	계	
사전 지급액		
지급액		

결정이유

[사실 관계]

[의료지원금 산출내역]



■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2.31.>

명예회복 결정통지서(인용)

접수번호		법난위	명예	제	호
성 명					
주 소					

귀하의 명예회복 신청에 대하여 첨부한 명예회복결정서와 같이 명예회복 조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동의 및 청구서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 첨부 1.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1부
2. 동의 및 청구서 용지 1부

년 월 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2.31.>

명예회복 결정통지서(기각)

접수번호	법난위	명예	제	호
성 명				
주 소				

귀하의 명예회복 신청에 대하여 첨부한 명예회복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명예회복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명예회복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1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년 월 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2.31.)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인용)

접수번호	법난위	의료	제	호
성 명				
주 소				

귀하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첨부한 의료지원금결정서와 같이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다음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가. 동의 및 청구서 1부
 - 나. 인감증명서 1부
 - 다.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2.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
 2. 동의 및 청구서 용지 1부
 3. 재심신청서 용지 1부

년 월 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직인

유의사항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1.>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기각)

접수번호	법난위	의료	제	호
성 명				
주 소				

귀하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첨부한 의료지원금결정서와 같이 기각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료지원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년 월 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5.23>

재심신청서

접수번호	법난위	재심	제	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		
피해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당시 주소						
신청 사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명예회복 결정 []의료지원금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1.11.11.)



■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5.23>

동의 및 청구서

접수번호	법난위 명예(의료) 제	호	결정일자	처리기간	15일
------	--------------	---	------	------	-----

결정 주문

청구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	
	은행 계좌번호	
피해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당시 주소	

1. 청구인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위 명예회복 결정(의료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2. 청구인은 그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하거나 의료지원금 결정액을 받으려고 합니다.
3. 청구인은 명예회복 조치나 의료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귀하

청구인 첨부서류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 2. 청구인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5.23>

10·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피해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행일	귀가일
	연행 부대	
	피해 내용	
확 인 내 용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첨부서류: 10·27법난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류

년 월 일

확인기관장



210mm×297mm[백상지 80g/㎡]



■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대비표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76호, 2013.5.22., 일부개정]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12.31., 타법개정]
<p>제1조(목적) 이 법은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한다. 3. “피해종교단체”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을 말한다. 	
<p>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5.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p>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제2조(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제5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1, 2013.3.23, 2015.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부 차관 2.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 국가보훈처 차장 4. 경찰청 차장 5.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76호, 2013.5.22., 일부개정]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12.31., 타법개정]
<p>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8.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 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2. 법 제3조제2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3.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p>② 제1항에 따른 각 실무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과 3급·4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11.11></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p>제3조의2(사무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p>	<p>제6조의2(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20]</p>
<p>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 ① 위원회는 피해자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신고한 자가 피해</p>	<p>제7조(공고) 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른 피해자 신고 및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p>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76호, 2013.5.22., 일부개정]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12.31., 타법개정]
<p>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201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p> <p>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신고기간·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0.1.25]</p>	<p>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 신고와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의료지원금의 산정기준 6. 심의·결정절차 7. 구비서류 8. 그 밖에 신청·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제8조(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① 법 제4조에 따른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경위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의2.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제3항에 따라 유족이 신고 및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의3. 피해자의 소속 종교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4항에 따라 소속 종교단체의 장이 신고 및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p>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민, 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장 <p>③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제1항에 따라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1.11></p> <p>④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승려이거나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종</p>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76호, 2013.5.22., 일부개정]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12.31., 타법개정]
	<p>교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및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11.11></p> <p>⑤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를 제출받은 신청서 접수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11.11></p>
	<p>제4조 삭제 <2013.8.20></p>
<p>제5조(의료지원금) ①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10·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p> <p>③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p> <p>④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공고) 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른 피해자 신고 및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 신고와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의료지원금의 산정기준 6. 심의·결정절차 7. 구비서류 8. 그 밖에 신청·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제9조(의료지원금 지급신청) ①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경위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p>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p>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76호, 2013.5.22., 일부개정]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12.31., 타법개정]
	<p>2011.11.11)</p> <p>제10조(의료지원금의 산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간호비(介護費)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를 기준으로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유사 사례의 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 2. 간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 보조장구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내구(耐久)연수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p>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p>	
<p>제7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p>	<p>제5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76호, 2013.5.22., 일부개정]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12.31., 타법개정]
<p>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p>	<p>②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7조(사실조사) ① 위원회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명예회복 신청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자 중에서 자체조사를 통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10·27법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1조(결정)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 및 명예회복 조치에 대한 결정(이하 “명예회복 결정”이라 한다)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회복결정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지원금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제12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명예회복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명예회복결정서 또는 의료지원금 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예회복 결정을 한 때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명예회복 결정통지서 1부에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1부를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2.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 1부에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를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p>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76호, 2013.5.22., 일부개정]</p>	<p>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12.31., 타법개정]</p>
	<p>제13조(재심신청) 제12조에 따라 명예회복 결정 통지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려면 명예회복 결정통지서 또는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1.11.11> 2. 삭제 <2011.11.11>
	<p>제14조(동의 및 청구) 제12조에 따라 명예회복 결정 통지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하거나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및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감증명서 1부 2.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p>제15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제16조(지급시기) 의료지원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p>
	<p>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에 따른 피해자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부록 5

위원회 규칙 · 규정 · 지침 등



목 차

5-1.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회의운영규칙	263
5-2.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	
● 피해자등여부심사 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	268
● 명예회복추진 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	275
● 의료지원금판정 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	282
5-3.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사무처 위임·전결규정	295
5-4.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사무처 직제규정	303
5-5. 10·27법난피해자 검진업무 처리계획	307
5-6. 10·27법난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기준	317
5-7. 피해사실 조사업무 처리지침	337
5-8.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관련 신청서 접수 및 처리요령	361

부록 5-1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심의위원회
회의운영규칙**

10·27법난 심의위원회 회의운영규칙

- 제 정 2009. 2. 26.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규칙 제2009-01호
- 일부개정 2011. 12. 6.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규칙 제2011-0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장)

- ① 위원장은 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회의의 소집 등)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위원장이 판단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12.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안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일부수정 '12.1.1〉
- ②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위원 본인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의 운영)

- ① 회의는 의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 ②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안전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개진할 수 있다. 이 때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정부위원이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여 위원회 출석이 어려운 경우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2.1.1>

제7조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

- ① 위원회는 안전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안전의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의 비공개)

회의(제9조에 의한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포함한다)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일부개정 '12.1.1>

제9조 (의결서, 회의록)

- ① 출석위원은 의결서에 서명·날인한다.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12.1.1>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 및 의장의 성명
 4. 보고안건
 5. 심의·의결안건
 6. 발언요지
 7. 표결결과
 8. 기타
- ③ 의장은 의결서 및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서명·날인 한다.

제10조 (비밀엄수의무)

- ① 위원은 위원회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12.1.1>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에게 해촉 또는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참고인, 신청인 등에게는 관련규정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2.1.1〉

부칙 〈심의위원회규칙 제2009-1호, 2009. 2. 26〉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심의위원회규칙 제2011-1호, 2011. 12. 6.〉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5-2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

- 피해자 등 여부심사 실무위원회
- 명예회복 추진 실무위원회
- 의료지원금판정 실무위원회

피해자등여부심사 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

- 제 정 2009. 6. 4.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규칙 제2009-02호
- 일부개정 2011. 12. 6.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규칙 제2011-02호
- 일부개정 2013. 10. 23.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규칙 제2013-0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0·27법난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기타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3조 (실무위원장의 직무)

- ①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직무를 통할한다.
- ②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회의 개시 전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참석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운영)

-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 또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는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 발송이 부적절한 경우나 우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2.1.1>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실무위원장이 판단한 경미한 사항(최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료 확인 등)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정부위원이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여 위원회 출석이 어려운 경우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2.1.1>

제5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일부개정 '12.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안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②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위원 본인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스스로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안건의 심의·의결)

- ① 피해여부에 대한 심의는 신청인의 피해내용과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결과 및 관련기관의 조사 기록 등을 참고하여 심의하며, 실무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인, 참고인, 조사공무원 등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여 진술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각서를 실무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도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④ 피해여부 판정은 회의 참석 위원들의 심의에 의거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 ⑤ 실무위원회는 심의·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한 후 출석위원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심의위원회 회의에 상정한다.

제7조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

실무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참고인, 신청인 등에게는 관련규정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부개정 '12.1.1>

제9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사항(의사경과 요지)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엄수)

① 실무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비밀엄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12.1.1>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실무위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취소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사무처 명예회복지원과장은 실무위원회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13.10.23>

②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의 피해심사업무담당이 간사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일부개정 '12.1.1>

부칙 <심의위원회규칙 제2009-2호, 2009.6.4>

이 규칙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심의위원회규칙 제2011-2호, 2011.12.6>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심의위원회규칙 제2013-2호, 2013.10.23>

이 규칙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주 소 :

성 명 : (19 . . 일생)

상기 본인은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을 신청한 0 0 0

(19 . . 일생)의 심사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 하겠으며,

만약 본 실무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이 허위로 입증 입증될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각서인

(서명 또는 날인)

10·27법난피해자등심사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결 정 이 유

〈뒤쪽〉

[신청내용]

[사실관계]

- 조사기관

- 조사내용

-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 심의결과

[결정내용]

[증거서류]

※ 뒤쪽은 해당 심의 안건에 따라 내용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

서 약 서

본인은 10·27법난피해자등여부심사 실무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일체의 개인정보 및 직무상 비밀을 누설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 법 조항에 의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위 원 (서 명)



명예회복추진 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

- 제 정 2009. 6. 4.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규칙 제2009-03호
- 일부개정 2011. 12. 6.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규칙 제2011-03호
- 일부개정 2013. 10. 23.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규칙 제2013-0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회복 대상 및 정의)

- ① 명예회복 대상은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로 결정된 경우에 한한다.
- ② “피해자”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③ “피해종교단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2.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사항
3. 기념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기타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할 사항

제4조 (실무위원장의 직무)

- ①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직무를 통할한다.
- ②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회의개시전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참석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운영)

-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는 개최 7일전 까지,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 발송이 부적절한 경우나 우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선등 기타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12.1.1>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실무위원장이 판단한 경미한 사항(최근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료 확인등)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⑥ 정부위원이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여 위원회 출석이 어려운 경우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2.1.1>

제6조 (위원의 제척·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일부개정 '12.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②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위원 본인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스스로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안건의 심의·의결)

- ① 명예회복에 관한 안건은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에 근거하여 실무위원장의 상정으로 심의·의결한다.
- ② 제1항과 관련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명예회복 신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도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④ 명예회복 판정은 회의 참석 위원들의 심의에 의거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 ⑤ 실무위원회는 심의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한 후 출석 위원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심의위원회 회의에 상정한다.

제8조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

실무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참고인, 신청인 등에게는 관련규정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



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부개정 '12.1.1〉

제10조 (회의록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사항(의사경과 요지)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엄수)

① 실무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비밀엄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12.1.1〉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실무위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취소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사무처 명예회복지원과장은 실무위원회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13.10.23〉

②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의 명예회복업무담당이 간사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일부개정 '12.1.1〉

부칙 〈심의위원회규칙 제2009-3호, 2009.6.4〉

이 규칙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심의위원회규칙 제2011-3호, 2011. 12. 6.〉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심의위원회규칙 제2013-3호, 2013. 10. 23.〉

이 규칙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명예회복을 위한 의견서

접수번호	제 호		
피해자	법 명		당시거주사찰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제출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전화번호
<p>내 용</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장 귀하</p>			



【별지 제2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안건번호 :		(앞쪽)			
접수번호		법난위	명예	제	호
신청인	성명(법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자택)	-
피해자	성명(법명)	()		주민등록번호	-
	당시 주소				
명예회복 유형					
결정주문 위 사람은 10·27법난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위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위해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명예회복추진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함					

※ 결정이유는 뒤쪽에 기재

년 월 일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득한 일체의 개인정보 및 직무상 비밀을 누설 하지 않겠으며, 이에 위반할 시에는 관련 법 조항에 의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명예회복추진 실무위원회 위 원

(서 명)

의료지원금판정 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

- 제 정 2009. 6. 4.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규칙 제2009-04호
- 일부개정 2011. 12. 6.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규칙 제2011-04호
- 일부개정 2013. 10. 23.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규칙 제2013-04호
- 일부개정 2014. 4. 9.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규칙 제2014-0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0·27법난 피해관련 상이의 인정
2. 상이자의 신체검진 및 정밀검사에 필요한 수가 기준의 결정
3. 의료지원금 산정
4.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직무를 통할한다.
- ②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참석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운영)

-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 또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는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 발송이 부적절한 경우나 우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12.1.1>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 ⑤ 정부위원이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여 위원회 출석이 어려운 경우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2.1.1>

제5조 (위원의 제척·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일부개정 '12.1.1>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안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②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위원 본인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스스로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안건의 심의·의결)

- ① 의료지원금판정은 신청인의 피해상이 제출 자료와 검진병원의 검진결과를 참고로 하여 심의·의결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 ② 삭제 <'14.4.9>
- ③ 실무위원회는 심의·의결에 있어 10·27법난과 상이의 관련성 규명 및 의료지원금 산정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도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7조 (상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 제시)

실무위원회는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의 피해자 심의에 필요한 10.27법난과 상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사자료에 기재하여, 실무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에 제시한다.

제8조 (검진장소 지정)

- ①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의 의료지원금의 판정 편의를 위하여 시·도 등에 검진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기본 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적 검진장소로 한다.

제9조 (검진전문인)

- ① 의료지원금의 판정 등에 필요한 검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 장애관련 전문과목별로 검

진전문의를 둘 수 있다.

② 검진전문의를 실무위원장 또는 소속 병원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 (검진)

① 검진은 전문과목별 해당 검진전문의 1인 이상이 실시하고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다른 검진의로 하여금 재검진을 시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개인주치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조 1항의 지정병원 등에 한하여 검진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전문과목별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 현재의 건강상태, 진단서, 환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검진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합동검진 결과표를 작성, 관리한다.

③ 검진은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검진의뢰는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한 검진의뢰서에 의하고, 검진병원으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검진소견서를 제출받아 심의에 참고한다. 다만, 1회 검진 결과 정진질환 등 정밀검사나 입원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추가로 검진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상이를 입은 후 외국 거주, 거동불가능 등으로 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진료기록 등 서면심사에 의하여 검진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하거나, 관련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사항(의사경과 요지)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엄수)

① 실무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비밀엄수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12.1.1>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실무위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취소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 ① 사무처 명예회복지원과장은 위원회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13.10.23>
- ②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무처의 의료지원 업무담당이 간사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일부개정 '13.10.23>

제14조 (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참고인, 신청인 등에게는 관련규정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2.1.1>

부칙 <심의위원회규칙 제2009-4호, 2009.6.4>

이 규칙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심의위원회규칙 제2011-4호, 2011. 12. 6.>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심의위원회규칙 제2013-4호, 2013. 10. 23.>

이 규칙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심의위원회규칙 제2014-4호, 2014. 4. 9.>

이 규칙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심의의결서

안건번호			(앞쪽)									
접수번호	법난위	의료	제 호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										
피해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당시 주소											
의결 사항	<p>1. 상이여부:</p> <p>2. 상이 후 사망자에 대한 의견: _____ 으로 인정(추정)됨.</p> <p>3. 의결내용(진단명, 검진 소견, 의료지원금 지급 필요 여부)</p> <p>4. 의료지원금 산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0%;">향후치료비</th> <th style="width: 20%;">개호 여부</th> <th style="width: 50%;">보장구착용 필요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치료기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 <input type="checkbox"/></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추정금액: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부 <input type="checkbox"/></td> <td>보장구명:</td> </tr> </tbody> </table>			향후치료비	개호 여부	보장구착용 필요 여부	•치료기간:	가 <input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추정금액: 원	부 <input type="checkbox"/>	보장구명:
향후치료비	개호 여부	보장구착용 필요 여부										
•치료기간:	가 <input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추정금액: 원	부 <input type="checkbox"/>	보장구명:										
결정 주문	<p>위 사람은 10·27법난 피해자로서, 위 의결사항에 따른 구체적인 의료지원금 지급 조치를 위해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함</p>											

※ 결정이유는 뒤쪽에 적혀 있습니다.

년 월 일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결정이유

[의료지원금 산출 상세내역(진단명별)]

진료과		의료지원금 필요 여부	
진단명			
항목	추정산출액	검토의견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장구			

진료과		의료지원금 필요 여부	
진단명			
항목	추정산출액	검토의견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장구			

* 뒤쪽은 해당 심의 안전에 따라 내용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별지 제3호 서식】

심 사 자 료

안건번호	제 호				
신청일자		접수번호	제 호	신청구분	상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직 업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신청내용					
조사결과					
의학적 의 견					
종합의견					
<p>년 월 일</p>					
		소속	피해심사업무담당	조사자	(인)
				확인자	(인)
		소속	의료지원업무담당	조사자	(인)
				확인자	(인)

합동검진결과표

■ 검진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	--------	--

■ 검진전문의 검진사항

(1) 상이내용

상이일자	사 유	인정 상이처(최초진단병명)	비 고

(2) 향후 의료지원금에 대한 소견

구 분	소 견			검진 전문의(서명)
	필요없음	소요기간	추정치료비	
지원금(계)				
향 후 치료비				
개 호 필요여부				
보장구착용 필요여부				
※ 상기 의료지원금 합계 천원의 추정근거 (가) _____병원진단서(향후 치료비 등 추정서) (나) 기 타 :				



(3) 부상 후 사망자에 대한 소견

소 견	검진전문의를(서명)		
○ 당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추정)됨			
○ 사망과 당시 부상은 무관한 것으로 인정(추정)됨			

※ 첨부서류(합동 검진시 참고한 서류)

(1) 검진 신청자가 검진의학에게 제출한 진단서 및 기타 진료자료(유, 무)

가.

나.

다.

(2) 2차 검진의뢰에 대한 지정병원의 검진소견서(유, 무)

가.

나.

(3) 기타 검진에 참고한 진료자료 일체(유, 무)

가.

나.

다.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검진 의뢰서

_____ 병원장 귀하

■ 검진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 상병명

■ 검진의뢰사항

1.
2.
3.

■ 향후 요치료 대상인 경우 그 소견(해당자에 한함)

※ 추정 치료기간 및 추정 진료비

■ 개호 및 보장구 착용에 대한 소견(해당자에 한함)

※ 소요기간 및 추정금액

위와 같이 검진을 의뢰하오니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검진소견서(회보용) 1부

년 월 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6호 서식】

검진소견서(회보용)

_____ 귀하

■ 발행번호 과 제 호 회신

환자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직업					
상병명						
검진실적						
진료추정기간			추정치료비			천원
<p>※ 의사소견</p> <p><input type="radio"/> 향후 요치료 대상인 경우 그 소견(해당자에 한함)</p> <p> - 추정 치료기간 : 약 년 월</p> <p> - 추정 진료비 : 약 천원</p> <p><input type="radio"/> 개호 및 보장구 착용에 대한 소견(해당자에 한함)</p> <p> - 소요기간 : 약 년 월</p> <p> - 추정금액 : 약 천원</p> <p><input type="radio"/> 기타의견 :</p> <p style="text-align: right;">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p>						

위와 같이 검진결과 또는 향후 소견을 회신합니다.

년 월 일

의료시설 소재지 :

의료기관명 및 대표 :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득한 일체의 개인정보 및 직무상 비밀을 누설
하지 않겠으며, 이에 위반할 시에는 관련 법 조항에 의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위 원 (서 명)

부록 5-3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사무처 위임·전결규정

10·27법난피해자심의위 사무처 위임·전결규정

- 제 정 2011. 8. 9. 「10·27법난명예회복지원단」 규정 제2011-01호
- 일부개정 2013. 10. 23. 「10·27법난명예회복지심의위원회사무처」 규정 제2013-01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이라 한다)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무처 업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결재권자 및 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결재권자는 위원장을 말하며 전결권자는 사무처장, 과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4조 (위임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5조 (위임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미리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③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6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 (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결원일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종류 및 결재방법) ① 결재의 종류는 결재, 전결, 대결이 있다.
1. 결재 : 당해 사안에 대해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로 위원장이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2. 전결 : 결재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사무처장 및 과장, 담당이 행하는 결재이다. 위임·전결사항은 본 규정의 별표에 의한다.
 3. 대결 :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대결한 문서중에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결재방법은 전자기안문에 의한 전자결재 방법과 일반기안문(수기문서)에 의한 비전자 결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최대한 전자문서 결재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전결권자의 책임) 본 규정의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한 위임전결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사무처 규정 제2013-1호, 2013. 10. 23〉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위임전결사항

범례	전결(결재)	○
	기안	★

번호	단위업무 및 세부전결업무		전 결 권 자			위원장
			담당	과장	처장	
1	위원 임면 (위촉/해촉)	분위원회 위원	★			○ (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위원	★			○
		신원조사 의뢰	★	○		
2	위원회 운영	분위원회 회의개최 계획	★			○
		실무위원회 회의개최 계획	★		○	
		본회의 심의자료 보고	★			○
		실무위 심의자료 보고	★			○
		분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
		실무위 심의결과 보고	★			○
		회의 개최(참석) 안내	★		○	
		녹취록 작성결과 보고	★		○	
		위원회 주요추진업무관련기관 통보	★		○	
		심의결정 통지서 통보	★		○	
		동의/청구서 접수	★	○		
3	위원회 운영규정	심의/실무위 운영규정·지침 제정/개정	★			○
		위원회 / 지원단 운영관련 내규	★			○
4	소관법령 제·개정 관련	일반사항	★		○	
		중요사항	★			○
5	명예회복 관련	일반사항	★		○	
		중요사항	★			○
6	기념관 건립 관련	일반사항	★		○	
		중요사항	★			○



범례	전결/결재	○
	기안	★

번호	단위업무 및 세부전결업무		전 결 권 자			위원장	
			담당	과장	처장		
7	피해사실확인 조사	개별 피해신청인 확인·조사	★		○		
		피해사실 확인 종합계획/결과	★			○	
		피해종교단체 확인·조사 계획/결과	★			○	
		관계기관 기록조회 요청(최초/보완)	★	○			
		회신문 검토(통보내용)	★		○		
		서류보완안내(피해자/유족)	★	○			
		주민등록조회	★	○			
8	피해자 검진	피해자/병원 검진계획	★		○		
		검진결과 접수	★	○			
		검진서류보완(병원)	★	○			
9	피해신청 접수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현황	★		○		
		신청서류 자료보완안내	★	○			
10	국회업무	국회요구자료 제출	일반사항	★	○		
			중요사항	★		○	
		국회업무협조	경미사항	★	○		
			일반사항	★		○	
			중요사항	★			○
11	민원업무	민원사항 접수	★		○		
		민원사항 처리회신	★		○		
12	행정기관 업무협조	일반사항	★	○			
		중요사항	★		○		
13	정보공개	일반사항	★		○		
		중요사항	★			○	

범례	전결/결재	○
	기안	★

번호	단위업무 및 세부전결업무		전 결 권 자			위원장
			담당	과장	처장	
14	업무보고	주요업무 계획/실적	★			○
		월/주간업무, 일일업무보고	★		○	
		과내 업무분장, 개인업무보고	★	○		
15	홍보 업무	홍보기본계획 수립	일반사항	★		○
			중요사항	★		○
	홍보결과보고	일반사항	★		○	
		중요사항	★			○
16	간행물 발간	발간기본계획 수립	일반사항	★		○
			중요사항	★		○
	자료수집, 보완, 배부	일반사항	★	○		
		중요사항	★		○	
17	인사업무	직원 총원 및 보직관련사항	팀원	★		○
			팀장이상	★		○
	교육, 출장, 휴가등 복무관리	팀원	★	○		
		과장	★		○	
		처장	★			○
	포상 추천		★		○	
	징계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			○
		사실조사, 출석통지서 교부	★		○	
징계위원회 운영		★	○			



범례	전결(결재)	○
	기안	★

번호	단위업무 및 세부전결업무		전 결 권 자			위원장	
			담당	과장	처장		
18	예산업무	예산편성(안) 작성 및 요구		★			○
		예산집행	1억원 초과	★			○
			2,000만원~1억원까지	★		○	
			2,000만원 까지	★	○		
	중간결산 및 결산결과		★			○	
19	업무 추진비	집행결정	200만원 초과	★			○
			200만원~100만원	★		○	
			100만원 까지	★	○		
20	보조금 집행	교부결정	10억원초과	★			○
			10억~1억원	★		○	
			1억원까지	★	○		
		교부확정, 정산의뢰		★	○		
21	보안업무	보안감사 실시 및 수감		★		○	
		보안교육 및 진단		★	○		
		비밀취급 및 비밀문서 관리		★	○		
22	시설관리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		
23	물품관리		★	○			
24	기타업무	회의실 협조/ 차량배차		★	○		
		기타 행정사항		★	○		
		기타 행정사항 (업무 관련성이 적은 외부수신문서의 경우)		★/○			

※ 위 내용에 없는 사항은 안전행정부 위임전결규정을 준용

부록 5-4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사무처 직제규정**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정

○ 제정 2013. 10. 23.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처」 규정 제2013-0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2에서 규정한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지원기구)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지원기구로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이라 한다)를 둔다.
- ②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간사로 보하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사무처장 밑에 기획총괄과, 명예회복지원과를 둔다.

제3조 (기획총괄과)

과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기획업무지원담당, 대외협력/홍보지원담당, 본회의운영담당을 둔다.

① 기획업무지원담당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처업무의 총괄·조정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및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운영지원
3. 보상금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등의 소요예산 신청 및 관리
5. 사무처와 관련된 인사, 군수, 정보업무 관장
6. 기타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② 대외협력/홍보지원담당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협조
2. 민원사항 총괄관리
3. 관계법령 개정 대비 사항
4.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③ 본회의운영담당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이송 안전 상정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작성 및 상정
3. 위원회 결정사항 조치
4. 보상금 등의 산정, 지급결정 통보 및 지급업무
5. 보상금 등의 지급 업무협조 및 지출 증거서류 작성
6. 법률지원 및 법적조치/위원회 지시사항 확인
7. 회의결과 정리 및 통지/기타 부여된 업무수행

제4조 (명예회복지원과)

과장은 계약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명예회복지원담당, 피해심사지원담당, 의료판정지원담당을 둔다.

① 명예회복지원담당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소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소관 심의 안전 작성 및 상정
3. 회의결과 정리 및 위원회 상정 대상 이송 등
4.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부여된 업무수행

② 피해심사지원담당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사항
2.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소관 심의 안전 작성 및 상정
3. 피해자 등 여부 사실조사 사항(피해 확인·조사)
4. 회의결과 정리 및 위원회 상정 대상 이송 등
5. 사실심의 개인 파일 정리/10·27법난피해자등명예회복활동 보고서 발간
6. 기타 부여된 업무수행

③ 의료판정지원담당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소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소관 심의 안전 작성 및 상정
3. 의료지원금 지급액(산정)심사
4. 회의결과 정리 및 위원회 상정 대상 이송
5. 10·27법난 관련 상이자 검진준비 및 실시
6. 검진 지정병원 관리 및 협조

7. 10·27법난 관련 상이자 장애등급 판정
8. 10·27법난 관련 상이자 의료지원금 산정
9. 10·27법난 관련 사망자 장애등급 판정(사망·상이 인정)
10. 10·27법난과 상이(사망)와의 인과관계 규명
11. 기타 부여된 업무수행

부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5-5

10·27법난피해자
검진업무 처리계획

10·27법난피해자 검진업무 처리계획

1. 목 적

10·27법난 관련 피해보상을 위한 상이자에 대한 신체검진 및 향후 치료비, 간호비, 의료보장구 구입비 산정 등에 필요한 제반 업무의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음.

2. 관련근거

- 가.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1776호, '13.05.22)
- 나.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91호, '13.08.20)

3. 방 침

- 가. 동국대학교 의료원을 10·27법난 관련 상이자의 검진을 실시할 지정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2009. 9. 29. 협약을 체결함
- 나. 위원회는 검진업무에 관한 업무처리 계획을 작성하여 동국대학교 의료원에 통보하고, 검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와 지정병원간에 직접 협의하여 처리
- 다. 검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자별 일자 및 시간을 포함한 세부검진계획을 작성하여 실시
- 라. 외국거주 및 거동불가능 상이자는 위원회에서 서면심사로 검진대체

4. 검진대상 및 검진병원의 임무

가. 대상

- (1) 10·27법난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단, 검진대상으로 확정후 검진실시 이전 사망자는 검진 대상에서 제외

나. 검진병원의 임무

- (1) 합동검진결과표 작성, 관리
- (2) 의료지원금 추정(시행령 제10조)
 - (가) 향후 치료비 추정
 - (나) 간호비 지급 여부 및 간호비 추정
 - (다) 보장구 착용 여부 및 보장구 구입비 추정

5. 검진기관 및 검진전문의

가. 검진기관

- (1) 위원회는 전국지역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병원을 지정한다.
 - ※ 2개 권역
 - 서울 및 중부권 : 동국대 일산병원
 - 영남 및 호남권 : 동국대 경주병원

나. 검진전문의

- (1) 과목 : 정신과 등 10개 과목
- (2) 인원
 - 가) 정신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4개과 : 각 2~3명
 - 나) 내과, 외과, 신경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6개과 : 각 1~2명
- (3) 검진전문의 위촉
 - 가) 지정된 검진병원은 해당병원의 과목별 전문의를 검진전문의로 추천을 받아 위촉
 - 나) 부족시 검진장소와 가장 근접한(당일 검진에 지장이 없는 거리) 종합병원의 전문과목별 과장급 이상 전문의를 추천받아 위촉

6. 검진절차

가. 검진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검진실시 15일전까지 지정병원과 협의하여 검진계획 수립한다.

나. 검진계획 통보

10·27법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자와 지정병원 및 검진전문의를 대하여 검진실시 1주일 전까지 검진계획 통지한다.

다. 검진 실시

- (1) 지정병원장은 능률적인 검진을 위한 장소준비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검진전문의를 검진을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에 의하여 본인 여부 확인한다.
- (3) 검진장소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하되, 보호를 요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보호자를 동반자로 하여 출입 허용한다.
- (4) 검진시 합동검진결과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관리한다.
- (5) 1차검진 결과 정신질환 등 정밀검사나 입원관찰의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지정한 병원에 별지 제2호 서식(검사의뢰서)에 의거 2차검진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별지 제3호 서식(검진소견서)을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추후 동 검진소견서를 참조하여 향후 의료지원금 등을 산정한다.

7. 의료지원금 산정

가. 향후치료비 산정

나. 개호비(개인간호비) 산정

다. 보조장구구입비 산정

※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참조



8. 검진결과 통보

검진병원장은 검진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합동검진결과표와 관련 진료기록 및 진단기록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9. 검진비 기준 및 예산집행

- 가. 검진비용 : 신체검진에 따른 경비는 위원회가 부담한다.
- 나. 검진의 수당 : 1인당 1일 140,000원

10. 협조 및 행정사항

가. 협조사항

- (1) 검진지정병원
 - 가) 검진장소 설치 및 검진장소 주변 안내판 설치
 - 나) 합동검진에 따른 검진 전문의석 및 대기석 등 준비
 - 다) 검진에 필요한 필기구 및 검진에 필요한 각종 서식 비치
 - 라) 검진전문의에 대한 검진요령 사전 교육
- (2)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가) 검진업무처리계획 작성 및 관련부서 협조
 - 나) 검진예산 편성/ 집행
 - 다) 검진에 따른 개별 통지 및 행정지원
 - 라) 지정병원 관계관 협조 및 전문의 위촉장 수여

합동검진 결과표

■ 검진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	--------	--

■ 검진전문의 검진사항

(1) 상이내용

상이일자	사 유	인정 상이처(최초진단병명)	비 고

(2) 향후 의료지원금에 대한 소견

구 분	소 건			검진전문의(서명)
	필요없음	소요기간	추정치료비	
지원금(계)				
향 후 치료비				
개 호 필요여부				
보장구착용 필요여부				
※ 상기 의료지원금 합계 천원의 추정근거 (가) _____병원진단서(향후 치료비 등 추정서) (나) 기 타 :				



※ 첨부서류(합동 검진시 참고한 서류)

(1) 검진 신청자가 검진인에게 제출한 진단서 및 기타 진료자료(유, 무)

가.

나.

다.

(2) 2차 검진의뢰에 대한 지정병원의 검진소견서(유, 무)

가.

나.

(3) 기타 검진에 참고한 진료자료 일체(유, 무)

가.

나.

다.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검진 의뢰서

_____ 병원장 귀하

■ 검진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 상병명

■ 검진의뢰사항

1.
2.
3.

■ 향후 요치료 대상인 경우 그 소견(해당자에 한함)

※ 추정 치료기간 및 추정 진료비

■ 개호 및 보장구 착용에 대한 소견(해당자에 한함)

※ 소요기간 및 추정금액

위와 같이 검진을 의뢰하오니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검진소견서(회보용) 1부

년 월 일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부록 5-6

**10·27법난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기준**

의료지원금 지급기준

I. 제정목적

10·27법난과 관련한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지원금(치료비, 간호비, 보조장구 구입비) 산정기준을 정립하여 정확한 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함.

II. 관련법규

1.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1776호, '13.05.22)
2.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91호, '13.08.20)
3. 10·27법난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기준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 의안제4호, '09.9.10)

III. 의료지원금

1. 향후치료비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를 기준으로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 등에서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유사 사례의 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

2. 간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 보조장구구입비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IV. 지급기준 검토내용

1. 향후치료비

가. 향후 치료비의 의료비 적용 단가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52호, 2013.09.27)
- (2)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43호, 2013.09.23)
- (3)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61호, 2011.12.30)

나. 비급여 의료비는 위원회에서 기준안 마련 조정

※ 위 기준을 적용,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를 심사, 결정

2. 개호비

가. 개호비 지급범위 : 월 최고 210만원 ~ 최저 140만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간호수당 기준

- 동 시행령의 상이등급 1, 2급에 해당자에게 지급

상이등급	상시 간호수당(1급1항 등)	수시 간호수당(2급-5급)
금액월	210만원	140만원

나. 개호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적용

다. 금액의 결정

- (1) 검진병원 검진비가 작성한 합동검진결과표상의 개호비 상이등급을 심의
- (2) 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기준으로 결정

라. 개호비 산출

- (1) 총 지급액 = 월지급액 ×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其間)

* 평균여명기간 : 2008. 6. 29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 위 기준을 준용, 위원회에서 지급대상, 금액, 기간 등 심사 결정

3. 보장구구입비

가.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적용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별표 기 「보험급여대상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나. 산출방법

- (1) 보조장구 구입비

$$= \text{내구년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필요횟수} \times \text{구입시가} \\ \times \text{중간이자공제율}$$

※ 현저한 구입시가의 차이 발생시 실무위의견 참조, 본위원회에서 결정



V. 의결주문

- 향후치료비의 경우 의료비 지원단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개호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보조장구구입비는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1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 규칙을 적용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붙임 : 1. 관련법규

2. 평균여명기간

3. 개호비 지급기준을 위한 상이등급

4. 보험급여대상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관 련 법 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제11776호 '13.05.22)

제5조(의료지원금)

- ①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10·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 ③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7121호 '04.01.29)

제5조(의료지원금)

- ① 피해자중 제2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법 시행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의 사용이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1042호 '11.09.15)

제8조(의료지원금)

- 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 ③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균여명기간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2항

“2008년 6월 29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을 기준으로 명시

☞ 2006년 통계자료 적용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41	36.26	42.46	66	15.36	19.26
42	35.33	41.50	67	14.65	18.40
43	34.41	40.54	68	13.95	17.55
44	33.50	39.58	69	13.28	16.71
45	32.60	38.62	70	12.62	15.89
46	31.71	37.66	71	11.98	15.08
47	30.82	36.71	72	11.36	14.29
48	29.94	35.76	73	10.75	13.51
49	29.07	34.81	74	10.15	12.75
50	28.20	33.87	75	9.58	12.01
51	27.34	32.93	76	9.03	11.30
52	26.49	31.99	77	8.51	10.62
53	25.64	31.05	78	8.02	9.96
54	24.81	30.12	79	7.55	9.33
55	23.98	29.19	80	7.11	8.73
56	23.16	28.27	81	6.69	8.16
57	22.34	27.35	82	6.29	7.63
58	21.53	26.43	83	5.92	7.12
59	20.73	25.51	84	5.57	6.66
60	19.93	24.60	85	5.25	6.22
61	19.13	23.69	86	4.96	5.81
62	18.35	22.79	87	4.68	5.44
63	17.58	21.90	88	4.43	5.09
64	16.82	21.01	89	4.20	4.78
65	16.08	20.13	90	3.98	4.49

개호비 지급기준을 위한 상이등급

○ 개호비 지급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p>제26조 (간호수당)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별표 5의2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시 간호수당 : 210만원 2. 수시 간호수당 : 140만원 [전문개정 2012.6.27]
--

○ 상이등급구분표(시행령 제14조의 별표3)

1. 눈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1101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2항	1102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	1103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급	1105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110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4급	1107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며,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半盲性) 시야협착이 있는 사람
	1108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
5급	1109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1110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
6급 1항	111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
	1112	한 눈이 실명된 사람
6급 2항	111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6급 3항	111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1201	두 눈의 시야협착이 중심 30도 이내이거나 두 눈에 반맹증이 있는 사람
	1301	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1202	두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



7급	111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111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1117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1203	한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사람
	1204	사시로 인하여 정면 및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프리즘으로도 교정되지 아니하여 한쪽 눈을 가려야 하는 심한 복시가 있는 사람
	1205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1302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2. 귀, 코 및 입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2급	2401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급	2101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2402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2501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2102	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3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2103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4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502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2104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301	외부 코의 7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2405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6	상악(上顎)·하악(下顎) 치아 중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3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2105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1	두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2	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7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8	상악·하악 치아 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4	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3항	2303	외부 코의 4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9	상악·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7급	2106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107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2	한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4	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10	상악·하악 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7급	2411	치아외상, 악안면(顎顔面) 파편 잔사(殘査) 및 반흔조직(癍痕組織)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	------	---

3. 흉터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2급	3101	전체 체표면의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안면부(顔面部)에 3도 화상으로 인한 고도의 추상(醜相)으로 통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3급	3102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
	3103	전체 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5급	3104	전체 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6급 2항	3105	전체 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3107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7급	3106	전체 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3108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4101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4102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103	뇌골(腦骨) 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 언어 및 청각기능도 모두 잃은 사람
	420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1급 2항	4104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105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언어 또는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106	두부(頭部) 손상으로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조건이 있고 월 1회 이상의 중증의 간질발작 또는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간질발작이 있는 사람
1급 3항	4202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4107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과 언어기능 또는 보행기능과 청각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4108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203	고도의 정신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급	4109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 언어기능 또는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4110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4	정신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급	4111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5	정신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급	4112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4206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6급 1항	411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7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2항	4114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4208	정신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7급	4115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510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
1급 3항	5102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510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급	5104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201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510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급	5106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2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
6급 1항	510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203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5108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109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의 적출(摘出)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3항	5110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	511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4	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6. 체간(體幹)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3급	6101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신경근 장애가 있는 사람
4급	6102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6103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4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6105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6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6107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8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1	쇄골, 흉골 및 견갑골의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운동에 50퍼센트 이상 제한을 받는 사람
	6202	늑골 6개 이상이 제거된 사람

7급	6109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3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부정유합(不整合)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남은 사람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7101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 두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1급 2항	7102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03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04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의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급 3항	7105	두 팔을 팔꿈치관절 미만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06	두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107	양쪽 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모두 상실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사람
2급	7108	한쪽 팔을 어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상박의지(上膊義肢)의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3급	7109	한쪽 팔을 어깨관절 미만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	7110	한 팔을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전박의지(前膊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7111	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7112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미만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13	한 팔이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4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7115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6	한 팔의 손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7117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18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9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1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30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302	열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다섯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30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잃은 사람
	6급 2항	7120
7121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22		신경손상에 의한 손바닥의 마비 또는 뼈 손상 등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사람
712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2		한 팔이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7203		한 팔의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
7304		열 손가락 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다섯 손가락 이상을 잃거나 강직(強直)된 사람



6급 2항	7305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06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07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730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30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 3항	7310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7124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4	팔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7311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3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731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2항	810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02	두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급 3항	8103	두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8104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대퇴의지(大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3급	8105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미만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06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07	한 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 쪽 둔부결손, 뼈의 손상, 고관절, 무릎관절의 강직으로 정상적으로 앉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4급	8108	한 다리를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하퇴의지(下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8109	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8110	한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11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1	두 발의 뒤꿈치 뼈 또는 중족골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1항	8113	한 다리의 발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8114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5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1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202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2	양 쪽 발가락 모두를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2항	8118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9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20	신경손상으로 발이 마비되거나 중족부 또는 후족부 뼈 손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
	812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3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204	한 다리의 경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8303	양 쪽 발가락 모두를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4	양쪽 발가락 중 다섯 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5	한 발의 다섯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급 3항	8306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7급	812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5	다리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8307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의 근위지절간관절을 잃은 사람
	830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9. 2개 이상 상이처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9011	1급 2항 또는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1급 2항	9012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급 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급 3항	9013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1급 3항에 해당되는 사람
2급	902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3급	903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3급에 해당하는 사람
4급	904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4급에 해당하는 사람
5급	905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사람
6급 1항	9061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6급 2항	9062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6급 3항	9063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7급	907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의 유형 · 기준액, 내구연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2013.09.30)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연한
팔 의지	어깨가슴 의지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4
			기능형	1,400,000	4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90,000	4
			기능형	1,470,000	4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 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1,240,000	3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 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860,000	3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 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 근위부를 남기고 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50,000	1	
		기능형	590,000	2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다리 의지	한쪽 골반 의지 (hind-quarter am- 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 (above knee end- 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490,000	3
			실리콘형	2,010,000	5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 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290,000	3
			실리콘형	1,810,000	3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 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860,000	3
			실리콘형	1,520,000	3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740,000	3	
		실리콘형	1,480,000	3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 근위 정강뼈 부위를 남기고 (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530,000	2	
		실리콘형	1,040,000	3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	
		실리콘형	720,000	2	
팔 보조기	어깨뼈 외전(外轉)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		240,000	3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팔 보조기	긴 팔 보조기 - 각도 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 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260,000	3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90,000	3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f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000	3
척추 보조기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70,000	3
	목뼈 보조기 -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3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3
	척추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3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등·허리·엉치뼈 재킷(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400,000	3
	코르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뒷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
골반 보조기	골반 보조기 (pelvic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2
다리 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540,000	3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410,000	3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다리 보조기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다리 마비일 때 양쪽에 장착하는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790,000	3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 (Lenox-Hill)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3
	무릎관절 보조기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3
	짧은 다리 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370,000	3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120,000	3
	발목관절 보조기 - 고정(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240,000	3
	발목관절 보조기 - 클렌자크식 (klenzark type ankle joint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신전운동의 약화가 있는 경우 사용		320,000	3
	발목관절 보조기 -90° 고정(90°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굴곡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140,000	3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 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2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 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1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그 밖의 보장구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2
	목발(crutches)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저시력 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00,000	5
	콘택트렌즈			80,000	3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의안(plastic eye)			30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340,000	5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
	전동스쿠터 (Moped)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
	자세보조용구 - 앉기형 (adaptive seating device)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고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0,000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머리 및 목 지지대	21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17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다리 및 발 지지대	240,000	3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160,000	1.5

치과 보철료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61호, 2012.1.1)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카-1	주조금관	308,000
카-2	3/4금관	241,000
카-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353,000
카-4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260,000
카-5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억)	1,431,000
카-6	국소의치(코발트크롬)(1억)	991,000
카-7	총의치(코발트크롬상)(1억)	986,000
카-8	총의치(레진상)(1억)	803,000
카-9	캐스트코아	126,000
카-10	포스트(기성품)	87,000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 : 유치악)	1,397,000
카-12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 유치악)	983,000
카-13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 무치악)	1,487,000
카-14	임시레진관	22,800
카-15	임시국소의치(추가 1치당)	38,100(5,400)
카-16	임시총의치	174,000

※ 치과 보철료 산정시 종합전문 요양기관 가산율(30%) 적용

부록 5-7

**피해사실 조사업무
처리지침**

피해사실조사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피해사실조사업무처리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조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피해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사 범위·대상)

- ① 피해사실조사는 법 제2조 제1호의 ‘10·27법난의 정의’에 의거 이를 규명하기 위한 사항을 그 범위로 한다.
- ② 피해사실조사 대상은 법 제2조 2,3호의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사실 관계규명을 위한 개인·관련자·단체를 피해사실조사 대상자로 하며 세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
 2.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3. 상기 1,2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참고인 및 조사공무원 등 관계인
 4.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기관 및 인원 등

제3조 (조사의 개시 및 기간)

- ① 피해사실조사의 개시는 영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구비서류 및 자료 등이 피해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조사담당관에게 정상적으로 접수된 시점을 개시시기로 한다.
- ② 피해사실조사 기간은 영 제8조 및 제9조의 구비서류 상의 양식 및 제17조 2항의 관계기관 조사기간과 피해심사실무위원회 추가조사 등을 고려, 피해사실조사 개시로부터 5개월 이내로 한다. 단, 지침 제9조와 같은 기타 사유 발생 시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담당관 지정)

- ① 신청인의 10·27법난 피해신청서의 처리 담당관은 피해심사지원반 전원이 되며, 피해심사지원반장이 해당 조사 담당관을 지정한다.
- ② 담당관은 순번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신청내용과 협조할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담당관을 지정한다.



제5조 (조사방법 및 분류)

- ① 피해사실조사는 실무위원회 담당관이 직접 실시하는 직접조사와 경찰청등의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실시되는 간접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② 직접조사를 실시하는 분류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해당된다.
 1. 피해신청서를 제출한 자 및 관련 참고인
 2. 상기 1호 외 10·27법난으로 인해 피해가 확인된 자 또는 종교단체 및 그와 관련한 참고인
- ③ 간접조사를 실시하는 분류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해당된다.
 1. 직접조사가 불가능한 피해 신청인 및 그와 관련한 참고인
 2. 피해신청과 관련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관계기관 및 종사자 등

제6조 (조사요령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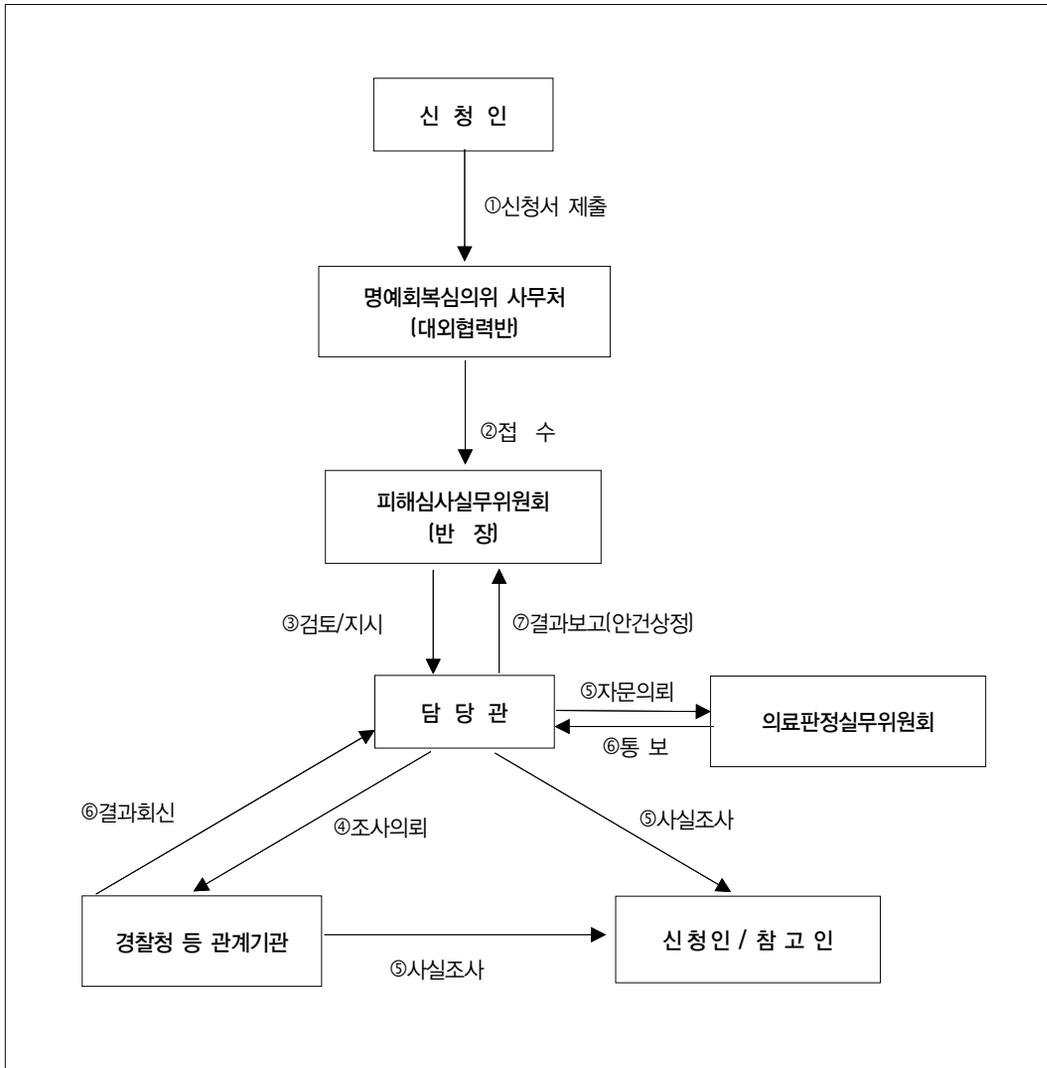
- ① 사무처에 접수된 피해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해 피해사실조사를 부여받은 조사 담당관은 다양한 조사기법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성과있는 조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한다.
- ② 조사담당관은 피해신청서, 피해경위서, 기타 증빙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조사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출해 낸다.
 1. 직접조사 및 간접조사에 해당하는 준비사항을 분리
 2. 상기 1호 조사방법에 대한 조치 및 요구 목록을 발췌
 3.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등을 해당 조사대상자(신청인, 참고인, 사찰 등)와 협의
 4. 세부 조사사항 및 조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 소요
- ③ 직접조사는 실무위원회의 조사담당관에 의해 실시되는 조사방법으로 규칙 제5조 제2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피해사실을 규명한다.
 1. 조사 대상자를 접촉, 조사 시기 사전 조율 및 질문서 등 제 분야 준비
 2. 피해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 관련사항 진술 청취 및 관련 자료의 제시 여부 확인(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
 3. 상기 2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인 등 관계자의 구체적인 증언 청취
 4. 해당 피해의 의료지원금 보상을 위해 제출한 진단서 등 서류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 수렴 (의료판정 실무위원회 담당관 협조)
 5. 기타 추가 확인이 요구되는 사항(보완조사· 관계기관 자료요구 등)
 6. 직접조사 방법에 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의 절차를 따른다.
- ④ 간접조사는 법 제7조 제1항 및 영 제17조에 명시된 관계기관 등을 통해 규칙 제4조 제3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조사요령은 상기 제3항 1~5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⑤ 관계기관에 피해사실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1. 구체적 확인이 요구되는 필수 조사사항을 적시한 사실조사 요청서(별지 제4호)
2. 객관적 입증자료 첨부 제출 및 조사결과에 대한 통보시기
3. 조사결과서 통보 시 원본 제출 및 사본 1부 해당 기관 보관 등의 행정사항

⑥ 직접조사 및 간접조사를 통해 획득한 각종 조사 자료는 실무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해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은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⑦ 피해사실조사의 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 ① 피해조사 담당관이 자체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군 및 군 관련기관, 경찰청, 국가기록원, 병/의원, 기타 관계기관 등에 규칙 제6조 제5항에 의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
- ② 관계기관과의 협력은 유선, FAX, 우편, 전자메일 등 가용한 수단을 추가 활용한다.
- ③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 기간은 영 제17조 2항에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급적 해당 기관과의 협력 하에 조사 기간을 단축토록 한다.

제8조 (출석요구 등)

- ① 법 제7조 1,2항에 의해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 ② 1차 사실조사 후 추가 확인이 요구되거나,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 추가진술을 희망할 경우 진술청취가 이루어지며, 이때 진술청취 장소는 위원회사무실로 한다. 단,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 ③ 상기 2항의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조사의 중지)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조사중지 여부 등을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2. 사실확인의 핵심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
- 3.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재심의 조사)

- ① 재심의 조사라 함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및 실무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심의 안건에 대해 재심의 상정을 목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신청한 “재심”은 원심 심의를 위한 사실조사와 동일한 방

법으로 재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실무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은 추가 확인을 요구한 사항에 한 해 재조사 후 상정한다.
- ④ 재심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영”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재심 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재심의 조사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단, 지침 제9조와 같은 기타 사유발생시에는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신고 접수 / 피해사실조사

1. 신청서 접수 및 조사절차



2. 신청서류 확인

가. 대외협력반 접수 → 총괄반 → 피해심사지원반(조사담당)

나. 신청서류 확인

구 분	명예회복 신청	의료지원금 신청
내 용	①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서 ② 피해경위서 ③ 명예회복 신청 위임장 (대리신청서) ④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이 대리신청서) ⑤ 기타 신청사유 소명 증빙서류	①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신청서 ② ~ ⑤ 좌동 ※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동시 신청서는 ②이하서류 생략 가능

다. 조사담당관별 피해신청인 단위로 파일철 작성, 활용

라. 서류접수후 주민등록등본 확인(전자정부법에 의거 행정정보 이용)

3. 관계기관 기록조회 협조

가. 피해신고 관련 서류 확인후 내용에 따라 기무사령부 또는 경찰청에 피해신고자의 피해관련 기록 조회(의뢰) 협조

※ 포함내용 : 신청자 인적사항, 피해경위, 연행 / 조사사항 등

나. '가'항에 의한 기록이 없을시 국가기록원에 피해관련 기록 조회

다. 관계기관 기록 조회 서식 : 별지 #4서식 활용

4. 방문일정 협조

- 가. 시기 : 방문일 고려 1개월 ~ 2주전
- 나. 협조자 : 조사담당관
- 다. 방법 : 전화, 휴대폰, FAX, E-mail 등 이용
- 라. 내용 : 방문조사일정, 조사장소, 지참물(신분증, 도장) 등
- 마. 조사방문계획 수립 : 일정, 장소, 조사관(동행자), 이동수단 등
 - ※ 계획수립후 총괄반으로 공문 출력 협조

5. 관련자료 준비

- 가. 시기 : 방문 1일전까지 완료
- 나. 주요 확인(준비)내용
 - 피해신청인(참고인) 문답조서 양식
 - 질문내용 정리
 - 장비확인 : 노트북, 프린터, 카메라, 녹음기, A4용지 등
 - 이동수단 : 공용차량(배차여부 확인) 또는 자가차량 및 공용차량 등
 - ※ 대중교통 이용시 사전 예매
- 다. 조사전일 피조사자와 통화를 반드시 실시하여 착오 발생 방지

6. 방문조사 실시

- 가. 개 요
 - 첫 대면시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첫인상이 전과정을 지배함)
 - ※ 스님인 경우 1拜 또는 3拜 실시
 - 조사에 앞서 피조사자의 건강, 사찰행사 등 관련 가볍게 대화
 - 녹음, 사진촬영, 신분증 확인 등은 사전 부드럽게 동의 유도
 - 조사자세
 - 신청인이 피해자라는 입장 견지(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아님을 유의)
 -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진술인의 전반적인 진술을 청취
 - 진술인의 진술은 신뢰하되 확인 답변은 지양
 - 진술시 조사(취조) 받고 있다는 느낌을 고려, 대화식 조사 필요



나. 문답조서(진술서) 작성요령

• 피해신청인 / 참고인조사시 포함사항

- 인정신문
- 법난 당시 소속종단, 사찰과 직책, 법난 이후의 승적
- 강제연행 경위 : 6하원칙에 의거 구체화
 - ※ 연행시 수사관이 신분 및 범죄사실, 연행이유를 고지하였는지 질문
- 수사(조사)받은 경위 : 6하원칙에 의거 구체화
- 석방된 경위 및 수사로 인한 형사처벌, 징계 등 유무
- 연행 / 수사과정상의 피해내용, 경과, 현재상태 등
- 동일 사유로 다른 위원회에서 보상받은 사실 유무
- 기타(법난에 대한 소회, 증빙 참고인, 추가적인 요구사항 등)

• 참고인 조사시 고려사항

- 피해신청인과의 관계
- 법난사건 및 피해신청인의 당시 상황 인지 여부
- 경험과 추측이 혼동되지 않는지 여부
- 시간, 인물이 정확하며,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

• 문답조서 내용 작성

- 피해사실 증명 중심의 내용작성
- 임의진술이므로 진술은 먼저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작성
 - 질문은 적게 하되, 답변은 길게 하도록 할 것
 - 유도형, 긍정강요형 질문금지
-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
- 6하원칙에 의거 핵심파악 정리
- 간명하되 기재내용을 자연스럽게 작성
- 객관성을 유지
- 통일된 명칭 사용 및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다. 문답조서의 처리

- 문답조서는 작성연월일과 소속기관 및 작성자의 계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날인은 문자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문답조서는 매장마다 진술인이 간인한다.
 - 문답조서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 문답조서는 진술자가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 인장이 없으면 날인 대신 무인하게 할 수 있다.
 - 진술인이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열람이 제한될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이 대독하여 본인의 의사와 다름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 조사관은 문답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임의로 문자를 고쳐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이 고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삭제시 : 삭제 문자에 두줄을 긋고 날인후 여백에 '0자 삭제' 기재
 - 삽입시 : 삽입 문자를 기입하고 그 부분에 날인후 '0자 추가' 기재
- ※ 삭제 또는 삽입한 내용에 대한 날인은 진술인이 실시한다.

문 스님의 말씀을 녹음, 조서 작성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답

문 본건 신청인 스님이 맞으시나요.

답

이 때 진술인이 주민등록증 / 승적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다.
(피해신청시 미제출시는) 촬영하여 출력후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

문 10·27법난 당시 발생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답

문 (진술한 피해사실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부연 질문 실시)

1. 연행사실 :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디로, 이동수단, 당시의 주변 상황 등
2. 피조사기관 : 조사기관 명칭, 위치, 조사관 인적사항, 조사실의 정황, 기타(동일장소에서 피조사인원 등)
3. 구체적인 피해내용 : 정신적, 육체적 상이내용 및 물질적 피해 등
4. 연행조사후 행적 : 삼청교육대 입소, 전국유랑, 입원(내원), 환속 등

답

문 스님께서 연행되어 조사받으신 후 그 피해로 인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치료하고 계신 상이가 있습니까?

답



문 법난 전이나 후에 사건 사고로 다치신 적은 없습니까?

답

문 당시 법난 피해로 인해 형사처벌이나 종단으로부터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

문 당시 스님이 연행되거나 조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목격하거나 잘 알고 있는 참고인이 있습니까?

답

(참고인이 있을 경우)

문 말씀하신 참고인이 스님의 피해사실을 진술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참고인은 현재 어디에 계시며, 연락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참고인이 없을 경우)

문 그렇다면 스님의 피해내용을 추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

문 스님께서 법난 피해사실을 다른 위원회나 기관, 단체 등에 진술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

문 스님께서 본 위원회에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을 신청하셨는데 생각하시는 명예회복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

문 진술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면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답

문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답

문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시킨(읽어 준) 바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없다고 하여 간인한 후 서명, 날인(무인)하게 하다.

진 술 인 (인)

20 . .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피해심사담당 (인)

피해심사담당 (인)



별지 #3 피해신청자 참고인 문답조서 서식

참고인 문답조서
<p>성 명(법명) : 주민등록번호 :</p>
<p>위 사람에 대해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에서 발생한 ()스님의 법난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년 월 일()에서 피해심사담당(피해조사관) ()은 () 배석하에 아래와 같이 참고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다.</p>
<p>문 참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록 기준지, 연락처를 말씀해 주십시오.</p> <p>답 성 명(법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소 : 등록 기준지 : 연 락 처 : 사찰()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입니다.</p>
<p>피해조사관은 피해신청인 ()의 신청사실을 설명하고 참고인은 다음 장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p>

문 ()스님의 법난 피해사실에 대해 참고인 진술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답

문 스님의 말씀을 녹음, 조서 작성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답

문 ()스님의 참고인 ()스님인 사실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관참으시다면 신분증을 복사하겠습니다.

답

이 때 진술인이 주민등록증(승적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다.
또는 촬영하여 출력후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

문 10·27법난 당시 ()스님의 승적과 직책, 소임은 무엇이었으며, 피해신청인 ()스님과 법난 발생 당시의 관계와 현재는 어떤 관계입니까?

답

문 (진술한 피해사실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부연 질문 실시)

1. 법난 당시의 신분 : 수행사찰의 직책(소임), 활동 등
2. 신청인과의 관계 : 불교계 및 개인적인 관계
3. 기 타

답

문 ()스님이 연행당한 사실 및 당시 정황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



문 (진술한 피해사실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부연 질문 실시)

1. 당시 참고인의 행적
2. 피해신청인이 연행 과정의 주변상황
3. 추가적으로 피해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 등

답

문 ()스님이 조사를 받으면서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답

문 ()스님이 당시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거나 현재까지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시거나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

(답변에 따라 부연 질문)

불면증, 두근거림, 우울증, 두통, 소화불량 등과 관련한 내용 질문

문 ()스님은 법난이후 맡고 있던 일체의 소임을 강제로 사퇴당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답

문 법난 이후 ()스님이 형사처벌 및 종단의 징계처분사실이 있습니까?

답

문 법난 이후 ()스님의 행적(도피, 유랑, 환속 등)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

문 ()스님의 피해 및 명예회복 신청 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까?

답

문 스님은 법난의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있으면 피해신청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답

문 법난사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답

문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시킨(읽어 준) 바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없다고 하여 간인한 후 서명, 날인(무인)하게 하다.

진 술 인 (인)

20 . .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피해심사담당 (인)

피해심사담당 (인)



피해신청인 및 신청내용

성명(법명)	주민번호	당시소속사찰	연행부대
피해경위	<p>요약 정리 ※ 세부내용은 피해신청서의 피해경위서 활용</p>		
확인 요청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시 기록상 연행, 수사 대상자 명단 포함 여부 2. 피해 당시 ()부대 연행 및 조사사실 여부 3. 신청인의 형사입건, 징계처분 기록 4. 기타 신청인 관련 조사 참고인 인적사항 등 		

심 사 자 료

안전번호①	제 1 호				
신청일자		접수번호④	제 호	신청구분⑦	사망, 상이, 기타
피해자/ 단체 (법명)②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⑤		직 업⑧	
신청인/ 단체 (법명)③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⑥		관 계⑨	
신청내용	⑩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기관명⑪ ■ 증거서류 등 자료⑫ 1. ■ 피해사실 정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신청인)⑬ ● 참고인⑭ 				
의학적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 명⑮ ■ 10·27법난과 상이의 연계성⑯ 				
종합의견 ⑰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e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20 년 월 일⑱</p> <p>소 속 피 해 심 사 반</p> <p>소 속 의 료 판 정 반</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조 사 자⑲ (인)</p> <p>확 인 자⑳ (인)</p> <p>조 사 자㉑ (인)</p> <p>확 인 자㉒ (인)</p> </div> </div>					



※ 심사자료 작성방법

- ① 안전번호: 실무위원회 심의 시 상정안전에 대해 부여하는 번호
- ② 피해자(법명) / 단체: 피해 당사자 및 단체를 기술하는 것으로 ③과 동일할 수 있음
- ③ 신청인(법명) / 단체: 신청한 당사자를 기술하는 란으로 신청유형에 따라 작성
- ④ 접수번호: 지원단에서 접수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것으로 ①과는 상이할 수 있음
- ⑤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②번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술. 단체는 사업자 번호
- ⑥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③번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술. 개인은 주민 번호
- ⑦ 신청구분: 피해유형을 개인이 신청하며, 기타는 단체 신청 시 명예회복 등 기술
- ⑧ 직 업: 개인 신청 시에만 해당하며, 피해당시의 직업을 기술
- ⑨ 관 계: ②번과의 관계를 말함
- ⑩ 신청내용: 육하원칙에 의한 피해신청서 및 경위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 ⑪ 조사기관명: 직접 또는 간접조사에 따라 기관명을 기술. 간접조사 시 00경찰청 명칭
- ⑫ 증거서류 등 자료: 심사자료 작성 간 참고한 자료를 망라하며 복사할 서류일체
- ⑬ 피해자(신청인): 피해신청인의 당시 정황 및 피해내용을 기술하고 조사관이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기술
- ⑭ 참고인: 2명 이상의 참고인을 대상으로 피해조사 결과 중 피해내용 등을 기술
- ⑮ 병명: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내 병명, 진술 간 병명을 기술하고, 관련성 개진
- ⑯ 10·27법난과 상이의 연계성: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의결결과 기술
- ⑰ 조사자 종합의견: 피해사실조사 및 의학적 의견을 기초로 관련성 여부 판단 및 인정 또는 불인정 의견 기술
- ⑱ 년.월.일: 피해심사실무위원회 개최 일자를 기술
- ⑲ 조사자: 심의안을 담당한 피해심사반 조사 담당관의 성명 기술 및 도장 관인
- ⑳ 확인자: 피해심사반장의 성명 기술 및 도장 관인
- ㉑ 조사자: 의학적 의견을 개진하는 군의관 성명 기술 및 도장 관인
- ㉒ 조인자: 의료지원금판정반장 성명 기술 및 도장 관인

제 호

출 석 요 구

10·27법난 사건(접수번호:)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시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피해심사실무 위원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1.
- 2.
- 3.

출석하실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사관 (전화번호)에게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10·27법난피해심사실무위원회



별지 #7 진술의 녹음 동의서 서식

진술의 녹음 동의서

사건번호 :

사 건 명 :

진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위 사건에 관하여 20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녹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진 술 인 (서명 또는 인)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귀중

부록 5-8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관련
신청서 접수 및
처리요령**

신청서 접수 / 처리요령

1. 접수기간

- 2013. 11. 10. ~ 2014. 12. 31.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피해종교단체)

3. 신청인의 자격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 명예회복 신청
 - 피해자, 유족, 피해종교단체
 - * 유족 : 민법에 의한 피해자의 재산상속인

4. 신청서 접수기관

- 신청서 접수 방법 : 지원단에서 직접접수
 - 우편접수 : 신청기간내 도달분 접수
 - 방문접수 : 일과시간내 접수(09:00~18:00)



5. 신청시 제출서류

- 명예회복 신청자(사찰)
 -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피해경위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명예회복 신청(수령) 위임장 1부(대리신청시)(별지 제4호 서식)
 -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대리신청시)
 - 그 밖에 신청사유 소명 증명자료 1부

-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자
 -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피해경위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1부(대리신청시)(별지 제 4호 서식)
 -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대리신청시)
 - 그 밖에 신청사유 소명 증명자료 1부

6. 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시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 확인
 -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함
 - 신청인의 주소와 연락처 기재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함
 - ※ 접수후 신청인 변경사유 발생시 “신청변경서” 및 변경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제출토록 함
 - 유족이 신청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상의 유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신청인 적격여부 확인
 - 신청인이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표시를 하고 법정대리인이 기명날인 하였는지 여부 확인

○ 대리신청의 경우 확인사항

- 본 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대리 신청요건 충족여부 확인
 - 이민, 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
 -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을 받았는지의 여부
 - *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 해외공관장의 확인
 - * 입원의 경우 : 입원 의료기관장의 확인
 - *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 수용된 기관장의 확인
 - * 기타의 경우 : 읍·면·동장의 확인
-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확인
- 의료지원금 등 수령위임장에 위임인 표시 여부

○ 신청요건 및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엄격히 검토확인 후 미비 시 대리 신청 접수거부 조치

7. 접수대장 등재 및 접수증 교부

○ 접수대장 등재

- 신청서 접수시 접수대장에 접수순번 등 등재
- 의료지원금 등의 신청과 명예회복 신청 접수대장 별도 유지관리

○ 접수증 교부

- 신청서 접수 즉시 신청인(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에게 접수번호 등을 기재한 접수증을 교부
- 우편접수 시 우편으로 접수증 송달



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 20
① 접수번호	명예회복 - 접수순번 의료지원금 - 접수순번
②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명예회복 : <input type="checkbox"/> 의료지원금 : 상이, 사망
③ 신청인	
④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⑤ 안내사항	
<p>접수자 :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p> <p>☎ 02) 738~6210</p>	

8. 신청서류 편철

○ 접수된 신청서류는 신청유형별로 다음 순서로 편철정리

• 사망자

① 신청서 → ② 피해경위서 → ③ 다수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 선정서) →
④ 주민등록표 등본 → ⑤ 가족관계증명서·제적 등본 → ⑥ 의료지원금지급
수령 위임장 → ⑦ 피해경위입증자료(사망확인서 등) → ⑧ 기타자료

• 상이자·질병자

① 신청서 → ② 피해경위서 → ③ 다수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 선정서) →
④ 주민등록표 등본 → ⑤ 진단서 → ⑥ 피해경위입증자료 → ⑦ 기타자료

- 명예회복대상

- ① 신청서 → ② 피해경위서 → ③ 다수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 선정서) → ④ 주민등록표 등본 → ⑤ 가족관계증명서·제적 등본 → ⑥ 명예회복수령위 입장 → ⑦ 기 타

- * 명예회복대상 :

- 10·27법난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피해자
- 피해종교단체



부록 6

위원회 업무활동일지



| 2008년 |

일 자	내 용
3. 28.	•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10·27법난법) 제정, 6. 29. 시행
9. 9.	• '10·27법난법' 시행령 제정, 시행
12. 30.	• 심의위원회 위원(11명) 위촉 및 임명(국무총리) - 민간위원(7) : 원학스님 등 불교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 7인 - 정부위원(4) : 국방부·문광부차관, 국가보훈처·경찰청차장
12. 30.	• 10·27법난명예회복지원단 사무실 개소(전쟁기념관 439호)

| 2009년 |

일 자	내 용
1. 8.	• 제1차 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장 원학스님 선임
1. 30.	• 10·27법난명예회복지원단 창설 (법난 TF해체) - 인원 : 단장 박충신(국방부 고위공무원외 9명)
2. 19.	• 위원회 현판식 - 장소 : 전쟁기념관사업회내 4층 439호실
2. 26.	• 제2차 심의위원회 개최 - 3개 실무위원회 위원장 선임, 회의운영규칙(안 의결 등
3. 10.	• 피해신청공고 / 관보게제 (신청접수기간 : 3. 16. ~ 9. 17.)
3. 21.	• 피해신청공고 포스터 제작, 전국주요사찰 배포(1,800부)
4. 1.	• 전광판 광고(서울 등 전국25개소) 시작
5. 7.	• 제1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위원장 수여, 피해심사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안) 의결
5. 8.	• 제1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위원장 수여, 명예회복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안) 의결
5. 15.	• 제1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위원장 수여, 의료판정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의결
6. 2.	• 피해사실 조사활동 시작(명예회복신청자-자신스님)
6. 4.	• 제3차 심의위원회 개최 - 각 실무위 회의운영규칙(안) 의결, 역사교육관 건립안(조계종안) 보고
6. 11.	• 역사교육관 건립부지선정 요청공문, 조계종에 발송



일 자	내 용
7. 8.	• 제2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교육관 건립(안) 심의
7. 10.	• 제2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학적 인과관계 3건, 검진업무 처리계획(안) 의결
7. 13.	• 제4차 심의위원회 개최 - 역사교육관 건립안(1,500억원) 의결
7. 15.	• 제2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2건 심의
8. 6.	• ‘역사교육관 건립’ 지원예산반영 요청(국방부) * 국방부 검토결과 화신(8.27) : 간이예타 필요
8. 7.	• 월주스님 초청간담회(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
8. 10.	• ‘역사교육관 건립’ 기본계획(낙산사 모델) 연구용역 요청
8. 25.	• 제3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5건 심의, 피해조사 시 상황별 적용방안 보고
9. 7.	• 제5차 심의위원회 개최 - 관후스님 등 피해신청 5건 의결 등
9. 10.	• 제3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학적 인과관계 8건, 의료지원금 지급기준(안) 등
9. 11.	• 명예회복방안 연구용역업체 계약
9. 18.	• 피해신청기간 연장공고 [기간 : ‘09. 9. 18. ~ ‘10. 3. 17.]
9. 28.	• 제4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13건, 실무위원회 회의운영규칙 개정(안) 의결
9. 29.	• 검진병원 협약식(동국대병원) *검진위 위촉
10. 6.	• 역사교육관 건립 부지선정위원회 회의
10. 9.	• 10·27법난기념행사 - 기념법회, 피해자 간담회, 심포지움, 사진전시회 등
11. 1.	• 지원단 조직운영체계 조정(2과 6개반 ⇨ 2과 7개반) - 기획관리반 1개반 추가
11. 2.	• ‘역사교육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인수
11. 16.	• 제6차 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13건, 피해실무위 회의운영규칙개정안, 의료지원금 지급기준안 등 의결

일 자	내 용
11. 21.	•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영담·해경스님, '09. 11. 21.부) * 해촉원학·세영스님, '09. 11. 20.부
12. 4.	• 제3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명예회복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최종본(초안) 보고
12. 9.	• 제7차 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장 영담스님 선임
12. 9.	• 제4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1건, 의학적 인과관계 4건
12. 15.	• 제4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명예회복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최종본(수정안) 보고
12. 15.	• 제5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5건 심의, 피해신청접수 및 조사현황 보고
12. 21.	• 제8차 심의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1건, 피해신청 5건 등
12. 24.	• 피해자 의료지원금 첫 지급(강만봉)

| 2010년 |

일 자	내 용
1. 20.	• 제5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3건, 의학적 인과관계 8건
1. 25.	• '10·27법난법' 1차 개정 - 피해자 심사기간 연장 : '09. 6. 30. → '12. 6. 30. -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 : '10. 6. 30. → '13. 6. 30.
1. 26.	• 제5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10·27법난 명예회복추진 실무지침서(안) 의결
1. 27.	• 제9차 심의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3건
2. 2.	• 제6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6건
2. 8.~10.	• 명예회복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인수 / 배포
3. 2.	• 제10차 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6건, 피해자 신청기간 연장(안) 의결



일 자	내 용
3. 15.	• 제6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1건, 의학적 인과관계 4건
3. 18.	• 피해신청 기간연장 공고문 관보게체 - 연장기한 : '10. 3. 17. → '11. 12. 31.
3. 25.	• 제7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3건
3. 30.	• 조계종, '역사교육관건립' 계획안 변경(낙산사 → 조계사)
4. 9.	• 제11차 심의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1건, 피해신청 4건 등
4. 19.	• 위원회 홈페이지 오픈(www.1027beopnan.go.kr)
4. 27.	• 역사교육관 건립계획(안) 요청 공문, 조계종 발송
5. 7.	• 제7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1건, 의학적 인과관계 8건
5. 10.~17.	• 봉축카드 발송(피해신청자, 주요사찰 등 186개체)
5. 17.~22.	•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10,000매)
5. 18.	• 제8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6건
5. 28.	• 제6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10·27법난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추진 시기별 검토 등 보고
6. 7.	• 제12차 심의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1건, 피해 신청 8건 등
6. 25.	• 역사교육관 수정사업계획(조계종) 접수
6. 29.	• 제8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2건, 의학적 인과관계 2건
7. 6.	• 역사교육관 건립 사업계획 보완요구 공문발송
7. 8.	• 제9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6건
7. 13.	• '10년도 법난기념행사안 접수
7. 21.	• 제7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역사교육관 건립 계획 수정(안), 2010년도 법난 기념행사 지원(안) 등 심의

일 자	내 용
7. 22.	• 제13차 심의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2건, 피해신청 6건, 법난 기념행사 지원안 등
7. 28.	• 역사교육관 건립 사업계획 2차 수정안 접수
8. 27.	• 제9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3건, 의학적 인과관계 2건
8. 27.	• 역사교육관 건립안(조계사안) 보완 내용 접수
9. 8.	• 제10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5건
9. 14.	• 제14차 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5건,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1건 등
10. 4.	• 조계종(피해종교단체) 피해신청 접수
10. 12.	• 위원회 소식지(창간호) 발간·배포(30,000부)
10. 19.	• 10·27법난사건 조사결과보고서(국방부) 책자 배부(200부)
10. 27.	• 10·27법난 30주년 기념행사 (주관 : 조계종 총무원) - 내용 : 기념법회, 학술세미나, 연극 등
10. 27.	• MBC 10·27법난 30주년 다큐멘터리 방영
11. 12.	• 제10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3건, 의학적인과관계 3건
11. 19.	• 제11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4건
11. 25.	• 제8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법난 30주년 기념행사 보조금 금액 확정 심의
12. 2.	• 제9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법난 30주년 기념행사 보조금 금액 확정 의결
12. 8.	• 제15차 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4건,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3건 등



| 2011년 |

일 자	내 용
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4건, 의학적 인과관계 1건
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3건 등
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차 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3건,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3건 등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 사무실 이전(전쟁기념관 → 동덕빌딩 9층)
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 사무실 개소식
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계종, 법난피해자 명예회복 관련 의견서 위원회에 제출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의결 및 검토사항 사례집 출간(30권)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4건, 의학적 인과관계 2건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4건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2012년도 역사교육관 및 법난 기념행사 예산편성안 등 심의
4.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계종, 역사교육관 건립계획안(조계사안) 위원회에 제출
4.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계종, 2012년도 법난 기념행사 예산 요청서 제출
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2012년도 역사교육관 건립 예산편성안 (수정 의결)
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차 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4건,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4건, 2012년도 예산 요구안 등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홍보리플렛 제작·배포(30,000부)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혜성스님, 국가손해배상 소송 패소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1건, 의학적 인과관계 2건
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3건
6.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차 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3건,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1건 등

일 자	내 용
6. 28.	• 천태종(구인사), 위원회에 명예회복신청 접수
8. 9.	• 지원단 조직개편 - 2과 7개반 → 2과 7개팀(총괄과 → 운영지원과, 반 → 팀)
9. 21.	• 제12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2011년 법난 기념행사 관련 국가보조금 신청의 건 의결
9. 23.	• 제14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4건, 의학적 인과관계 1건
9. 28.	•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방안 연구용역 발주
10. 5.	• 제19차 심의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2건 등
10. 12.	• 10·27법난 피해 일괄 신청접수 * 피해사찰, 사망자, 월주스님 등 72건을 조계종 대표 및 월주스님이 직접 위원회를 방문 (11:00)하여 일괄신청
10. 26.	• 10·27법난 제31주년 기념행사 - 기념법회, 독후감 공모전(불교신문 주관) 등
11. 11.	• ‘10·27법난법’ 시행령 1차 개정 - 소속 종교단체장 피해신청권 신설
11. 14.	• 제15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2건, 의학적 인과관계 2건
11. 21.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방안 세미나 개최(장소: 국회도서관)
11. 29.	• 제15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3건
12. 2.	• 위원회 법령집 발간 (70부)
12. 6.	• 제20차 심의위원회 개최 * 3년 임기도래 민간위원 5명 해촉문제로 파행(회의중단)
12. 22.	• 심의위원회 민간위원(5명) 신규 위촉 추천 공문발송(총리실)
12. 26.	• 10·27법난 피해 일괄 신청접수(장소 : 위원회) - '80. 12. 31.이전 조계종 승적보유 스님 9,853명에 대해 조계종 사회국장(묘장스님)이 방문하여 일괄신청



| 2012년 |

일 자	내 용
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임기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통보 * 법령해석결과 : 3년 경과하여도 임기만료에 해당 안됨.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1건, 의학적 인과관계 17건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2011년 법난 기념행사 국고보조금 결산 및 2012년 예산 계획(안)
4.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6건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3건, 의학적 인과관계 31건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입적스님 피해신청 33건
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12년도 법난기념행사 예산집행계획(안) 및 '13년도 예산편성(안)
6.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학적 인과관계 6건
6.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회복방안 연구용역 종료 / 결과물 인수
6.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52건(개인 : 7, 단체 : 45)
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지현스님, '12. 9. 21.부) * 해촉(해경스님, '12. 9. 20부)
9.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차 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장 지현스님 선임 - 피해신청·의료지원금 지급결정·피해종교단체 심의 차기이월
10.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법광스님, '12. 10. 18.부) * 해촉(영담스님, '12. 10. 17.부)
10.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12년도 법난 기념행사 국고보조금 예산집행계획(안) 등
10.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2차 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46건, '12년도 법난기념행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안) 등

일 자	내 용
10.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차 심의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신청 45건(단체), 의료지원금 결정 6건 - 위원회 회의운영규칙 개정안 - 조계종 법난피해 일괄 대리신청 처리방안(보류)
11.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적 인과관계 2건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신청 2건

| 2013년 |

일 자	내 용
1. 17.	• 국방부 파견 10·27법난 지원단 현역군인 철수(7명)
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지원금 산정 6건
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4차 심의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차기로 이월), '14년도 명예회복사업 예산 의결
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7법난법' 2차 개정, '13. 8. 23.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심사기간 연장 : '12. 6. 30. → '15. 6. 30. -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 : '13. 6. 30. → '16. 6. 30. - 사무처 신설(주무부처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6. 30.	• 10·27법난 지원단 인력 조정(전문직 3, 상근직 1 계약 종료)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정만스님, '13. 8. 12.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촉(지현스님, '13. 8. 11.부)
8. 20.	• '10·27법난법' 시행령 2차 개정, '13. 8. 23. 시행
8. 23.	• 사무처 설치, 문체부로 주무부처 변경(개정법률 의거)
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법난 기념행사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 의결
1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차 심의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정만스님 선임
1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보화스님, '13. 12. 2.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촉(법광스님, '13. 10. 29.부)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차 심의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신청 1건,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6건



| 2014년 |

일 자	내 용
1. 15.	• 제21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학적 인과관계 2건
1. 17.	• 제20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4건
1. 22.	• 제27차 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2건, 조계중 일괄 대리 신청자 처리방향 의결
2. 26.	• 제17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2014년 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안) 및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
3. 5.	• 제28차 심의위원회 개최 - 「2014년 10·27기념행사」 사업계획 및 국고보조금 지원 의결
3. 5.	• 위원장, 불교계 언론 기자 간담회 개최
3. 12.	• 제22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2건, 의학적 인과관계 2건
3. 21.	• 제21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2건
4. 9.	• 제29차 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2건,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재심신청 2건
4. 22.	• 법난피해자명예회복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4. 23.	• 제23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2건, 의학적 인과관계 1건
5. 15.	• 제18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안) 및 2015년 예산편성 요구의 건
5. 28.	• 제30차 심의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지급 심의 2건 -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안) 의결
6. 10.	• 위원장, 10·27법난 피해 스님 초청 간담회 개최
6. 11.	• 제24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3건, 의학적 인과관계 1건
6. 17.	• 제22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4건

일 자	내 용
6.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정문스님, '14. 6. 19.부) * 해촉(보화스님, '14. 5. 30.부)
6.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1차 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2건,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2건 및 재심신청 1건 의결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1건, 의학적 인과관계 1건
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6건
8.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회복 지원사업 관련 조계종·위원회 간담회 개최
8.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2차 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2건,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1건 의결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자 명예회복방안 마련 추진현황 및 계획 등 보고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2건, 의학적 인과관계 1건, 의료지원금 재심 1건
1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4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3건
10.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3차 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2건,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2건 및 재심신청 1건 의결
11.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7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학적 인과관계 6건
1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3건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난피해자명예회복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1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4차 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3건



| 2015년 |

일 자	내 용
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2건, 의학적 인과관계 5건
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지현스님, '15. 1. 14.부) * 해촉(정만스님, '14. 12. 17.부)
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9건
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법난피해자 캄보디아 역사순례 출장 결과 등 보고
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5차 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장 지현스님 선임 - 피해신청 6건, 피해 재심신청1건,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2건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3건, 의학적 인과관계 8건
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2015년 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안) 및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
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10·27법난피해자 초청 1차 간담회 개최
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7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16건
3.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6차 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2건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3건 - 2015년 10·27기념행사 사업계획 및 국고보조금 지원 의결
3.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12건
4.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0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학적 인과관계 3건
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7차 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6건
4.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1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학적 인과관계 7건
4.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10·27법난피해자 초청 2차 간담회 개최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2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2016년 기념관 건립 예산편성(안) 요구의 건 의결

일 자	내 용
5. 12.	• 제29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13건
5. 20.	• 제38차 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6건, 2016년 '법난 기념관 건립'예산(안) 의결
6. 16.	• 제32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4건, 의학적 인과관계 5건
6. 23.	• 제30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9건
6. 30.	• 제39차 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7건,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5건
7. 14.	• 제23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기념관 건립 추진현황, 활동보고서 발간 기획(안) 등 보고
7. 21.	• 제33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1건, 의학적 인과관계 4건
8. 11.	• 제31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12건
8. 25.	• 제40차 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 재심신청 6건,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1건
8. 27.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조치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9. 15.	• 제34차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산정 5건, 의료지원금 재심 1건
9. 21.	• 제41차 심의위원회 개최 -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5건 -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재심신청 1건
10. 13.	• 제24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법난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추진 방안(안) 의결
10. 27.	• 제42차 심의위원회 개최 - 10·27법난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방안 의결
11. 11.	• 제25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법난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 의결
11. 18.	• 제32차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개최 - 피해신청 2건



일 자	내 용
1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3차 심의위원회 개최 -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의결 40건 - 피해자 해당여부 재심의 1건
1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법난피해자(입적스님·사망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 의결
1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4차 심의위원회 개최 - 10·27법난피해자(입적스님·사망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의결 33건 - 명예회복 대상 해당여부 6건

| 2016년 |

일 자	내 용
1.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7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법난피해자(입적스님·생존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안) 의결
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5차 심의위원회 개최 - 10·27법난피해자(입적스님·생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의결 62건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7법난법’ 3차 개정, ‘16. 6. 30. 시행 - 법률의 유효기간 삭제(당초 시한 : ‘16. 6. 30. - 위원회 소속 변경 : 국무총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사무처 폐지 - 피해자 신고 및 심사조항 삭제
3.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2016년 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안) 및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 등
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6차 심의위원회 개최 - 2016년 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안) 및 국고보조금 신청의 건 등
4.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차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2017년 법난기념관 건립예산 편성(안) 요구의 건
4.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7차 심의위원회 개최 - 2017년도 법난기념관 건립 예산편성 요구(안)



부록 7

위원회 역대 위원 및 직원 명단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구 분	성명(법명)	근무기간	직위(주요약력)		비 고
위원장 (1)	김종일(원학)	'08. 12. 30. ~ '09. 11. 20.	조계종 총무부장		조계종 추천
	임학규(영담)	'09. 11. 21. ~ '12. 10. 17.			
	정성호(지현)	'12. 09. 21. ~ '13. 08. 11.			
	양준택(정만)	'13. 08. 12. ~ '14. 12. 17.			
	정성호(지현)	'15. 1. 14. ~ '16. 6.			
정부위원 (4)	신재민	'08. 12. 30. ~ '09. 04. 26.	제2차관	문화체육 관광부	
	김대기	'09. 04. 27. ~ '10. 08. 15.			
	박선규	'10. 08. 16. ~ '12. 01. 08.			
	김용환	'12. 01. 09. ~ '13. 03. 13.			
	박종길	'13. 03. 14. ~ '13. 03. 22.			
	조현재	'13. 03. 23. ~ '14. 07. 15.	제1차관		
	김희범	'14. 07. 25. ~ '15. 01. 05.			
	김 종	'15. 01. 06. ~ '16. 6.	제2차관		
	김종천	'08. 12. 30. ~ '09. 01. 22.	국방부 차관		
	장수만	'09. 01. 23. ~ '10. 08. 15.			
	이용걸	'10. 08. 16. ~ '13. 03. 13.			
	백승주	'13. 03. 24. ~ '15. 10. 20.			
	황인무	'15. 10. 21. ~ '16. 6.			
	임재식	'08. 12. 30. ~ '09. 01. 31.	경찰청 차장		
	이길범	'09. 02. 05. ~ '09. 03. 09.			
	최병민	'09. 03. 10. ~ '10. 01. 06.			
	모강인	'10. 01. 06. ~ '10. 09. 06.			
	박종준	'10. 09. 06. ~ '11. 12. 21.			
	김기용	'12. 01. 18. ~ '12. 05. 02.			
김정석	'12. 05. 08. ~ '13. 03. 28.				
안재경	'13. 03. 29. ~ '14. 12. 02.				
이인선	'13. 12. 10. ~ '14. 08. 31.				
홍익태	'14. 09. 01. ~ '14. 11. 18.				



구 분	성명(법명)	근무기간	직위(주요약력)	비 고
	이상원	'14. 12. 03. ~ '15. 12. 27.	국가보훈처 차장	
	이철성	'15. 12. 28. ~ '16. 6.		
	이종정	'08. 12. 30. ~ '09. 08. 12.		
	우무석	'09. 08. 13. ~ '11. 12. 04.		
	정양성	'11. 12. 05. ~ '13. 05. 27.		
	최완근	'13. 05. 28. ~ '16. 6.		
민간위원 (6)	장영동(세영)	'08. 12. 30. ~ '09. 11. 20.	조계종 사회부장	조계종 추천
	김길성(혜경)	'09. 11. 21. ~ '12. 09. 20.		
	안창준(법광)	'12. 10. 18 ~ '13. 10. 29.		
	김광태(보화)	'13. 12. 02. ~ '14. 05. 30.		
	서주영(정문)	'14. 06. 19. ~ '16. 6.	법흥사 주지	조계종 추천
	김거웅(삼보)	'08. 12. 30. ~ '16. 6.		
	윤원호	'08. 12. 30. ~ '16. 6.	한국여성정의당 상임대표	조계종 추천
	허남오	'08. 12. 30. ~ '16. 6.	영산대학교 석좌교수	
	조남진	'08. 12. 30. ~ '16. 6.	국군 예비역불자회 회장	
	이명목	'08. 12. 30. ~ '16. 6.	세종병원 원장	조계종 추천

▶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구 분	성 명	근무기간	직위(주요약력)	비 고
위원장 (1)	조남진	'08. 12. 30 ~ '16. 6.	국군 예비역불자회 회장	
정부위원 (3)	강태서	'13. 8. 23. ~ '14. 12. 30	문체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박성락	'14. 12. 31. ~ '15. 4. 27.		
	백승필	'15. 4. 28. ~ '16. 2. 10.		
	김옥환	'16. 2. 11. ~ '16. 6.		
	조훈식	'09. 5. 7 ~ '10. 6. 29.	국방부 감사관실 직무감찰감당관	
	유동주	'10. 7. 26 ~ '13. 8. 22.		
	이형모	'09. 5. 7. ~ '10. 2. 21	국방부 법무관리실 인권담당관	
	최홍숙	'10. 2. 22 ~ '13. 11. 12.		

구 분	성 명	근무기간	직위(주요약력)	비 고
	김기영	'13. 11. 13. ~ '14. 8. 18.		
	박진영	'14. 8. 19. ~ '16. 2. 2.		
	최환철	'16. 2. 3 ~ '16. 6.		
	백승호	'09. 5. 7 ~ '10. 12. 8.	경찰청 수사과장	
	현재섭	'11. 1. 10 ~ '13. 4. 18.	경찰청 수사기획과장	
	하상구	'13. 4. 19. ~ '14. 12. 21.		
	최주원	'15. 1. 16. ~ '16. 1. 14.		
	유재성	'16. 1. 15. ~ '16. 6.		
민간위원 (3)	권상탑	'09. 5. 7 ~ '16. 6.		전 기무사1차장, 전 합참기무부대장
	최원일	'09. 5. 7 ~ '16. 6.	조계종 신도회 회원, HBstar부사장	조계종 추천
	김봉석	'09. 5. 7 ~ '16. 6.	조계종 법무전문위원, 종로경찰서 자문위원	조계종 추천

▶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구 분	성 명	근무기간	직위(주요약력)	비 고
위원장 (1)	윤원호	'09. 5. 8. ~ '16. 6.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조계종 추천
정부위원 (3)	김재철	'09. 5. 8. ~ '10. 2. 10.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	
	박성락	'10. 2. 11. ~ '11. 4. 27.		
	도재경	'11. 4. 28. ~ '13. 9. 30.		
	신건석	'13. 10. 1. ~ '14. 1. 27.		
	김승규	'14. 1. 28. ~ '15. 4. 27.		
	송병호	'15. 4. 28. ~ '16. 6.		
	김정철	'09. 5. 8. ~ '13. 1. 31.	국방부 전력자원관리관실 시설기획과장	
	박재민	'13. 2. 1. ~ '14. 2. 11.		
	김정섭	'14. 2. 12. ~ '14. 3. 5.		
	안수현	'14. 3. 6. ~ '15. 2. 13.		
	유동준	'15. 2. 14. ~ '16. 6.		



구 분	성 명	근무기간	직위(주요약력)	비 고
	전종호	'09. 5. 8. ~ '10. 7. 9.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나라사랑정책과장	
	민병원	'10. 7. 10. ~ '11. 1. 27.		
	조몽환	'11. 1. 28. ~ '11. 6. 1.		
	황원채	'11. 6. 2. ~ '12. 2. 2.		
	이승우	'12. 2. 3. ~ '12. 12. 4.		
	문태선	'12. 12. 5. ~ '14. 7. 27.		
	김주용	'14. 7. 28. ~ '15. 8. 11.		
	나치만	'05. 8. 12. ~ '16. 6.		
민간위원 (3)	허동윤	'09. 5. 8. ~ '16. 6.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상지E&A건축사사무소 대표	조계종 추천
	김영주	'09. 5. 8. ~ '14. 11. 30.	조계종 총무원 사회팀장	조계종 추천
	김용구	'14. 12. 1. ~ '15. 7. 13.		
	양원준	'15. 7. 14. ~ '16. 6.		
	정석원	'09. 5. 8 ~ '10. 11. 24	조계종 총무원 법무전문위원	조계종 추천
	정병택	'10. 11. 25 ~ '15. 6. 30.		
	윤승환	'15. 7. 1. ~ '16. 6.	조계종 총무원 총무팀장	

▶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구 분	성 명	근무기간	직위(주요약력)	비 고
위원장 (1)	이명묵	'08. 12. 30. ~ '16. 6.	세종병원 원장	조계종 추천
정부위원 (3)	강성흠	'09. 5. 15. ~ '10. 6. 30.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장	
	유균혜	'10. 7. 1. ~ '12. 6. 30.		
	이순택	'12. 7. 1. ~ '13. 6. 30.		
	천승현	'13. 7. 1. ~ '14. 12. 31.		
	권영철	'15. 1. 1. ~ '16. 6.	육군 인사참모부 치무담당관	
	강동주	'09. 5. 15. ~ '09. 12. 31.		
	이일구	'10. 1. 1. ~ '13. 12. 31.		
	홍진선	'14. 1. 1. ~ '14. 12. 31.		
권동주	'15. 1. 1. ~ '16. 6.			

구 분	성 명	근무기간	직위(주요약력)	비 고
	정재열	'09. 5. 15. ~ '11. 8. 31.	서울시 은평병원 재활정신과장	
	고효정	'11. 9. 1. ~ '14. 11. 16.		
		'14. 11. 17. ~ '16. 6.	선릉김정신과의원 원장	
민간위원 (3)	권범선	'09. 5. 15. ~ '15. 12. 31.	동국대 일산병원 재활의학과장, 전 동국대 의과대학 부교수	조계종 추천
	태석기	'09. 5. 15. ~ '10. 5. 6.	동국대 일산병원 정형외과장, 전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	조계종 추천
	김진영	'10. 5. 7. ~ '11. 9. 22.	동국대의대 정형외과 조교수	
	구기영	'11. 9. 23. ~ '16. 6.	동국대 일산병원 정형외과과장	
	성낙진	'09. 5. 15. ~ '16. 6.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장	조계종 추천

▶ 10·27법난명예회복지원단

구 분	성 명	근무기간	직위(주요약력)	비 고
단장	박 총 신	'09. 1. 22. ~ '11. 6. 30.	지원단장	국방부 고위공무원
	최 동 식	'11. 7. 18. ~ '13. 6. 30.	지원단장	
	김 화 석	'13. 7. 1. ~ '13. 8. 22.	지원단장	
과장	권 영 섭	'09. 2. 20. ~ '11. 4. 29.	심의지원과장	육군대령
	주 석 흥	'09. 1. 22. ~ '10. 7. 26.	총괄과장	국방부 서기관
		'10. 7. 27. ~ '11. 4. 20.	총괄과장	국방부 서기관
	강 성 흡	'11. 4. 21. ~ '11. 12. 31.	심의지원과장	
		김 용 중	'11. 4. 21. ~ '13. 1. 17.	총괄과장
김 상 근	'12. 1. 26. ~ '13. 6. 30.	심의지원과장	국방부 서기관	
특별 보좌	이 용 성	'12. 1. 1. ~ '13. 6. 30.	조사심의관	전문계약직 “가”급
반팀장	권 혁 록	'09. 1. 30. ~ '09. 6. 2.	총괄반장	국방부 사무관
		'09. 6. 3. ~ '10. 1. 29.	민원담당	
	박 승 록	'09. 6. 3. ~ '10. 7. 30.	총괄반장	육군중령
	이 경 식	'09. 12. 24. ~ '10. 7. 5.	피해심사지원반장	
		'10. 7. 6. ~ '11. 8. 8.	총괄반장	
		'11. 8. 9. ~ '14. 1. 1.	총괄팀장	



구 분	성 명	근무기간	직위(주요약력)	비 고
반(팀)장	윤 광 훈	'09. 2. 20. ~ '09. 12. 18.	본회의지원반장	육군중령
	강 인 흥	'10. 2. 3. ~ '11. 6. 30.	본회의지원반장	국방부 사무관
	김 동 은	'11. 2. 7. ~ '11. 8. 8.	본회의지원반장	
		'11. 8. 9. ~ '12. 2. 21.	본회의팀장	
	진 창 언	'13. 7. 15. ~ '13. 8. 22.	조사심의과장	
	이 형 재	'09. 2. 20. ~ '10. 6. 30.	대외협력/홍보반장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김 덕 용	'10. 7. 2. ~ '11. 6. 30.	대외협력/홍보반장	
	정 창 엽	'11. 7. 1. ~ '11. 8. 8.	대외협력/홍보반장	
		'11. 8. 9. ~ '12. 2. 21.	대외협력/홍보팀장	
		'12. 2. 22. ~ '12. 6. 28.	본회의/홍보팀장	
	김 중 환	'12. 7. 2. ~ '13. 8. 22.	본회의/홍보팀장	
	최 득 순	'09. 6. 30. ~ '09. 10. 30.	피해심사지원반장	육군중령
		'09. 7. 6. ~ '11. 8. 8.	기획관리반장	
		'11. 8. 9. ~ '13. 1. 17.	기획관리팀장	
	황 중 하	'10. 7. 1. ~ '11. 8. 8.	피해심사지원반장	전문계약직 "나"급
		'11. 8. 9. ~ '13. 6. 30.	피해심사팀장	
	이 성 덕	'09. 2. 20. ~ '11. 4. 29.	의료판정지원반장	육군소령
	김 문 수	'11. 1. 5. ~ '11. 8. 8.	의료판정지원반장	육군중령
		'11. 8. 9. ~ '12. 1. 31.	의료지원팀장	
		김 승 기	'12. 1. 13. ~ '13. 10. 7.	
김 중 만	'09. 2. 20. ~ '10. 6. 30.	명예회복지원반장	전문계약직 "나"급	
이 용 성	'10. 7. 1. ~ '11. 8. 8.	명예회복지원반장		
	'11. 8. 9. ~ '11. 12. 31.	명예회복팀장		
김 철 현	'12. 3. 1. ~ '13. 6. 30.	명예회복팀장		
담당 직원	기 남 형	'09. 2. 20. ~ '10. 4. 29.	대외협력담당	전문계약직 "다"급
	김 태 헌	'09. 2. 20. ~ '09. 3. 30.	법무관	육군대위
	박 현 진	'09. 3. 16. ~ '10. 3. 30.	법무관	
	송 현 직	'10. 4. 13. ~ '12. 3. 30.	법무관	
	손 광 진	'12. 3. 20. ~ '13. 3. 31.	법무관	

구 분	성 명	근무기간	직위(주요약력)	비 고
	손 성 호	'09. 2. 20. ~ '09. 4. 21.	군의원	
	김 연 호	'09. 5. 4. ~ '11. 4. 21.	군의원	
	안 병 근	'11. 4. 26. ~ '13. 1. 23.	군의원	
	윤 미 옥	'09. 11. 21. ~ '12. 7. 31.	예산/행정담당	육군소령
	이 재 형	'09. 6. 30. ~ '09. 10. 30.	예산/행정담당	육군대위
		'09. 11. 1. ~ '10. 9. 30.	피해조사관	
	김 경 민	'09. 2. 20. ~ '13. 5. 28.	행정담당	육군상사
	임 성 기	'09. 2. 20. ~ '09. 10. 31.	피해조사관	육군소령
	강 은 진	'09. 4. 16. ~ '09. 7. 15.	피해조사관	
	김 경 호	'09. 2. 20. ~ '10. 6. 30.	피해조사관	경찰청 경감
	손 영 만	'10. 7. 1. ~ '11. 7. 6.	피해조사관	
	김 주 철	'11. 7. 20. ~ '12. 6. 28.	피해조사관	
	권 영 일	'12. 8. 20. ~ '12. 12. 25.	피해조사관	
	안 영 상	'13. 7. 22. ~ '13. 8. 22.	피해조사관	
	김 철 현	'09. 4. 22. ~ '12. 2. 29.	피해조사관	기간제 근로자 (상근직 '가'급)
	이 원 균	'12. 3. 1. ~ '13. 6. 30.	피해조사관	
	송 혜 진	'09. 2. 20. ~ '09. 9. 30.	피해조사관	기간제 근로자 (상근직 '나'급)
	송 봉 규	'10. 9. 1. ~ '13. 8. 22.	명예심사지원담당	
	양 춘 만	'12. 3. 1. ~ '12. 10. 5.	본회의담당	기간제 근로자 (상근직 '가'급)
	이 효 진	'09. 10. 5. ~ '11. 1. 31.	기록연구담당	기간제 근로자 (상근직 '다'급)
		'11. 2. 1. ~ '11. 6. 30.	단장보좌	
	최 지 윤	'09. 2. 20. ~ '09. 8. 30.	행정담당	무기계약 근로자
		'09. 8. 31. ~ '11. 1. 31.	단장보좌	
	김 주 영	'09. 2. 20. ~ '09. 8. 30.	단장보좌	기간제 근로자
	최 보 화	'11. 10. 1. ~ '12. 3. 16.	단장보좌	
	지 민 정	'12. 4. 9. ~ '12. 12. 31.	단장보좌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구 분	성 명	근무기간	직위(주요약력)	비 고
처장	도 재 경	'13. 9. 30. ~ '15. 6. 30.	사무처장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윤 남 순	'15. 7. 6. ~ '16. 6. 30.	사무처장	
과장	조 연 갑	'13. 8. 29. ~ '16. 6. 30.	기획총괄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진 창 언	'13. 8. 23. ~ '15. 12. 31.	조사심의과장	국방부 서기관
	이 상 효	'13. 12. 16. ~ '15. 6. 30.	명예회복지원과장	전문임기제 "가"급
	공 승 관	'15. 8. 13. ~ '16. 6. 30.	명예회복지원과장	
담당 직원	김 종 환	'13. 8. 23. ~ '13. 12. 12.	본회의담당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김 성 겸	'13. 12. 31. ~ '14. 12. 31.	법난기념관담당	
	이 경 수	'14. 8. 23. ~ '15. 6. 14.	본회의담당	
		'15. 6. 15. ~ '16. 6. 30.	법난기념관담당	
	나 서 경	'13. 12. 13. ~ '14. 11. 16.	예산/행정담당	
	강 성 임	'14. 11. 17. ~ '16. 6. 30.	예산/행정담당	
	전 종 윤	'15. 1. 1. ~ '15. 6. 14.	법난기념관담당	국방부 사무관
	임 춘 수	'14. 2. 14. ~ '15. 7. 31.	피해조사관	
	이 정 권	'15. 8. 1. ~ '16. 6. 19.	본회의담당	경찰청 경감
	안 영 상	'13. 8. 23. ~ '14. 2. 6.	피해조사관	
	권 영 일	'14. 2. 7. ~ '15. 2. 5.	피해조사관	
	이 건 정	'15. 2. 6. ~ '15. 6. 30.	피해조사관	전문임기제 "나"급
	김 진 수	'13. 12. 16. ~ '16. 6. 30.	명예회복추진담당	
	이 원 균	'13. 12. 16. ~ '16. 6. 30.	피해조사관	
		'15. 8. 13. ~ '16. 6. 30.	백서발간담당	
	송 봉 규	'13. 8. 23. ~ '14. 2. 28.	명예심사지원담당	기간제 근로자 (상근직 '나'급)
	최 보 화	'13. 10. 7. ~ '16. 6. 30.	처장/예산지원담당	
	현 석 이	'13. 10. 7. ~ '16. 6. 30.	기록/통계/백서 담당	
	황 종 하	'14. 2. 17. ~ '15. 12. 31.	피해조사관	
		'16. 1. 1. ~ '16. 6. 30.	피해/의료자료담당	
최 흥 섭	'14. 4. 7. ~ '16. 6. 30.	기념행사지원담당		
엄 광 용	'15. 8. 13. ~ '16. 5. 31.	백서집필담당		



백서 편집위원회

- 위원장 허남오(심의위원회 위원)
위 원 진희권(경기대 법학과 교수) 서재영(불광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선두(불교신문사 편집부장) 김용구(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

백서 기획단

- 단 장 윤남순(심의위원회 사무처장)
부단장 조연갑(심의위원회 기획총괄과장)
공승관(심의위원회 명예회복지원과과장)
총 팔 이원균(심의위원회 명예회복지원과과 백서 담당)
단 원 엄광용(심의위원회 명예회복지원과과 백서 담당)
현석이(심의위원회 기획총괄과 기록물 관리 담당)
원 고 이정권(심의위원회) 이경수(기념관)
작 성 김진수(명예회복방안) 황종하(의료실무위) 최홍섭(기념행사)

10·27 법 난 피 해 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백서 부록

- 인 쇄 일 2016년 6월 9일
발 행 일 2016년 6월 15일
발 행 처 국무총리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9층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 ((우)03145)
Tel: 02-738-6210 Fax: 02-730-5991
<http://www.1027beopnan.go.kr>
디자인·인쇄 디자인페이지(02-2285-5278)
-